미국장로교 헌법 제II부

규례서

큰활자판

2019-2021 Korean Book of Order, PDS #OGA-19-045

2019–2021

규 례 서

미 국 장 로 교
헌 법
제 Ⅱ부

큰활자판

OGA-19-045

미국장로교

헌법

제II부

규례서

미 국 장 로 교

헌 법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제 II 부

규 례 서

PART II
BOOK OF ORDER
2019–2021

공식 한국어 번역판
(교회 또는 일반 법정의 소송이 있을 경우 영문판을 공식판으로 함.)

총회 사무국 발행
PUBLISHED BY
THE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100 Witherspoon Street
Louisville, KY 40202-1396

판권 ©2019
미국장로교
총회 사무국 소유

표지 디자인 판권 ©2019
미국장로교
총회 사무국 소유

본 출판물의 어느 부분도 발행인의 사전 승인 없이는 어떤 형태로나 어떤 방편으로 전자를 사용해서나 기계적으로나 사진 복사나 녹음으로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잡지나 신문 평론에 사용되는 간략한 인용은 제외하고) 복사하거나 재생계통에 저장하거나 송신할 수 없다.

미국장로교의 당회, 노회와 대회는 발행인의 사전 서면 허락을 받지 않고도 본 출판물의 항목들을 사용할 수 있다.

미국에서 인쇄

본 책자는 다음 처소에서 $10.00(권당)에 구입할 수 있음
Presbyterian Distribution Service (PDS)
100 Witherspoon Street
Louisville, KY 40202-1396
1-800-524-2612 (PDS)

PDS 주문번호 #OGA-19-045
한글 번역에 부치는 글

2017년 6월, 미국장로교 규례서에서 “예배 모범” (Directory for Worship) 이 전면적으로 새로이 개정됨에 따라, 한글 번역판도 새로운 번역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전 규례서 영어용어와 한글용어	새로운 규례서 영어용어와 한글용어
Teaching Elder [교역장로(목사)]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Commissioned Lay Pastor 평신도 목회자	Commissioned Pastor (also known as commissioned ruling elder) 특정한 목회적 섬김을 위해 파송 받는 사역장로
Certified 인정된/유자격	Certified 공인
Confirmation 확인/인준/입교	Confirmation 견진/입교
Installation 위임/취임	Installation 위임/임직
Offerings 헌금	Offerings 봉헌/헌금
Pretrial 심리 (재판) 전의	Pretrial 예심

이번 번역/감수 과정에서 문장을 새로 번역하거나 용어를 정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 규례서 영어 원문에 가깝도록 번역한다.
- 규례서적인 용어의 뜻을 살리도록 한다.
- 한인교회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한다.
- 교단 규례서의 개정 정신을 살리도록 한다.
- 새로운 한글 맞춤법을 적용한다.

한글 번역/감수 위원회:

2011년 9월 1일

위원장: 이유신 목사
위원: 천방욱 목사, 지인순 장로, 문정선 목사, 조남홍 목사, 이귀호 장로
자문위원: 김선배 목사, 임혜환 목사

2017년 9월 1일

편집: 허정갑 목사, 총회(PMA) 한국어번역
위원: 김선배 목사, Louisville, Kentucky
김정숙 목사, Lorton, Virginia
문정선 목사, Palisades Park, New Jersey
지인순 장로, Woodstock, Georgia
천방욱 목사, North Hollywood, California
최훈진 목사, Denver, Colorado
자문위원: 김삼영 목사, 중서부 한미노회 사무총장
김현준 목사, 동부 한미노회 사무총장
박성주 목사, 한인교회 전국총회 (NCKPC) 사무총장
조문길 목사, 총회(PMA) 한인목회실
최정석 목사, 총회(OGA) 한국어담당

서 문

*미국장로교 헌법*은 정치형태 F-3.04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신앙고백서*(제1부)와 *규례서*(제2부)로 구성된다.

*신앙고백서*는 니케아 신조, 사도신경, 스콧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스위스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바르멘 신학선언, 1967년도 신앙고백, 벨하 신앙고백, 및 간추린 신앙고백– 미국장로교를 포함하고 있다.

*규례서*는 장로교 정치제도의 기초, 정치형태, 예배모범과 권징조례를 포함한다.

이 *규례서*에서

(1) "해야 한다"와 "되어야 한다"는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조항을 의미한다.

(2) "해야 할 것이다"는 강하게 권장하는 조항을 의미한다.

(3) "적절하다"는 적합하다고 권장되는 조항을 의미한다.

(4) "해도 좋다"는 의무적이 아닌 허용되는 조항을 의미한다.

(5) 자문서(ADVISORY HANDBOOK)는 총회 산하의 기관들이 목회감독과 관련된 절차에서 대회와 노회를 인도하기 위해 만든 지침서이다. 그러한 안내서에 제안된 절차들은 권장되는 것들이나 의무화된 절차는 아니다.

제 223차 총회(2018)에 의해 노회에 제안되고 노회 대다수의 승인을 얻은 정치형태, 예배모범, 및 권징조례에 대한 개정안이 이 책에 포함된다. 줄 그어진 단어는 본문에서 생략된다. 새로운 문구는 해당 단락의 진한 글씨체로 표시된다. 이 개정안은 2019년 6월 23일 발효된다. 아래의 조항들이 개정되었다:

규례서	*회의록, 2018*	*규례서*	*회의록, 2018*
G-2.0401	69, 72, 592	D-2.0203b	70, 71, 570
G-2.0509	70, 71– 72, 588	D-10.0401b	70, 73– 74, 631– 32
G-3.0306	70, 71, 571	D-10.0401c(1)	70, 73– 74, 631– 32
G-3.0307	69, 70, 565– 66	D-10.0401d	70, 71– 72, 588
W-4.0202	17, 1205		

2019 년 6 월

J. Herbert Nelson, II

미국장로교(PCUSA) 총회 정서기

규례서 참조 번호제에 관한 설명

*규례서*의 네 부분은 대문자를 사용하여 약자화 하였다:

F – 장로교 정치제도의 기초
G – 정치형태
W – 예배모범
D – 권징조례

본문에 있는 각 참조 조항은 해당하는 약자로 시작한다. 약자 다음의 소수점 왼쪽에 나타난 숫자는 해당 장수를 지적한다. 소수점 오른쪽에 네 개의 숫자가 있다. 첫 두 숫자는 절을 나타내는 숫자이고, 두 번째 두 숫자는 소절의 숫자를 나타낸다.

각 페이지는 그 페이지에 나타나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약자에 이어 숫자로 표기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장로교 정치제도의 기초에서, 제1장의 첫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호 표시가 있다:

F-1.01- F-1.02
F-1.0201- 1.0202

이것은 장로교 정치제도의 기초의 제1장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과 이 페이지는 1.01과 1.02의 두 절이 있고, 1.02절에는 제목이 붙은 두 개의 소절, 1.0201과 1.0202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규례서*의 장과 절이 이처럼 표기되었으므로 현재의 숫자 표시를 변경시키지 않고서 개정을 통하여 장과 절을 추가할 수 있다.

페이지 번호를 피함으로, 이 기호법은 회의록, 보고서, 교신에 있어서 *규례서*를 인용하는 것이 영어, 한글, 스페인어와 점자판에 매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준다.

목 차

장로교 정치제도의 기초

제1장 교회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 F-1.01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F-1.02
그리스도의 권위 F-1.0201
그리스도는 교회를 부르시고 온전케 하신다 F-1.0202
그리스도는 교회에 생명을 주신다 F-1.0203
그리스도는 교회의 희망이시다 F-1.0204
그리스도는 교회의 기초이시다 F-1.0205
교회의 소명 F-1.03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F-1.0301
교회의 표지 F-1.0302
개혁 교회의 특징 F-1.0303
교회의 큰 목적 F-1.0304
성령의 인도하심에의 개방성 F-1.04
연속성과 변화 F-1.0401
에큐메니시티 F-1.0402
다양성 속의 일치 F-1.0403
개방성 F-1.0404

제2장 교회와 신앙고백

신앙고백서들의 목적 F-2.01
부차적인 표준으로서의 신앙고백 F-2.02
보편적 교회의 신앙 진술로서의 고백 F-2.03
개신교 신앙의 진술로서의 고백 F-2.04
개혁 전통의 신앙 진술로서의 고백 F-2.05

제3장 규례와 정치의 원리

교회 규례의 역사적 원리 F-3.01
하나님이 양심의 주인이시다 F-3.0101
집단적 판단 F-3.0102
제직 F-3.0103
진리와 선함 F-3.0104
상호 관용 F-3.0105
사람들에 의한 선출 F-3.0106
교회의 권한 F-3.0107
교회 권징의 가치 F-3.0108
장로교 정치의 원리 F-3.02
하나의 교회 F-3.0201
장로들에 의한 치리 F-3.0202

공의회로 모임 F-3.0203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고 대표함 F-3.0204
과반수에 의한 의사 결정 F-3.0205
검토와 감독 F-3.0206
공의회에 의한 안수 F-3.0207
공유된 권한, 공동 행사 F-3.0208
공의회의 일반적인 권한 F-3.0209
기초 선언문 F-3.03
미국장로교 헌법의 정의 F-3.04

정치형태

제1장 개체교회와 교인

개체교회 G-1.01
개체교회의 선교적 사명 G-1.0101
개체교회의 교제 G-1.0102
미국장로교 헌법에 따라 다스려짐 G-1.0103
개체교회의 조직 G-1.02
조직 언약 G-1.0201
개체교회의 교인 G-1.03
교인과 세례의 의미 G-1.0301
환영과 개방성 G-1.0302
교인 등록 G-1.0303
교인들의 사역 G-1.0304
교인의 분류 G-1.04
세례교인 G-1.0401
활동교인 G-1.0402
관련교인 G-1.0403
기타 참석자들 G-1.0404
공동의회 G-1.05
연례회의와 임시회의 G-1.0501
공동의회 소집 G-1.0502
공동의회에 적절한 안건 G-1.0503
의장 G-1.0504
서기와 회의록 G-1.0505

제2장 직제사역, 파송, 인증

교회의 직제사역 G-2.01
그리스도의 사역 G-2.0101
직제사역 G-2.0102
직제사역으로의 부름 G-2.0103
은사와 자격 G-2.0104

양심의 자유.....G-2.0105
집사: 연민과 봉사의 사역.....G-2.02
집사의 정의.....G-2.0201
당회 권위 하에 놓임.....G-2.0202
사역장로(장로): 분별과 다스림의 사역.....G-2.03
사역장로(장로)의 정의.....G-2.0301
사역장로(장로)와 집사에 대한 일반 조항.....G-2.04
사역장로(장로)와 집사의 선출.....G-2.0401
사역장로(장로)나 집사로서의 사역준비.....G-2.0402
안수 및 임직 예식.....G-2.0403
임직 기간.....G-2.0404
관계의 해소.....G-2.0405
사역장로(장로)나 집사로서의 사역 해제.....G-2.0406
관할권의 파기선언.....G-2.0407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가르침 및 목회적 돌봄의 사역.....G-2.05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에 대한 정의.....G-2.0501
노회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G-2.0502
회원권의 분류.....G-2.0503
목회 관계.....G-2.0504
타 교단 목사의 이명.....G-2.0505
사역기간 동안의 임시 노회원권.....G-2.0506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서의 사역 해제.....G-2.0507
인정된 목회 활동의 불이행.....G-2.0508
관할권의 파기선언.....G-2.0509
목회 준비.....G-2.06
준비의 성격과 목적.....G-2.0601
시간 요구사항.....G-2.0602
지망의 목적.....G-2.0603
후보의 목적.....G-2.0604
감독.....G-2.0605
언약관계에 있는 동안의 봉사.....G-2.0606
최종 평가와 사역교섭.....G-2.0607
관계의 이전.....G-2.0608
관계의 취소.....G-2.0609
예외.....G-2.0610
안수.....G-2.07
안수.....G-2.0701
안수 장소.....G-2.0702
안수 예배.....G-2.0703
안수 기록.....G-2.0704
청빙과 위임.....G-2.08
목사 공석.....G-2.0801
목사 청빙위원회 선출.....G-2.0802

청빙 절차 G-2.0803
청빙 조건 G-2.0804
위임 예배 G-2.0805
목회 관계의 해소 G-2.09
공동의회 G-2.0901
담임목사, 동사목사 또는 부목사가 요청 시 G-2.0902
개체교회가 요청 시 G-2.0903
노회의 결정 G-2.0904
초청에 의해서만 직무 수행 G-2.0905
특정한 목회 봉사로의 사역장로(장로) 파송 G-2.10
기능 G-2.1001
훈련과 시험 및 파송 G-2.1002
파송 예식 G-2.1003
감독 G-2.1004
공인 교회 사역 G-2.11
공인 교회 사역의 형태 G-2.1101
노회와 공인 교회 사역 G-2.1102
기독교 교육사 G-2.1103
제3장 교회 공의회
공의회의 일반원칙 G-3.01
교회일치 표현으로서의 공의회 G-3.0101
교회 관할권 G-3.0102
참여와 대표성 G-3.0103
제직 G-3.0104
회의 G-3.0105
선교 행정 G-3.0106
기록 G-3.0107
행정적 검토 G-3.0108
위원회와 전권위원회 G-3.0109
행정 직원 G-3.0110
공천 절차 G-3.0111
보험 G-3.0112
재정 G-3.0113
당회 G-3.02
구성과 책임 G-3.0201
타 공의회와의 관계 G-3.0202
회의 G-3.0203
회의록과 기록 G-3.0204
재정 G-3.0205
노회 G-3.03
구성과 책임 G-3.0301
대회 및 총회와의 관계 G-3.0302
당회와의 관계 G-3.0303

회의와 정족수 G-3.0304
회의록과 기록 G-3.0305
노회의 회원권 G-3.0306
교역장로(목사)들과 개체교회들에 대한 목회자, 상담자와 조언자.... G-3.0307
대회 G-3.04
구성과 책임 G-3.0401
총회와의 관계 G-3.0402
노회와의 관계 G-3.0403
기능 축소 G-3.0404
회의와 정족수 G-3.0405
회의록과 기록 G-3.0406
총회 G-3.05
구성과 책임 G-3.0501
타 공의회와의 관계 G-3.0502
회의와 정족수 G-3.0503
제4장 교회 권한과 민사 권한
법인체와 재단이사 G-4.01
법인체와 권한 G-4.0101
법인체의 회원 G-4.0102
교회 재산 G-4.02
선교를 위한 도구로서 재산 G-4.0201
재산에 관한 결정 G-4.0202
신탁된 교회 재산 G-4.0203
헌법에 어긋나는 재산의 사용 G-4.0204
해소되었거나 없어진 교회의 재산 G-4.0205
교회 재산의 매각, 저당 혹은 임대 G-4.0206
분열된 교회의 재산 G-4.0207
예외 G-4.0208
비밀보장과 특권 G-4.03
신뢰와 비밀보장 G-4.0301
의무적인 보고 G-4.0302
제5장 에큐메니시티와 연합
에큐메니컬 참여 G-5.01
에큐메니시티 G-5.0101
종교 간 관계 G-5.0102
비종교 기관들 G-5.0103
타 교단과의 관계 G-5.02
통신관계 G-5.0201
완전교류 G-5.0202
에큐메니컬 선언 G-5.0203
완전한 조직적 연합 G-5.03
연합노회 G-5.04

헌법적 권한.....G-5.0401
연합 계획.....G-5.0402
선교를 위한 교회 연합.....G-5.05
제6장 헌법 해석 및 개정
개혁.....G-6.01
헌법 해석.....G-6.02
신앙고백서 개정.....G-6.03
규례서 개정.....G-6.04
예외 조항.....G-6.05
특별조항의 개정.....G-6.06

예배모범

머리말
제1장 기독교 예배 신학
기독교 예배: 서문.....W-1.01
하나님께 영광.....W-1.0101
은혜와 감사.....W-1.0102
하나님의 언약.....W-1.0103
예수 그리스도.....W-1.0104
성령.....W-1.0105
말씀과 성례전.....W-1.0106
예배와 교회.....W-1.0107
시간, 공간 및 물질.....W-1.02
창조와 구속.....W-1.0201
시간.....W-1.0202
공간.....W-1.0203
물질.....W-1.0204
언어, 상징 및 문화.....W-1.03
말씀이 육신이 되다.....W-1.0301
언어.....W-1.0302
상징들.....W-1.0303
문화.....W-1.0304
제2장 개혁교회 예배의 순서
근원과 원리.....W-2.01
예배 순서의 근원.....W-2.0101
형식과 자유.....W-2.0102
예배 모임.....W-2.02
왕 같은 제사장.....W-2.0201
기도로 참여.....W-2.0202

예배의 인도와 직제 사역 W-2.03
섬김을 위한 은사들 W-2.0301
집사 W-2.0302
사역 장로 W-2.0303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W-2.0304
공동 책임과 의무 W-2.0305

제3장 주일 예배

주일 예배 W-3.01
부활절 W-3.0101
주일 예배 모형 W-3.0102
예배 순서 W-3.0103
모임 W-3.02
예배 준비 W-3.0201
예배를 여는 문장 W-3.0202
시편, 찬송가 및 영가 W-3.0203
기도 W-3.0204
고백과 용서 W-3.0205
말씀 W-3.03
선포의 신학 W-3.0301
조명을 위한 기도 W-3.0302
성경 W-3.0303
음악적 응답 W-3.0304
선포 W-3.0305
신앙의 확인 W-3.0306
세례와 세례의 제자도 W-3.0307
중보기도 W-3.0308
헌금과 주님의 만찬 W-3.0309
성례전 W-3.04
성례전 신학 W-3.0401
세례 신학 W-3.0402
세례의 책임 W-3.0403
소개 W-3.0404
신앙 고백 W-3.0405
물에 대한 감사 기도 W-3.0406
세례 베풀기 W-3.0407
환영 W-3.0408
주님의 만찬 신학 W-3.0409
주님의 만찬에 대한 책임 W-3.0410
봉헌 W-3.0411
대감사 W-3.0412
빵을 뗌 W-3.0413
성찬식 W-3.0414
주님의 만찬을 행하지 않는 경우 W-3.0415

보냄 W-3.05
결단의 행위들 W-3.0501
축복과 권면 W-3.0502
세상에서의 섬김 W-3.0503
제4장 목회와 특별 목적을 위한 예배
세례와 관련된 예배 W-4.01
세례로부터 시작됨 W-4.0101
세례 언약의 재확인 W-4.02
세례 받은 자들의 양육 W-4.0201
식탁으로의 초대 W-4.0202
공중 고백 W-4.0203
새 교우 W-4.0204
갱신과 새로운 헌신 W-4.0205
섬김을 위한 파송 W-4.03
크리스천 섬김의 행위들 W-4.0301
안수, 위임, 및 파송 W-4.04
사역으로의 부름 W-4.0401
예배를 위한 설정 W-4.0402
예배 순서 W-4.0403
헌법 질문 W-4.0404
변화 수용 W-4.05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 W-4.0501
떠나는 교인들 W-4.0502
섬김의 종결 W-4.0503
견책과 복권 W-4.0504
결혼 언약 W-4.06
크리스천 결혼 W-4.0601
결혼 준비 W-4.0602
예배 순서 W-4.0603
민사 결혼 인정 W-4.0604
어떤 것도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W-4.0605
죽음과 부활 W-4.07
부활 증거 W-4.0701
장례식 방침 W-4.0702
예식을 위한 설정 W-4.0703
예배 순서 W-4.0704
제5장 예배와 그리스도인의 삶
예배와 개인적 삶 W-5.01
개인적 삶 W-5.0101
일상 생활 속의 기도 W-5.0102
제자도의 다른 관행들 W-5.0103
가정 예배 W-5.0104

그리스도인의 소명 W-5.0105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와 교회의 사역 W-5.02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교회 사역 W-5.0201
매일 기도회 W-5.0202
기독교 교육 W-5.0203
목회적 돌봄 W-5.0204
교회 공의회 W-5.0205
기타 모임 W-5.0206
세상에서의 예배와 교회의 선교 W-5.03
세상에서의 교회의 선교 W-5.0301
복음 전도 W-5.0302
긍휼 W-5.0303
정의와 평화 W-5.0304
창조물을 돌봄 W-5.0305
예배와 하나님의 통치 W-5.04
하나님의 통치 W-5.0401

권징조례

제1장 교회 권징의 원리 D-1.0000
(전문)
교회 권징 D-1.0101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여된 권한.....D-1.0102
조정과 중재.....D-1.0103
제2장 사법절차의 정의.....D-2.0000
1. 사법절차.....D-2.0100
교회권징.....D-2.0101
a. 변칙과 비행의 방지와 시정.....D-2.0101a
b. 범법의 시정.....D-2.0101b
교회 공의회들.....D-2.0102
해결의 대안형식.....D-2.0103
2. 사건의 형태.....D-2.0200
교정 혹은 징계.....D-2.0201
교정사건.....D-2.0202
a. 변칙.....D-2.0202a
b. 비행.....D-2.0202b
징계사건.....D-2.0203
a. 직제사역자.....D-2.0203a
b. 범법.....D-2.0203b
제3장 사법절차 관할권.....D-3.0000

관할권 D-3.0101
a. 당회 D-3.0101a
b. 노회 D-3.0101b
c. 노회, 대회, 총회 D-3.0101c
d. 교회해산 D-3.0101d
더 이상 사법적 결의 못함 D-3.0102
하위 공의회가 결의 못함 D-3.0103
이명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관할권 D-3.0104
판결과 결정의 집행 및 인정 D-3.0105
관할권의 종결시 D-3.0106
제4장 위임 D-4.0000
1. 위임 D-4.0100
정의 D-4.0101
적절한 내용 D-4.0102
하위 공의회의 의무 D-4.0103
2. 위임의 결의 D-4.0200
상위 공의회의 의무 D-4.0201
접수 D-4.0202
거부 D-4.0203
제5장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D-5.0000
1.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서의 봉사 D-5.0100
선출 D-5.0101
임기 D-5.0102
연조 D-5.0103
공석 D-5.0104
자격 D-5.0105
위원회 비용 D-5.0106
2. 회의 D-5.0200
임원 D-5.0201
권한의 근거 D-5.0202
회의 D-5.0203
정족수 D-5.0204
참여치 못할 자 D-5.0205
정족수 부족 D-5.0206
a. 정족수 확보 불능 D-5.0206a
b. 전임 위원의 명단 D-5.0206b
c. 참석자 비용 D-5.0206c
제6장 교정사건 D-6.0000
1. 교정사건의 착수와 집행유예 D-6.0100
착수방법 D-6.0101
고소의 정의 D-6.0102
집행유예 D-6.0103

a. 유예신청 접수의 시간제한.....D-6.0103a
b. 위원장과 서기에게 전달된 신청서.....D-6.0103b
c. 예비조사를 위한 시각표 D-6.0103c
d. 집행유예를 시행하기 위한 시각표 D-6.0103d
e. 유예의 사본 배포 D-6.0103e
f. 유효기간.....D-6.0103f
g. 집행유예에 대한 반대.....D-6.0103g
2. 교정사건의 고소 제기 D-6.0200
당사자들.....D-6.0201
고소 제기자 D-6.0202
a. 노회, 대회나 동등한 수준의 공의회 상대 D-6.0202a
b. 당회, 총회 선교사역부/기관 상대.....D-6.0202b
3. 사전 심리 절차.....D-6.0300
고소 진술.....D-6.0301
변호인단.....D-6.0302
a. 규칙에 따라 마련 D-6.0302a
b. 봉사 못함 D-6.0302b
고소에 대한 답변서 D-6.0303
심리 이전 절차 D-6.0304
서류검사.....D-6.0305
예비 질문 결정 D-6.0306
피고 당회 서기 또는 정서기의 의무 D-6.0307
등록 절차.....D-6.0308
심리 요약서 D-6.0309
예심 회의.....D-6.0310
제7장 교정사건의 재판.....D-7.0000
1. 재판의 집행.....D-7.0100
재판 - 교정사건.....D-7.0101
정식으로 집행.....D-7.0102
2. 소환과 증언.....D-7.0200
당사자와 증인 소환 D-7.0201
a. 소환받는 회원.....D-7.0201a
b. 요청받는 타인들.....D-7.0201b
c. 타 공의회의 증인 D-7.0201c
d. 비용.....D-7.0201d
소환장 전달 D-7.0202
이차 소환.....D-7.0203
증인의 증언 거부.....D-7.0204
선서 증언.....D-7.0205
3. 재판 절차 D-7.0300
변호인 D-7.0301
자료의 배포.....D-7.0302
재판 진행 통제 D-7.0303

a. 절차에 관한 질문 D-7.0303a
b. 결석 D-7.0303b
정족수 미달 D-7.0304
4. 재 판 D-7.0400
교정사건의 절차 D-7.0401
a. 위원장에 의한 선포 D-7.0401a
b. 전권위원의 자격 D-7.0401b
(1) 부적격성 ..... D-7.0401b(1)
(2) 이의 제기 ..... D-7.0401b(2)
c. 절차에 대한 이의 D-7.0401c
d. 고소 개정 D-7.0401d
e. 모두 진술 D-7.0401e
f. 증거의 규칙 D-7.0401f
g. 증 거 D-7.0401g
h. 최종 진술 D-7.0401h
판결 D-7.0402
a. 심 의 D-7.0402a
b. 판결 D-7.0402b
c. 서면 판결문 D-7.0402c
d. 즉시 접수 D-7.0402d
e. 공 개 D-7.0402e
5. 상소의 규정 D-7.0500
상소 시기 D-7.0501
상 소 D-7.0502
6. 절차의 기록 D-7.0600
절차의 기록 D-7.0601
a. 축어적 기록 D-7.0601a
b. 증거물 D-7.0601b
c. 회의록 D-7.0601c
d. 기 록 D-7.0601d
e. 보 존 D-7.0601e
f. 등 본 D-7.0601f
기록 가물첨 D-7.0602
7. 정서기의 임무 D-7.0700
판결문의 보고 D-7.0701
제8장 교정사건의 상소 D-8.0000
1. 상소의 착수 D-8.0100
정 의 D-8.0101
상소의 착수 D-8.0102
상소의 효력 D-8.0103
상소의 철회 D-8.0104
상소의 근거 D-8.0105
2. 상소 과정의 제출 D-8.0200

서면 상소장 접수기간 D-8.0201
서면 상소장 내용 D-8.0202
상소장을 임원들에게 전달 D-8.0203
3. 청문 이전 절차 D-8.0300
서류 검사 D-8.0301
예비질문 결정 D-8.0302
상소 기록 D-8.0303
a. 기록의 목록 D-8.0303a
b. 추가 기록 D-8.0303b
c. 상소 기록의 접수 D-8.0303c
d. 기록의 교정 D-8.0303d
e. 접수 일자의 통보 D-8.0303e
f. 사본 제공 비용 D-8.0303f
g. 연장 D-8.0303g
상소인의 적요서 제출 D-8.0304
a. 상대편에게 사본 전달 D-8.0304a
b. 연장 D-8.0304b
c. 적요서 접수 실패 D-8.0304c
피소인의 적요서 접수 D-8.0305
a. 상대편에게 사본 전달 D-8.0305a
b. 연장 D-8.0305b
c. 적요서 접수 실패 D-8.0305c
기록 및 적요서 전달 D-8.0306
사전 청문회의 D-8.0307
4. 상소의 청문 D-8.0400
청문 통보 D-8.0401
출두 실패 D-8.0402
청문 D-8.0403
a. 새 증거 D-8.0403a
b. 청문 D-8.0403b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정 D-8.0404
a. 만일 오류가 발견 안되면 D-8.0404a
b. 만일 오류가 발견되면 D-8.0404b
c. 서면 결정서 D-8.0404c
d. 각 오류의 판결 D-8.0404d
e. 즉시 접수 D-8.0404e
f. 공개 D-8.0404f
제9장 결백 입증의 요청 D-9.0000
결백 입증의 요청 D-9.0101
a. 공의회에 의한 검토 D-9.0101a
b. 조사위원회 D-9.0101b
사건의 종결 D-9.0102

제10장 징계사건.....D-10.0000
1. 징계사건에 대한 예비절차.....D-10.0100
예비절차의 착수.....D-10.0101
범법의 진술.....D-10.0102
a. 고소.....D-10.0102a
b. 공의회.....D-10.0102b
c. 자책.....D-10.0102c
조사위원회에 회부.....D-10.0103
타 공의회의 고소.....D-10.0104
이명 불가.....D-10.0105
행정휴가.....D-10.0106
2. 조사.....D-10.0200
조사 위원회.....D-10.0201
a. 회원권.....D-10.0201a
b. 규칙대로 임명.....D-10.0201b
c. 비용.....D-10.0201c
조사위원회 책임.....D-10.0202a-l
인권.....D-10.0203
a. 고소인의 권리.....D-10.0203a
b. 피해자의 권리.....D-10.0203b
c. 가해 용의자의 권리.....D-10.0203c
전권위원회에 절차 검토 청원.....D-10.0204
3. 결정의 전달.....D-10.0300
조사위원회의 분쟁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D-10.0301
만일 고발이 제기되면.....D-10.0302
고발이 접수되지 않는 경우의 검토 청원.....D-10.0303
기록의 처리.....D-10.0304
4. 고발.....D-10.0400
시간제한.....D-10.0401
사건의 기소.....D-10.0402
a. 당사자들.....D-10.0402a
b. 두 당사자들만.....D-10.0402b
고발의 형식.....D-10.0403
a. 여러 가지를 함께.....D-10.0403a
b. 고발의 명세서.....D-10.0403b
c. 함께 심리.....D-10.0403c
고소의 접수.....D-10.0404
a. 당 회.....D-10.0404a
b. 노 회.....D-10.0404b
사전 심리 회의.....D-10.0405
a. 시간과 장소.....D-10.0405a
b. 참석자들.....D-10.0405b
c. 아무 일도 못함.....D-10.0405c

증인 공개 D-10.0406
제11장 징계사건의 재판 D-11.0000
1. 재판의 집행 D-11.0100
재판 — 징계사건 D-11.0101
정식으로 집행 D-11.0102
2. 소환과 증언 D-11.0200
당사자와 증인 소환 D-11.0201
a. 소환받는 회원 D-11.0201a
b. 요청받는 사람들 D-11.0201b
c. 타 공의회의 증인 D-11.0201c
d. 비용 D-11.0201d
소환장 전달 D-11.0202
a. 이차 소환 D-11.0202a
b. 피소인이 출두 아니함 D-11.0202b
증인의 증언 거부 D-11.0203
녹취 증언 D-11.0204
3. 재판 절차 D-11.0300
변호인 D-11.0301
변호인을 얻지 못함 D-11.0302
자료의 회람 D-11.0303
재판집행 통괄 D-11.0304
a. 절차에 대한 질문 D-11.0304a
b. 결석 D-11.0304b
정족수 미달 D-11.0305
비공개 회의 절차 D-11.0306
4. 재판 D-11.0400
무죄의 추정 D-11.0401
징계사건의 절차 D-11.0402
a. 위원장에 의한 선포 D-11.0402a
b. 전권위원의 자격 D-11.0402b
(1) 부적격성 ..... D-11.0402b(1)
(2) 항의 ..... D-11.0402b(2)
c. 예비적 반론 D-11.0402c
d. 변론 D-11.0402d
e. 개정진술 D-11.0402e
f. 증거의 규칙 D-11.0402f
g. 기소 D-11.0402g
h. 반론 D-11.0402h
i. 반박 D-11.0402i
j. 최종 진술 D-11.0402j
판결 D-11.0403
a.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D-11.0403a
b. 2/3 투표에 의한 유죄판결 D-11.0403b

c. 서면 결정서 D-11.0403c
d. 공개회의에서 공포.....D-11.0403d
e. 책벌의 정도 D-11.0403e
f. 즉시 접수 D-11.0403f
g. 당사자들에게 통보.....D-11.0403g
h. 공개 D-11.0403h
5. 상소의 규정 D-11.0500
상소의 시일.....D-11.0501
상소.....D-11.0502
6. 절차의 기록 D-11.0600
절차의 기록.....D-11.0601
a. 축어적 기록 D-11.0601a
b. 증거물.....D-11.0601b
c. 회의록.....D-11.0601c
d. 기록 D-11.0601d
e. 기록의 보존 D-11.0601e
f. 녹취록 D-11.0601f
기록에 추가.....D-11.0602
7. 정서기의 임무.....D-11.0700
결정 보고.....D-11.0701
8. 집행.....D-11.0800
공의회에 의한 집행 D-11.0801
제12장 징계사건의 책벌과 복권.....D-12.0000
1. 책 벌.....D-12.0100
교회 책벌의 등급.....D-12.0101
견책.....D-12.0102
갱생의 견책 D-12.0103
a. 기도 D-12.0103a
b. 복권 상담의 목적 전달.....D-12.0103b
c. 평가와 복권 상담의 진술.....D-12.0103c
d. 다른 사람에 대한 성적 학대와 관련된 자발적 회개행위.....D-12.0103d
일시 제척.....D-12.0104
a. 기도 D-12.0104a
b. 감독 갱생.....D-12.0104b
c. 다른 사람에 대한 성적학대와 관련된 자발적 회개행위.....D-12.0104c
d. 직제사역 수행의 자제.....D-12.0104d
e. 투표권이나 직책 못 가짐 D-12.0104e
f. 목사의 일시 제적의 결과.....D-12.0104f
g. 일시 제척의 통지 D-12.0104g
h. 일시 제척 책벌의 종료.....D-12.0104h
i. 조기 복권.....D-12.0104i
직제사역이나 회원권 제적 D-12.0105
a. 직제사역 제적.....D-12.0105a

b. 회원권 제적 D-12.0105b
c. 기도 D-12.0105c
d. 직제사역 제적의 결과 D-12.0105d
e. 제적 통지 D-12.0105e
2. 복권 D-12.0200
공의회의 결정 D-12.0201
제적 후 직제사역 복권 양식 D-12.0202
a. 양식 D-12.0202a
b. 명부에 복권 D-12.0202b
제적 후 회원권 복권 양식 D-12.0203
a. 양식 D-12.0203a
b. 명부에 복권 D-12.0203b
c. 직제사역 복권 D-12.0203c
제13장 징계사건의 상소 D-13.0000
1. 상소의 착수 D-13.0100
정의 D-13.0101
상소의 착수 D-13.0102
항소 판결의 상소 D-13.0103
상소의 효력 D-13.0104
상소의 철회 D-13.0105
상소의 근거 D-13.0106
2. 상소 과정의 제출물 D-13.0200
서면 상소장의 접수 기간 D-13.0201
서면 상소장의 내용 D-13.0202
임원들에게 상소장 전달 D-13.0203
3. 청문 이전 절차 D-13.0300
서류 검토 D-13.0301
예비 질문 결정 D-13.0302
상소 기록 D-13.0303
a. 기록의 목록 D-13.0303a
b. 추가 기록 D-13.0303b
c. 상소기록의 접수 D-13.0303c
d. 기록의 교정 D-13.0303d
e. 접수일자 통지 D-13.0303e
f. 사본제공 비용 D-13.0303f
g. 연장 D-13.0303g
상소인의 적요서 접수 D-13.0304
a. 상대방에게 사본 전달 D-13.0304a
b. 연장 D-13.0304b
c. 적요서 접수 실패 D-13.0304c
피소인의 적요서 접수 D-13.0305
a. 상대방에게 사본 전달 D-13.0305a
b. 연장 D-13.0305b

c. 적요서 접수 실패 D-13.0305c
기록과 적요서 전달 D-13.0306
사전 청문회의 D-13.0307
4. 상소의 청문 D-13.0400
청문통보 D-13.0401
출두실패 D-13.0402
청문 D-13.0403
a. 새 증거 D-13.0403a
b. 청문 D-13.0403b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정 D-13.0404
a. 만일 오류가 발견되지 않으면 D-13.0404a
b. 만일 오류가 발견되면 D-13.0404b
c. 서면 결정서 D-13.0404c
d. 각 오류의 판결 D-13.0404d
e. 즉시 접수 D-13.0404e
f. 공개 D-13.0404f
징계사건에 있어 상소에 의한 번복 효력 D-13.0405
제14장 교정사건이나 징계사건의 증거 D-14.0000
1. 증거 D-14.0100
증거의 정의 D-14.0101
2. 증인 D-14.0200
이의 제기 D-14.0201
남편이나 아내 D-14.0202
상담자 D-14.0203
당사자들의 변호인 D-14.0204
증인의 신빙성 D-14.0205
3. 증언 D-14.0300
분리심문 D-14.0301
증인의 심문 D-14.0302
a. 선서 D-14.0302a
b. 확약 D-14.0302b
증언의 기록 D-14.0303
증언녹취에 의한 증언 D-14.0304
a. 타 공의회에서 온 사람 D-14.0304a
b. 증언의 취득 D-14.0304b
c. 증거 제공 D-14.0304c
d. 허용성의 질문 D-14.0304d
증인으로서 회원 D-14.0305
4. 증거로서의 기록 D-14.0400
기록의 허용성 D-14.0401
타 공의회에서 취득된 증언의 허용성 D-14.0402
5. 새 증거 D-14.0500
새 재판의 청원 D-14.0501

상소의 고려.....D-14.0502

부록

A: 사법절차 양식
B: 합의 조항 (남북장로교의 통합시의)
C: 합의 약정서 (교단 간의 완전교류를 위한)
D: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가시적 표시
E: 해외한인장로회와 미국장로교 간의 언약관계
F: 한국어 어휘

색인

성서적 언급의 색인
색인

장로교 정치제도의 기초

The Foundations of Presbyterian Polity

장로교 정치제도의 기초

제 1 장
교회의 선교[1]

F-1.01 하나님의 선교

복음의 기쁜 소식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만물과 만민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변화시키신다는 것이다. 이 살아계시는 한 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업압에서 해방하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언약하셨다고 성경은 말한다. 이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사셨고, 세상을 위해 죽으시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며,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며, 만물 위에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음을 알려준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란 교회의 삶과 사역의 형태와 본질을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에게 세례와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하며,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직에 초청함으로써 피조물과 인간의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 인간에게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한 분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언약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높은 삶의 목적은 없다.

F-1.02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F-1.0201 그리스도의 권위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고 모든 통치와 권세 위에 두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뿐만 아니라 또한 오는 세대에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a]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두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몸 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b] 교회의 삶과 선교는 지속되는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F-1.0202 그리스도는 교회를 부르시고 온전케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상 가운데 불러 세우사 교회의 선교, 교회의 성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교회의 봉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말씀 안에서 교회와 함께 계신다. 그리스도만이 홀로 그의 뜻대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부르시고, 가르치시며, 사용하신다.

F-1.0203 그리스도는 교회에 생명을 주신다

그리스도는 교회에 믿음과 생명, 일치와 선교, 직제와 계율을 주신다. 성경은 마땅히 순종해야 할,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예배와 하나님 섬김, 그리고

[1] 이 문서와 정치형태 전반에 걸쳐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쓴 "Church"(교회)는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받은 보편적 교회를 의미한다. 이 단어가 제목 (예: 미국장로교, Presbyterian Church USA)의 일부로 쓰인 경우는 예외이다.

교회의 치리에 있어서 모든 문제는 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이성적인 건전한 판단과 말씀에 따라서 다스려져야 한다.

F-1.0204 그리스도는 교회의 희망이시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고백 안에서,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희망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의 권위에 속해 있으며, 생동적이고 환희에 찬 하나님 은혜의 실재 가운데 자유하는 삶을 누린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F-1.0205 그리스도는 교회의 기초이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기쁘게 거하시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하신다 (골 1:19–20).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모든 피조물과 화해하는 기쁜 소식을 증거하도록 보냄을 받았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와 매력 [appeal], 그 거룩함과 일치를 받아들인다.

F-1.03 교회의 소명

F-1.0301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c].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몸이 되기에 필요한 모든 은사를 교회에 주신다. 교회는 세상에서 공동체로서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은사를 나타내도록 힘쓴다(고전 12:27–28):

교회는 그 목숨을 잃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 한 분께만 의탁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는 확실하고 분명한 지식 안에서 즐거워하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 새로운 창조는 인간의 생명과 만물의 새로운 시작이다. 교회는 그 약속된 새로운 창조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간다.

교회는, 죄가 용서되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원수 된 분열의 벽이 허물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말씀과 사역을 통하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의 기쁜 소식을 교회를 넘어 세상에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F-1.0302 교회의 표지[2]

우리는 거룩한 공회인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하나의 교회"인 것을 확신한다.

a. *교회의 일치*

일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한 구주이신 것처럼, 교회도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이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기를 추구하며, 결코 저 스스로만을 위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유익을 누리는데 만족하지 않는다. 교회는 하나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요 소망도 하나이며,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2] 니케아 신조, *신앙고백서* 1.3 참조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엡 4:5-6).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하나이므로,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해 힘쓴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관계를 맺도록 부르시는 모든 사람과 연합하는 것이다. 이처럼 서로 간에 하나로 연합한다는 것은 세상과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하나님께서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 각 기독교인에게 허락해 주신 각양 은사를 나누는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다. 여러 다른 교단으로의 분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를 흐리게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를 파괴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장로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교회와 역사적 연속성을 확인하면서, 그 모호성을 줄이고,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다른 교파의 모든 교회와의 교제를 기꺼이 추구하며 깊게 하는데 힘쓸 것이다[d].

b. *교회의 거룩함*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의 죄를 도말하여 주신다. 교회의 거룩함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도록 교회를 성별하신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이지, 그 교리의 순수함이나 그 행위의 의로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거룩하므로, 교회와 교인들 및 직제사역에 종사하는 이들은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힘쓴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각 신앙인과 각 공동체를 형성함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과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지한다 (W-1.0106). 우리는 공동의 삶과 개인의 삶 속에서 실재하는 죄의 집요성을 고백한다.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다시 부르심을 받았으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되었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약속된 순결과 의와 진리를 위하여 힘써야 함을 고백한다.

c. *교회의 보편성*

보편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소외를 극복하시고, 분열을 치유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보편적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교회는 그 분께서 모든 시대, 장소, 인종, 국가, 나이, 조건, 계층의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들을 품으신다는 것을 어디서나 증거하기를 힘쓴다. 교회의 보편성은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면서, 더 깊은 믿음과 더 큰 소망과 더 완전한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권고한다.

d. *교회의 사도성*

사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은 만물과 만민에게 구속의 복음을 나누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상에 보내심을 의미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적인 교회는 이 복음을 신실하게 전파하기를 힘쓴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람들, 즉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교회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증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는다. 교회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증언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상에 보냄을 받았으며 지금도 보냄을 받고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과,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얽매인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깨어진 관계를 화해시키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과 지금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과 행위를 통하여 증거한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새 창조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에 임하게 하도록 보냄을 받는 것이다. 미국장로교는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인하며, 모든 시대에 걸쳐 계속되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

교회는 교회가 받은 복음에 충실하기 위해 힘쓰며, 또한 신앙고백의 가르침을 신실하게 수행하기를 힘쓴다. 교회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며 그의 제자로서 새 삶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기를 힘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전도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

>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
>
> 깊이 있는 예배와 기도, 친교와 봉사의 삶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
>
> 병든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들의 필요를 돌보고; 사람들을 죄와 고통과 압제로부터 해방하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평화로운 공의와 사랑과 평화의 통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일.

F-1.0303 개혁 교회의 특징[3]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 참된 교회가 있다. 초기 종교 개혁의 시대 이래 개혁 교인들은 다음과 같은 교회의 참된 표지를 드러내어 왔다:

> 하나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고 들려지며,
>
>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례되고,
>
> 교회 권징이 바르게 행사되었다.

현시대에서 우리는, 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 선교에 신실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일을 함으로써 확인한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약속에 응답하고,
그러한 새 창조에 참여하도록 모든 사람을 초대한다;

성례전을 집례하고 받는다,
그리스도에게 접목이 된 이들을 환영하고,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며,
앞으로 다가올 천국의 잔치를 고대하면서,
오늘 소외되고 굶주린 자들과의 연대를 다짐한다;

그리스도 제자들의 계약 공동체를 양육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한다.

---

[3] 스콧 신앙고백서 제 18 장 참조 (*신앙고백서*, 3.18)

F-1.0304 교회의 큰 목적

교회의 큰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인류 구원을 위한 복음의 선포;
하나님 자녀들의 보호 안식처, 양육과 영적 교제;
거룩한 예배의 유지;
진리의 보존;
사회정의의 촉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4]

F-1.04 성령의 인도하심을 향한 개방성

F-1.0401 연속성과 변화

미국장로교 헌법에 명시된 장로교 정치형태는 성경에 근거하며, 참된 교회의 표지들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다. 그것은 모든 점에서 교회의 주님께 종속되어 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배하는 공동체와 개개인의 신자들을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안으로 이끄신다. 교회는 개혁과 새로운 방향을 추구할 때, 우리를 앞서 가시며 당신을 따르라고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지 분별하기를" (롬 12:2) 구한다.

F-1.0402 에큐메니시티

미국장로교 헌법의 장로교 정치제도는 성경에 비추어 세워진 것이지만 [e], 이것이 기독교 교회의 존재에 본질적이라거나, 모든 기독교인에게 요구되는 것이라고 간주하지 않는다.

F-1.0403 다양성 속의 일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 3: 27-29).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의 일치는 교회 교인들의 풍부한 다양성에 반영되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인종, 종족, 나이, 성별, 장애, 지리적 위치 혹은 신학적 입장의 구별없이 세례를 통하여 사람들을 하나로 연합시키신다. 그러므로 교회의 삶 속에서 어떤 누구를 상대로 차별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 미국장로교는 장로교 회원권을 가진 모든 사람과 모든 그룹에게 예배, 정치,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교회의 모든 삶의 완전한 참여와 대표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누구도 이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어떤 이유로 참여나 대표의 권리를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

---

[4] 교회의 큰 목적에 대한 이 선언은 북미연합장로교회에서 나온 것을 약간 수정한 것이다. 동 교단은 1958 년에 미국장로교회와 통합하였고 이 선언은 통합된 교단의 명칭인 미국연합장로교회 교단 헌법의 일부가 되었다. 지금은 고전이 된 이 선언은 1904 년과 1910 년 사이에 여러 번의 결의를 거쳐서 동 교단 헌법의 개정을 앞두고, 1910 년에 북미연합장로교회에 의해 채택된 것이다.

F-1.0404 개방성

모든 피조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새로운 개방성을 추구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작은 자를 돌보시고, 인간의 죄로 인한 저주를 마음 아파하시며, 새로워진 인간의 모습을 일으키시고, 모든 피조물에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인들은 모든 인류와 더불어 피조물됨의 실존, 죄성, 깨어진 관계, 고통을 나누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는 미래를 함께 나눈다.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에는 물론이고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에도 해당한다. 미국장로교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추구한다.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활동과 그리스도에 대한 보다 철저한 순종 및 예배와 일상에서 더욱 기쁨에 찬 축제를 드리는 일에 대한 새로운 개방성;

새로운 인간성의 가시적인 표징으로서, 모든 나이, 인종, 민족,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여자와 남자들이 신앙과 실제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의 회원이 됨에 대한 개방성;

장로교의 제도적 형태가 인간의 유익을 위해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확연히 드러나도록 그 형태가 주는 가능성과 위험을 또한 볼 수 있는 새로운 개방성;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치하는 ecumenical 교회로 끊임없이 개혁하심에 대한 새로운 개방성.

제2장
교회와 신앙고백

F-2.01 신앙고백서들의 목적

미국장로교는 *신앙고백서* 가운데 있는 신조와 고백을 통해서 그 신앙을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한다. 미국장로교는 이러한 고백서들을 통하여 교인과 세상을 향해, 이 교회는 누구이며, 무엇을 믿으며, 무슨 일을 하려고 결단하는가를 선언한다. 이 고백서들은 이 교회가 어떤 확신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인지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준다. 이 고백서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데 교회의 지침서이고; 개혁 기독교 전통의 본질을 요약해 주며; 교회가 건전한 교리를 유지하도록 지도해 주고; 복음 선포의 사역을 위하여 교회를 준비시켜 준다. 이 고백서들은 개인적인 헌신과 신자들의 공동체의 삶과 증거를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이 교단의 신조와 신앙고백은 하나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특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겨났다. 그 고백들은, 그 고백서를 쓴 저자들이 진리가 위태로워졌음을 깨달았던 그러한 역사적 시점에서 복음의 진리를 공언한 것이다. 그것들은 살아 있는 전통 속에서 기도와 사색과 체험의 결과로 나온 고백들이다. 그 고백들은 그들이 쓰였던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표현하면서 동시에 복음의 보편적인 진리를 호소하고 있다. 그것들은 공통적인 신앙 전통을 확인하면서도, 때로는 신앙고백들 서로 간에 긴장이 있기도 하다.

F-2.02 부차적인 표준으로서 신앙고백

이 신앙고백적 진술들은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종속되는 교회의 부차적인 표준이다.[a] 고백적 표준이 성경에 부차적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신앙의 표준이다. 그것들이 소홀히 작성되었거나 동의된 것이 아니므로 무시되거나 경솔히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교회는 신앙고백서에 표현된 신앙을 심각하게 거부하는 안수받은 자를 가르치고, 상담하고, 징계까지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교회의 신앙고백서를 변경하는 절차는 의도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는데, 즉 교회 전체의 높은 의견의 일치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가운데, 그 치리와 교리의 표준을 개혁하는 데 개방적이다. 교회는 "*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secundum verbum Dei*"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개혁했고 또 항상 개혁하는 교회*"임을 확인한다.

F-2.03 보편적 교회의 신앙 진술로서의 고백

미국장로교는 그 신앙고백에서 보편적 교회의 신앙을 증언한다. 그 신앙고백은 정경에 포함된 성경과 에큐메니컬 신조들,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의 성육신의 신비를 기술한 니케아 신조와 사도신경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전체 교회의[b] 신앙을 나타내고 있다.

F-2.04 개신교 신앙의 진술로서의 고백

미국장로교는 그 신앙고백들에서 개신교 종교개혁 선언들을 지지한다. 이 선언들의 초점은 성경에 계시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개신교의 슬로건 – 오직

은총,[c] 오직 믿음,[d] 오직 성경[e] - 은 신앙생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고무하는 기본적인 이해의 원리를 구체화한 것이다.

F-2.05 개혁 전통의 신앙 진술로서의 고백

미국장로교는 그 신앙고백에서 개혁 전통의 신앙을 표현한다. 이 전통의 중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창조하시고,[i] 보존하시고,[j] 통치하시고,[k] 주권적인 공의와 사랑으로[m] 자유로이 이 세상을 속량하시는[l] 하나님의 위대하심,[f] 거룩하심,[g] 섭리하심[h]에 대한 확증이고 선언이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이 핵심적 선언과 관련하여 또 다른 개혁 전통의 큰 주제들이 있다:

구원[o] 과 섬김을 위한 하나님 백성의 선택[n];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교회 질서를 향한 훈련된 관심으로 표현되는 계약의 삶;

겉치레를 피하고, 하나님 창조의 선물을 유효 적절히 사용하는 충실한 청지기직;

인간에게는 우상숭배[p] 와 독재[q]의 성향이 늘 있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정의를 추구함으로써 사회 변혁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요청됨을 인정하는 일.

제 3 장
규례와 정치의 원리

F-3.01 교회 규례의 역사적 원리[1]

본 *규례서*를 제시하면서, 미국장로교는 우리의 공통 유산의 일부가 되어왔고, 장로교 정신과 교회 정치제도의 기본이 되어 온 교회 규례의 역사적 제 원리를 재확인한다. 즉:

F-3.0101 하나님이 양심의 주인이시다

a. "하나님만이 홀로 양심의 주인이시며, 인간의 교리와 계율[2] 이 신앙이나 예배의 문제에서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거나 벗어난 것이면 양심은 그 인간 교리와 계명으로부터 자유한다."[3]

b.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종교문제에서 개인적인 판단의 권리를 보편적이며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우리는 어떤 종교적 헌법이 다른 모든 사람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필요하고, 동시에 누구에게나 동등하며 공통되는 것 이상으로 공권력의 도움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F-3.0102 집단적 판단

위에 적은 보편적 권리의 원칙에 전적으로 입각하여, 모든 기독교 교회나 개체교회들의 연합체는 각자의 교제 안으로 받아들이는 목사와 회원의 자격을 설정할 권리는 물론이고, 그리스도께서 임명한 교회 내부의 치리에 관한 전체 제도를 설정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교회조직이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서 그 자격 규정을 너무 해이하게 혹은 너무 협소하게 만드는 잘못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럴 때에도 다른 사람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 보다는, 교회가 단지 자신들의 권리를 잘못 사용했다고 보아야 한다.

F-3.0103 제직

우리의 복되신 구주께서는 그의 몸인 가시적 교회를 온전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성례전을 집행할 뿐 아니라, 진리와 의무를 보존하기 위하여 권징을 실시하도록 제직을 임명하셨다.[4] 이것은 모든 제직과 전체 교회에 주어진 의무로서,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규율을 준수하면서 잘못을 범하는 자들과 불명예스러운 자들은 견책하거나 축출시킨다.

---

[1] 이 조항은, 첫 구절만 제외하고 뉴욕과 필라델피아 대회가 처음으로 1788년에 만들어 낸 정치형태 서문에서 따온 것이다. 그 해에 그 대회는 네 대회로 분리하여 미국장로교 총회를 구성했고, 그다음 해에 첫 총회로 모였다. 그 네 대회는 뉴욕과 뉴저지, 필라델피아, 버지니아, 캐롤라이나 대회로 구성되었다. 이 네 대회가 총회에 총대를 보내서 1789년 5월 21일에 필라델피아에서 첫 총회로 모였다. 1788년에 만들어진 총괄적 계획이 미국남장로교회와 미국연합장로교회의 계속적인 정치원리가 되어 왔다.

[2] 여기 인용한 '인간들' 과 '인간의' 란 말은 18세기에서 따온 것인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3] 이 인용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는 것인데, 신앙고백서 6.109에 있다.

[4] "제직"과 "직분"의 용어는 정치원리의 역사적 용어의 일부로서 여기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이 규례서 정치형태 전반에 걸쳐서 "직제사역자"와 "직제사역"의 용어들이 "제직"과 "직분" 대신에 사용되었다.

F-3.0104 진리와 선함

진리는 선에 이르기 위한 것이다.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라고 하신 구주의 말씀에 따라 성결을 증진하는 것이 진리의 큰 시금석이며 그 의도다. 진리와 거짓을 같은 수준에 놓고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사람의 의견은 어떤 중요성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해롭거나 더 부조리한 것은 없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는 신앙과 실천, 진리와 의무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고 확신한다. 그렇지 않다면 진리를 찾거나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F-3.0105 상호 관용

이상의 원칙에 입각한 확신에서 교사로 인정되는 사람들은 신앙이 건전해야 한다는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또한, 좋은 품성과 생활 원칙을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진리와 형식에 대한 이해에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피차에 상호 관용하는 일이 기독교인 개인과 단체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F-3.0106 사람들에 의한 선출

교회 제직의 품성, 자격, 권위만이 아니라 그 직분 부여와 임명의 적절한 방법까지 성경에 명시되었을지라도, 어느 특정 조직의 권한을 수행할 제직을 선출하는 권리는 그 단체에 속한다.

F-3.0107 교회의 권한

모든 교회 권한은 전체 교회가 총체적으로 하든지 혹은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가 하든지 간에, 오직 목회적 직무 수행을 위함이며 모든 이들이 알 수있게 하기 위함일 뿐이다 [a]; 즉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고; 교회의 어떠한 치리회[5]도 스스로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양심을 억압하는 법을 제정하려 해서는 안 되며; 치리회의 모든 결정은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바탕으로 내려져야 한다. 모든 대회와 협의회가 인간성 속에 내재하는 약점 때문에 잘못을 범할 수 있지만, 이미 제정되었고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법을 판단하는 권리보다는 법을 만들겠다는 억지 주장에 더 큰 위험성이 있다. 그럴지라도, 이 권리는 현 상태에서 필요하기에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인간에게 맡긴 것이다.

F-3.0108 교회 권징의 가치

끝으로, 위에서 언급된 성서적이고도 합리적인 원칙들이 확고하게 준수된다면 교회 권징의 구속력과 엄격성은 교회의 영광과 행복에 이바지할 것이다. 교회의 권징은 오로지 도덕적이거나 영적인 데 그 목적이 있으며,[b] 공권력 효력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강제성도 있을 수 없다. 권징은 다만 그 자체의 공의로움으로부터 공정한 대중의 찬동과 보편적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지지와 축복을 얻는다.

[5] 장로교 원칙의 역사적 용어의 일부로서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치리회"는 이 규례서의 정치형태 전반에 걸쳐 "공의회"라는 용어로 바뀌었다.

F-3.02 장로교 정치의 원리[6]

미국장로교는 보편적 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맥락 속에서 장로교 정치의 기본 원칙에 대한 특별한 결의를 재확인한다:

F-3.0201 하나의 교회

미국장로교의 개체교회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미국장로교라고 부르는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

F-3.0202 장로에 의한 치리

이 교회는 장로들에 의해서, 즉 사역장로들과 교역장로들(또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이라 불림)에 의해서 치리된다. 사역장로는 그들이 회중 위에 "군림"하기(마 20:25)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신실한지를 분별하고신실한 삶으로 인도하며 교회의 신앙과 삶을 강화하고 양육하기 위하여 회중에 의해서 선택받기 때문에 그렇게 불린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은 그들의 모든 일 가운데에서 언행으로 믿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역과 증거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헌신해야 한다.

F-3.0203 공의회로 모임

이들 장로는 여러 단계의 공의회에서 함께 모인다. 이들 공의회를 당회, 노회, 대회, 그리고 총회라고 부른다. 교회의 모든 공의회들은 교회의 본질상 하나로 연합되어 있고, 이 헌법에 제정된 것처럼 서로 간에 책임과 권리와 권한을 공유한다. 공의회들은 별개이지만, 서로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어느 한 공의회의 결정은 전체 교회의 결정이 된다. 교회의 상위 공의회는 하위 공의회를 다스린다.

F-3.0204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고 대표함

장로들은 단순히 교인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그리스도의 뜻을 함께 구하고 대표해야 한다.

F-3.0205 과반수에 의한 의사 결정

공의회의 의사결정은 토의와 분별의 기회를 가진 후에 투표로 하며, 과반수로 결정한다.

F- 3.0206검토와 감독

상위 공의회는 하위 공의회를 검열하고 통제할 권리를 가지며, 조회나 불평이나 탄원이 들어왔을 때 이들 논란에 대해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

[6] 이 조항은 1797 년에 미국연합장로교회의 총회가 채택한 교회 정치의 역사적 원리와 장로교 정치의 원리에서 유래된 것이며 이를 다시 언급한 것이다. 여기 인용구 중 "급진적"이란 말은 "근본적이고 기초적"이라는 뜻이고 "상소"라는 용어는 사법절차 상에 쓰는 뜻이 아니라 일반적인 뜻으로 탄원 혹은 간청을 의미한다. "장로교 정치제도와 권징의 근본적[c] 원리는: '신자들이 모인 여러 다른 개체교회들이 총합적으로 보편적 교회라고 부르는 하나의 그리스도 교회를 만든다. 교회의 더 큰 부분 (상회)이나 그 대표가 작은 부분 (하회)를 다스리고 또 하회에서 생기는 논쟁을 결정한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전체의 대표가 전체를 구성하는 각 부분이나 연합된 부분들을 다스리고 결정한다: 즉, 다수가 다스리고; 따라서 상소는 하위 치리회(공의회)에서 상위 치리회(공의회)로 이행되는바, 최종적으로는 전체 교회의 집합된 지혜와 통일된 발언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원리와 절차에 대해서, 사도들의 본보기와 초대 교회가 행했던 관례를 권위로 삼는다.'"

F-3.0207 공의회에 의한 안수

장로(사역장로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집사는 오로지 공의회의 권위에 의해서만 안수를 받는다.

F-3.0208 공유된 권한, 공동 행사

교회 관할권은 공유된 권한이며, 공의회에 모인 장로들에 의해 공동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F-3.0209 공의회의 일반적인 권한

공의회는 교회 헌법이 정한 의무와 권한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권위를 가진다. 각 공의회의 관할권은 헌법의 명시적인 조항에 의해 제한받는다. 다만, 언급되지 않은 권한은 노회에 유보된다.

F-3.03 기초 선언문

이 단원 "장로교 정치제도의 기초"에 포함된 선언문들은 미국장로교 정치체제의 기틀을 제공하는 교회적 및 역사적인 결단들을 기술하고 있다. 이 헌법의 어느 조항이든지 전체 헌법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 *규례서*의 어느 조항도 그 자체로서 어떤 다른 조항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 조항들 사이에 긴장과 모호성이 있을 때, 모든 조항에 효력을 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공의회와 사법전권위원회의 임무이다.

F-3.04 미국장로교 헌법의 정의

미국장로교 헌법은 *신앙고백서*와 *규례서*로 구성된다.

*신앙고백서*는 다음의 고백들을 포함한다:

니케아 신경
사도신경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헬베틱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바르멘 신학선언
1967년 신앙고백
벨하 신앙고백
미국장로교 간추린 신앙고백

*규례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장로교 정치제도의 기초
정치형태
예배모범
권징조례

정치형태

The Form of Government

정치형태

제 1 장
개체교회와 교인

G-1.01 개체교회

G-1.0101 개체교회의 선교적 사명

개체교회는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개체교회가 되는데 필요한 모든 복음의 은사를 주신다. 개체교회는 교회의 기본 형태이지만, 그 자체로서는 교회가 되기에 충분한 형태가 아니다. 따라서 여러 개체교회가 서로 결속되고, 책임과 의무의 관계에서 연합되고, 전체 유익을 위해 각자의 힘을 보태는, 그러한 개체교회들을 집단적으로 교회라고 부른다.

개체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성례전을 나누고[a], 하나님과 그리고 상호 간에 계약의 삶을 살면서, 복음 선포의 사역들을 수행해 나간다. 교회의 삶 속에서, 각 신자는 세상 안에서 그리고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사역을 하도록 준비된다. 개체교회는 사람들과 지역사회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나누고, 예배를 위하여 모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하며, 사회 정의와 의를 외치며, 진리와 세상 속으로 도래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기 위하여 나아간다.

G-1.0102 개체교회의 교제

미국장로교 정치제도는 남녀 신자들과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 간에 계약관계로 연합되는 교제를 전제로 한다. 이 조직의 기틀은 교제에 바탕을 두며, 신뢰와 사랑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G-1.0103 미국장로교 헌법에 따라 다스려짐

미국장로교 정치형태에서 사용되는 “개체교회”는 이 헌법에 명시된 대로, 노회에 의해 설립되고 인정을 받은 공식적으로 조직된 공동체이다. 미국장로교의 각 개체교회는 이 헌법의 치리를 받는다. 개체교회의 회원들은 당회의 지도, 그리고 상위 공의회(노회, 대회, 총회[b,c])의 지도를 받는다. 당회는 개체교회 삶을 인도하고 치리하는 책임을 진다. 당회는 모든 사람의 섬김과 전체 교회의 발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책임을 이행해 가도록 개체교회를 이끌어 간다. 노회에 의해 수립된 다른 형태의 공동체적 증거 역시 이 헌법의 치리를 받으며, 노회의 권한에 종속된다.

G-1.02 개체교회의 조직

미국장로교 내의 개체교회는 노회의 권한에 의해서만 조직될 수 있으며 본 헌법의 조항에 따라 그 기능을 한다.

G-1.0201 조직 계약

한 개체교회를 조직할 때, 노회는 새 개체교회를 세우고자 연합하기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회원권 신청을 받는다. 이 사람들은 함께 다음과 같이 서약하여야 한다:

"아래 서명한 저희는 하나님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서 미국장로교 소속의 _____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조직하고 세우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 장소에서 미국장로교의 신앙과 선교와 규례의 원칙에 따라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상호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함께 일치하여 살고 함께 사역에 힘쓸 것을 약속하고 서약합니다.

"(서약자들 서명)"

그런 다음, 노회는 단독 재량으로, 그들이 노회 안에 조직된 개체교회라고 선언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사역장로(장로)의 선출과 원하는 경우 집사 선출의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노회는 새로 선출된 이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심사하고 안수하여 위임시켜야 한다. 노회는 목회 지도자를 확보하는 일, 교회의 섬김과 증거를 계획하는 일, 다른 개체교회들과의 사역을 조정하는 일, 미국장로교 헌법에 따르는 법인체 조직과 개체교회 내규에 관해 자문하는 일, 그리고 교단 전체의 삶 속에서 그 개체교회의 선교를 강화할 수 있는 기타 형태의 지원과 격려하는 일에 그 개체교회와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야 한다.

G-1.03 개체교회의 교인

G-1.0301 교인과 세례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신앙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 몸인 보편적 교회의 회원이 되도록 부르신다. 세례는 그러한 부름과 인간 생명의 요구와 교회의 회원으로 입교됨을 나타내는 가시적 표시이다. 어린이 세례는 그들이 신앙으로 응답할 수 있기 이전에도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있는 백성이라는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다. 주님이시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회원의 계약에 들어가는 자들이 받는 세례는 하나님 은총의 선물에 대해 충성을 다할 것을 응답하는 진리를 증거해 준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회에 그 선교적 사명뿐만 아니라,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제공한다.

G-1.0302 환영과 개방성

개체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총을 믿고, 성도의 교제와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환영해야 한다 (F-1.0403). 신앙고백과 관련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이유로나 교회 회원권을 거부당하는 사람이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된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교제가 모든 사람에게 확대되도록 교인들을 인도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며, 복음에 대해 비방을 가져오는 일이다.

G-1.0303 교인 가입

누구든지 다음의 방법으로 활동교인이 될 수 있다:

a. 공적인 신앙 고백: 회원의 의미 및 책임에 대해 당회의 신중한 심사를 받은 다음, 공적인 신앙고백을 함으로써;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을 경우, 신앙고백을 한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

b. 이명: 다른 기독교 교회의 교인일 때는 이명증서에 의해서;

c. 신앙의 재확인: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자기들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한 사람은 신앙을 재확인함으로써.

G-1.0304 교인들의 사역

a.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된 것은 기쁨이고 특권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선교에 참여한다는 결단이기도 하다. 신실한 교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증거하고, 그리스도 교회의 목회 활동에 책임 있게 참여한다는 약속을 한다. 그러한 참여에 다음이 포함된다:

언행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일,

개체교회의 공동생활과 예배에 참여하는 일,

기도와 상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서로 세워주는 일,

성경과 기독교 신앙과 삶에 관한 것들을 공부하는 일,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바쳐서 교회의 목회사역을 지원하는 일,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 새로운 삶의 질을 나타내는 일,

타인을 섬김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활동에 응답하는 일,

개인적, 가족적, 직업적, 정치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인 삶의 관계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일,

평화, 정의, 자유, 인간 성취를 위해 세상에서 사역하는 일,

하나님의 피조물을 돌보는 일,

교회의 치리하는 책임에 참여하는 일, 그리고

교인으로서 자신의 신실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며, 교회의 예배와 사역에 자신의 참여를 증진하고 보다 의미 있게 하는 방법을 깊이 생각하는 일 등이다.

G-1.04 교인의 분류

미국장로교의 개체교회 교인은 세례교인, 활동교인, 관련교인으로 구분한다.

G-1.0401 세례교인

세례교인은 세례의 성례를 받았으며(현 교회에서든 다른 교회에서든), 당회에 의해 세례교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신앙고백을 하지 않은 교인이다. 그러한 세례교인은 목회적 보살핌과 교회의 가르침을 받으며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

G-1.0402 활동교인

활동교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 교회의 교인이 된 후, 그 교회의 치리에[d] 자발적으로 순응하고, 또 교회의 활동과 예배에 참여하는 교인이다. 활동교인은 또한 교회 치리에 참여하고 직제사역에 선출될 수 있다 (G-2.0102 참조). 활동교인은 정기적으로, 기도로 깊은 성찰을 하면서, G-1.0304에 적혀 있는교인의 책임과 실천에 재결단을 해야 한다. 개체교회의 활동교인이 되고자 하는 자를 준비시키는 책임은 당회에 있다.

G-1.0403 관련교인

관련교인은 본 교단의 다른 교회의 교인이거나 혹은 다른 교단이나 기독교 조직에 속한 회원인데, 소속 교회가 있는 지역사회에서 임시로 이사 온 사람으로서 소속 교회의 공의회나 치리회로부터 무흠한 교인이라는 증명서를 받아 제출하고 당회에 의해 관련교인으로 입교한 사람이다. 관련교인은 개체교회의 삶에 활동교인과 같은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공동의회에서 투표권이 없고, 그 개체교회의 직제사역이나 다른 직분에 선출될 수 없다.

G-1.0404 기타 참석자들

미국장로교의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나 적극적인 교회 참여를 중지한 사람들도 환영하며, 그들도 교회의 생활과 예배에 참여하고 목회적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성만찬에 초대된다. 성만찬 상에 나오는 것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고, 믿음과 회개와 사랑으로 나아오는 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임을 기억해야 한다 (W-3.0409). 타 교파의 신앙고백을 하는 교인들은 W-3.0403 조항에 따라 어린이 세례를 요청할 수도 있다.

G-1.05 공동의회

G-1.0501 연례회의와 임시회의

개체교회는 연례 공동의회를 개최해야 하며, 또한 공동의회에서 논의하기에 합당한 어떤 목적이 있을 때,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임시회의에서 다루어지는 안건은 그 회의가 소집된 사안으로 국한되어야 한다.

교회의 연례회의나 임시회의에 참석한 모든 활동교인은 투표권을 가진다. 개체교회들은 의사일정 진행에 필요한 정족수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G-1.0502 공동의회 소집

공동의회는 당회나 노회에 의해 소집되어야 한다. 또는 교인 명부에 들어있는 활동교인 1/4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당회에 의해 소집되어야 한다. 모든 공동의회의 소집은 적절히 공고되어야 한다. 사전 공고에 관한 최소 요건 규칙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회의소집의 사전 공고를 예배 중에 적절하게 해야 한다.

G-1.0503 공동의회에 적절한 안건

공동의회에 다루어질 안건은 다음에 관련된 사안으로 국한되어야 한다:

a. 사역장로(장로)들, 집사들, 그리고 재단이사들을 선출하는 일;

b. 담임목사, 동사목사, 부목사를 청빙하는 일;

c. 기존의 목회관계를 변경하는 일 – 목사(들) 청빙 조건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또는 해소를 요청하거나, 해소에 동의하거나 동의하길 거절함으로써;

d. 부동산의 구매, 저당, 또는 매각하는 일;

e. 헌법에 허락된 바에 따라 면제 청원을 노회에 하는 일 (G-2.0404).

f. 연합선교 교회 (선교를 위한 교회 연합) 를 조직하기 위한 계획의 승인 혹은 연합선교 교회의 개정이나 해체 (G-5.05).

민사법에 따라 허용되는 한, 교회의 업무와 법인적 업무 둘 다 같은 공동의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

G-1.0504 의장

위임받은 담임목사가 보통 그 교회의 모든 회의를 사회한다. 담임목사가 사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담임목사는 노회의 회원인 다른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나 노회의 허락을 받은 사람을 의장으로 청해야 한다. 위임된 담임목사가 없을 경우나, 위임된 담임목사가 사회를 진행할 수 없거나 다른 의장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노회는 의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G-1.0505 서기와 회의록

당회 서기는 교회에서 개최되는 모든 회의에서 서기로 봉사한다. 당회 서기가 임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교회는 그 회의를 위한 서기를 선출해야 한다. 서기는 반드시 교회의 결정을 회의록에 기록해야 한다.

제 2 장
직제사역, 위임, 인증

G-2.01 교회의 직제사역

G-2.0101 그리스도의 사역

교회의 사역은 전체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다. 그리스도만이 홀로 그의 뜻대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새 창조를 확립 확장하시기 위해 남녀의 사역을 통해 그의 권위를 행사하신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모든 사역의 토대이고 기준이며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신 분(마 20:28)이 모범이다. 사역의 기본 형태는 하나님의 온 백성의 사역이고, 그들의 일부가 부름을 받고 특정 직제사역을 수행하는 것이다. 교인들과 직제사역에 있는 이들은 다 같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섬긴다.

G-2.0102 직제사역

교회의 직제사역은 신약에 서술되어 있으며 본 교회가 유지해 온, 집사들 [a] 과 장로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 [b] 과 사역장로들 [c])을 말한다. 직제사역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번성할 수 있도록 교회의 삶에 질서를 주는 은사이다. 이러한 직제사역이 존재한다고 해서 교회의 총체적 사역에 대한 모든 회원의 헌신의 중요성이 절대 감소하지 않는다.

본 교회의 정치는 대의정치이며 [d], 장로들과 집사들을 선출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여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그 조직의 선출을 받지 아니하고는 개체교회의 직제사역이나 공의회에서 직분을 받지 못한다.

집사, 사역 장로, 혹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또한 교역 장로라 불림)의 사역을 위한 안수는 그 직제의 사역에 고유하게 주어진다.

G-2.0103 직제 사역에 부름

본 교회 직제사역에 부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이시다. 이러한 부름은 개인의 양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승인과 본 교회 공의회의 일치된 판단에 의해 명백해진다.

G-2.0104 은사와 자격

a. 교회 안의 특별한 직분을 수행하도록 부름 받은 이들— 집사들, 사역장로(장로)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다양한 직책에 적절한 은사를 주신다. 특정한 사역을 맡은 사람들은,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보유하는 것 외에도, 강한 믿음과 헌신적인 제자직, 그리고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 이들의 생활 방식은 교회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승인과 교회 공의회의 일치된 판단을 받아야 한다.

b. 안수 사역의 표준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기쁨으로 순복하려는 교회의 열망을 나타낸다 (F-1.02). 안수와/또는 위임을 책임지는 공의회 (G-2.0402; G-2.0607; G-3.0306)는 각 후보자의 소명, 은사, 준비와 직제사역 책임의 적합성을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 그 심사는 후보자의 안수와 위임에 관한 헌법 질문들 (W-4.0404)에 명시된 모든 요구 사항을 이행할 능력과 결단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일을 반드시 포함하지만,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공의회가 각 후보자에게 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성경과 신앙고백서의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G-2.0105 양심의 자유

직제사역에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본 헌법에 명시된 개혁 신앙과 정치 체제의 본질에 충실해야 하는데 이는 교회의 순결성과 건전성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이런 표준에서 심각하게 이탈하지 않고 타인의 권리와 의견을 침해하지 않으며 또한 본 교단의 헌법적 관할을 어기지 않는 한, 성경해석에 관하여 양심의 자유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미국장로교의 직제사역에 참여하려면 그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특정 범위 내에서 행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들이 직제사역을 추구하거나 계속 봉사하는 동안에는, 교회의 제 표준에 해석된 대로 그들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속되어야 한다. 개혁 신앙과 정치체제의 본질로부터 떠났는지의 결정은 먼저 관계된 개인이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결정의 책임은 그 사람이 회원으로 있는 공의회에 있다.[1]

G-2.02 집사: 연민과 봉사의 사역

G-2.0201 집사의 정의

성경[e]에 제시된 집사직은 연민과 전도와 섬김의 직분으로서,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병든 자, 길 잃은자, 외로운 자, 압제 받는 자, 부당한 정책이나 제도에 억눌린자,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f]. 영적 인품, 정직한 평판, 모범적인 삶, 형제자매 애, 진심 어린 연민과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역에 선출되어야 한다.

G-2.0202 당회 권위하에 놓임

집사들은 개별적으로 위임받을 수도 있고 집사회로 조직될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지 그들의 사역은 당회의 감독을 받으며 당회 권위하에 놓인다. 집사들은 개체교회 내의 특별 직무, 즉 궁핍한 교인들을 돌보는 일,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일, 자선의 넉넉한 마음을 함양하는 일, 특정한 사람들이나 대의를 위해 헌금을 모금하고 분배하는 일, 또는 개체교회의 건물이나 재산을 감독하는 일을 맡을 수 있다. 집사들은 주의 만찬에서 보조하는 일을 포함하여 당회가 위임하는 다른 임무를 맡을 수 있다 (W-3.0414). 개체교회는 다수결에 의하여 집사의 직제사역을 두지 않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만일 개체교회가 집사회나 개별적으로 위임한 집사들을 두지 않는 경우, 이 직제사역의 기능은 사역장로(장로)나 당회가 책임져야 한다.

[1] 미국연합장로교회 역사의 아주 초기, 총회가 생기기도 전에, 뉴욕 대회와 필라델피아 대회의 재연합 계획 속에 다음의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 '어떤 사안이 다수결의 투표로 결정되면, 모든 회원은 그 결정에 능동적으로 동의하든지, 아니면 그 결정에 수동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만일 자신의 양심이 그 어느 것도 허락하지 않으면, 온당하게 논의하고 항의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진 후, 분열을 시킬려고 시도하지 말고 우리들의 교제에서 평화롭게 탈퇴해야 한다. 다만, 이 조항은 장로교 정치의 교리에 있어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교회가 판단하는 그런 결정에만 해당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역사적 개요 (P) P. 1310) (1758 년의 연합계획, par. II.)

G-2.03 사역장로(장로): 분별과 다스림의 사역

G-2.0301 사역장로(장로)의 정의

구약시대에 백성을 다스리는 장로들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사역에 참여하도록 특정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따라서 개체교회들은 지혜 있고 성숙한 믿음이 있는 자들, 탁월한 지도력을 갖춘 자들,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출해야 한다. 사역장로는 그들이 회중 위에 "군림"하기(마 20:25)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신실한지를 분별하고 측정하며 교회의 신앙과 삶을 강화하고 양육하기 위하여 회중에 의해서 선택받기 때문에 그렇게 불린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과 더불어 사역장로들은 지도력을 발휘하고 다스림과 영적 분별을 하며 규율을 실행하고, 그들은 또한 에큐메니컬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교회와 더불어 개체교회의 삶을 책임진다. 개체교회에서 선출될 때, 그들은 당회 회원으로서 충실하게 섬겨야 한다. 차상위 공의회에 총대로 선출될 때, 사역장로들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참여하고 투표하며, 어떤 직책에도 피선될 자격이 있다.

G-2.04 사역장로(장로)와 집사에 대한 일반 조항

G-2.0401 사역장로(장로)와 집사의 선출

사역장로(장로)들과 집사들은 개체교회에 의해 남녀 교인들 가운데서 선출된다. 사역장로(장로)들과 집사들의 공천과 선출에 교회 회원들의 풍부한 다양성이 반영되어야 하고, 참여와 포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F-1.0403). 사역장로(장로)들과 집사들은 교인들 가운데서 선발되고, 그들을 대표하는, 회중이 선출한 위원회에 의해 공천을 받아야 한다. **회중은 자체 규칙 하에 회중의 공천위원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규칙은 다음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규칙에 명시된 위원회의 최소 크기는 최소한 3 명이어야 한다. (2) 위원회의 적어도 한 명은 현재 당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장로이어야 한다; 그리고 (3)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 중 과반수는 현재 당회에서 봉사하지 않는 자로 구성된다**. 담임목사는 직무상 위원이며 투표권이 없다. 선거가 개시되었을 때, 개체교회 활동교인 중 누구라도 공동의회 현장에서 공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항상 주어야 한다. 출석하여 투표한 전체 활동교인의 과반수에 의해 선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G-2.0402 사역장로(장로)나 집사로서 사역 준비

교인들이 사역장로(장로)와 집사의 직제사역에 선출되었을 때, 당회는 그들이 공부하고 준비하는 기간을 마련해줄 것이며, 그런 다음에 그들의 개인적 신앙, 교회의 헌법에 내포된 교리, 정치, 권징에 대한 지식, 그리고 사역의 의무에 대해 시취해야 한다. 당회는 또한 직분에 합당한 사역을 그들이 기꺼이 담당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들과 협의해야 한다. 만일 이 시험에서 통과되면, 당회는 안수식과 위임식 날짜를 정해야 한다.

G-2.0403 안수와 위임 예식

안수식과 위임식은 그 초점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선교와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쁨과 책임에 맞추어야 하며, 이에 적절한 설교를 포함해야 한다. 당회장이나 권한을 받고 집례하는 사람은 사역장로(장로)와 집사의 사역의 본질을 간략히 진술해야 한다. 안수식과 위임식은 예배의 맥락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예배모범 (W-4.04)에 나와 있는 그 예배의 순서를 따라야 한다.

G-2.0404 임직 기간

사역장로(장로)들과 집사들은 삼 년을 넘는 임기로 당회와 집사회에 선출될 수 없으며, 개체교회의 규칙에 따라 재선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역장로(장로)나 집사도 연속 육 년을 넘는 기간 동안 시무할 자격을 갖지 못하며 연속 육 년 시무한 사역장로(장로)나 집사는 최소한 일 년간 당회나 집사회에 선출될 자격이 없다. 각 연조에 선출된 인원을 가능한 한 동수가 되게 하며, 매년 한 조만이 임기를 마친다. 노회는, 서면 요청과 과반수 투표에 의해, 임기제한의 면제를 개체교회에 허용할 수 있다.

안수받고 본 교단에 속한 개체교회에서 활동교인으로 있는 한, 사역장로(장로)들이나 집사들은 당회나 집사회에 시무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받은 안수 사역의 책임이 지속된다. 단, G-2.0406, G-2.0407 조항이 적용될 경우나 *권징조례*에 의거한 경우는 예외다.

G-2.0405 관계의 해소

사역장로(장로)나 집사는 당회 동의를 얻어 당회나 집사회에서 사임할 수 있다. 개체교회의 활동교인을 그만둘 때, 사역장로(장로)나 집사는 그 당회 회원이나 집사회 회원을 그만두는 것이다. 사역장로(장로)나 집사가 거주지 변경이나 신체 부자유 이유로 위임한 개체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일 년간 수행할 수 없을 때, 그이나 그녀의 시무 관계는 당회에 의해 해소되어야 한다. 다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이며, 그 예외 사유가 기록되어야 한다.

G-2.0406 사역장로(장로)나 집사로서 사역 해제

만일 지금까지 어떠한 조사 대상이 되거나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를 받아본 적이 없는 무흠의 사역장로(장로)나 집사가 직제사역으로부터 직분 해제를 소속 당회에 청원한다면, 그이나 그녀의 회원권을 보유한 개체교회의 당회는 그러한 직무해제를 허락하고 동시에 사역장로 (장로) 나 집사 명부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삭제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사역장로(장로)나 집사 편에 잘못이 있다는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역장로(장로)나 집사의 직분 수행의 해제는 그 사역에 포함된 모든 기능의 중단을 요구한다. 직분에서 해제된 그러한 사람의 신분은 어느 교인과도 동일하게 해야 한다. 만일 본 조항에 의해 해제된 어느 사람이 후에 직제사역에 복원되기 원하면, 그 사람은 해제를 허락했던 당회에 복원 신청을 해야 하며, 그 당회의 승인을 받으면, 다시 안수받는 일없이 그 해제된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회복되어야 한다.

G-2.0407 관할권의 파기선언

사역장로(장로)나 집사가 본 교단의 관할권 파기를 선언하는 서면 진술서를 당회 서기에게 제출할 때, 그 파기선언은 접수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당회가 승인하지 않은 사역을 사역장로(장로)나 집사가 고집할 때, 그 당회는 그이나 그녀와 상담하고 당회의 불승인을 정식 통고해야 한다. 만일 상담의 기회가 주어지고 당회의 서면 불승인 통고를 받은 다음에도 사역장로(장로)나 집사가 불승인한 사역을 고집한다면, 당회는 그 사역장로(장로)나 집사가 본 교단의 관할권을 파기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관할권의 파기선언은 그 사역장로(장로)나 집사를 회원권과 직제사역에서 제명하는 것이며, 사역의 수행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파기선언의 사실은 차기 당회 모임에서 당회 서기가 보고해야 하고, 당회는 그 파기를 기록해야 하고, 사역장로(장로)나 집사의 이름을 해당 명부에서 삭제해야 하며, 그 밖의 행정적 조치들을 본 헌법의 규정대로 취해야 한다.

G-2.05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가르침 및 목회적 돌봄의* 사역

G-2.0501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에 대한 정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또한 교역장로 및 목사라 불림)는 언행으로 신앙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목회 사역에 준비시키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한다 (엡 4:12). 또한, 노회가 권한을 부여한 다양한 목회 사역에서 봉사하기도 한다. 그들이 말씀의 설교자이며 가르치는 교사로서 시무할 때, 교회의 신앙을 설교하고 가르쳐야 하며, 이로써 교인들이 복음의 모범에 맞추어 살고 증거와 봉사를 위해 강건해지도록 해야 한다. 그들이 세례반과 성찬상에서 봉사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해석하고 *언행으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새 창조의 소망을 향해 교인들의 비전을 고양시켜야 한다. 그들이 목사의 직분으로 섬길 때는 일상 삶의 어려움 가운데도 신앙의 훈련을 받도록 교인들을 지원해야 한다. 그들이 노회원으로 섬길 때는 항상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분별하며 헌신하고 토론에 의한 의사결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힘쓰며 다스리는 책임에 참여해야 한다.

G-2.0502 노회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주님께서 특정한 회원들을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 불러 따로 세우실 때, 교회는 노회의 결의를 통해 그 부르심을 확인한다. 노회는 특정 사역이 교회의 선교에 유익한 일인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서 안수를 요구하는 인정된 목회의 부름인지, 결정해야 한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그 사역의 수행에 있어서 노회에 책임을 진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노회 자체의 결의에 의해 노회 회원권을 가지며, 어떤 목회관계도 노회의 승인 없이 수립되거나 변경되거나 해소될 수 없다.

G-2.0503 회원권의 분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노회 회원이며, 그 노회 인준을 받은 목회 활동을 해야 하고, 그 노회가 결정하는 대로 보통회원이 되거나 명예은퇴 회원이 된다.

a. *인정된 목회에 참여*

인정된 목회는 반드시

(1) 성경과 본 교단의 *신앙고백서*와 *규례서*에 명시된 대로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의 선교와 부합됨을 나타낸다;

(2) 타인을 섬기고 도우며, 타인의 목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3)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학적 지식의 충실한 증거를 보인다;

(4) 봉사하는 조직체와 기관과 단체뿐만 아니라 노회에 대해서도 그 목회의 성격과 운영에 책임을 지면서 수행해 간다.

(5) 노회의 심의와 예배와 사역에서 책임 있는 참여를 하고, 본 교단의 개체교회의 삶이나 미국장로교와 교류관계에 있는 교회 삶에서도 책임있는 참여를 하는 것을 포함한다 (G-5.0201).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이 교단 관할권 밖의 인정된 목회에 부름 받을 때, 그들은 복음의 사역을 함께 나누는데 도움을 주는 삶의 질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그들은 개체교회와 노회, 그리고 에큐메니컬 관계에 참여해야 하고, 교단의 차상위 공의회들과 그 공의회들의 이사회와 기관에 피선될 자격을 가진다.

노회는 모든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이 개체교회 밖에서 활동하는 인정된 목회활동의 사역에 대해 연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b. *보통회원*

보통회원은 이전에 인정된 목회에서 활동했으나 현재는 목회직 수행을 포기할 의도는 없지만, G-2.0503a 의 모든 기준에 부합하는 목회를 하지 않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를 말한다. 노회가 알고 있는 가정에 대한 책임이나 다른 개인 사정 때문에, 인정된 목회의 제반 기준을 다 만족하게 하는 목회를 할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을 받고 있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보통회원으로 지명될 수 있다. 보통회원은 G-2.0503a 기준의 가능한 한 많은 부분에 부합해야 하며, 개체교회의 삶에 활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보통회원은 노회 회의에 참여하고 발언하고 투표하고 직책을 맡을 권리가 있다. 보통회원의 신분은 매년 재검토되어야 한다.

c. *명예은퇴 목사*

노회는 어떤 노회 회원의 요청에 의해, 고령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회원을 명예은퇴 목사로 지명할 수 있다.

G-2.0504 목회 관계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이 개체교회의 담임목사나 동사목사 또는 부목사로 청빙 받을 때,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권하고 기쁨과 정의를 알리는 삶의 질과 관계에 책임을 진다. 그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며, 세례와 주의 만찬을 거행하고, 회중과 더불어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책임이 있다. 그들은 사역장로(장로)들과 더불어,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고무하고; 교회 내에서 그들의 과제와 세상에서 그들의 선교적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그들을 준비시키며;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려움에 부닥친 자, 죽어 가는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음으로써 목회적 보살핌을 수행하고; 개체교회의 의사결정에서 참여와 포용성의 원칙을 수행할 회중의 지도력을 세우며 관심과 봉사정신으로 전체 인간 공동체의 삶에 미치는 과제를 포함한 제반 다스리는 책임에 참여하도록 한다. 그들은 집사들과 더불어 연민과 증거와 섬김의 사역을 함께 나눈다. 이러한 목회적 임무에 더하여, 그들은 당회보다 상위인 공의회에서와 에큐메니컬 관계에서도 교회의 사역을 함께 나눌 책임이 있다.

a. *위임 목회 관계*

위임 목회관계란 담임목사와 동사목사와 부목사직을 말한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무기한 임기로 또는 개체교회와 협의하여 노회가 결정하고 청빙에 명시된 대로 지정된 기간 목회관계에 위임될 수 있다. 개체교회가 말씀에 따라 선교 전략상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 그 교회는 추가로 목사들을 청빙할 수 있다. 이처럼 추가로 청빙 받은 목사들을 동사목사나 부목사라 부르며, 각 목사의 임무와 목사들 간의 관계는 노회의 승인을 받아서 당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개체교회에 두 명의 목사가 동사목사로 있을 때, 그 중 한 명의 목회관계가 해소되면 남은 목사가 그 교회의 담임목사가 된다. 개체교회에 대한 부목사 관계는 담임목사의 관계에 종속되지 않는다. 부목사는 그 교회의 차기 담임목사가 될 자격을 통상적으로 갖지 못한다.

b. *임시 목회 관계*

임시 목회관계는 노회의 승인을 받으며, 공식 청빙이나 위임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교회에 담임목사가 없거나 담임목사가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당회가 노회의 승인을 얻어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나 후보생이나 사역장로(장로)를 임시 목회관계로 세울 수 있다. 어떠한 공식 청빙이나 공식 위임이 거행되어서는 안 된다.

임시 목회관계의 칭호와 임기는 노회가 결정해야 한다. 임시 목회관계로 시무하는 사람은 12 개월을 넘지 않은 특정 기간 초청되며, 노회의 승낙을 얻어 그 임기를 갱신할 수 있다. 임시 목회관계로 시무하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차기 담임목사나 동사목사나 부목사가 될 자격을 통상적으로 갖지 못한다.

c. *예외 조항*

노회는, 선교 전략상 현재 부목사로 청빙 받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에게 차기 담임목사나 동사목사 자격을 허용하거나, 임시 목회관계로 시무하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에게 차기 담임목사나 동사목사나 부목사의 자격을 허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 자격을 허용하는 노회는 노회에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의 3/4 표결에 의해 그러한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G-2.0505 타 교단 목사의 이명

a. 타 기독교 교단의 목사가 한 노회의 관할권하에서 사역하도록 적절하게 청빙 받을 때, 그 노회는 제반 헌법적 조건들이 충족된 후, 그 목사가 전에 받은 안수를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한 목사들은 학력증서와 무흠하다는 증거를 노회에 제시해야 하고, 또한 교단 후보생에게 요구되는 인격과 학문적 자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만족스러운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G-2.0607 과 G-2.0610 참조). 예외적 상황에서는 다음의 조항들이 적용될 것이다:

(1) 이민자들의 예배공동체와 이민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들의 경우에 있어서, 만일 노회가 그 이민그룹과 더불어 갖는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노회는 비록 그 목사가 등록 당시에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교육 경력이 부족할지라도, 소속 교단에서 무흠하다는 증거를 제시하는한 그 이민 목사의 안수를 인정하고 노회 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 이민 목사가 노회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데 필수적이고 유익할 것으로 간주되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2) 다른 개혁교회의 안수 목사로서 오 년이나 그 이상이 지난 경우, 노회의 2/3 표결에 의해 안수를 위해 후보생에게 요구되는 시험의 일부나 전부의 면제를 허용할 수 있다.

b. 등록할 때 그 목사는 이전에 유대관계가 있었던 모든 타 기독교 교단의 회원권을 포기했다는 증거를 노회에 제시해야 한다.

G-2.0506 사역기간 동안 노회의 임시 회원권

노회는, 타 기독교 교단의 목사가 본 교단의 인정된 목회에서 현재 임시로 사역하고 있거나, 협정조항에 따라 위임 목사로 임시적으로 사역할 때 (규례서, 부록 C; G-5.0202), 그 목사가 노회의 자체 규칙에 따라 세워진 그러한 사역의 준비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때, 그를 노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G-*2.0507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서 사역 해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D-10.0101 과 D-10.0201 에 의거하여 어떠한 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어떠한 죄목으로도 피소된 적이 없으며 무흠 목사로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직제사역 수행에서 해제되기를 청원할 때, 노회는 그 사람의 이름을 해당 명부에서 삭제하고, 당회의 요청에 따라 그 사람을 일반 교인 자격으로 남게 한다. 직제사역 수행으로부터의 해제는 그 목회에 관한 모든 기능의 정지를 요구한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에게 속하는 호칭들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그와 같이 직무가 해제된 사람은 개교회의 모든 활동교인이 분담하는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 만일 본 문항에 따라 해제된 어떤 사람이 후에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서 직제사역에의 복원을 원할 경우, 해제를 허락한 그 노회에 복원 신청을 내야 하며 그 노회의

승인에 따라 안수 질문의 재확인을 하고 그 사람에게 회원권 자격을 부여하는 노회에서 목회를 재개함으로써, 재안수를 받지 않고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서 직제사역의 수행이 복원된다.

G-2.0508 인정된 목회 활동의 불이행

어느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더 이상 인정된 목회에 간여하지 않거나 (G-2.0503a), 그가 보통회원의 기준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G-2.0503b), 명예은퇴 목사 (G-2.0503c)가 아니라고 노회가 결정할 때, 그 사람은 노회 회의에서 발언권이나 투표권을 가질 수 없다. 단, 회의에서 고려 중인 사안이 그이나 그녀와 노회 사이에 관계된 경우는 예외이다. 그러한 사람들의 명단을 노회 서기가 노회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만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인정된 목회의 기준이나 보통회원 기준을 삼 년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노회는 그 사람의 이름을 회원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고, 또한 당회의 요청에 따라 그 사람을 일반교인 자격으로 남게 한다.

G-2.0509 관할권의 파기선언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또는 권한 대행자)가 소속 노회 서기에게 본 교단 관할권을 파기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때, 그 파기는 접수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노회가 불승인하는 일을 고집하여 행할 때, 그 노회는 그 교역장로(목사)와 상담하고, 그런 다음 노회의 불승인을 통고한다. 만일 상담의 기회를 주고 불승인을 서면으로 정식 통고한 후에도 그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그 일을 고집한다면, 노회는 그이나 그녀가 본 교단의 관할권을 파기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어느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본 헌법의 예외를 제외하고, 타 교단에서 어떤 성격의 회원권을 받아들이거나 이를 지속할 때, 노회는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하며, 그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를 명부에서 삭제해야 한다.

관할권의 파기는 그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를 회원권과 직제사역에서 제명하고 그 목회직 수행을 종결시키는 일이어야 한다. 그 파기는 노회 서기에 의해 차기 노회 회의에 보고되어야 하고, 그 파기는 기록되어야 하고, 그이나 그녀의 이름은 해당 등록명부에서 삭제되어야 하며, 그러한 파기의 공개적 통보를 포함하여 본 헌법이 요구하는 기타 행정적 조처를 해야 한다.

미국장로교회의 관할 하에 있는 회중이나 단체는 피고인으로서의 징계 도중 관할권을 포기한 전직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교역장로)를 유급 또는 자원 봉사로 고용할 수 없다.

관할권을 포기하고 나중에 직제로 복귀하기를 원하는 모든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교역장로)는 노회의 청원을 받아 노회에 복직될 경우에만 회복될 수 있다. D-10.0401d 및 D-12.0200 의 규정이 적용된다.

G-2.06 목회 준비

G-2.0601 준비의 성격과 목적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서 안수를 받고자 하는 이들은 노회 지도하에서 그들의 직분을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노회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이들과 소속 당회와 지교회와 계약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 관계는 지망과 후보의 두 단계로 나누어져야 한다.

G-2.0602 시간 요구사항

지망생으로 등록하려면 그 지원자는 후원 교회의 회원이어야 하고, 최소한 육 개월간 그 교회의 사역과 예배에서 활동하고 있어야 하며, 그 후원 교회의 당회 추천을 받아야 한다. 지망과 후보 단계는 최소한 이 년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적어도 일 년은 후보생으로 있어야 한다.

G-2.0603 지망의 목적

지망 단계의 목적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서 직제사역에 부름을 받았다고 스스로 믿는 이들과 교회에 그 부름을 함께 탐사해 보는 기회를 마련해 주며, 그리하여 노회로 하여금 그 지망생의 직제사역에 대한 적합성에 관해 확실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G-2.0604 후보의 목적

후보 단계의 목적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서 교회를 섬길 후보생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일은 노회의 지원과 지도, 그리고 목사안수 [j] 를 요구하는 사역의 부름에 대한 후보생의 적성과 준비상태를 평가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G-2.0605 감독

지망과 후보 단계의 기간에 그 개인은 계속해서 그이나 그녀가 속한 교회의 활동교인이어야 하고 당회의 배려와 훈육에 순복한다. 목회 준비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그 개인은 계약관계의 맥락에서 노회의 감독 아래에 속한다.

G-2.0606 계약관계에 있는 동안의 봉사

지망생과 후보생은 돌보는 노회의 승낙을 받아서 어떤 형태의 감독을 받는 교회 봉사에 참여해야 한다. 이전에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서 안수받지 않은 지망생이나 후보생은 누구도 당회장으로 봉사하거나 성례전을 거행하거나 결혼식을 주례할 수 없다. 이전에 사역장로(장로)로서 안수받은 지망생이나 후보생은 당회의 요청을 받으면 주의 만찬을 집례하도록 노회에 의해 허락받을 수 있다.

G-2.0607 사역을 위한 최종 평가와 교섭

후보생은 돌봄을 제공하는 노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서의 사역을 위한 교섭을 해서는 안된다. 청빙 대기 중인 후보생이 노회에 의해 안수 심사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인증할 때, 노회는 이를 기록해야 한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서 직제 사역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로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a. 후보생의 지혜와 믿음의 성숙성, 지도력 자질, 연민의 마음, 정직성의 평판, 건전한 판단력;

b. 지역적으로 인가받은 대학이나 대학교에서 만족할만한 학점으로 졸업한 성적증명서;

c. 히브리어와 헬라어 과목, 히브리어와 헬라어 본문을 사용한 구약과 신약의 주석, 전 과목에 만족한 학점, 그리고 졸업이나 졸업 예정임을 제시하면서, 신학교 협의회가 인가하고 노회가 합당히 여기는 신학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성적 증명서;

d. 총회의 승인을 받은 표준 안수 고시에 의해 다루어진 분야의시험 자료들과, 그 자료들이 만족하다고 선포하는 평가서. 그러한 고시는 노회들이 설립한 기관에 의해 준비되고 관장되어야 한다.

G-2.0608 관계의 이전

지망생이나 후보생의 요청과 당회와 감독 노회의 승인을 받을 때, 노회는 지망생이나 후보생의 계약관계를 이전할 수 있다.

G-2.0609 관계의 취소

지망생이나 후보생은 당회와 노회와 협의한 후 계약관계를 취소할 수 있다. 노회는 또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지망생이나 후보생 명부에서 그 개인의 이름을 제명할 수 있으며, 이 결정과 그 사유를 당회와 그 개인에게 보고하며, 만일 적절하다면, 그 개인이 등록된 그 교육기관에도 보고할 수 있다. 그러한 결정을 취하기 전에, 노회나 노회의 지정을 받은 기관은 후보생이나 지망생에게 제명에 관해 자신들의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도록 합리적인 시도를 해야 한다.

G-2.0610 특별한 상황에 따른 조정

노회가 안수를 받으려는 개인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조정을 할만한 합당하고 충분한 이유들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때, 노회는 G-2.060d 의 요구사항만은 제외하고 G-2.06 에 있는 안수의 요구사항의 어느 것이라도 ¾의 표결로 면제해 줄 수 있다. 만일 노회가 후보생에게 G-2.0607d 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만한 충분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노회는 표준 안수 고시에 의해 다루어진 분야에 목회 후보생의 준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대안을 ¾표결로 승인해야 한다. 어떤 면제나 준비성을 확인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을 허용한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노회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하며, 지망생이나 후보생이 이전해 갈 수 있는 노회에도 전달되어야 한다.

G-2.07 안수

G-2.0701 안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에 대한 직제사역의 안수는 노회를 통해 수행되는 전체 교회의 행위로서, 한 사람을 직제사역에 성별하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감독 노회의 안수 요건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개체교회의 섬김에 또는 후보생과 청빙 노회가 합당히 여기는 교회의 다른 선교 사역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

G-2.0702 안수 장소

목회 후보생에게 청빙을 제공하는 노회가 통상적으로 그 후보생을 심사하고 안수하며 위임시킨다.

G-2.0703 안수 예식

예배모범 (W-4.04)에 있는 예식의 순서를 따라야 한다.

G-2.0704 안수 기록

청빙 노회는, 새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안수 질문에서 의무를 이행하기로 서약한 서면 확인서와 더불어 안수와 위임 사실을 기록해야 하며, 그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를 노회의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 노회 서기는 이러한 조치들을 총회와 양육 노회에, 그리고 후보생이 이전에 회원이었던 개체교회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G-2.08 청빙과 위임

G-2.0801 목사 공석

개체교회의 목사직이 공석이거나 노회가 현존하는 목회관계 해소의 발효일을 승인한 다음에, 개체교회는 노회의 지도와 승낙을 받아서 다음의 방법으로 그 공석을 채우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G-2.0802 목사 청빙위원회 선출

당회는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전체 개체교회를 대표하는 목사 청빙위원회를 선출한다. 그 위원회의 임무는 회중에 의해 선출되도록 목사 한 명을 공천하는 일이다.

G-2.0803 청빙 절차

노회의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공동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목사청빙위원회는 청빙 고려 대상자들의 장점과 적합성과 청빙 수락 가능성에 대해 노회의 자문을 받고 이를 숙고해야 한다. 그 위원회는 회중에게 보고할 방향이 분명할 때, 당회에 통보해야 하며, 당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한다.

G-2.0804 청빙 조건

청빙 조건은 항상 청빙할 때 사실상 효력이 있는 노회의 최소 요구사항을 충족하거나 능가해야 한다. 당회는 목사의 청빙 조건을 매년 검토해야 하고 당회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면, 그 변경안이 노회의 최소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조건하에, 그 제안을 공동의회 결의 (G-1.0501)에 부쳐야 한다. 그 청빙은 연금과 의료 혜택이나 총회가 승인한 추가 플랜이 포함된 미국장로교 혜택제도의 가입을 포함해야 한다.

G-2.0805 위임 예식

개체교회와 노회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또는 후보생)가 모두 영구적 목사직이나 임명 목사직의 청빙에 동의하였을 때, 그 노회는 위임 예식을 준비하고 거행함으로써 청빙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위임은 목회관계를 수립하는 노회의 행위이다. 위임 예식은 예배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예배모범 (W-4.04)에 있는 예식의 순서를 따라야 한다.

G-2.09 목회 관계의 해소

G-2.0901 공동의회

위임 목회관계는 노회에 의해서만 해소될 수 있다. 관계해소 절차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나 회중이나 노회 중 누구에 의해 주도되든 간에, 항상 공동의회에서 그 사안을 고려해야 하며, 해소에 동의하거나 동의하기를 거부한다.

G-2.0902 담임목사, 동사목사, 또는 부목사가 요청 시

담임목사나 동사목사 또는 부목사가 목회관계 해소를 노회에 요청할 수 있다. 그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또한 자신의 의사를 당회에 진술해야 한다.

당회는 그 요청에 대응하고 노회에 제안하기 위해 공동의회를 소집해야 한다. 만일 회중이 관계해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노회는 반드시 교회에서 선출한 총대들을 통해 왜 노회가 목회관계 해소를 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들어야 한다. 만일 회중의 대표가 출석하지 않거나, 그 관계 유지의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그 요청이 허가되고 그 목회관계는 해소될 수 있다.

G-2.0903 개체교회가 요청 시

만일 개체교회에서 목회관계 해소를 원할 경우에는, 상기 G-2.0902 조항과 유사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교인들이 목사와 관계해소를 추구하는 공동의회 소집을 당회에 요청할 때, 당회는 그 회의를 소집하고, 공동의회 의장을 임명해주도록 노회에 요청해야 한다. 만일 목사가

관계해소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노회는 왜 그 관계를 해소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그이나 그녀에게서 직접 청문해야 한다. 만일 목사가 출석하지 않거나 관계 유지의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그 관계는 해소될 수 있다.

G-2.0904 노회의 결정

노회가 개체교회에서 보고된 문제점들을 조사할 수 있으며, 노회는 그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당회, 그리고 개체교회와 협의한 후에, 말씀에 따라 교회의 선교가 그 해소를 단호히 요구한다고 판정할 경우, 그 목회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G-2.0905 초청에 의해서만 직무 수행

목회관계가 해소된 후, 전직 담임목사들과 부목사들은 당회장의 초청을 받지 않고서는 이전 교회의 교인들을 위한 목회적 봉사를 해서는 안 된다.

G-2.10 특정한 목회 봉사에 사역장로(장로) 파송

G-2.1001 기능

노회가 당회나 다른 책임소관 위원회와 협의하여, 선교 전략상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 노회가 지정한 제한된 목회적 봉사에 사역장로(장로)의 파송을 허가할 수 있다. 그와 같이 임명된 사역 장로(장로)는 노회의 인정된 목회를 섬기도록 위임받을 수 있다. 그 노회는 그 위임에 있어서 개체교회에 파송한 사역장로(장로)로 하여금 당회를 사회하고, 성례전을 집례하며, 주 법이 허락하는 곳에서 결혼을 주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이러한 파송에도 임기가 명시되어야 하고 이 임기는 삼 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갱신될 수 있어야 한다. 노회는 파송을 최소한 연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G-2.1002 훈련과 시험 및 파송

G-2.1001 조항의 조건에서 봉사하기를 바라는 사역장로(장로)는 특정한 파송에 적절하다고 노회가 결정하는 대로 그러한 준비와 지도를 받아야 한다. 그 노회는 사역장로(장로)의 개인 신앙과 파송 받기 원하는 동기와 노회가 결정한 지도 분야들에 대해 심사를 해야 한다. 파송을 받았으나 그 이후 명시된 목회를 그만두는 사역장로(장로)는 사역자로서 계속해서 명단에 남을 수 있으나, 노회에 의해 다시 지교회나 목회 사역에 노회의 파송을 받을 때까지는 G-2.1001 조항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

G-2.1003 파송 예식

앞서 언급한 봉사를 제공하면서 개체교회를 섬길 사역장로(장로)의 자격에 만족할 때, 노회는 W-4.04 에 명시된 질문들을 사용하여 그 사역장로(장로)를 노회가 지정하는 목회 업무에 파송해야 한다.

G-2.1004 감독

G-2.1001 조항에 의해 파송 받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노회의 감독하에 사역해야 한다. 노회는 합당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어느 때라도 그 파송을 철회할 수 있다. 교역장로(목사) 한 사람을 멘토 겸 감독자로 지정해 주어야 한다.

G-2.11 공인 교회 사역

G-2.1101 공인 교회 사역의 형태

사람들은 개체교회와 공의회, 그리고 교단 관계기관에서 직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인증받고 부름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개인들은 그들의 업무를 통해 개인의 신앙을 반영시키며, 그들의 헌신을 통해 교회를 강화시키려고 힘쓴다. 그들이 총회에 의해 승인받은 전국 인증기관*의* 인증 요건들을 충족하거나 충족시킬 준비를 하도록 그들의 당회와 노회는 격려해야 한다. 전국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서를 취득한 이들의 명단은 총회 해당 기관으로 보내져야 하고, 거기서 그 명단을 이들이 사역하는 노회의 서기에게 전달해야 한다.

G-2.1102 노회와 공인 교회 사역

노회는 당회로 하여금 인증서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교육 기금과 시간을 마련하도록 격려해야 하며, 또한 인증서 교부 시에 인정예식을 거행하여 줌으로써 인증받은 이들의 기술과 헌신을 추인해 주어야 한다. 노회는 공인 교회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G-2.1103 기독교 교육사

a. *기술과 훈련*

공인 기독교 교육사들은 개체 교회나 공의회에서 교육목회에 봉사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성서해석, 개혁 신학, 예배와 성례전, 인성개발, 신앙개발, 종교교육의 이론과 실천, 미국장로교의 정치제도와 프로그램 및 선교 분야에서 기술을 갖추고 훈련을 쌓아야 한다.

b. *노회의 책임*

노회는 공인 기독교 교육사들과 공인 기독교 부교육사들의 보수와 혜택에 관한 최저 기준을 수립하고, 목회를 관장하는 노회의 제 분야에 접근하도록 마련해 주어야 한다 (G-3.0307). 노회의 관할 하에서 교육 목회에 사역하는 임기 동안에는, 공인 기독교 교육사들은 모든 노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며, 사역장로(장로)인 공인 기독교 교육사들은 모든 회의에서 발언권과 투표권을 부여받는다.

제 3 장
교회 공의회

G-3.01 공의회의 일반원칙

G-3.0101 교회일치의 표현으로서 공의회

공의회를 통한 교회의 상호 연관성은 교회일치의 표시이다. 미국장로교의 개체교회들은 교회가 되는 데 필요한 모든 은사를 보유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그들 자체로서는 교회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보다는, 그들은 개체교회 안팎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과제를 다른 사람들과 서로 나누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처럼 증거하도록 부름 받은 일은 모든 신자의 사역이다. 교회 공의회들의 특정한 책임은 미국장로교의 일부분이 되어 증거하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지도하고 다스리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그러한 증거가 전체 교회를 강화시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미국장로교는 회중에 의해 선출 받은 장로들로 구성된 공의회들에 의해 다스려진다 (F-3.0202). 이들 공의회를 당회, 노회, 대회, 그리고 총회라고 부른다. 교회의 모든 공의회들은 교회의 본질상 일체를 이루며, 이 헌법이 부여하는 책임과 권리와 권한을 공유한다. 공의회들은 각기 독특하지만, 어느 한 공의회의 행위가 전체 교회의 행위가 된다는 점에서 상호 관련성을 가진다. 각 공의회의 관할권은 헌법의 명시적 조항에 의해 제한을 받고, 각 공의회의 행위는 차상위 공의회의 검토 대상이 된다. 본 헌법에서 언급되지 않은 권한들은 노회들에 유보된다.

교회의 공의회들은, 그리스도의 선교에 더욱 충실하게 참여하도록 개체교회와 전체 교회를 돕기 위해 존재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의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약속에 응답하면서,
모든 사람을 그러한 새 창조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고 들려지도록 하는 일을 마련한다,

그리스도에게 접목된 이들을 환영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증거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하늘의 만찬을 고대하면서,
오늘 소외된 자들과 굶주린 자들과 연대를 다짐하면서;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례되고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일을 마련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계약 공동체를 양육한다,

G-3.0102 교회 관할권

본 교단의 공의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진리와 봉사, 규례와 권징에 관련하여 그의 뜻을 선포하며 복종하는 목적으로만 교회적 관할권을 가진다. 공의회들은 신앙 선언의 틀을 만들고, 교리의 오류와 삶의 부도덕성에 반대하는 증언을 하며, 교리와 권징에 관한 이슈를 해결하고, 양심 문제에서 조언하며, 그들 앞에 제기된 이슈들에 대해 본 *규례서*의 조항에 따라

적절히 결정을 내린다. 공의회들은 예배모범에 따라 성례전의 집례를 허가할 수 있다. 또 공의회들은 교회의 예배, 선교, 정치와 권징에 대한 계획과 규칙을 수립할 권한이 있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교회의 평화, 순결, 일치와 발전에 필요한 일들을 수행할 권한이 있다. 공의회들은 각 관할권하에 있는 해당 교회의 지도력과 지도와 치리를 책임진다.

G-3.0103 참여와 대표성

교회의 공의회들은 교회 회원권의 풍부한 다양성을 온전히 반영해야 하며, 의사결정과 고용정책에 있어서 대표성을 갖는 일에 전적인 참여와 접근책을 마련해야 한다 (F-1.0403). 이러한 위임사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의회들은 사역의 은사와 요구사항 (G-2.0104)에 대해, 그리고 개체교회와 공의회 회원들의 제직원 선출권 (F-3.0106)에 대해, 합당한 배려를 해야 한다.

각 공의회는 포용성과 대표성에 관한 교단의 위임 사항이 공의회 자체에서 실행되도록 고무하고 검토하는 절차와 장치를 개발해야 한다. 당회 위의 상위 공의회들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자체적인 규칙에 따라 대표위원회를 수립해야 한다. 즉, 일치와 다양성 원칙의 수행에 관해 공의회를 자문하고, 지도력의 다양성을 주창하며, 일치와 다양성의 원칙 (F-1.0403)에 일치하는 인사채용에 관해 공의회를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대표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로 병합되거나 다른 위원회에 속한 소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G-3.0104 제직원

개체교회의 담임목사가 그 교회 당회의 당회장이 되어야 한다. 동사목사들이 있는 교회에서는, 두 목사 다 당회장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특정 회의의 사회를 누가 맡을 것인지 규정하는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담임목사가 사회하기 어려운 경우, 그는 노회의 회원인 다른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나 노회가 허락한 사람을 당회장으로 청해야 한다. 만일 담임목사가 없을 경우나 담임목사가 다른 사회자를 초청할 수 없을 때는 노회가 당회장을 마련해야 한다.

공의회 의장은 공의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보유한다. 그이나 그녀는 그 공의회 자체의 결정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폐회해야 한다.

당회보다 상위에 있는 각 공의회는 그 공의회가 결정한 임기로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선출 시, 의장은 그 공의회의 계속회원이거나 총대여야 한다. 그들은 재임 기간 공의회 회의를 주재한다. 공의회는 의장 부재 시에 누가 회의를 사회할 것인지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각 공의회는 서기를 선출해야 하며, 그는 공의회의 업무 활동을 기록하고, 회원 명부와 출석부를 보관하며, *요구되는 기록부들을 유지하고*, 기록을 보존하며, 교회의 다른 공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 기록을 발췌하여 제공해야 한다. 당회 서기는 당회가 결정한 임기 동안 시무하도록 당회에 의해 선출된 사역장로(장로)라야 한다. 노회와 대회와 총회의 서기는 정서기라 칭하며, 그들은 공의회가 결정한 임기 동안 공의회에 의해 선출되며, 반드시 사역장로(장로)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라야 한다. 정서기는 G-3.0110 에 설명된 절차를 사용하여 그의 직무기간 완수 이전에 직책에서 해임될 수 있다.

공의회들은 공의회가 필요한대로 다른 제직원들을 선출할 수 있다.

G-3.0105 회의

공의회는 회의를 기도로 개회하고 기도로 폐회해야 한다.[a] 회의는, 본 헌법에 반하지 않는 한, *최신판 로벝의 의사진행 규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공의회들은 그 공의회의 합의에 따라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깊이 숙고하기 위하여 통찰의 과정을 사용할 수도 있다.

공의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에 반대투표를 한 회원은 반대나 항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반대나 항의의 제기는 사법절차를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막는 것도 아니다.

a. 반대란 공의회의 결정에 불찬성을 표명하는 선언이다. 그것은 그 결정이 이루어진 특정한 회의 중에 제기되어야 한다. 반대하는 회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한다.

b. 항의란 서면 선언을 말하는데, 이는 공의회의 결정이 변칙 또는 직무태만이거나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유를 제기하는 것이다. 항의의 서면통보는 그것이 발생한 공의회의 특정 회의 중에 제출되어야 하고, 폐회 전에 서기에서 접수해야 한다. 만일 그 항의가 예의 바르고 정중한 언어로 표명되었을 경우, 그것은 그 회의의 회의록에 기재되어야 하고, 여기에 그 공의회가 준비한 답변이 수반될 수 있다. 그 이상 추가적인 결의는 요구되지 않는다.

G-3.0106 선교 행정

선교는 교회 사역에 필요한 형태와 구조를 결정한다. 행정은 공의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을 실행하는 절차이다. 행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를 교회가 세상에서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게 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교회의 증거를 강화시킨다.

당회 위의 상위 공의회들은 정책과 절차의 실례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들을 모아 자문 핸드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실례들은 헌법이 요구하는 실천사항들을 밝혀주지만, 특정한 실행 사항은 공의회들에 맡겨진다. 그러한 핸드북은 특정한 공의회의 사역을 향상하거나 확고하게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각 공의회는 그 공의회의 선교사역 형태를 명시하고 그 사역을 인도해 주는 행정운영 지침서를 개발해야 한다.

모든 공의회들은 성적 비행 정책과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해야 한다.

공의회는 합당하다고 간주하면, 어느 기구들에 그 과제를 위임할 수 있으나 이들 기구가 그 공의회에 책임을 진다는 조건하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선교 행정은 교회의 일치와 상호 의존을 나타내는데, 이는 공의회들이 상호 간에 책임, 권리와 권한을 나눔으로 이루어진다 (F-3.0203). 그들의 회원들과 선출된 총대들을 통하여 하위 공의회 들은 상위 공의회의 사역 계획과 행정에 참여하고, 선교, 예산, 인력관리, 공정고용정책과 적절한 보수 문제에 관한 기구 간의 협의에 참여한다.

선교의 자금조달 역시 교회의 일치와 상호의존을 나타낸다. 교단의 어느 일부가 전체 교회 선교를 위한 청지기직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그러한 일치와 상호의존을 약화시킨다. 모든 선교 자금조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에 대해 교회로 하여금 세상에서 효과적으로 증거하도록 해야 하며, 하나님 선교에 대한 교회의 증거를 강화시켜야 한다.

당회 위의 상위 공의회는 행정직원을 포함한 운영비의 예산을 준비하고 채택하며, 그 구역 내 지교회들이 내는 상회비로서 이 예산을 조달할 수 있다. 노회들은 자체 기금을 모금할 책임과 상회비를 모금하여 해당 대회와 총회에 적시에 보낼 책임이 있다. 노회들은 그들 구역 내의 당회들에 상회비를 할당할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상회비를 포함한 기타 기금을 당회가 결정하는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G-3.0107 기록

각 공의회는 자체 절차들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공의회의 회의록과 그 밖의 모든 공식 기록은 그 공의회나 그 법적 후계자에게 속하는 영구 재산이다. 어느 공의회가 존속하지 않게 될 때, 그 기록들은 종결 이전에 하위 공의회가 속해있던 구역의 차상위 공의회의 재산이 된다. 각 공의회 서기는 자체 기록을 장로교역사협회나 미국장로교 신학교 내의 온도와 습도가 조절된 환경에 영구보존하는 사안을 자체 공의회에 건의해야 한다.

G-3.0108 행정적 검토

상위 공의회는 하위 공의회의 사역을 다음의 방식으로 검토해야 한다:

a. *일반 행정적 검토*

각 공의회는, 자체 모임의 빈도에 따라서, 그 공의회에 관련된 모든 기구와, 공의회를 대표해서 활동하는 모든 제직원들과 그 관할권 내의 하위 공의회들이 취한 절차들과 결정들에 대해 일 년이나 이 년에 한 번씩 검토해야 한다. 상위 공의회는 하위 공의회가 취한 절차들을 검토하면서, 그 절차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 본 헌법에 일치하는지[b], 신중하고 형평성이 있는지, 전체교회의 선교에 충실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상위 공의회의 합법적인 명령이 준수되었는지도 결정해야 한다.

b. *특별 행정적 검토*

만일 상위 공의회가 하위 공의회의 변칙이나 비행을 알게 되는 경우 어느 때라도, 그 하위 공의회에 어떠한 기록이든 제출하도록 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c. *지시된 응답*

만일 사안들이 규칙에 어긋나게 결정되었다고 판단되면, 상위 공의회는 하위 공의회에 재고하여 교정 조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행정적 검토 외에, 검토와 교정은 권징조례에 기술된 대로 사법절차를 개시하여 시행할 수도 있다.

G-3.0109 위원회와 전권위원회

공의회들은 자체 규칙에 따라 교회 선교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유익하다고 간주하면, 그러한 위원회와 전권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으며, 차상위 공의회와 협의하에 다른 공의회들과 공동으로 그러한 기구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러한 위원회와 전권위원회를 임명할 때, 공의회들은 본 헌법의 규정 (F-1.0403, G-3.0103)에 따라 '다양성 속의 일치' 원칙을 명심해야 한다.

위원회는 시행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하거나, 공의회에서 이미 결정한 사항들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 위원회는 그것을 조직한 공의회에 정식 보고를 해야 하고, 위원회의 제안들은 공의회 결의를 요구한다. 당회 위의 상위 공의회 위원회들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과 지교회 교인들로 구성되어야 하고, 숫자는 가능한 한 동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전권위원회는 공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안을 숙고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임무를 부여한 공의회는 그 전권위원회에 부여되는 권한의 범위와 권한의 제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공의회는 두 종류의 전권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a. *사법전권위원회*

사법전권위원회는 권징조례에 따라 그 공의회 혹은 공의회들을 위한 절차의 사례를 고려하고 결정해야 한다. 당회는 개체교회의 사법전권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당회 위의 각 상위 공의회는 상임사법전권위원회를 선출해야 한다 (D-5.0000 참조). 협력하는 대회들은 G-3.0404 와 D-5.0101 의 규정에 따라 연합 상임사법전권위원회를 선출할 수 있다.

b. *행정전권위원회*

행정전권위원회가 맡은 임무는 교회의 사법절차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들을 숙고하고 결론을 내리는 일이다. 단, 그들이 위임받은 책임을 수행하는 중에 공의회의 사법결정을 요하는 사안을 발견할 때에는 임무를 부여한 그 공의회에 이를 보고하는 일은 예외다.

행정전권위원회에 위임된 기능들은 다음을 포함하지만,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1) (당회에 의해) 사역장로(장로) 와 집사의 안수와 위임, 교인을 받아들이고 제적하는 일, 개체교회내의 조직을 방문하여 내부 분쟁을 해결하는 일;

(2) (노회에 의해)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의 안수와 위임하는 일:

(3) (노회에 의해) 청빙조건의 승인, 안수와 위임을 위한 행정전권위원회를 승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노회에 입회를 원하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을 심사하여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일; 후보생의 돌봄을 맡는 일;

(4) (노회에 의해) 이민 펠로쉽을 발전시키거나, 새 교회를 조직하거나, 개체교회들을 합병하거나, 연합교회나 연방교회를 형성하는 일 (G-5.05);

(5) (노회와 대회와 총회에 의해)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직접 관할권을 가진 공의회, 개체교회, 기관들을 방문하여 [c] 분쟁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일; 단, 임무 부여한 공의회로부터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지 않는 한, 노회의 전권위원회는 목회관계를 해소할 권한이 없다 (G-2.0901);

(6) (모든 공의회에 의해) 피소자의 사망이나 관할권 파기에 의해 피소자에 대한 사법절차의 관할권이 종료되었을 때, 성희롱 혐의를 받은 그 피소자에 대한 목회적 조사 (D-10.0401c)를 하는 일; 그러한 조사가 사법절차로 이해되어서 안 되지만, 고발에 관련된 진상을 파악하고, 그 임무 부여한 공의회에 적절한 제안을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노회나 대회, 또는 총회의 전권위원회는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숫자로 구성하되 사역장로(장로)들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의 구성이 거의 동수가 되어야 한다. 전권위원회의 정족수는 임명한 공의회 혹은 공의회들에 의해 확정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과반수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 (D-5.0204 조항에 의해 제한될 때는 예외).

당회의 전권위원회는 최소한 두 명의 사역장로(장로)와 한 명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 구성되는데,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당회가 다스리는 개체교회와 위임 목회관계이거나 임시 목회관계일 수 있으며, 또는 평신도 목회자일 수도 있다.

전권위원회는 그 절차의 전체 기록을 보관하고, 그 기록을 공의회 혹은 공의회들에 제출하여 공의회 자체 기록에 병합되도록 해야 한다. 전권위원회의 결정 조치는 그 위원회를 만든 공의회 혹은 공의회들의 결정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전권위원회는 위원회로서 추가 임무를 할당받을 수 있고, 그 임무는 위원회 보고로 처리되어야 한다. [마지막 두 문단은 변동없음]

행정전권위원회의 결정은 임무를 부여한 공의회의 서기에게 보고되어야 하고, 서기는 다음 정기회의 때 이를 그 공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공의회는, 공의회에서 결정들을 변경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행정전권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행정전권위원회가 특정한 조직이나 공의회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견을 조정할 임무를 부여받았을 때, 전권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을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통보를 보내어서 그 쟁점에 대해 청문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G-3.0110 행정 직원

당회 위의 상위 공의회는 '다양성 속의 일치' 원칙 (F-1.0403)에 따라 그 조직의 선교에 필요한 인원을 채용할 수 있다. 공의회들은 차상위 공의회와 협의하에, 그 조직의 선교에 필요한 직원을 공유할 수 있다. 공의회는 행정운영지침서 (G-3.0106)에 행정 책임 직원의 선출과 기타 직원 채용 절차, 직책 책임의 설명서, 업무평가 방식과 고용해제 방식의 규정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G-3.0104).

G-3.0111 공천 절차

당회 위의 모든 상위 공의회는 선출이 요구되는 모든 직책에 사역할 사람들을 공천하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 그 절차는 공의회의 구성원을 광범위하게 대표하는 기구에 의해서, 그리고 '다양성 속의 일치' (F-1.0403)를 강조하는 교회의 결단에 따라서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G-3.0112 보험

각 공의회는 그 시설, 프로그램, 직원, 그리고 선출직과 임명직 임원을 보호하도록 재산보험과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G-3.0113 재정

각 공의회는 구역 내에서 교회의 선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고 채택해야 한다.

모든 재정장부와 기록은 일 년에 한 번씩 공인회계사나 회계절차에 정통한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철저한 재무검토를 받아야 한다. 검토자들은 회계(들)과 인척관계이어서는 안 된다. 본 항에 있는 용어는 일반적 지침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고, 전문 회계업계에서 이해되는 특정감사의 절차나 실행을 요구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도가 아니다.

G-3.02 당회

G-3.0201 구성과 책임

당회는 개체교회를 위한 공의회이다. 당회는 모든 위임목사들과 부목사들과 더불어, 교인들에 의해 선출되어 시무하는 [d] 사역장로(장로)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모든 당회원들은 투표권이 있다.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되어야 하며, 당회는 담임목사나 임명받은 당회장이 없이는 소집될 수 없다. 만일 위임목사가 없거나 위임목사가 다른 당회장을 초청할 수 없을 경우에, 노회는 당회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노회는 당회에 당회장 직이 비어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회장이 나올 수 없을 때, 규칙에 따라 당회장을 제공해야 한다.

당회는 개체교회를 다스리는 일[e]과 하나님의 주권적 활동을 세상에서 증거하도록 지도하는 책임을 진다. 그리하여 개체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증거의 공동체로 존재하며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개체교회의 증거사역을 지도하고 안내하여 나갈 때, 당회는 교회의 표지들 (F-1.0302), 장로교회들과 개혁교회들이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했던 문서들 (F-1.0303)과 교회의 여섯 가지 큰 목적 (F-1.0304)을 늘 기억하고 간직해야 한다.

이러한 책무에 비추어 당회는 다음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a. *하나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고 들려지도록 하는 일을 마련한다.*

이러한 책임은, 개체교회가 예배와 교육과 영적 양육을 위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이나 그 사역을 위해 준비하고 승인받은 다른 사람에 의해 말씀을 설교하는 일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며; 구원의 메시지와 헌신적인 제자직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면서 지역사회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계속적인 노력을 계획하고 주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적 증거에 따라서 사회적 치유와 화해의 목회를 지역사회에서 계획하고 주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에큐메니컬 노력을 시작하고 응답하는 일을 포함해야 한다.

b.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례되고 올바르게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일을 마련한다.*

이러한 책임은, 최소한 매 분기마다 주의 만찬을 축하하는 일과 예배모범의 원칙에 따라서 세례를 적절하게 집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 회중 가운데서 목회적 돌봄을 시행하는 일; 그리하여 성례전이 은혜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회중이 성례전에서 표현된 일치 안에서 살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c. *그리스도 제자들의 계약 공동체를 양육한다.*

이러한 책임은, 교인의 입회와 제적;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씩 활동교인 명단을 검토하는 일; 교인의 책임을 소홀히 하는 이들과 상담하는 일; 양육과 교육과 친교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 교인들에 의해 선출된 사역장로(장로)들과 집사들에 대한 훈련, 시취, 안수와 위임하는 일; 관대한 품성과 개인적 및 재정적 자원의 충실한 청지기직을 장려하는 일; 선교사역의 확장에 쓰일 수 있도록 개체교회의 물적 재산을 관리하는 일; 개체교회 집사와 재단이사와 모든 조직의 사역을 지도하는 일; 교회의 행정 직원을 채용하는 일; 전체교회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회중을 지도하는 일; 개체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교리의 오류나 행위의 부도덕성에 반대하는 경고와 증언을 하는 일; 그리고 권징조례에 따라서 사법절차에서 봉사하는 일을 포함해야 한다[f].

G-3.0202 타 공의회와의 관계

당회는 타 공의회에 참여함으로 전체 교회의 삶에 참여하는 특정한 책임을 가진다. 당회가 하는 다음 일들은 특별히 중요하다:

a. 개체교회의 사역장로(장로)들을 최소한 일 년 임기의 노회 총대로 선출하고, 그들의 보고를 받는 일;

b. 교회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포용성과 공정한 대표의 원칙을 명심하면서 (F-1.0403), 대회와 총회에 총대로 선출될 수 있고, 대회나 총회의 위원회나 전권위원회에서 봉사할 것을 고려해서 개체교회 사역장로(장로)들을 노회에 공천하는 일;

c. 노회와 대회와 총회의 지시와 통지내용이 숙고되는지, 그리고 구속력 있는 결정들이 준수되고 시행되는지 살피는 일;

d. 노회 대표가 방문할 때 환영하는 일;

e. 지교회 선교에 대해 공동 관심사가 될 만한 안건들을 노회에 제안하거나, 또는 노회를 통해서 대회나 총회에 제안하는 일; 그리고

f. 노회[g] 와 총회의 요구에 따라서 통계자료와 기타 정보와 자발적 재정 지원금을 그 공의회들에 보내는 일.

G-3.0203 회의

당회는 정기회의를 최소한 분기별로 개최해야 한다. 당회장[h] 은 그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나 당회원 두 명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임시회의에서 처리될 의제는 그 회의 소집 시 확실하게 기술한 안건에 국한되어야 한다. 모든 임시회의는 회의 전에 적절한 시간을 두고 통보하여야 한다. 당회는 노회의 지시가 있을 때도 소집되어야 한다. 당회는 규칙으로 회의 정족수를 마련해야 하며; 그러한 정족수는 당회장과 특정 수의 사역장로(장로) 들이나 당회에서 현재 시무 중인 사역장로(장로)들의 특정 비율을 포함해야 한다.

G-3.0204 회의록과 기록

당회 회의록은 G-3.0107 조항에 따라야 한다. 거기에는 교회에서 갖는 모든 회의, 그리고 집사들과 재단이사들과 더불어 갖는 합동회의 회의록을 포함해야 한다.

각 당회는 다음의 명부와 기록부를 유지해야 한다:

a. *교인명부*

G-1.0401, G-1.0402, G-1.0403 조항들에 따라서 세례교인, 활동교인, 관련교인의 명부가 있어야 한다. 당회는 교인이 사망하거나 타 교회나 노회로 회원권을 옮기거나 관할권의 파기선언을 하는 경우 교인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해야 한다. 당회는 교인이 명부에서 삭제되기를 요청했거나 이사했거나 또는 개체교회의 사역과 예배에 적극적인 참여를 이 년간 중단했을 때, 해당 교인의 이름을 교인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다. 당회는 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회원의 비활동 사유 때문에 이름을 삭제하기 전에 서면 통보를 보내야 한다.

b. *기록부*

당회가 허락한 세례교인의 기록부, 시무 날짜를 포함한 사역장로(장로)들과 집사들과 위임받은 목사들의 기록부, 그 외에 당회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그 밖의 기록부들이 있어야 한다.

G-3.0205 재정

G-3.0113 에 기술된 책임사항들에 부가하여, 당회는 예산을 수립하고 채택하며 개체교회 헌금의 분배를 결정해야 한다. 당회는 헌금이 기독교적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허락하고 그러한 헌금 수입과 그 지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당회는 그러한 사안들에 관한 전체 내용을 교인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당회는 당회에서 결정한 임기로 회계를 선출하며, 그 사람의 업무를 당회가 감독하거나, 그 감독을 집사회나 재단이사회에 일임해야 한다. 교회의 각종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회에 최소한 일 년에 한 번 보고하고, 요청이 있으면 더 자주 해야 한다. 당회는 교회의 표준 재무실행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라도 다음의 절차들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a. 모든 헌금은 최소한 정식으로 임명된 두 사람이나 공인 신용보증인 fidelity bonded 한 사람에 의해 계수되고 기록되어야 한다;

b. 모든 재정거래를 적절히 반영하는 재정장부와 기록이 보관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시기에 권한 받은 교회 제직의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c. 모든 재무활동은 당회나 재무감독 권한이 있는 기구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라도 그 보고는 연 한 번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

G-3.03 노회

G-3.0301 구성과 책임

노회는 특정 구역 내에서 교회의 집합적 표현을 하는 공의회이며, 그 구역 내의 모든 지교회들[i] 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로 구성된다. 노회는, 교역장로(목사)들과 사역장로(장로)들의 숫자가 동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각 당회가 몇 명의 사역장로(장로)들을 노회 총대로 선출해야 하는지 계획안을 채택하고 이를 당회에 알려야 한다. 이 계획안은 각 당회에서 최소한 한 명의 노회 총대를[j] 선출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개체교회의 크기와 함께 F-1.0403 과 G-3.0103 에 나오는 '공정한 참여와 대표성'의 원칙을 이행할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노회의 임원으로 선출된 사역장로(장로)들은 봉사기간 동안 노회 회원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노회는노회나 노회에 속한 교회에 특정한 봉사를 위해 선출된 사역장로(장로)들을 그 봉사 기간 동안 노회의 회원으로 등록하거나 또는 자체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노회의 최소한 구성은 G-3.01 과 G-3.03 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노회들에 지정된 책임들을 고려하는 대회와 총회에 의해 다르게 승인되지 않는다면 정당하게 조직된 열 개 당회들과 열 명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로 이루어진다.

노회는 구역을 통괄하여 교회치리를 책임지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개체교회들의 증거하는 일을 돕고 지원하는[k] 책임을 지며, 그리하여 모든 개체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증거의 공동체가 되도록 한다. 개체교회들의 증거사역을 지도하고 안내하면서, 노회는 교회의 표지들 (F-1.0302), 장로교회들과 개혁교회들이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했던 문서들 (F-1.0303)과 교단의 여섯 가지 큰 목적 (F-1.0304)을 늘 기억하고 간직해야 한다.

이러한 책무에 비추어 노회는 다음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a. *하나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고 들려지도록 하는 일을 마련한다.*

이러한 책임은 회원들과 협의하에 개체교회를 조직, 영입, 합병, 해산, 해소하는 일; 담임목사가 없는 개체교회를 감독하는 일; 목회관계를 수립하고 해소하는 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이들을 지도하는 일; 그 구역 내에서 교회의 삶과 선교사역이 확대되도록 에큐메니컬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세상에 전달되도록 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서 선교사역, 예언적 증거, 지도력 개발, 예배, 전도와 책임행정의 분야에서 개체교회들에 격려와 지침과 자원을 제공하는 일을 포함해야 한다.

b.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례되고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일을 마련한다.*

이러한 책임은, 노회 모임에서 주의 만찬을 최소한 일 년에 한 번 거행하고, 펠로쉽 그룹들과 개척교회와 그 구역 내 비회중 조직들의 모임에서 주의 만찬을 축하하도록 허락하는 일; 성례전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주의 만찬을 집례하거나 주관할 특정 사역장로(장로)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훈련하는 일; 그리고 성례전이 은혜의 방편으로 받아들여지고 노회가 성례전으로 표현되는 일치 속에서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기 위해 개체교회들과 노회원들에게 목회적 돌봄을 마련하는 일을 포함해야 한다.

c. *그리스도 제자들의 계약 공동체를 양육한다.*

이러한 책임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인 노회원들의 안수, 입회, 해소, 위임, 제명과 권징하는 일[1]; 평신도 목회자들을 파송하는 일; 개체교회의 평화와 조화를 촉구하고 교회불화의 원인을 조사하는 일; 관대한 품성과 청지기직과 봉사를 개발하는 일에 개체교회를 지원하는 일; 개체교회의 선교사역 개발을 지원하고 전체교회의 선교에 참여하는 일; 해산된 개체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관할권을 맡고 그들에게 타 교회로 이명을 허가하는 일; 그 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교리의 오류와 행위의 부도덕성에 반대하는 경고와 증언을 하는 일; 권징조례에 따라서 사법절차에서 봉사하는 일을 포함해야 한다.

G-3.0302 대회와 총회와의 관계

노회는 다음의 분야에서 대회와 총회와의 관계를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유지할 책임이 있다:

a. 대회와 총회에 보낼 총대들을 선출하고, 그들의 보고를 받는 일;

b. 사역장로들(장로)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을 표준 안수 고시의 채점자로 선출하는 일;

c. 대회와 총회의 지시와 통지 내용이 숙고되는지, 그리고 구속력이 있는 결정들이 준수되고 시행되는지 살피는 일;

d. 교회의 선교적 공동 관심사가 될 만한 안건들을 대회에 제안하는 일, 그리고/혹은 최소한 한 개의 다른 노회로부터 동의를 얻은 헌의안을 총회에 제안하는 일, 그리고

e. 대회와 총회의 요구에 따라서 통계자료와 기타 정보를 그들에게 연례적으로 보내는 일.

G-3.0303 당회와의 관계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과 그 구역 내 당회에 의해 선출된 총대들로 구성되는 노회는 폭넓은 지역사회에 가장 효과적 증거를 할 수 있도록 개체교회들의 사역을 조정하고 지도하며 격려하고 지원하고 자원을 공급하는 특정한 책임을 진다. 이러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노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a. 그 지역 내에서 교회의 선교를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일;

b. 새 개체교회의 위치와 회원들과 협의하에 개체교회들의 이전, 분할, 해소나 해산을 조정하는 일;

c. 노회 내의 목사 청빙과 공인 기독교 교육사들과 공인 기독교 부교육사들에 대한 최저 보수 기준을 책정하는 일;

d 개체교회 내에서 보고된 어려운 일들에 관련하여 당회와 상담하는 일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1) 보고된 어려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당회에 조언하며,

(2) 중재자로서 지원 제공을 제의하며,

(3) 당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나 당회가 해결할 능력이 없거나 해결할 의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권징조례의 절차적 보호조항을 따라서 문제를 교정할 행동을 취하는 일;

e. 당회가 그 직권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원 관할권을 인수한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충분한 청문 기회를 당회에 허용한 후, 노회는 개체교회의 당회가 자체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처리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고, 당회의 전권을 가진 행정전권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이 전권위원회는, 만일 당회가 있다면, 현존 당회의 관할권을 인수하며 그 당회는 노회가 달리 지시할 때까지 그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

f. G-4.0206 에 명시된 부동산에 관해 개체교회가 결정을 취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구할 때 이를 숙고하고 결정한다.

G-3.0304 회의와 정족수

노회는 정기 회의를 일 년에 최소한 두 번 열어야 하고, 대회의 지시에 따라 회집해야 하며, 자체 규정에 따라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노회는 자체 정족수를 정할 수 있으나[m], 그 수가 노회 회원들인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세 명과, 세 개의 다른 개체교회의 사역장로(장로) 총대 세 명 이하여서는 안된다.

G-3.0305 회의록과 기록

노회의 회의록과 다른 공식 기록들은 노회의 재산이고, G-3.0108 명시된 대로 검토의 대상이 된다. 노회 정서기는 노회 회의록과 기록을 보존하는 책임을 진다. 이러한 기록에는 노회의 회원 명부와 모든 공인 기독교 교육사들, 공인 기독교 부교육사들, 그리고 평신도 목회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G-3.0306 노회의 회원권

각 노회는 회원인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를 확정하고, 그들이 관여할 목회사역을 인준한다. 노회는 그 구역 내의 목회 인준을 위해 개발한 서면 기준을 이 결정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G-2.0503a).

노회는 노회에 입회를 바라는 각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나 후보자에게 그이나 그녀의 기독교 신앙, 신학과 성례전 및 본 교단 정치제도에 대한 견해에 관하여 심사해야 한다.

노회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을 교사, 복음전도자, 행정가, 기관목사, 그리고 노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형태의 목회사역에 임명할 수 있다. 이처럼 임명된 이들은 노회가 허락한 시간과 장소에서 성례전을 집례할 수 있다.

각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통상적으로 그의 사역이 위치한 곳이나, 그가 거주하는 지역의 노회에 입회해야 한다. **노회는 목사가 지리적 범위 밖에 있거나 또는 관할 하에 있지 않은 사업 승인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교부하도록 허락할 수 있지만, 노회는 목사가 다른 노회의 지리적 경계 내에 있는 사업에 종사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 노회의 동의없이 다른 노회의 책임하에 그러한 허가는 양 노회로부터 얻어져야 하며 매년 검토되고 갱신되어야 한다.**

미국 밖에 있는 교단에서 일하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노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 사역을 하는 동안, 본 교단 노회의 회원 자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교단의 회원권을 수락할 수 있다.

G-3.0307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 및 회중들에 대한 목사, 상담자, 조언자

노회들은 구역 내 지교회들의 생활과 사역에 관해 항상 통신교류의 문호를 열어 놓아야 하다.

각 노회는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 평신도 목회자 (위임 받은 사역 장로로 알려져 있음),—**그리고** 노회의 공인 교육사들에게 목사와 상담자로 섬기는 일; 노회 안의 지교회들,**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 평신도 목회자,** 및 공인 기독교 교육사들과 노회 사이의 관계를 촉진하는 일; 가능하고 적절하다면 노회를 대신하여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를 개발하고 유지해야 한다.

각 노회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되는 준비 절차를 지도하고 양육하고 감독하는 장치와 절차를 개발하고 유지해야 한다.

지망생들과 후보생들에 대한 노회의 감독,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회원들의 입회와 감독, 목회사역 청빙의 승인과 임시목회 사역에 초대, 담임목사 없는 개체교회의 감독, 관계의 해소, 회원의 제적, 회원 지교회들 및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과 더불어 갖는 노회와의 밀접한 관계를 촉진하는 일들을 위해, 노회는 그 권한을 노회 내의 임명된 기구들에 위임할 수 있다. 그러한 기구들은 F-1.0403 에 기술된 '다양성 속의 일치'의 원칙을 고려하면서, 대략 동수의 사역장로(장로)들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한 모든 조치는 노회의 차기 정기회의에 반드시 보고되어야 한다.

G-3.04 대회 [n]

G-3.0401 구성과 책임

대회는 그 지역 전반에 걸쳐서 교회의 집합적 표현을 하는 중간급 공의회이다. 대회는 특정한 지리적 관할내에 적어도 세 개 이상의 노회로 구성되어야 한다.

대회가 회집될 때, 대회는 노회에서 선출된 총대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각 노회는 최소한 한 명의 사역장로(장로)와 한 명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를 대회 총대로 봉사하도록 선출해야 한다. 대회는 대회에 보내는 총대 선출 계획안과 더불어 F-1.0403 과 G-3.0103에 나오는 '참여와 대표'의 원칙을 이행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두 계획안은 대회 산하 노회들의 다수에 의해 승인받는 조건이어야 한다. 각 노회의 총대들은 사역장로(장로)들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 간에 동등하게 분할되어야 한다. 의장이나 그 밖의 임원으로 선출된 각 사람은 후임자가 선출되고 위임할 때까지 대회의 회원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대회는 그 지역 전반에 걸쳐서 교회의 삶과 선교 그리고 노회들이 지교회들의 증거 사역을 지원할 때 그들의 사역과 선교를 지원하는 책임을 지며, 궁극적으로 그 지역 전반에 걸쳐서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과 증거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한다. 대회는 그 지역 전반에 걸쳐서 교회의 증거사역을 지도하고 안내하면서, 교회의 표지들 (F-1.0302), 장로교회들과 개혁교회들이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했던 문서들 (F-1.0303)과 교회의 여섯 가지 큰 목적 (F-1.0304)을 늘 기억하고 간직해야 한다.

이러한 책무에 비추어 대회는 다음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a. *하나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고 들려지도록 하는 일을 마련한다.*

이러한 책임은 노회와 협력하여, 그 지역 내에서 총회의 대국적인 전략에 일치되게 교회의 선교전략을 광범위하게 개발하는 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의 청빙, 안수 및 배치의 관련 사안에 관해 요청받을 때 회원 노회들을 지원하는 일; 노회들과 협력하여 그 지역 내에서 교회의 삶과 선교를 확대할 에큐메니컬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일; 그 지역 내에 있는 타 교단 및 기관들과 선교의 공동 활동을 촉진하는 일; 그 지역 내의 노회들 간에 그리고 노회들과 총회 사이에 통신교류를 촉진하는 일; 광범위한 지역 기반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역 노회들에 봉사를 제공하는 일을 포함할 수 있다.

b.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례되고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일을 마련한다.*

이러한 책임은 대회의 회의와 관할권 내의 기타 행사나 모임에서 주의 만찬을 축하하도록 허락하는 일; 노회들 사이에서 목회적 돌봄을 수행하는 일; 성례전이 은혜의 방편으로 받아들여지고 성례전 안에서 표현되는 일치 속에서 대회의 삶을 이끌어 가는 일을 포함할 수 있다.

c. *그리스도 제자들의 계약 공동체를 양육한다.*

이러한 책임은 노회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 양육의 사역을 제공하는 일; 선교사역, 예언적 증거, 지도자 개발, 예배, 복음전도, 책임 행정의 분야에서 노회들에 격려와 지침과 자원을 제공하는 일; 노회들의 사역을 검토하는 일; 그 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교리의 오류나 행위의 부도덕성에 반대하는 경고와 증언을 하는 일; 그리고 권징조례에 따라서 사법절차에서 봉사하는 일을 포함해야 한다.

G-3.0402 총회와의 관계

대회는 총회의 지침과 통지내용이 숙고 되는지와 구속력이 있는 결정들이 준수되고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전체교회의 선교에 공동관심사가 될 만한 방안들을 총회에 제안함으로써, 총회와의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o].

G-3.0403 노회와의 관계

각 노회는 대회에 선출된 총대들을 통해 대회의 책임과 봉사에 참여해야 한다. 대회는 그 구역 내 노회들의 사역을 지원할 책임을 가지며 그 책임분야는 다음과 같다:

a. 노회들과 협력하여 선교의 달성을 위한 공동계획과 목표를 개발하고 노회에 격려와 지도를 제공하고 노회 사역을 감독하는 일;

b. 요청이 있을 때, 노회들의 선교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일;

c. 새 노회를 조직하고, 이전에 존재한 노회들이나 노회들 일부를 분할이나 연합, 또는 합병하며, 기존 노회들의 동의를 얻어서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비지역 노회를 신설하거나 소수민종그룹이나 이민교회의 선교적 필요의 충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간주되는 어떤 다른 행동들을 취하는 일이다. 그러한 노회들은 G-3.0301의 요구사항과 합치되게 조직되어야 하며, 창설된 지역 내 대회에 책임을 져야 한다.

G-3.0404 기능 축소

대회는 소속 노회들의 2/3 다수 승인에 의해 자체 기능을 축소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대회의 기능이 사법절차의 규정과 노회들의 사역에 대해 행정검토를 하지 못할 만큼 축소될 수는 없다 (G-3.0401c). 이러한 대회는 예산을 편성하고, 상임사법전권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며, 상임사법전권위원회와 행정전권위원회 결정을 기록에 등재하는 목적을 위해서 최소한 이 년에 한 번 소집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회의 소속 노회들은 상호 협의에 의해 노회들과 대회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대회의 타 기능들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인접 지역에 있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대회들은 각 대회 소속 노회들의 2/3 다수 승인에 의해 행정업무들을 공유할 수 있고 공유된 상임사법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전권위원회의 구성원 수는, 가능한대로, 참여하는 각 대회에 소속된 노회의 숫자에 비례하도록 한다. 각 대회는 대회의 지경안에서 발생하는 권징 사건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G-3.0405 회의와 정족수

대회는 최소한 이 년에 한 번 정기 회의를 개최해야 하고, 총회의 지시에 따라 회집해야 하며, 자체 규정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대회는 자체 정족수를 설정할 수 있으나, 최소한 세 노회를 대표하거나 회원 노회의 1/3 을 대표하는, 어느 편이던지 큰 편인, 동수의 사역장로(장로)들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G-3.0406 회의록과 기록

대회는 그 진행 절차에 관한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고, 일반 검토와 통제를 위해 다음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대회는 회원 노회의 숫자와 대체로 그 관할 지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중요한 변동사항을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G-3.05 총회

G-3.0501 구성과 책임

총회는 [p] 전체교회의 공의회이며, 미국장로교의 대회들, 노회들, 당회들과 개체교회들의 일치를 대표한다. 총회는 노회에 의해 선출된 동수의 사역장로(장로)들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들 지역의 다양성을 (F-1.0403, G-3.0103) 반영하는 가운데 아래 비율로 선출되어야 한다:

회원 8,000 명이나 그 이하:	사역장로(장로) 1 명,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1 명
8,001–16,000:	사역장로(장로) 2 명,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2 명
16,001–24,000:	사역장로(장로) 3 명,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3 명
24,001–32,000:	사역장로(장로) 4 명,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4 명
32,001–40,000:	사역장로(장로) 5 명,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5 명
40,001–48,000:	사역장로(장로) 6 명,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6 명
48,001 명이나 그 이상:	사역장로(장로) 7 명,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7 명

총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은 후임자가 선출되고 위임할 때까지 총회의 회원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총회는 전체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과 증거의 공동체가 되는데 궁극적 목표를 두고서, 모든 개체교회들과 모든 공의회들 사이에 일치, 공동체, 선교의 결속을 이루어 간다. 전체교회의 증거사역을 지도하고 안내하면서, 총회는 교회의 표지들 (F-1.0302), 장로교회들과 개혁교회들이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했던 문서들 (F-1.0303)과 교회의 여섯 가지 큰 목적 (F-1.0304)을 늘 기억하고 간직해야 한다.

이러한 책무에 비추어 총회는 다음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a. *하나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고 들려지도록 하는 일을 마련한다.* 이러한 책임은 교회의 포괄적 선교전략과 우선순위를 세우는 일; 타 교단들과 에큐메니컬 관계와 교신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일; 본 교단의 신앙과 직제에 일치하는 타 교단 기구와, G-5.02 와 G-5.03 조항의 조건에 따라, 연합하거나 그런 기구를 본 교단의 관할권 안으로 영입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고 하나님 백성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할 그러한 선교 사역자의 임명, 파송과 지원을 하는 일을 포함해야 한다.

b.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례되고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일을 마련한다.* 이러한 책임은 총회 회의들과 관할권 내의 다른 행사나 모임에서 주의 만찬을 축하하도록 허락하는 일; 총회의 권한을 받은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에큐메니컬 모임에서 주의 만찬의 축하에 참가하는 것을 허락하는 일; 그리고 성례전이 은혜의 방편으로 받아들여지고 교회가 성례전에서 표현되는 일치 속에서 살아가도록 전체 교회에 걸쳐서 목회적 돌봄을 수행하는 일을 포함해야 한다.

c. *제자들의 계약 공동체를 양육한다.* 이러한 책임은 전국 수준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되는 그러한 봉사와 자원과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일; 공동의 관심 사안들을 전체 교회에 알리는 일; 교회와 세상에서 일어나는 교리의 오류와 부도덕성에 반대하는 경고와 증언을 하는 일; 노회들이 요구하는 교육과 양육의 봉사를 제공하는 일; 선교, 예언적 증거, 지도력 개발, 예배, 복음전도, 그리고 책임행정 분야에서 노회에 격려와 지도와 자원을 제공하는 일; 교회와 세상을 감화시키고 도전하고 교화하는 진리와 비전의 사안들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분별하고 제시하는 일; 권징조례에 따라서 사법적 사건을 다루는 일; 본 헌법에 따라서 총회에 상정된 논쟁을 해결하고 거기에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조언과 지시를 하는 일; 현재 구속력을 가진 규례서의 최신 해석과 더불어, G-6.02 조항에 따르거나 교정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내리는 총회 상임사법전권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전체 교회를 구속하는 방식으로 *규례서*의 최신판을 권위적으로 해석하는 일; 그리고 총회 정서기 사무처를 설치하고 유지하는 일을 포함해야 한다.

G-3.0502 타 공의회와의 관계

총회는 다음 사안에서 노회들 및 대회들과 관계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

a. 노회들과 대회들이 헌법상의 책임을 수행함에 그들에게 조언과 자원을 제공하는 일;

b. 대회들의 사역을 감독하는 일;

c. 대회들이 본 헌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면서 대회의 기록을 검토하는 일;

d. 새 대회를 신설하고, 기존하는 대회들이나 대회 일부를 분할하거나 연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합병시키는 일;

e. 노회들이나 노회들 일부를 조직하거나 분할하거나 연합하거나 합병하는 대회의 결정을 승인하는 일.

G-3.0503 회의와 정족수

총회는 적어도 이 년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최소한 다섯 개 대회에서 15 개 이상의 노회를 대표하고, 직전 정기총회의 사역장로(장로) 총대들 중에서 최소한 1/4 인원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총대들 중에서 최소한 1/4 인원이 요청하거나 동의할 때, 총회장이나, 총회장 유고시에는 총회 정서기가 임시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임시총회의 총대들은 직전 정기총회에 선출된 총대들이나 대리총대들이어야 한다. 임시총회는 개회 전 적어도 60 일 이상 공고되어야 하고, 회의의 소집 목적이 명시되어야 한다. 공고에 제시된 의안 외 다른 의안은 처리될 수 없다.

총회의 정족수는 100 명의 총대들이어야 하는데, 그들 중 50 명은 사역장로 (장로)들이고 50 명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이어야 하며 최소한 1/4 대회들에 속한 노회들을 대표해야 한다.

제 4 장
교회 권한과 민사 권한

G-4.01 법인체와 재단이사

G-4.0101 법인체와 권한

민사법이 허용한다면, 각 개체교회는 법인체를 조직하고 유지해야 한다. 법인체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회중에 의해 개인 이사들이 선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단이사들은 집사와 사역장로(장로)들의 직제사역 선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교회의 교인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임기는 G-2.0404 조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조직된 법인체나 개인 이사들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교회를 위한 동산 혹은 부동산을 접수, 보유, 저당, 관리 및 이전하되, 부동산의 구매, 매각, 저당에 관계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재단이사회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소집된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만 처리해야 하고; 이러한 재산을 받아 명의 변경을 하고; 그 재산의 명의를 보존하고 지키며; 교회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한 영구 특별기금을 관리한다. 이 모든 권한 행사는 당회의 권위 아래 이루어지고 미국장로교 헌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재단이사들의 권한과 의무가 당회나 집사회의 권한 및 의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민사법이 허용한다면, 각 노회와 대회와 총회는 법인체를 조직하고 유지하며, 재단이사회를 구성하는 방식은 자체 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조직된 법인체나 개인 이사들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즉 공의회를 위하여, 공의회의 지시에 따라 동산 혹은 부동산을 접수, 보유, 저당, 관리 및 이전을 한다.

G-4.0102 법인체의 회원

교회 혹은 공의회의 회원권 자격자들만이 법인체의 회원이 되고, 이사로서 선출될 자격을 가진다. 법인체가 이사 선출 방식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개체교회 당회의 사역장로(장로)들은 민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법인체의 이사가 된다. 노회와 대회와 총회는 각 공의회의 회원권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재단 이사를 선출하는 자체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G-4.02 교회 재산

G-4.0201 선교를 위한 도구로서 재산

미국장로교와 산하 공의회들 및 소속 기관들, 그리고 개체교회들의 재산은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이다.

G-4.0202 재산에 관한 결정

본 교단 내에서 결정이 내려지고, 검토되고, 교정되는 방식을 명시하고 있는 본 헌법의 모든 조항이 재산에 관한 모든 문제에 적용된다.

G-4.0203 신탁된 교회 재산

개체교회, 노회, 대회, 총회, 또는 미국장로교에 의해서 혹은 그들을 위하여 소유된 모든 재산은 그 법적 명의가 법인체에 있든지 재단이사(들)나 비법인체에 있든지 간에, 또 그 재산이 개체교회나 상위 공의회의 프로그램에 사용되든지 혹은 소득 창출을 위해 보유하고 있든지 간에 모든 재산은 미국장로교의 사용과 유익을 위해 신탁 보관된다.

G-4.0204 헌법에 어긋나는 재산의 사용

미국장로교의 개체교회가 소유하고 있거나 그 교회를 위해 보유한 재산은 그 교회가 미국장로교의 개체교회로서 헌법대로 그 재산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노회의 규정에 따라 그 재산을 소유, 사용, 적용, 명의 이전, 매각되어야 한다.

G-4.0205 해소되었거나 없어진 교회의 재산

개체교회가 노회에 의해서 정식으로 해체되었거나 혹은 교인들이 흩어졌거나 교회 사역의 포기 혹은 그 밖의 이유로 말미암아 없어진 교회의 재산은 노회가 지시, 제한, 지명하는 용도, 목적, 신탁을 위해 보유, 사용, 적용되어야 한다. 아니면 그런 재산은 미국장로교 헌법에 따라 노회가 지시하는 대로 매각되거나 처분될 수 있다.

G-4.0206 교회재산의 매각, 저당 혹은 임대

a. *개체교회 재산의 매각 혹은 임대*

개체교회는 그 교회의 당회를 통하여 전달된 노회의 서면 허락없이는 여하한 부동산을 매각, 임대, 저당하지 못하며, 저당이나 다른 조건으로 부동산 구매을 하지 못한다.

b. *개체교회 재산의 임대*

개체교회는 그 교회의 당회를 통하여 노회의 서면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예배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회의 부동산을 임대하지 못하며, 교회의 다른 부동산도 5년 이상 임대하지 못한다.

G-4.0207 분열 시의 개체교회의 재산

개체교회의 미국장로교에 대한 관계는 오로지 노회가 헌법적인 절차를 걸쳐 관계 해소를 할 때에만 단절될 수 있다 (G-3.0303b). 개체교회의 교인들 간에 분열이 생겼을 때, 노회가 이를 화해시킬 수 없거나 미국장로교 안에 속하는 두 개의 교회로 나누지 못할 때에는, 노회는 분열된 파벌 중 어느 그룹이 미국장로교에 속하는 참된 교회인가를 밝혀서 그 그룹에 재산권을 허락하는 일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결정은 분열 당시 어느 쪽이 개체교회 내에서 다수표를 얻었는 가에 의존하지 않는다.

G-4.0208 예외

본 장의 규정은 미국장로교에 속한 모든 개체교회에 적용된다. 단, 예외는 다음과 같다. 즉 미국남장로교(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와 미국연합장로교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가 재연합하여 미국장로교 (Presbyterian Church U.S.A.)로 통합되기 이전, 그 교회가 속한 교단 헌법의 유사한 규정에 종속되지 않았던 어느 개체교회가 미국장로교의 설립 이후 8년 이내에 정식으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이런 규정으로부터 면제받기를 투표하고 그런 투표 내용을 소속 노회에 통보하면, 본 장의 규정으로부터 면제받게 된다. 그렇게 면제받도록 투표한 개체교회는 미국장로교 설립

직전에 종속된 헌법의 규정하에서 그 재산의 명의를 소유하며 법인체의 특권과 재산 소유권을 행사한다. 본 항은 개정될 수 없다 (G-6.05).

G-4.03 비밀보장과 특권

G-4.0301 신뢰와 비밀보장

목회적 돌봄을 이행하면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과 제한된 목회사역에 위임된 평신도 목회자들은 (G-2.10) 신뢰와 비밀보장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돌봄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 그리고 그러한 돌봄에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자신의 비밀이야기를 한 사람이 그 비밀을 공개해도 좋다고 명백하게 승낙을 하였으면,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나 평신도 목회자는 그 비밀을 공개할 수도 있으나 꼭 공개할 필요는 없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나 평신도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 신체적으로 해를 받을 가능성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설 때에는, 비밀정보라도 공개할 수 있다.

G-4.0302 의무적인 보고

본 교단에서 직제사역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회원과 본 교단과 개체교회에서 종사하고 있는 모든 공인 기독교 교육사들은, 미성년자나 정신능력이 박약한 성인에 대한 신체 학대, 유기, 또는 성적 희롱이나 학대의 위험을 알고 있을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교회 당국과 민간 사법당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1) 이러한 정보를 G-4.0301에 명시된 비밀보장 컴뮤니케니션이 아닌 방법으로 입수했을 때, 2) 보고해야 할 사람이 법에 따라 비밀 보장 컴뮤니케이션 의무에 묶여 있지 않을 때, 또는 3) 보고해야 할 사람이 판단하기를 장차 신체적 위해나 학대의 위험이 있다고 믿을 때이다.

제 5 장
에큐메니시티와 연합

G-5.01 에큐메니컬 참여

G-5.0101 에큐메니시티

미국장로교는 모든 차원에서 그리스도 몸인 교회의 일치를 더욱 가시화하도록 추구하며, 다른 교단과의 대화, 협력, 그리고 행동을 같이 할 기회를 열어 두고 개방할 것이다. 또한, 다른 개혁파 교단과 기독교 교파들과의 관계를 주도하고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힘쓸 것이다.

G-5.0102 종교 간 관계

미국 장로교는다른 종교 전통에 속한 단체들 및 그러한 사람들과의 정중한 대화와 상호 관계를 위한 기회들에 모든 차원에서 문을 열어 놓고 추구할 것이다. 미국 장로교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의 온전함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밝혀주는 표시이며 수단이라는 믿음때문이다.

G-5.0103 세속적 기관들

미국장로교는 이 세상에서 교회의 선교에 도움이 주는 것이라면, 세속 기관들이나 조직들과 대화 및 공동행동을 위한 접근을 모든 차원에서 시도하고 대응하는데 힘쓸 것이다.

G-5.02 타 교단과의 관계

G-5.0201 통신관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를 추구하면서 (G-5.0101), 총회는 그러한 취지와 목적을 위한 약정서, 협정서 혹은 선언문을 타 기독교 교파와 함께 개발하는 것을 허락하고 지시할 수 있다. 총회에 의해 허락되고 승인되는 이러한 결정에는 세례의 상호 인정과 질서있는 목사의 교환 등이 포함되나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본 교단의 모든 공의회가 다른 기독교 교파들과 상호 격려하고 권고하는데 함께 사역하는 모든 기회에 동참하도록 장려되고 있다.

미국장로교 총회는 총회 사무국(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을 통하여 아래 교단들의 최고 공의회나 치리기관들과 통신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a. 미국 밖에 있는 교단으로서 본 교단과 오랜 역사적 유대관계가 있는, 총회가 인정하는 교단들

b. 미국장로교가 회원으로 있는 에큐메니컬 연합체의 회원 교단들

c. 공식적인 에큐메니컬 대화를 하도록 총회가 승인한 교단들.

G-5.0202 완전교류

미국장로교의 총회는 총회가 인정하는 그러한 교단들과 완전 교류관계에 있다. 완전교류는 에큐메니컬 합의서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이, 세례의 상호 인정과 질서있는 목사들의 교환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 교단의 공의회들은 미국장로교와 완전 교류 관계에 있는 교단들과 상호 격려하고 권고하는데 함께 사역하는 모든 기회에 동참하도록 장려되고 있다.

G-5.0203 에큐메니컬 선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일치를 추구함에 있어 (F-1.0302a, G-5.0101), 총회 사무처는 위에 언급한 관계에 추가하여, 공식적인 합의서와 에큐메니컬 일치선언문을 타 기독교 교파들과 함께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선언문과 약정서는 상호협력을 위한 안내책자로서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노회가 이를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수의 투표를 위해 노회로 보내져야 한다.

G-5.03 완전한 조직적 연합

타 교단과 미국장로교와의 완전한 조직적 연합은 다음과 같은 승인 절차를 거친 후에 그 효력을 가진다:

a. 제안된 연합안에 대해 총회가 승인하고 그 권고안을 노회로 보냄;

b. 노회의 2/3가 서면으로 승인함;

c. 차기 총회 또는 연합제안계획에 명시된 별도 총회에서 승인되고 완결시킴.

G-5.04 연합 노회

미국장로교의 노회는 다른 개혁파 교단에 속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비등한 공의회 혹은 치리회와 연합회를 형성할 수 있으며 [a], 각기 소속한 대회나 비등한 공의회 또는 치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G-5.0401 헌법적 권한

연합노회는 연합에 참여한 노회가 속한 각 교단의 헌법에 순복해야 한다. 양 교단의 헌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두 개의 헌법 중에 의무규정을 허용규정에 항상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서로 상충하는 의무 규정이 있을 때는, 연합노회는 양 교단의 최고 공의회 혹은 치리회에 헌법적 유권해석이나 헌법개정을 통하여 상충하는 것을 해결해 주도록 헌의하여야 한다.

G-5.0402 연합 계획

연합노회는 연합에 참여하는 각 노회나 치리회에서 연합노회 계획을 2/3 의 표결로 채택하므로써 조직될 수 있다. 연합하는 각 조직의 관할권을 가지는 대회나 치리회가 그 연합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G-5.05 선교를 위한 교회 연합

본 교단의 개체교회가 선교 전략상 타 기독교 교파에 속한 개체교회와 함께 연합선교 교회를 만드는 것을 노회가 승인할 수 있다. 다만, 함께 연합선교를 하고자 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인정하고,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며, 세례와 성만찬의 성례전을 집행하는 교회이어야 한다[b].

a. 이러한 연합선교 교회는 연합에 참여하는 각 교단의 헌법에 순복하여야 한다. 교단들의 헌법이 서로 다를 때에는, 헌법 중에 의무규정이 허용규정에 항상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서로 상충하는 의무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체교회 공의회 (당회 혹은 대등한 치리회)는 차상위 공의회나 치리회에 상충하는 것을 해결해 줄 것을 청원해야 한다.

b. 이러한 연합선교 교회는 연합에 참여하는 개체교회가 합법적으로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2/3 의 찬성으로 승인되고, 또 개체교회가 속한 노회 혹은 비등한 공의회나 치리기관에서 승인을 받은 계획에 따라 조직되어야 한다. 연합선교 교회 계획의 어떤 규정도 미국장로교의 헌법을 수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안된다.

c. 연합선교 교회에 관계된 개체교회와 연합에 관련된 타 교단의 차상위 공의회 혹은 치리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노회는 미국장로교와 완전 교류 혹은 교신관계에 있는 교단으로부터 개체교회를 회원교회로 받아들이거나 그 교단으로 개체교회를 이전시킬 수도 있는데, 해당 개체교회의 선교 전략상 이러한 이전이 더 좋다고 판단될 때이다 (G-3.0303b).

제 6 장
헌법 해석 및 개정

G-6.01 개혁

미국장로교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혁되었고, 또 항상 개혁되는 교회”가 되기를 추구한다 (F-2.02). 이러한 결단에 비추어, 다음의 헌법 해석과 수정 절차는 교회가 보다 충성스러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된다.

G-6.02 헌법 해석

총회는 규례서에 대한 권위적인 해석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 항에 기술된 방식으로 또는 교정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상임사법전권위원회의 판결에 의하여 권위적인 해석이 내려질 때에는 교회의 공의회들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총회는 구 명으로 구성된 헌법자문위원회를 선출하되 가능한 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사역장로 (장로)의 수가 동수가 되도록 한다. 총회 서기장는 투표권이 없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헌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만 육 년의 임기를 채운 사람은 육 년의 임기가 만료된 후, 사 년이 지나기 전에는 재선출될 수 없다. 총회는 헌법자문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대해 자체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규례서에 대한 총회의 해석을 요구하는 교단의 공의회들은 모든 질문을 다음 총회가 열리기 적어도 120 일 전까지 총회 서기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총회 서기장은 이 모든 질문을 헌법자문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다만, 사법전권위원회에 계류 중인 현안에 관련된 질문들은 제외된다. 헌법자문위원회는 이에 대한 보고서와 권장안을 차기 총회에 제출하되 적어도 총회 개회 60 일 전까지 전달해야 한다.

G-6.03 *신앙고백서* 개정

본 교단의 신앙고백 문서들에 대한 개정은 [a] 다음 절차들을 완전히 이행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a. *신앙고백서* 개정안을 교회가 연구하도록 총회에서 승인한다.

b. 총회는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15 인 이상의 사역장로 (장로)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임명하되, 한 대회에서 이 명 이상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 위원회는 개정안을 발의한 위원회 혹은 공의회와 협의해야 하고 다음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c. 차기 총회는 연구위원회의 보고를 심의하여 제안된 개정안을 승인하고, 이를 노회에 보내어 투표하도록 한다.

d. 제안된 개정안이 2/3 노회들에 의해 승인되었다는 서면 통지를 받는다.

e. 헌법 개정에 필요한 2/3 노회들의 승인이 접수된 다음에, 차기 회집되는 총회는 제안된 개정안을 승인하고 법문화한다.

G-6.04 *규례서* 개정

규례서의 개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완전히 이행할 때에만 가능하다.

a. 모든 규례서 개정안은 다음 총회가 열리기 적어도 120 일 전에 총회 서기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b. 총회 서기장은 그러한 모든 개정안을 헌법자문위원회(G-6.02)에 회부해야 하고, 이 위원회는 언어의 명확성과 일관성, 그리고 미국장로교 헌법의 다른 규정과의 모순이 없는지에 대해 개정안을 검토해야 한다. 총회 개회일로부터 적어도 60 일 전까지, 자문위원회는 검토 결과와 함께 권장사항을 총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권장사항에는 제안된 개정안의 수정 버전 혹은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개정안을 다루는 위원회에 자문해 주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총회는 헌법자문위원회의 보고와 권장 사항을 듣고 참고하기 전에는 어떤 개정안도 고려해서는 안 된다.

c. 제출된 개정안은 동일한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각 노회에 회부하여 투표를 하도록 한다.

d. 노회들은 제안된 개정안을 노회에 회부한 총회가 산회한 후 1 년 이내에 투표결과를 총회 서기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e. 총회 서기장은 규례서의 개정안에 대해 전체 노회의 과반수가 찬성하였다는 서면 보고를 받는다. 이렇게 승인된 개정안은 그 개정안을 노회에 회부한 총회가 산회한 지 1 년이 될 때, 발효하게 된다.

G-6.05 예외 조항

이 헌법의 G-4.0208 조항들은 개정될 수 없다.

G-6.06 특별조항의 개정

신앙고백 문서들의 개정 및 완전한 조직적 연합 (G-5.03)을 이루기 위한 절차는 해당 절차들이 기술하고 있는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만이 개정될 수 있다.

예배 모범

Directory for Worship

예배 모범

"†"—예배 모범에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교역장로라고도 부름)**에게 속한 것으로 설명된 기능들은 특별한 상황 속에서 사역장로들이 수행할 수도 있다.

머리말

본 예배 모범은 교회의 신앙, 삶, 그리고 예배는 분리될 수 없다는 신념을 반영한다. 예배 모범의 신학은 성경을 근거로 하고, 미국장로교 *신앙고백서*의 가르침을 따르며, 에큐메니칼 관계들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 예배 모범은 전통의 풍부한 유산과 문화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권장한다.

예배 모범은 고정된 예배 순서들과 기도 모음집을 지닌 예식서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 예배의 기반이 되는 신학을 설명하고, 예배에 적합한 양식을 설명하며, 그리고 예배와 그리스도인의 삶, 증언 및 봉사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한다.

본 예배 모범은 개체 교회들과 미국장로교 공의회들 안에서 예배의 기준과 모범을 제시한다. 예배 모범은 개혁 예배를 위한 비전으로서, 가능성들을 제시하고, 개발을 권유하며, 그리고 지속적인 개혁을 권장한다. 우리 예배를 규제하는 헌법 문서로서, 예배 모범은 본 교회에서 권위를 가져야 한다.

성경, *신앙고백서*, 그리고 *규례서*의 다른 항목들을 언급하는 참조사항들은 괄호에 제공되며, 기타 성경, 신앙고백, 및 에큐메니칼 자료들은 각주로 표시된다.

제 1 장: 기독교 예배 신학

W-1.01: 기독교 예배: 서문

W-1.0101: 하나님께 영광

기독교 예배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특별히 말씀과 성례전의 은사를 통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예배로 모인다. 우리는 세상에 거하시며 활동하시는 동일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섬기는 삶으로 보내심을 받는다.

W-1.0102: 은혜와 감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는 감사로 응답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선언하신다;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다. 하나님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다; 우리는 새 생명의 은사를 즐거워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인간이 응답하는 이러한 리듬은—성경, 인류 역사, 그리고 일상의 사건 속에서 얼마든지 발견된다—기독교들의 신앙, 삶, 그리고 예배 모두를 형성한다.

W-1.0103: 하나님의 언약

구약 성경은 모든 세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이야기를 전한다. 아담과 하와, 노아와 그의 가족, 아브라함과 사라, 모세와 아론, 그리고 다윗의 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신앙으로 응답하도록 부르시며 영원하고도 신실한 약속들을 하셨다.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영원한 새 언약을 맺으셨다.

W-1.0104: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사람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간추린 신앙고백 11.2)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창조 시에 말씀되셨고, 성경에서 약속되고 계시되었으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육신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능력으로 부활하셨으며, 세상의 구속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심판하고 영원히 다스리기 위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약과 신약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말과 행위로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 보여주신 하나님 은혜로운 행위의 구체적 형상이시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한 우리 응답의 모범이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W-1.0101: 사 6:3; 계 4: 8, 11; 7:12; 니케아 신조 1.1; 사도신경 2.1; 스코틀랜드 3.01; 하이델베르크 4.122; 제 2 헬베틱 5.023; 웨스트민스터 6.011–6.013, 6.112–6.113; 스코틀랜드 7.001, 7.045–7.048; 대요리문답 7.111, 7.213–7.216, 7.289; 1967 년 9.35–9.37; 벨하 10.1; 간추린 신앙고백 11.1.

W-1.0102: 시 136:1; 렘 33:1–9; 롬 6:1–11; 8:12–17; 요일 4:19; 하이델 4.002; 1967 년 9.17; 간추린 11.4.

W-1.0103: 창 2–3; 9:1–17; 15–17; 출 19–31, 34; 삼하 1:1–17; 렘 1:4–10, 31:31–34; 히 8:8–12; 스코틀랜드 3.02–3.06; 웨스트민스터 6.037–6.042; 1967 년 9.18–9.19; 간추린 11 .3.

W-1.0104: 요일; 롬 10; 고후 4; 빌 2; 골 1; 히 1–2; 계 19; 니케아 1.2; 사도신경 2.2; 스코틀랜드 3.06–3.11; 제 2 헬베틱 5.001–5.004, 5.062–5.079; 웨스트민스터 6.043–6.50; 바르멘 8.10–8.15; 1967 년 9.07–9.11, 9.21–26, 9.32–33; 간추린 11.2.

온전하고 분명한 계시를 발견한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라고 부르시는지를 발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와 섬김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W-1.0105: 성령

성령은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간추린 신앙고백 11.4)으로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성령께서 창조의 새벽에 어떻게 운행하셨고, 세례 시에 그리스도께 어떻게 기름을 부으셨으며, 예수님을 어떻게 죽음에서 일으키셨고, 오순절에 어떻게 교회에 강림하셨는지 설명해 준다. 바로 같은 성령께서 교회와 세상의 일상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를 나타내며, 우리가 감사로 응답할 힘을 주신다. 성령은 예배를 위해 우리를 모으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준비시키시며, 성례전으로 우리를 찾아 양육하시고, 섬김을 위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교인들에게, 성령은 교회 사역과 세계 선교를 위해 은사들을 주신다.

W-1.0106: 말씀과 성례전

기독교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과 성례전의 은사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거하시며 활동하신다. 성경 말씀이 읽혀지고 선포되는 곳마다 그리고 세례와 성만찬이 거행되는 곳마다, 교회는 살아있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신앙의 신비를 선포한다. 이러한 은혜의 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속시키시며,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질서를 부여해 주시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신다. 이와 같은 예배의 행위들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삶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W-1.0107: 예배와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의 은사는 교회를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고 온전케 한다. 하나이며,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그리고 사도적인 교회의 사명은 세례로부터 흘러나와, 주님의 성만찬에서 양육되고, 또한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섬기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회 사역은 세례반 font 에서 시작되어, 성찬단으로부터 세워지며,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모습을 갖추게 된다.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일상 생활의 중심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니는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을 증거하는 주된 방법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말씀과 성만찬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다.

W-1.0105: 요 14:15–31; 고전 12:1–11; 니케아 1.3; 사도신경 2.3; 스코틀랜드 3.12–3.13; 제 2 헬베틱 5.005; 웨스트민스터 6.051–6.054, 6.183–6.186; 1967 년 9.20, 9.31; 간추린 11.4.

W-1.0106: 눅 24:13–35; 스코틀랜드 3.18; 하이델베르크 4.065; 제 2 헬베틱 5.134–5.135; 웨스트민스터 6.078–6.080, 6.140–6.145; 소요리문답 7.088; 대요리문답 7.264; 바르멘 8:16–8.18, 8.26; 1967 년 9.27, 9.30, 9.35–9.37; 간추린 11.4.

W-1.0107: 사 55:1–13; 마 28:1–20; 요 21:15–19; 고전 13:13; 고후 13:13; 엡 4:1–16; 니케아 1.3; 바르멘 8.26; 1967 년 9.48–9.52.

W-1.02: 시간, 공간, 및 물질

W-1.0201: 창조와 구속

시간, 공간, 그리고 물질은 모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되었으며,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었다. 기독교 예배를 통해—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물질적인 봉헌으로—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간, 공간, 그리고 물질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다.

W-1.0202: 시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다.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린 매일 예배를 반영하고 있는 반면, 율법서는 일주일 중 하루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선지자들은 주님의 날에 있을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를 예언하였다. 모든 복음서는 주 첫 날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한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고 주장하면서 이 날을 주님의 날 the Lord's Day 이라 칭하게 되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선포하며 성례전을 거행하기 위해 모여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시작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일주일의 첫 날에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떡을 떼는 일을 이어가고 있다.

기독교가 예배를 드려 온 2000 년 동안, 교회는 절기를 지키는 방법들을 개발해왔는데, 그것들 중 많은 방법들은 예수님께서 지키셨던 이스라엘의 절기 feasts 와 금식 fasts 으로부터 응용된 것들이다. 이러한 교회력의 유형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 이야기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사명을 섬기게 한다. 해 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incarnation 에 집중하면서, 주님의 탄생 Nativity 및 주현절 Epiphany 을 포함하는 대림절 Advent 및 크리스마스의 계절과 함께 시작된다. 주현절 후에는 예수님의 세례와 산상변모 Transfiguration 를 기념한다. 교회력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신비이며 사순절 Lent 및 부활절 절기와 함께 재의 수요일 Ash Wednesday 과 위대한 삼일 Great Three Days—세족 목요일 Maundy Thursday, 성 금요일 Good Friday, 부활 전야 Easter Vigil—및 주님의 부활 Easter 과 승천 Ascension, 그리고 오순절 Pentecost 을 포함하고 있다. 오순절 후에는, 삼위일체 주일 Trinity Sunday 과 만민 성도의 날 All Saints Day 과 그리스도 통치 the Reign of Christ 를 기념한다.

매일 기도의 유형은 또한 교회와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 수세기 동안 내려 온 기독교 전통,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기도 생활을 연결시켜 준다. 큰 모임, 소 그룹, 혹은 가정에서, 매일 기도는 공적 예배와 개인적인 삶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여주며, 우리에게 매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는 시민 사회 및 농업 생활의 주기, 문화 및 가족 축하 행사, 중요한 인물 및 사건 기념, 그리고 교회의 프로그램들과 활동들을 반영하는 다른 의식들을 예배에서 기념한다. 단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그러한 의식들을 지키는 것은 적절하다.

W-1.0201: 롬 12:1–2; 1967 년 9.16.

W-1.0202: 창 1:1–5; 2:1–3; 시 1:2, 92:1–4; 사 58:1–14; 욜 2:1–16; 눅 24:13–35; 행 1:14; 2:42; 3:1, 10:9, 20:7; 롬 14:5–6; 골 2:16–17; 계 1:9–11; 하이델베르크 4.103; 제 2 헬베틱 5.223–5.226; 웨스트민스터 6.118–6.119; 소요리문답 7.057–7.062; 대요리문답 7.225–7.231.

W-1.0203: 공간

하늘과 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다. 구약 성경은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을 만난 돌 제단, 성막, 성전, 그리고 다른 장소들을 묘사한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회당과 성전에서 예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광야, 언덕, 그리고 호숫가에서 예배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에 한정 될 수 없음을 보이셨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성전, 회당, 가정, 지하동굴 및 감옥에서 예배하였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었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것과 그리고 말씀 및 성례전 안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였다. 후에 교회는 예배로 모이기 위한 특별한 장소들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오늘날까지, 기독교 예배를 위한 공간은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일차적으로 확립된다.

예배를 위해 구별된 공간은 공동체를 격려하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우리를 안으로 불러 모으시고 밖으로 보내시는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이어야 한다. 기독교 예배를 위한 공간에는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곳과, 세례반 [font] 혹은 세례장 [pool], 그리고 주님의 만찬을 위한 성찬단 [table] 이 있어야 한다. 말씀과 성례전을 표현해주는 이러한 상징들의 배열은 서로의 연관성과 기독교 예배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중심성을 전달한다.

W-1.0204: 물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서 물질의 선물들을 사용한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했던 다양한 사물들을 말해준다: 언약궤, 세마포와 집기들, 기름과 향료, 악기, 곡물, 과일, 그리고 동물 등이다. 동시에 선지자들은 우상숭배의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물체들을 신의 임재로 착각함이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평범한 사물들—그물과 물고기, 병과 기름, 수건과 대야, 물, 떡, 그리고 포도주—을 그의 가르침과 치유와 먹이는 사역에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보여준다. 그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셨다.

예수님을 따르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 자신의 희생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희생에 대한 상징으로서 세 개의 기본적인 생활 요소들—물, 떡, 그리고 포도주—을 취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성례전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활동과 그것에 감사하는 우리의 응답의 표시이다. 세례와 성만찬의 성례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취하시고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양육하신다; 그에 응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충성을 다짐하고 우리의 몸을 찬양의 산 제물로 드린다.

W-1.0203: 창 28:18; 출 25–31; 왕하 6–8; 스 6:13–22; 시 24:1; 눅 2:22–52; 4:16–21; 요 4:20–24; 6:1–14; 행 2:43–47; 16:25–34; 고전 3:16–17; 벧전 2:4–5; 제 2 헬베틱 5.214–5.216; 웨스트민스터 6.117.

W-1.0204: 창 1:31; 출 25–31, 32; 시 50:7–15; 사 1:11–17; 암 5:21–24; 미 6:6–8; 마 26:6–13; 막 14:22–25; 눅 5:1–11; 요 13:1–20; 롬 12:1–2; 고전 11:17–34; 12:12–13; 스코틀랜드 3.21; 하이델베르크 4.066–4.068, 4.096–4.098; 제 2 헬베틱 5.020–5.022, 5.169–5.184; 웨스트민스터 6.149–6.153; 소요리 7.092–7.093; 대요리 7.272–7.274; 1967 년 9.50.

예배에서 물질적인 예물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행위로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표현이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봉헌을 실천함은 또한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에 대한 우리의 청지기 직을 반영한다. 우리는 땅과 그 안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유념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사명을 위해 사용하도록 십일조와 헌금을 드린다.

우리는 또한 예배에서 음악, 미술, 연극, 율동, 미디어, 배너, 제의, 집기, 비품, 그리고 건물 등을 포함하는 창조적 예물을 드린다. 하지만 이러한 예물들 자체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다. 그것들은 단순한 형태와 기능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만, 예배를 위해 적절한 것이 될 수 있다.

W-1.03: 언어, 상징, 그리고 문화

W-1.0301: 말씀이 육신이 되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존재케 하신다. 성육신을 통하여, 같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특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특정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바로 나사렛 예수이시다. 기독교 예배에서 우리가 언어, 상징, 문화적 형식들을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선물에 기초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 드릴 수 있다.

W-1.0302: 언어

하나님의 신비와 실제는 우리의 경험, 이해, 그리고 언어를 초월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제한된 언어에 축소시킬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주변의 세상과, 성경,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선하심, 그리고 은혜에 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구약은 하나님을 다음과 같은 개인적 방식들로 표현한다: 창조자, 언약의 주체, 위로자, 해방자, 재판관, 구속자, 산파, 어머니, 목자, 주권자, 출산자 [bearer], 수태케 하는자 [begetter] 등이다. 구약은 하나님을 "주님(여호와)"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는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모세에게 나타냈던 숨겨진 이름을 대신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전달해 준다. 구약은 또한 자연의 이미지들을 빌려와 하나님을 바위, 우물, 불, 빛, 독수리, 암탉, 그리고 사자로 묘사한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러한 이미지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적용하셨는지를 보여주신다. 특별히 예수님은 아바 아버지라는 친밀한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셨다. 예수님은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도 그러한 몇몇 단어들을 사용하셨다—선한 목자, 신랑, 그리고 인자.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님에 관해 말할 때 구약의 언어를 그대로 계속 사용하거나 응용하였다—특별히 그들은 이 세상의 권세에 대한 그분의 주권을 전달하기 위해, 그리고 그분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과 동일시하기 위해 "주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예배를 드릴 때, 교회는 의도적으로 성경 및 우리 신학 전통들만큼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하나님을 적절히 묘사하고 언급하는 언어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성경이 사용하는 넓고 깊은 용어들과 이미지들로부터 도출해 내었으므로

W-1.0301: 요 1:1–18; 골 1:15–20; 히 1:1–4; 1967 년 9.27.

W-1.0302: 출 3:13–15; 24:17; 신 32:11–12, 18; 시 22:9–10; 23:1; 27:1; 사 40:18–26; 42:14; 43:14–15; 49:15; 55:3–9; 66:13; 겔 34:11–31; 호 11:3–4, 10; 마 17:9; 막 14:36; 눅 5:33–35; 요 10:11–18; 롬 11:33–36; 갈 3:27–29; 약 2:1–9; 제 2 헬베틱 5.217; 웨스트민스터 6.114; 간추린 11.1, 11.3.

광범위하다. 하나님의 백성을 확실하게 authentically 묘사하고 언급하는 언어는 하나님 창조 사역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람, 문화, 배경, 그리고 경험의 다양성을 존중하므로 포괄적이다. 그러한 언어는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의 모든 회원 자신들을 동등하게 포용하시고, 부르시며, 그리고 소중히 여기심을 인식하게 하여준다.

오순절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령의 권능으로 연합된 많은 나라들과 문화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이어 왔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들은 여러 언어로 예배한다. 우리가 예배 시에 사용하는 말들은 공통어 혹은 모인 사람들의 언어들로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 들이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진실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풍성하고 다양한 인간의 언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사랑을 증거한다.

W-1.0303: 상징들

성경의 어떤 형상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깊은 의미와 다양한 연관과, 지속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것들을 상징이라고 부른다. 구약에는 수많은 실례들이 있다—나무, 성전, 무지개, 강, 양, 두루마리, 건물, 그리고 몸 등이다. 신약의 저자들은 그리스도, 복음,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전달하기 위해 이러한 평범한 의미들을 담은 보배를 사용하였다. 빛, 책, 물, 떡, 잔, 그리고 십자가와 같은 성경의 어떤 두드러진 상징들은 기독교 예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그러한 사물들은 숭배 받을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표적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고 표현 enacted 될 때 그 말씀을 더 충분히 알게 된다. 구약은 예배 시의 상징적 행위들을 묘사한다—금식과 잔치, 즐거워함과 애통함, 춤과 노래, 표식과 기름부음, 정결과 봉헌, 정의 실천과 자비 베풂 등.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기존의 신앙 관례들—특별히 세례와 떡을 떼는 일—에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으며, 일상적인 긍휼의 표현들—병자를 치유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그리고 발을 씻기는 일—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방식들로 바꾸셨는지를 보여준다. 기독교 예배는 이러한 행위들 및 기타 성경의 실천들—모임과 보냄, 무릎 꿇기와 일어섬, 말과 노래, 정결과 봉헌, 표식과 기름부음, 먹고 마심, 축복과 안수—과의 강한 유대 속에서 다양한 상징적 행위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와 감사가 담긴 우리의 응답을 전달해 준다.

W-1.0304: 문화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사도행전과 신약의 서신서는 "더 이상 유대인도 헬라인도 아니며"(갈 3:28),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자 했던 신흥 교회의 도전과 갈등들을 기록하고 있다. 교회는 2 천여 년 동안 성장하여 퍼져나가면서 온 세상의 문화와 영토에 뿌리를 내리고 번성해 오며—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곳에서의 그리스도의 주권을 증거해 왔다. 마침내 우리는 요한 계시록을 통해 구속 받은 자들의 무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든 나라, 족속, 그리고 백성들로 구성된 큰 무리들일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W-1.0303: 창 2:9; 9:8–17; 출 15:20–21; 삼하 6:1–5; 시 23:5; 30:11–12; 겔 3:1–3; 34:11–31 36:24–28; 47:1–12; 욜 2:12–14; 미 6:8; 습 3:14–20; 마 26:26–29; 28:18–20; 막 6:56; 10:21; 눅 9:1–2, 12–17; 10:1–2; 요 6:35; 8:12; 13:1–20; 고전 1:18; 갈 6:14; 계 20:11–15; 22:1–5, 17; 간추린 11.2.

W-1.0304: 욜 2:28–32; 행 2:17–21; 10:9–16; 롬 10:13; 고전 9:19–23; 10:23–33; 계 7:9–12; 벨하 10.3; 간추린 11.4; *예배와 문화에 대한 나이로비 성명서* (루터교 세계 연맹, 1996).

기독교 예배는 상황적 contextual 으로서—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특정한 공동체에서 시작되어 그 모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잘 전해주는 말, 형상, 상징, 그리고 행위들을 포함한다. 예배는 또한 교차 문화적 cross-cultural 이어서—신앙 공동체 안과 그 너머의 다양한 전통들 및 문화들을 반영한다. 기독교 예배는 초 문화적 transcultural 이어서—모든 문화를 초월하는 인간 삶의 공통 요소들에 뿌리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편적인 메시지를 선포한다. 예배는 또한 반 문화적 countercultural 이어서—복음의 물의 scandal 들을 단호히 주장하며 정의와 공의와 평화에 기초한 하나님의 통치를 예견한다. 마지막으로, 진실한 예배는 이문화 간 intercultural 의 행사로—모든 사람들 사이의 상호성, 대화, 및 동등성을 조장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그리고 모이는 곳마다, 우리는 모든 시간과 장소 안에서 드려지는 하나님 백성들의 찬양과 기도에 동참한다. 따라서, 우리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위해 그리고 교회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와 다른 문화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노래를 부름이 적합한 일이다.

제 2 장: 개혁주의 예배의 순서

W-2.01: 근원과 원리

W-2.0101: 예배 순서의 근원

예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충실해야 한다. 성경의 증거는 예배순서를 정하기 위한 교회의 탁월하고 권위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예배를 계획하고 인도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또한 미국장로교 헌법에 의해 안내를 받고, 개혁 전통의 지혜에 의해 가르침을 받고, 보편적 교회의 전통에 주의를 기울이며, 예배 공동체의 문화 및 상황에 민감해야 한다.

W-2.0102: 형식과 자유

기독교 예배는 형식과 자유 사이에서 긴장이 항상 현저했다. 일부 전통에서는 성경에 충실하길 애쓰면서 정해진 예배 순서에 중점을 두어왔다. 또 다른 전통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주장하며 예배의 고정된 형태를 거부하였다. 우리는 모든 예배의 형태가 잠정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개혁을 조건으로 한다. 고정된 예배 형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삶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관된 양식들과 관행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귀중하다. 다소 자발적인 spontaneous 예배에 대한 접근은 예상치 못했던 통찰력과 영감을 위한 여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귀중하다.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예배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 진행되고 성령님의 창의력에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W-2.02: 예배 모임

W-2.0201: 왕 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부름을 받았다. 예배는 하나님 백성들의 집단적 활동이며 그리고 우리 공동의 삶과 사역의 표현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온 지체들이 마음, 정성, 뜻, 그리고 힘을 다하여 온전히, 의식적으로 conscious,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특별한 은총의 존재들이며 또한 그들은 정기적인 예배 참여를 통하여 믿음안에서 자라난다. 예배순서를 계획하고 인도하는 사람들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주일예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배 순서는 회중의 풍부한 문화적 다양성과 그 교회가 사역하는 지역 상황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예배 순서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참여를 장려하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누구도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W-2.0202: 기도로 참여

기도는 예배의 심장부에 있다. 그것은 우리와 대화하며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은 믿음의 자세이며 또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다. 기도는 또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려지며, 성령에

W-2.0101: 수 22:5; 요 4:23–24; 계 2:7; 22:8–9; 웨스트민스터 6.006, 6.112.

W-2.0102: 요 3:8; 고전 12–14; 갈 5:1; 스코틀랜드 3.20; 웨스트민스터 6.108–6.112; 제 2 헬베틱 5.219.

W-2.0201: 출 19:5–6; 신 6:4–9; 마 19:13–15; 막 12:28–31; 벧전 2:9–10; *Constitution on the Sacred Liturgy* (제 2 바티칸 공의회, 1963).

W-2.0202: 엡 5:19; 골 3:16; 하이델베르크 4:116–4.118; 제 2 헬베틱 5.218–5.221; 웨스트민스터 6.114–6.115; 소요리문답 7.098–7.099; 대요리문답 7.288–7.296; 1967 년 9.50.

의하여 능력이 부어진다. 신실한 기도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 형성되며,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감동을 준다.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찬양, 감사, 고백, 간구, 중보, 헌신 등이다. 기도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하나님을 듣고 기다림,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를 기억함,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음, 혹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기도는 말, 침묵, 노래, 혹은 신체적인 방법으로 구현 될 수도 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는 것은 중요한 고대의 기도형식이다. 노래하는 것은 전인격으로 참여하게 하며 또한 공동 예배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연합함에 도움이 된다. 회중 자체가 교회의 일차적 성가대이다; 연습된 성가대와 다른 음악인들의 목적은 노래로 기도하는 회중을 인도하도록 돕는 것이다. 특송, 성가, 및 기악도 말씀을 해석하고 회중의 기도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예배의 많은 요소들이 노래로 불려질 수도 있다. 예배에서 음악은 단지 예술적 과시, 여흥의 자료, 혹은 침묵을 덮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이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기타 여러 행위들로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다: 무릎 꿇기, 머리 숙이기, 일어서기, 손 들기, 춤추기, 두드리기 drumming, 손뼉치기, 포옹, 손 잡기; 기름 부음 및 안수 등이다.

성령의 은사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예배에서의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예배자들과 예배 인도자들은 오직 자신들에게만 관심을 집중시키고 전체 회중의 필요들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들을 삼가야 한다.

W-2.03: 예배의 지도력과 직제 사역

W-2.0301: 섬김을 위한 은사들

하나님께서는 세례에서 각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시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러한 은사들을 사용하도록 부름 받았다. 따라서 교회의 어떤 교인이라도 자신의 은사들에 따라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봉독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도움은 적절한 것이다.

받은 은사들과 훈련을 통해 어떤 이들은 예배에서 특정한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부름을 받고, 예배 순서에서 특정한 일들을 책임지게 된다. 이러한 특정한 역할들과 책임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 맡은 것으로서, 어떤 식으로든지 다른 교인들의 지도력을 위축시키거나 예배 회중의 근본적인 참여를 가리워서는 안 된다.

W-2.0302: 집사

집사는 긍휼을 베풀고, 증거하고, 또한 섬김으로 교회를 이끌기 위해 부름을 받았으며, 세상 안의 교회의 사역을 대표하고 교회 안의 세상의 존재를 대표한다. 집사는 예배 순서에 특정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지만, 당회는 집사가(있는 경우에)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정기적인 기회를 갖게 하며, 긍휼을 베풀고 증거하고 섬기는 그들의 사역이 교회의 공동 예배에서 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W-2.0301: 롬 12:4-8; 고전 12:1-11; 엡 4:7-16; 벧전 4:10; 하이델베르크 4.055; 1967 년 9.38-9.40.
W-2.0302: 딤전 3:8-13; 제 2 헬베틱 5.148.

W-2.0303: 사역 장로

사역장로들은 분별과 치리의 은사들을 통해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 생활을 육성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들이 말씀 사역으로 부름을 받을 때는 또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함양하여야 할 것이다. 합당한 준비를 갖추고 노회가 위임하였을 때, 사역 장로들은 특정한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집례할 수 있다(G-2.1001).

어느 특정한 교회에서, 사역 장로들은 교회 예배를 준비해야 하며 사람들의 참여를 권장해야 한다. 특별히, 사역 장로들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이 당회에서 함께 섬길 때,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정기적인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의 거행, 공동 기도, 그리고 노래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위한 준비를 한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고유한 책임들을 제외한 나머지 개체 교회의 모든 공적 예배를 감독하고 승인한다; 예배를 위한 적절한 시기 occasions, 날짜, 시간, 장소를 정한다; 그리고 예배 공간의 배치, 특별한 설비들(꽃, 초, 깃발, 장식 paraments 및 기타 물건들)의 사용, 그리고 음악과 연극과 춤과 시각 예술 사역에 대한 책임을 진다.

W-2.0304: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또한 교역장로라 불리기도 함)는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집례하며, 교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갖추는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특별히,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다음과 같은 일들에 책임을 진다: 봉독할 성경 말씀의 선택, 설교 준비, 드려질 기도, 노래할 음악 선곡, 해당 예배를 위한 예배 보조 인쇄물 혹은 미디어 사용, 그리고 특정 예배 시간에서의 연극, 춤 및 다른 예술 형태의 사용.

W-2.0305: 공동 책임과 의무

개 교회에서, 예배 순서는 당회의 동의 하에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책임진다. 찬송가, 예배 기도서, 성경 및 기타 보다 영구적인 예배 자료들의 선택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동의 하에, 그리고 교회 음악 담당자들 및 교육 담당자들과 협의 하에 당회가 책임을 진다.

음악 리더나 성가대 지휘자가 있다면,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성가곡과 다른 음악 봉헌들을 위해 담당자와 협의할 것이다. 당회는 이러한 협의가 적절히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배려할 것이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특정 예배 순서를 계획할 때 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다.

당회는 교인들이 온전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교회의 예배에 관하여 그들을 교육할 책임이 있다. 본 예배모범에 관한 정규 교육을—특별히 사역 장로들 및 집사들의 훈련 시—당회가 제공함이 적절하다.

당회는 예배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완수하는 것에 대하여 노회에 책임을 진다. 각 노회들은 개체 교회들의 예배가 지니는 특징과, 그 예배를 지도하는 표준들, 그리고 예배가 교회의 선교와 사역에서 맺는 열매들에 대해 당회들과 토론하는 것이 적절하다. 목사 후보생들의 준비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의 계속 교육을 위해 노회가 본 예배 모범을 사용하여 예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

W-2.0303: 딤전 5:17-22; 제 2 헬베틱 5.147.
W-2.0304: 딤전 4:6-16; 제 2 헬베틱 5.147, 5.163.
W-2.0305: 고전 12:4-31; 엡 4:11-16.

제 3 장: 주일 예배 순서

W-3.01: 주일 예배

W-3.0101: 부활의 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 중 첫 날 이른 아침에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서의 증언 때문에 주님의 날(일요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다. 주님의 날은 또한 창조의 "여덟 째 날"이라 불리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새 창조의 표시이다. 우리가 어느 날이든지 그리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특별히 주일 예배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기대하는 것이다.

W-3.0102: 주일 예배의 유형

주일 예배는 말씀과 성례전의 예배이다. 우리는 주 중 첫 날—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 안에 모여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함께 떡을 뗀다. 교회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주일에 말씀과 성례전으로 완전한 복음을 선포한다.

주일 예배에는 또한 다른 활동들도 포함된다: 모임과 노래, 고백과 사죄, 기도와 봉헌, 축복과 보냄 등이다. 이러한 모든 활동들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이끌리며, 성령의 능력으로 보내심을 받는다.

주일 예배 유형은 일요일 아침 외에 다른 날들과 시간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 부활절 전야와 같은 토요일 저녁 예배는 고대 유대 및 기독교 시간 계산에서는 새 날이 일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주일 예배 순서를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 매일 기도 예배 순서는 주중 다른 시간 및 다른 날들의 예배유형을 제공한다.

W-3.0103: 예배 순서

예배 순서는 교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의미 있고 신뢰할 만한 구조를 제공해 준다. 예배 순서는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녀야 할 믿음과 신실함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유형이 된다.

주일 예배를 위해 여기에 제시된 예배 순서는 성경, 보편적 교회 전통, 그리고 우리의 개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특히, 이 예배 순서는 교회의 신앙, 삶, 그리고 예배 안에서 말씀 및 성례전이 중심을 이루도록 모색한다. 이러한 주일 예배의 설명은 하나의 추천 모델로 제시된 것이지, 다른 방식의 예배 순서들을 배제시키고자 함이 아니다. 어떤 특정한 교회나 문화적 상황에서는 적합한 다른 예배 순서들이 적절한 것일 수도 있다. 다만 그러한 순서들은 말씀에 신실하고, 성령에 열려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여야 한다.

W-3.02: 모임

W-3.0201: 예배 준비

예배는 사람들이 모여—서로 인사를 나누고, 침묵으로 기도하며, 광고를 나누고, 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음악을 봉헌함으로 시작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행위는 세상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니는 정체성과 선교의 증언을 전한다.

W-3.0101: 창 1:1–5; 계 1:9–11; 소요리문답 7.060.
W-3.0102: 눅 24:13–35; 행 2:42; 20:7; 제 2 헬베틱 5.211; 웨스트민스터 6.116; 1967 년 9:35–37.
W-3.0103: 스코틀랜드 3.20; 웨스트민스터 6.108–6.112.

W-3.0202: 예배를 여는 문장

성경 구절을 보통 인용하는 예배로의 부름은 이 장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이라는 하나님의 초청을 표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함은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거룩하신 분과 만나는 예배의 상황을 설정하여 준다.

W-3.0203: 시편, 찬송가, 및 영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로 시편을 노래해 왔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생애, 죽음, 및 부활의 관점에서 시편들을 노래하며, 기도하고, 또한 연구하기를 계속하였다. 시편을 노래함은 개혁 전통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있다. 교회는 시편에 다른 찬송 hymns, 찬가 canticles, 신령한 노래들을 더해 왔다. 오래 전부터 그리고 다양한 문화들로부터, 교회는 다양한 악기들에 의해 반주되는 많은 다른 형태의 회중 찬송을 발전시켜왔다. 우리는 주일 예배에 이처럼 풍부한 레퍼토리에서 선곡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노래한다.

W-3.0204: 기도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그리스도 임재 안에서의 기쁨을 표현하고, 그리고 함께 모인 공동체 위에 성령의 은사들이 부어지기를 간구하면서 드려질 수 있다. 이 기도는 그 날 혹은 교회력에 따른 성경 구절로부터 도출되는 주제들과 이미지들을 사용할 수도 있다.

W-3.0205: 고백과 용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한 후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세상과 우리의 삶의 죄악성을 직면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간다. 공동체의 찬양으로부터 회중의 고백으로 옮겨가는 이러한 전환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개혁 전통의 현저한 특징들 중의 하나이다.

고백으로의 부름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개로 부르시고 용서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주도적 초청을 표현한다. 그리스도의 몸된 일원으로서, 우리는 개인 및 공동체의 삶에 존재하는 죄, 포로상태, 그리고 깨어짐의 현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구한다. 고백의 기도에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와 같이 은혜를 구하는 기도송이 포함될 수 있다. 용서의 선언은 하나님의 자비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의 확신을 제공한다. 세례반 font 에서 이 예배순서를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고백을 세례의 은혜와 씻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세례로의 초청과 연결하여 준다. 말씀과 성례전의 사역과의 이러한 연관성 때문에,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고백으로의 초청을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죄 사함의 기쁜 소식을 선포함이 적절하다.

다른 활동들이 뒤 따를 수 있다—"성부 성자 성령께" 혹은 "하나님께 영광"과 같은 송영, 율법 요약 혹은 신실한 삶으로의 부르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해의 표시로서 평화의 인사 나눔 등이 있다.

W-3.0205: 스코틀랜드 3.15; 웨스트민스터 6.031–6.036, 6.081–6.086, 6.097–6.100.

W-3.03: 말씀

W-3.0301: 선포의 신학

성경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요 1:14)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밝혀진 하나님 말씀의 증거이다. 말씀이 읽혀지고 선포되는 곳에서, 살아있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능력에 의해 임재하신다. 따라서, 말씀을 읽고 듣고 선포하고 확신하는 것이 기독교 예배의 중심이며 주일 예배의 필수 요소이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공동 예배에서 봉독할 성경 말씀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선정된 본문들은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골라져야 하며, 일정 기간에 걸쳐 성경의 폭 넓은 내용과 전체 메시지를 반영해 주어야 한다. 본문을 선정할 때에는 교회력의 주기, 세상의 사건들, 지역 교회 안에서의 목회적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 성구집 Lectionaries 은 보편적 교회와의 일치와 연결성뿐만 아니라, 광대한 범위의 성경 본문들을 보장해 준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또한 공중 예배에서 사용할 성경 번역본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성경은 예배 공동체의 공용어(들)로 읽혀져야 한다. 중요한 편집, 의역, 혹은 새로운 번역들에 대한 정보를 회중에게 알려야 한다.

선포되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 설교는 근면하고 분별력있는 성경말씀의 연구, 매일 기도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 복음의 메시지들에 대한 신학적 묵상, 회중들의 상황에 대한 민감성, 성령님께서 교회에 말씀하고 계신 것에 대한 경청,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인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지속적이고 개인적인 순종 등을 요구한다. 설교는 복음을 분명하고 단순하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시해야 한다. 말씀을 선포할 때 노래, 연극, 춤, 그리고 시각 예술 등의 은사들을 사용할 수도 있다.

우리는 선포된 말씀에 다양한 방식들로 응답한다: 교회의 신앙 고백, 세례식이나 세례의 재확인,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삶을 드림 등이다. 하나님 백성들의 응답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말씀의 선포는 불완전한 것이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하고, 그의 은혜를 받으며, 그리고 그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도록 초청 받는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기도로 구하는 성령님의 은사에 달려 있다.

W-3.0302: 조명을 위한 기도

조명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도록 요청하는 기도이다. 성령님의 조명에 대한 이러한 온전한 의존감은 개혁전통의 매우 중요하고 독특한 표시이다. 조명을 위한 기도는 성경 봉독과 설교의 선포에 앞서며, 말씀의 선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 봉독에 적용된다.

W-3.0303: 성경

회중 앞에서의 성경 봉독은 명료하게 잘 들리게 하며 본문의 뜻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교회 강대상에 비치된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영속성과 중요성을 전달해 주며, 성경 이야기의 공동체적 특성을 보여준다.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포함하여 누구나 성경을 봉독하도록 초청될 수 있다. 집사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에 책임을 지고 있고, 사역 장로들은

W-3.0301: 창 1:1–5; 시 19:1–14; 사 40:1–31; 55:10–11; 눅 4:16–21; 24:13–35; 요 1:1–18; 롬 10:8–17; 약 1:22–27; 히 1:1–4; 4:12–13; 스코틀랜드 3.19; 제 2 헬베틱 5.001–5.007; 웨스트민스터 6.001–6.010, 6.055–6.058, 6.187–6.190; 소요리문답 7.002–7.003; 대요리문답 7.113–7.115; 7.265–7.270; 바르멘 8.10–8.12; 1967 년 9.27–9.30, 9.49.

W-3.0302: 제 2 헬베틱 5.005; 소요리문답 7.089; 대요리문답 7.114, 7.265.

W-3.0303: 웨스트민스터 6.116; 소요리문답 7.090; 대요리문답 7.267.

말씀의 선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집사나 사역 장로가 성경을 봉독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당회는 반드시 모든 봉독자들이 이 중요한 사역을 위해 잘 준비될 수 있게 한다.

회중의 역할은 읽혀지고 선포될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그러한 경청을 위하여서는 기대감, 집중 및 상상력이 요구된다. 회중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거나, 교독, 혹은 교창, 또는 인쇄물이나 영상 자료들을 보며 성경봉독에 참여할 수 있다. 말로 하는 응답으로 성경 봉독을 마칠 수 있다. 성경 말씀은 또한 음악을 통해 제시할 수도 있다.

W-3.0304: 음악적 응답

말씀을 봉독한 후 시편, 찬가 canticles, 성가 anthems, 알렐루야, 찬양 songs of praise, 혹은 다른 음악적 응답들이 뒤 따를 수 있다. 첫 번째 봉독의 응답으로 시편을 노래하여 회중에게 그 본문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W-3.0305: 선포

봉독한 성경 말씀(들)에 기초한 설교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복음의 선물과 부르심을 제시한다. 설교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더 충성스럽게 따르도록 갖추어지며, 우리 자신의 말과 행위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영감을 받는다. 설교는 기도나, 설교끝의 송영 ascription of praise, 혹은 제자도로의 부름으로 끝맺을 수 있다. 말씀과 성례전의 사역에 따라 보통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설교를 한다.

선포의 다른 형태들에는 노래, 연극, 춤, 시각 예술, 그리고 간증 등이 포함된다. 설교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은 예배 시에 봉독한 성경 말씀(들)을 조명해 주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 이런 선포의 형식들이 사용될 때에, 예배 인도자들은 그것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경 말씀(들)의 증언과 연결시켜야 할 것이다.

W-3.0306: 신앙의 확인

우리는 선포된 말씀에 응답하여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한다. 이 신앙의 확인은 성경 혹은 신조 Creeds, 신앙고백서, 그리고 교리문답들에 나오는 문장들로 이루어진다. 회중 찬송, 성가, 혹은 다른 음악적 응답으로도 신앙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적 간증을 위한 기회들이 또한 이 시간에 주어질 수 있다. 세례나 세례 재확인과 같은 순서가 있을 때에는 세례 예전의 한 부분으로 사도 신경을 고백한다. 가장 초기의 에큐메니칼 신앙 고백인 니케아 Nicene 신조는 전통적으로 성만찬과 연결되어 있다.

W-3.0307: 세례와 세례적 제자도

세례 성례전 (W-3.0402–W-3.0408) 및 세례 언약과 관련된 다른 예식들은 보통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거행된다. 이러한 예식들에는 믿음 고백에 기초한 세례 재확인 (W-4.0203), 새 교우 환영 (W-4.0204), 섬김을 위한 파송 (W-4.03), 직제 사역을 위한 안수와 위임 (W-4.04), 삶과 사역의 변화 (W-4.05), 공동 행사들의 기념, 기독교 결혼 (W-4.06), 부활 증언 (W-4.07)이 포함된다. 예배자들에게 세례 받을 것을 요청하거나, 혹은 세례 시에 했던 약속에 따라 살라고 권면하면서 제자도로의 초청을 이 때에 표명할 수 있다.

W-3.0305: 대요리문답 7.268.
W-3.0306: 고전 15:1–11; 빌 2:5–11; 골 1:15–20; 딤전 3:16.
W-3.0307: 마 28:16–20.

W-3.0308: 중보기도

우리는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세상을 위해 기도한다—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및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깊은 성령의 탄식에 동참한다. 이 기도는 한 인도자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 같은 royal 제사장으로서 온 회중이 함께 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아멘" 및 다른 응답들을 통해 그 기도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중보와 간구의 기도는 다음을 위해 드려진다. 보편적 교회 및 지역 교회의 선교와 사역; 피조물을 돌봄과 자원들의 올바른 사용; 세상의 평화와 정의; 만방의 지도자들과 백성들; 가난하고, 굶주리고, 또한 억압 받는 자들; 지역 공동체를 위한 긍휼 사역과 화해;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치유와 온전함; 그리고 기타 특별한 필요 등이다. 이러한 기도들은 성찬단에서 할 수도 있고, 또는 회중 가운데에서 인도할 수도 있다. 이 때에 음악으로 응답하거나 상징적 행동들을 포함할 수 있다. 만약에 이 전 순서에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평화를 뒤이어 나눌 수 있다.

목사들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선한 목자들로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기에,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중보와 간구의 기도를 인도함이 적합하다. 집사들에게 긍휼 사역의 책임이 있고 사역 장로들에게 회중 양육의 책임이 있기에, 집사나 사역 장로가 이러한 기도를 인도하는 것 또한 적합하다. 기도의 은사를 받은 다른 사람들을 중보기도를 인도하도록 초대할 수도 있다.

W-3.0309: 헌금과 주님의 성만찬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십일조 및 헌금 (W-3.0411) 봉헌과 주님의 성만찬 (W-3.0409–W-3.0414)이 거행된다. 이러한 행위들은 복음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표시들이다. 만약 주님의 성만찬이 거행되지 않는다면, 헌금 시간 후에 감사와 헌신의 기도를 드린다 (W-3.0415).

W-3.04: 성례전

W-3.0401: 성례전 신학

성례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생활 속에서 재현 enacted 되고 봉인 sealed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례전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들 gracious acts 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 성례전은 또한 감사를 표현하는 인간의 행위들로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 사랑과 섬김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성례전은 교회의 일반 예배라는 상황 속에서 행하는 물리적 표시이며, 동시에 영적 선물이고, 기도로 둘러싸인 말씀과 행동이 포함된다. 성례전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 일상적인 것들—물, 떡, 포도주 등의 기본 요소—이 사용된다. 개혁 전통은 세례와 주님의 만찬(감사 Eucharist 혹은 성만찬 Holy Communion 이라고도 불림)인 성례전이 성경의 증언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또한 보편적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지속되어 왔음을 인정한다.

W-3.0402: 세례 신학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incorporated 되었다는 표시이며 봉인이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다—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W-3.0401: 스코틀랜드 3.21–3.23; 하이델베르크 4.066–4.068; 웨스트민 6.149–6.153; 대요리 7.286–7.287.

W-3.0402: 창 1:2; 6:1–9:17; 17:1–14; 출 14:1–31; 사 43:1–4; 44:1–4; 55:1–3; 렘 31:31–34; 겔 36:25–27; 47:1–12; 암 5:21–24; 마 3:1–17; 28:16–20; 막 1:1–11; 10:35–40; 눅 3:1–22; 요 1:19–34; 3:1–5; 4:7–15; 7:37–38; 행 1:4–5; 2:37–41; 22:16; 롬 6:3–11; 고전 6:11; 10:1–4; 12:12–13; 고후 1:21–22; 갈 3:27–29; 엡 1:13–14; 2:11–22; 4:4–6; 5:14; 골 2:11–12; 딛 3:4–7; 벧전 3:18–22; 계 7:13–17; 21:6; 22:1–5, 17; 스코틀랜드 3.21–3.23; 하이델베르크 4.069–4.074; 제 2 헬베틱 5.185–5.192; 웨스트민스터 6.154–6.160; 소요리 7.094–7.095; 대요리 7.275–7.277; 1967 년 9.51.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으며, 사역을 위한 기름부음을 위해 성령님을 보내셨다. 그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생명수를 선물로 제공하셨다. 그의 고통과 죽음의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영원히 자유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가서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주님의 명령들을 복종하도록 가르치라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과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 능력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였다.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우리는 세례의 선물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 (롬 6:11)이다.

세례의 성례전은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용서와 죄 씻음과 갱신; 성령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함,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표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개혁 전통은 세례를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로 이해한다. 세례의 물은 창조의 물, 홍수, 그리고 출애굽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세례는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적인 목적, 죄 씻음의 능력, 그리고 세대에 걸친 구속의 약속으로 연결시켜준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표시였던 할례와도 같이, 세례는 교회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은혜로운 언약의 표시이다. 이러한 새로운 은혜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룩하고 온전케 하신다. 세례는 정의와 공의가 세차게 흘러 내리는 강같게 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타내며, 또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을 나타낸다.

세례는 말씀이 선포하는 것, 즉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 구속의 은혜를 제정하고 봉인한다.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며, 또한 그 은혜에 응답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이다.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회개, 신실함, 그리고 제자도로 초청하신다. 세례를 통해 성령님은 교회에 정체성을 주시고, 세상을 섬기도록 교회를 파송하신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의 띠이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서로 서로 하나가 되며, 또한 모든 시간과 공간의 교회와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과 지위와 성별의 장벽이 무너진다. 우리는 교회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화해를 도모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믿는 자들과 그의 자녀들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포함된다. 믿는 자들의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우리가 감사로 응답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진리를 증거한다. 우리 어린 자녀들의 세례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 전 일지라도 사랑 안에서 그들을 취하신다는 진리를 증거해 준다. 이러한 두 형태의 증거는 하나이며 같은 성례전이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에게 확실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다. 따라서 세례는 반복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세례의 선물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인할 때가 많다. 여기에는 신앙을 고백할 때, 다른 사람의 세례에 참여할 때, 한 교회에 등록하거나 다른 곳으로 갈 때, 안수나 위임 혹은 파송을 받을 때, 그리고 매번 성만찬을 거행할 때가 포함된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려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은 깊은 헌신, 숙련된 분별력, 그리고 믿음안에서의 성장으로 이루어 진다. 세례와 함께 그리고 세례를 통해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들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및 삶에 대한 도전들을 맞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갖추시고 강하게 하여준다.

세례는 보통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주일에 거행 된다. 언약 공동체의 참여는 우리가 세례를 받아 연합한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을 증언해 준다. 여러 상황들로 인해 공동 예배 시간 외의 시간에 세례를 베풀어야 할 경우에는 한 명이나 그 이상이 온 회중을 대표해 참여해야 할 것이다.

몸이 하나인 것과 같이 세례도 하나이다. 미국장로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의 이름과 물로써 베푼 다른 기독교 교회들의 모든 세례를 인정한다.

W-3.0403: 세례의 책임

세례는 당회 허락 하에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베풀어야 한다. 세례에 관한 당회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자녀들이 너무 조급히 혹은 너무 늦지 않게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부모들(혹은 부모 대신 책임을 맡고 있는 자들) 격려하기; 새 신자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기; 세례 후보자들 혹은 그들의 부모들을 심사하고, 그들에게 성례전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세례 받은 자들을 교인 명부에 기재하기; 세상에서 세례 받은 자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성장하도록 돌보기 등이다. 보편적 universal 교회를 대신하여, 전체 회중은 세례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양육할 책임이 있다. 당회는 어떤 특정한 교인들을 세례 받은 자들 혹은 그들의 부모들을 위하여 후원자 sponsor 혹은 멘토로 지정할 수 있다.

유아가 세례를 받을 때에는, 적어도 부모 (혹은 부모의 책임을 행사하는 사람)중 한 명이 한 기독교 교회—보통 세례가 베풀어지는 교회—의 활동 교인이어야 할 것이다. 당회는 다른 교회의 활동 교인인 부모의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요청을 고려할 수 있다. 만약 당회가 그러한 요청을 승인한다면, 당회는 다른 교회의 공의회와 서로 연락하고, 성례전이 베풀어 진 후에 이를 그들에게 알려주어야만 한다. 어린이들이 세례 받도록 소개하는 자들은 아이들이 성장하여 스스로 믿음의 고백을 하며, 교회의 활동 교인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양육하고 인도하기로 약속한다.

공의회는 교회가 아닌 특정 환경들, 즉 병원, 감옥, 학교, 군부대, 혹은 기타 사역 장소에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에 의해 베풀어지는 세례를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새로이 세례 받은 자의 이름이 적절한 공의회 명부에 기록됨을 확실히 하는 책임이 있다 (G-3.02, G-3.03).

W-3.0404: 소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성경 구절들로 세례 성례전을 소개한다; 사역 장로들, 교인들, 혹은 에큐메니칼 증인들이 다른 성경 구절들을 봉독할 수도 있다. 당회를 대신하여, 사역 장로가 세례 후보자들을 소개한다. 자기 자녀들이나 혹은 자신이 세례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례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현한다. 부모들, 후원자(적용되는 경우), 그리고 교회는 세례 받는 자들을 지지하고 양육하겠다는 서약을 한다. 아무도 홀로 세례를 받지 않는다.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들에 의해 격려를 받으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를 에워싼다.

W-3.0405: 신앙 고백

세례 후보자들 혹은 그들의 부모들은 악을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믿음을 고백해야 한다. 신앙고백을 하며 세례를 받는 자는 교회의 예배와 선교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는 결단을 밝힌다. 그들은 회중들과 함께 초대 교회가 세례를 확증할 때에 사용했던 사도 신경으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한다.

W-3.0406: 물에 대한 감사 기도

세례 장소에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기도로 회중을 인도한다: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은혜와 화해의 행적을 찬양한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세례에 권능으로 임하시고, 구원과 새 생명을 주시고, 또한 교회가 신실함을 갖추게 해주시기를 간구한다.

W-3.0407: 세례 베풀기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물을 풍성하게 그리고 보이도록 사용하여 세례 받는 각 사람의 기독교 혹은 주어진 이름을 부르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름]에게 세례를 주노라" (마 28:19)라고 선포해야 한다. 세례를 위한 물은 교회가 속한 지역에서 나온 것이어야 하고, 손으로 부어주거나, 혹은 침수할 수 있다.

안수나 기름 부음과 같이 성령의 선물을 표시하는 다른 행위들이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물로 세례를 주는 중심적 행위가 가리워져서는 안 된다.

W-3.0408: 환영

새로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회원이 된 것을 환영한다. 적절한 선물로 양초(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냄) 혹은 세례 의복(그리스도로 옷 입혀졌음을 나타냄)이 주어지기도 한다. 이전 순서에서 나누지 않았다면, 이 때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눌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됨을 환영하는 교회의 방식은 반복할 수 없는 세례와 반복이 가능한 주님의 만찬을 포함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자비로 우리를 씻기신 후에 은혜로 우리를 먹이신다. 이러한 입문을 위한 고대의 유형이 두 성례전을 포함하고 있음으로, 세례 후에 주님의 만찬이 거행됨이 적절하다; 방금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떡과 잔을 제일 처음에 받도록 초청할 수 있다.

W-3.0409: 주님의 성만찬 신학

주님의 만찬(또는 성찬)은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의 교통함을 표시하는 인침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거하면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내내 그를 따르던 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다: 평범한 저녁 식사, 기적적 잔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약적 기념의 시간 등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과 참 포도 나무요,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 그의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다. 그는 떡과 포도주를 새 언약의 표징인 그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셨고, 이 만찬을 계속함으로써 그를 기억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날에 떡을 떼시면서 자신을 제자들에게 알리셨다. 제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살면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일을 지속했다. 바울이 기록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떡과 잔을 나눌 때, "많은 우리가 한 몸" (고전 10:17)임을 고백한다.

주님의 성만찬 성례전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여 풍성한 신학적 의미를 제공해 준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 성령님을 초청함;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교제; 하나님 나라에서의 식사 등이다. 개혁 전통은 주님의 성만찬을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라고 이해한다. 주님의 성만찬에서 떡은 유월절의 떡 및 광야에서의 만나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주님의 성만찬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연결해 준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이스라엘이 감사의 표시로서 희생제물을 드림과 같이, 주님의 성만찬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대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제사이며 감사의

W-3.0409: 출 12:1–28; 16:1–36; 시 107:1–3; 사 25:6–9; 43:5–7; 55:1–3; 마 5:23–24; 8:11; 14:13–21; 15:32–39; 22:1–14; 26:17–29; 막 6:30–44; 8:1–10; 14:12–25; 눅 4:18–21; 5:27–32; 7:36–50; 9:10–17; 10:38–42; 14:15–24; 22:7–23; 24:13–43; 요 2:1–13; 5:1; 6:1–13; 7:1–39; 10:22–42; 12:1–3; 13:1–35; 21:1–14; 행 1:1–11; 2:42–47; 롬 14:1–23; 고전 8:1–13; 10:14–33; 11:17–34; 15:20–28; 갈 3:27–29; 엡 1:22–23; 빌 2:5–11; 골 3:1–4; 살전 4:16–17; 얍 2:1–7, 14–17; 요일 3:16–18; 계 19:9; 스코틀랜드 3.21–3.23; 하이델베르크 4.075–4.082; 제 2 헬베틱 5.193–5.210; 웨스트민스터 6.161–6.168; 소요리문답 7.096–7.097; 대요리문답 7.278–7.285; 1967 년 9.52.

표시이다. 주님의 성만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언약으로 초대하시는 은혜를 나타낸다. 주님의 성만찬은 또한 우리가 먹은 것 같이 다른 사람들을 먹여야 할 우리의 소명을 반영해주며,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히 죽음을 삼킬 그 천국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여 준다.

주님의 만찬은 말씀이 선포하는 것, 즉 모든 백성들에게 제공된 하나님의 지속적 은혜를 제정 enacts 하고 봉인 seals 한다. 성만찬은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 은혜의 통로이며, 또한 그 은혜에 응답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이다. 성만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의롭고, 성실하게, 또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양육하신다. 성만찬을 통해, 성령은 교회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의 선교를 위해 교회를 보내신다.

우리는 성만찬을 위해 모일 때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이끌어 모든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는 교회와 연합하게 하신다. 우리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충성스러운 자들과 더불어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세례 시에 했던 약속들을 재확인하며, 하나님, 다른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다시 헌신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기회는 자격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자격없는 자들이 믿음, 회개 및 사랑으로 나아올 때에 주어지는 특권이다. 식탁에 나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연령이나 이해여부와 상관없이 떡과 잔이 주어진다. 앞으로 나오는 자들 중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세례 준비 및 세례로 은혜롭게 초대해야 할 것이다.

예배자들은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죄악을 고백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및 서로와의 화해를 추구함으로써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할 준비를 한다. 심지어 의심하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증하기 위해 식탁에 나아올 수 있다.

주님의 성만찬은 주일 예배의 정기적인 순서로서 말씀 선포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지역 교회의 특성상 주님의 성만찬을 매주 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당회는 다른 스케줄을 승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일년에 네 번은 주님의 성만찬을 행해야 한다. 주님의 성만찬을 매 주일마다 행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일주일 전에 미리 광고함으로써 모두가 성례전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W-3.0410: 주님의 성만찬에 대한 책임

주님의 성만찬은 당회에 의해 허락 받어야 하며,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에 의해 집례 되어야 한다. 목회자가 없는 경우에 노회는 사역 장로들을 집례하도록 허락하고 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 (G-3.0301b). 당회는, 기독교 결혼식, 안수 및 위임, 치유 예배 services of wholeness, 병든 환자 사역,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는 장례 예배를 포함하는 주일 예배 외의 다른 예배에서 주님의 성만찬을 거행함을 허락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행사에서 말씀이 읽혀지고 선포되어야 한다. 주님의 성만찬이 공동 예배 외의 다른 경우들에 거행될 때,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교인들이 온 회중을 대표해야 한다.

공의회는 회중 모임이 아닌 특정한 장소들, 예를 들면 병원, 감옥, 학교, 군 기지, 혹은 다른 사역 환경에서 주님의 성만찬이 거행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W-3.0411: 봉헌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주님의 성만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 드린 값 비싼 자신의 제물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그의 은혜로 불리워 자유롭게 된 자들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적 은사들과, 물질들을 바침으로 감사의 응답을 한다. 모든 예배에는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부르시는 주님께 자신을 드림으로 응답하는 기회가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가 드리는 헌물들은 피조물에 대한 우리의 청지기 직을 표현하며, 서로에 대한 우리의 돌봄을 보여주고, 교회의 사역을 후원하며, 또한 가난한 자들의 필요들을 제공한다.

십일조와 헌금은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행위로 모으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식량 또한 이 때에 모을 수 있으며, 또한 주님의 성만찬을 위한 식탁이 함께 준비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헌물은 말로 혹은 노래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기도와 함께 드려진다. 장로들과 집사들이 교회 자원들에 대한 청지기 직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역의 지도력을 맡고 있음으로 그들이 이러한 기도를 인도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리스도의 평화와 화해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예배 중 아직 갖지 않았다면, 이때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다.

W-3.0412: 대 감사

봉헌과 성찬단을 준비한 후에,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성경 구절을 사용하면서 예배자들을 주님의 성만찬으로 초청한다. 식탁에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회중을 바라보며 인도해야 한다: 그날의 특별한 축복과 더불어,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 섭리적 돌보심과 언약에 신실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성례전을 제정하신 것 뿐만 아니라 (만약 식탁으로 초대할 때 혹은 떡을 떼면서 말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약속된 재림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기억하고; 예배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로 이끌어 주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양육시키시고, 성도의 교제와 모든 장소의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선교를 위해 그들을 보내시도록 성령님께 간구한다.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으로 마친다. “거룩, 거룩, 거룩,”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아멘”과 같은 송영을 노래함이 포함될 수 있다. 주기도문이 뒤따른다.

W-3.0413: 떡을 뗌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모든 교인들이 볼 수 있는 성찬단에서 떡을 떼고 잔을 붓거나, 혹은 이미 채워진 잔을 들어 올린다. 이러한 행위들은 성경 구절이 따를 수도 있고 또한 침묵으로 행할 수도 있다. 한 덩어리의 떡과 한개의 잔을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도 몸의 연합과 성례전의 공동체적 특성을 나타내 준다. 주님의 성만찬에 사용하는 떡은 교인들의 문화에 익숙한 것이어야 한다. 떡을 준비하는 자들은 전 교인들의 참여에 대비해야 한다. 당회는 포도주를 사용할지에 대해 결정할 것이다. 알코올 성분이 없는 선택이 제공되어야 하고, 교인들이 그것을 분명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W-3.0411: 창 1:28–31; 2:15–17; 레 23:22; 민 18:21–29; 신 28:1–12; 대상 29:10–22; 대하 24:8–14; 말 3:8–10; 행 2:43–47; 4:32–37; 롬 12:1–8; 고전 12; 16:1–2; 고후 8:1–15; 9:6–15; 엡 4:1–16; 딤전 5:17–18; 약 2:1–8; 요삼 5–8; 스코틀랜드 3.14; 제 2 헬베틱 5:110–5.123, 5.211; 웨스트민스터 6.087–6.093, 6.146–6.148.

W-3.0414: 성찬식

떡과 잔은 성만찬을 행하는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받게 한다. 예배자들은 식탁 둘레에 모이거나, 성찬위원 앞으로 나오거나, 혹은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떡과 잔을 받을 수 있다. 떡을 떼어 그들의 손에 쥐어 주거나, 혹은 분배를 위하여 준비된 떡 조각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은 공동 잔으로 마시거나, 개인 잔을 받거나, 혹은 받은 떡을 잔에 적실 수 있다. 보통 사역 장로, 집사 및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이 떡과 잔을 분배한다; 당회는 이 외의 다른 교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다. 떡과 잔을 나누는 동안 예배자들은 찬송을 부르거나, 다른 형식의 음악을 사용하거나, 적절한 성경 구절을 낭독하거나, 혹은 침묵 기도를 할 수도 있다.

모든 이들이 떡과 잔을 받은 후에 남은 것들은 성찬대 위에 올려 놓는다. 그 다음에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성례전의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온전한 재림이 올 때까지 신실하게 살며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회중을 인도한다.

예배가 끝난 후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보통 같은 날에), 두 명 이상의 직제 사역자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 외출할 수 없는 자들, 혹은 입원해 있는 자들을 찾아가 떡과 잔을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연장된 성찬 예식을 수행하는 자들은 당회에 의해 허락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신학적, 목회적, 예전적 은사들과 자료들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함으로서 말씀과 성례전의 일치를 유지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떡과 잔은 식탁에서 옮겨져서, 성례전에 대한 개혁 전통의 이해와 선한 청지기직의 원칙들과 조화를 이루고, 당회에 의해 승인된 방식으로 사용되거나 처리되어야 한다. 이 일은 남은 것을 먹거나, 땅에 묻음으로 완수 될 수 있다.

W-3.0415: 주님의 성만찬을 행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성만찬은 주일 예배, 즉 말씀과 성례전의 예배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만약 지역 교회의 상황들과 당회의 결정에 의해 주님의 성만찬이 일요일 예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예배는 봉헌과 함께 드리는 회중기도와, 감사와 헌신의 기도,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이어진다.

W-3.05: 보냄

W-3.0501: 결단 Commitment 의 행위들

말씀과 성례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는 결단의 행위들을 통해 우리를 제자도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을 확인한다. 그러한 결단의 행위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폐회 송, 시편 송,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보내는 신령한 노래들; 그리스도의 사명을 공유하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표현하는 창조적 혹은 상징적 행위들; 세례 받을 준비를 하겠다거나, 세례를 받고 싶다거나, 혹은 세례 언약을 재확인하는 선언들; 복음 전파와 긍휼과 정의와 화해의 사역으로의 파송; 떠나는 교인들께 드리는 작별인사; 교회의 사명과 관련된 간단한 초대나 광고 등이다.

W-3.0502: 축복과 권면

주일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의 축복인 제사장적 축복이나 사도적 축도로 끝맺는다. 이 축복은 하나님 은혜의 복음의 표현이고 또한 말씀과 성례전 사역의 연장이기 때문에, 보통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축도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 축복을 받는다. 권면은 교회로 하여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대행자들로 나아가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집사들은 교회의 증인과 섬김의 사역을 책임지고 있으며, 사역 장로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신실히 감당하는 것에 대한 감독권을 지니고 있기에, 집사나 사역 장로가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

W-3.0503: 세상에서의 섬김

기독교 예배와 섬김은 주일 예배의 끝맺음으로 함께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예배의 삶을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목적—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함—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4 장: 목회와 특별 목적을 위한 예배

W-4.01: 세례와 관련된 예배

W-4.0101: 세례로부터 시작됨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와 그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응답의 표시와 봉인으로서의 세례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모든 결단의 기초이다. 다음의 목회와 특별 예배 의식들은 모두 세례 언약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세례에 대한 약속들로부터 흘러 나온다. 그러한 의식들은 주일 예배 시에 말씀의 선포에 이어서 적절히 거행되거나, 다른 공동예배 예식에서 표명될 수 있다. 그러한 예식들은 세례반 혹은 세례장에서 적절히 집례 될 수 있다.

W-4.02: 세례 언약의 재확인

W-4.0201: 세례 받은 자들의 양육

세례 안에서, 각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리스도 자신의 것으로 표시되며, 성령에 의해 인침을 받고, 주님의 성만찬에 초대받고, 교회의 회원이 되며, 그리고 섬김의 삶을 위해 구별된다. 세례 받은 자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제자의 삶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나가도록 그들을 양육하는 것은 전체 교회의 책임이며, 특별히 당회를 통해 시행되어야 한다. 어린이로써 세례를 받을 때, 당회는 부모(들) (혹은 부모의 책임을 맡은 자들)가 이러한 책임을 다하도록 준비시키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 신앙 고백에 의하여 세례를 받을 때 당회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회들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W-4.0202: 식탁으로의 초대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주님의 만찬에 참여한 적이 없는 어린이들이 성만찬에 참여하고 싶다는 표현을 할 경우에는, **그들이 식탁으로 환영**되어야 하며 **당회는** 성례전의 의미와 신비에 대한 지속적인 가르침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W-4.0203: 공동 고백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교회 생활의 책임을 받아드릴 준비가 되면 (때로 "견진/입교"라고 불림), 당회는 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들은 믿음으로 교육받고, 당회에 의해 심사되고, 활동 교인으로 받아들여지며, 그리고 공동 예배에서 회중에게 소개되어야 한다. 이때, 그들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은혜에 대한 그들의 의존성을 확인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와 구세주로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또한 교회의 예배와 생활과 치리 및 선교에 적극적으로 책임있게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세례의 서약을 재확인 한다. 그러한 경우에, 모든 예배자들이 세례 언약을 재확인함이 적절하다.

W-4.0204: 새 교우

새 교우들은 사람들 앞에서의 신앙 고백, 신앙의 재확인, 혹은 이명 증서를 통해 받아 들여진다. 당회는 교회 교우가 되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확인(재확인)하게 될 신앙을 탐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당회의 심사를 통해 받아 들여진 후에는 예배 시에 소개 된다. 그들에 대한 공적 환영의 일부분으로, 그들이 세례에 했던 서약을 재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교회의 예배와 생활과 치리 및 선교에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는 자신들의 마음을 표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한 경우에, 모든 예배자들이 세례 언약을 재확인함이 적절하다.

W-4.0205: 갱신과 새로운 헌신

신앙인들의 삶과 회중의 삶 속에는 각성 awakening, 갱신 renewal, 혹은 헌신 commitment 을 위한 특별한 기회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세례 언약의 재확인을 통하여 적절히 축하된다.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들 및 성령의 역사함 stirrings 을 사람들이 당회와 나누도록 격려함으로써, 그들이 공동 예배에서 인정과 확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W-4.03: 섬김을 위한 파송

W-4.0301: 기독교 섬김의 행위들

세례를 받음으로 각 그리스도인은 제자로의 부름을 받으며 세상을 섬기도록 보냄을 받는다. 하나님은 또한 교회와 세상에서 다음과 같이 특정한 섬김의 일을 하도록 사람들을 부르신다: 교회 안에서 교사, 이사 trustee, 음악가, 혹은 위원회 위원들로; 교회를 대신하여 지역 커뮤니티 사역을 통하여; 전체 교회로서 교단 및 에큐메니칼 공의회 섬김을 통하여; 교회 밖으로 복음 전파, 긍휼, 정의와 평화, 그리고 피조물을 돌보는 일을 행하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일 등이다. 이러한 종류의 사역들은 선포된 말씀에 대한 응답이나 파송의 행위로서 주일 예배에서 적절히 확증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또한 다른 예배의 예식에서 인정 받을 수도 있다.

W-4.04: 안수, 위임/임직, 그리고 파송

W-4.0401: 사역으로의 부름

세례를 통하여 각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의 부름을 받는다. 하나님은 특정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회중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을 불러 내시어, 하나님 온 백성들의 사역이 번성할 수 있게 하신다. 안수식에서 교회는 교회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기도와 안수로 구별하여 집사와 사역 장로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 섬기게 한다. 위임식에서 교회는 (이전에)안수 받은 집사, 사역 장로, 및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그리고 이제 사역을 섬기도록 새로이 부름 받은 자들을 기도로 임직시킨다. 파송식에서 교회는 교회 안의 다른 형태의 사역, 즉 제한된 목회적 섬김을 위해 파송 받는 사역장로, 공인 certified 기독교 교육사, 그리고 기타 다른 형태의 섬김을 위한 자격증을 지닌 사람들을 인정한다.

W-4.0402: 예배를 위한 설정

안수, 위임, 혹은 파송 예식은 주일 예배시 말씀 선포에 대한 응답으로 거행될 수 있다. 안수, 위임, 그리고 파송 예식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사, 그리고 교회의 선교와 사역에 초점을 맞추며, 말씀의 선포와 주님의 성만찬을 포함하는 특별 예배에서 거행될 수도 있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안수 및/혹은 위임식은 노회의 충분한 참여가 가능한 시간에 거행되어야 한다.

W-4.0403: 예배 순서

안수, 위임, 혹은 파송 예배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며, 교회의 선교와 사역을 통해 그분을 섬기는 기쁨과 책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설교 후에, 적절한 공의회 의장(혹은 지정된 자)은 안수, 위임, 혹은 파송을 받는 사람들이 하게 될 사역의 성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 안수, 위임, 혹은 파송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반 앞에 모인다. 적절한 공의회 의장(혹은 지정된 자)은 그들에게 헌법질문을 한다(W-4.0404 참조). 사역 장로는 교회에게 상응하는 질문을 한다. 모든 질문들이 긍정적으로 답해졌을 때, 안수 받을 사람들은 안수와 안수 기도를 받기 위해 가능하다면 무릎을 꿇는다. (노회 전권 위원회가 목사의 안수식에서 손을 얹는다; 전권 위원회 의장이 다른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과 사역 장로들이 함께 손을 얹을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다. 당회원들은 사역 장로 및 집사 안수식에서 손을 얹는다; 당회는 다른 사역 장로들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다. 안수식은 각 직분에 대해 오직 한 번만 행해지기

때문에 손을 얹는 것은 반복되지 않는다.) 전에 안수를 받은 사람들은 위임 기도를 받기 위해 가능하다면 교인들과 함께 일어설 것이다. 그 후 의장은 안수, 위임, 혹은 파송에 대한 선포를 할 것이다. 당회나 노회 회원들은 새로이 안수, 위임, 혹은 파송 된 사람(들)을 환영한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를 위한 위임식의 경우에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교회에게 사역 및 상호간 관계에 충실할 것을 권면할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안수를 받거나 위임을 받을 때는 그 예배에서 거행되는 주님의 성만찬을 그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집례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또한 예배 끝부분에 축도를 할 수 있다. 사역 장로나 집사가 안수나 위임을 받을 때는, 그들 중 한 사람 혹은 그 이상이 예배 끝부분에 회중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

W-4.0404: 헌법 질문

안수, 위임, 혹은 파송을 받는 사람들이 속한 공의회 의장은 그들로 하여금 회중을 향하여 서서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a.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으며, 그가 만유의 주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시인하며, 그리고 그를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b. 당신은 구약과 신약 성경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 쓰여졌고, 전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하고도 권위 있는 증거이며, 또 당신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c. 당신은 우리 교단의 신앙고백서에 표현된 개혁 신앙의 기본 교리가 우리로 믿고 행하게 하는 성경의 확실하고 믿을 만한 해설서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채택하며, 아울러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이들 신앙고백서에 의해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따르겠습니까?

d. 당신은 성경의 권위 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당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완수하며, 우리 신앙고백서에 의해 계속 지도 받겠습니까?

e. 당신은 우리 교단의 정치에 순응하며 그 권징을 따르겠습니까? 당신은 목회 동역자들과 친구가 되어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까?

f. 당신은 자신의 생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이웃을 사랑하고, 세계의 화해를 위해 힘쓰겠습니까?

g. 당신은 교회의 평화와 일치와 순결을 더욱 촉진시키기로 약속합니까?

h. 당신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온 정성과 지혜와 상상력과 사랑으로 섬기기를 힘쓰겠습니까?

i. (1) (사역장로에게) 당신은 사람들을 돌보고, 예배와 양육과 봉사에 헌신함으로 충성된 사역장로가 되겠습니까? 당신은 교회의 공의회에서 봉사하면서, 정치와 권징에 동참하고, 또 당신의 사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나타내도록 힘쓰겠습니까?

(2) (집사에게) 당신은 박애정신을 가르치고, 관심을 일으키며, 사람들을 인도하여 친구가 없고 궁핍한 자들을 돕도록 하며, 당신의 사역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도록 노력하는 충성된 집사가 되겠습니까?

(3)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에게) 당신은 말씀과 성례전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가르치며, 사람들을 돌보는 충성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되겠습니까? 당신은 교회의 공의회에서 봉사하면서 정치와 권징에 능동적으로 동참하고, 당신의 목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나타내도록 힘쓰겠습니까?

(4) (특정한 목회적 섬김을 위해 파송 받는 사역장로에게) 당신은 이 위임에서 복음 선포로 사람들을 섬기며, 믿음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돌보며, 당신의 사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나타내기 위해 노력하는 충성된 사역장로가 되겠습니까?

(5) (공인 certified 기독교 교육사에게) 당신은 믿음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돌보며, 목회 사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나타내기 위해 노력하는 충성된 공인 기독교 교육사가 되겠습니까?

사역 장로나 집사의 임직식에서: 임직을 받는 사람(들)이 주어진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한 후, 사역 장로 한 명이 피택된 사역 장로들 및/또는 집사들과 함께 회중을 향해 서서 다음의 질문들을 회중에게 해야 한다:

a. 본 교회의 교인인 우리는 [이름들]_____을/를 본 교회 교인들의 음성을 통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역 장로들 혹은 집사들로 받아들이겠습니까?

b. 우리는 홀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로 동의합니까?

말씀과 성례전의 사역을 위한 위임식에서: 위임을 받는 사람(들)이 주어진 질문들에 긍정적인 대답을 한 후, 사역 장로 한 명이 피택된 (부)목사와 함께 회중을 향해 서서 회중들에게 다음의 질문들을 해야 한다:

a. 본 교회의 교인인 우리는 [이름들]_____을/를 본 교회 교인들의 음성을 통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의 (부)목사로 받아들이겠습니까?

b. 우리는 홀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가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로 동의합니까?

c. [그]가 우리 가운데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그]에게 적절한 사례를 지급하며, [그]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며, 곤경 속에서 [그]와 함께 서며 [그]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로 약속합니까? [그]가 선포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목회적 돌봄을 환영하고, [그]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섬기기 위해 힘쓸 때에 [그]의 권위를 존중하겠습니까?

W-4.05: 변화 수용

W-4.0501: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

세례를 통하여, 각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변화, 절기, 시련, 그리고 축하의 계절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지속적인 돌보심이 있을 것이라는 확증을 받는다. 사역의 전환을 위한 예배는 이러한 은혜를 증거해 주며, 예배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감사, 지지, 혹은 관심을 표현할 수 있게 한다.

W-4.0502: 떠나는 교인들

떠나는 교인들을 인정하는 것은 주일 예배 상황 속에서 말씀 선포에 대한 응답이나 혹은 보냄의 행위로 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 예배에는 떠나는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감사와 중보의 기도를 포함시킬 수 있다.

W-4.0503: 섬김의 종결

집사, 사역 장로, 혹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같이 직제 사역을 통해 섬겼든지, 혹은 특정한 제자도의 역할을 감당했든지, 혹은 교회나 지역 사회나 세상을 위해 다른 형태로 섬긴 특정한 사람들의 은사들과 소명에 감사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해 온 섬김의 종결을 인정해주는 것이 적합하다. 이러한 인정은 주일 예배의 상황 속에서 말씀 선포에 대한 응답이나 파송의 행위로, 또는 다른 예배의 예식에서 행해질 수 있다. 이러한 예배에는 사역을 종결하는 자들을 위한 감사와 중보의 기도가 포함된다. 또한 의미 있는 다른 영예나 업적들도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배 가운데 축하를 받을 수 있다.

W-4.0504: 견책과 복권

교회는 교회의 복리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통한 구속과 화해라는 목표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권위의 표현으로서 권징을 행한다. 견책과 복권의 형식들은 *규례서* 권징조례에 나와있다. 이러한 것들은 기도와 목회적 관심 속에서, 그리고 해당 공동체나 교회 공의회 내의 예배 상황 속에서 준수되어야 한다.

W-4.06: 결혼 언약

W-4.0601: 기독교 결혼

세례를 통하여, 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언약에 속해있다. 결혼은 온 인간 가족의 복지를 위해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결혼은 두 사람—전통적으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이 여생동안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겠다는 독특한 결단을 수반한다. 두 사람을 연합하게 하는 희생적 사랑은 그들을 교회와 더 큰 공동체에 속한 충실하고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유지시켜준다. 민사법에서 결혼은 결혼한 부부가 사회 속에서 지니는 권리와 의무를 인정해 주는 하나의 계약이다. 개혁 전통에서 결혼은 또한 언약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실제적 당사자가 되시고, 신앙 공동체는 그 언약을 공식적으로 증거하고 인정한다.

W-4.0602: 결혼 준비

만약 그들이 결혼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민 관할권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두 사람은 결혼 계약서를 기록하는 민사 관할권의 대리인 권한이 주어진(필수는 아님) 미국 장로교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에 의해 집례되는 기독교 결혼 예식을 요청할 수 있다. 기독교 결혼 예식을 요청하는 두 사람은 그들의 요청을 허락하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그 두 사람이 결혼 언약과 그 언약의 가치에 따라 함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보여준다는 판단이 설 때에만 그것을 허락할 수 있다. 이 결정을 할 때,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결혼 예식을 위해 교회 건물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거절할 권한을 가진 당회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W-4.0603: 예배 순서

결혼 예식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지시와 당회의 감독 하에 이 언약과 개혁 전통 예배 형태에 합당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W-2.03). 결혼 예식에서 두 사람은 상호 약속을 교환하며 결혼할 수 있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두 사람이 서로 주고 받는 약속의 증인으로서 그들의 연합에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한다. 신앙 공동체는 그 두 사람이 서로 약속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지지해 줄 것을 서약한다; 그 두 사람을 위해, 그들을 지지하는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신실하게 살기 위해 힘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

W-4.0601: 제 2 헬베틱 5.245–5.251; 웨스트민스터 6.131–6.139.

W-4.0604: 민사 결혼 인정

민사 결혼을 인정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확증해주는 예배 예식은 두 사람이 요청할 때 거행될 수 있다. 이 예식은 두 사람이 민사 관할권의 법에 따라 이미 결혼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발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결혼 예식과 유사할 것이다.

W-4.0605: 어떤 것도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나 당회가 성령의 분별이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린 결혼 예식에 대해서는 여기의 어떤 것도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에게 그 예식을 집례하라고 강요하거나, 또한 당회에게 교회 건물의 사용을 인가해주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W-4.07: 죽음과 부활

W-4.0701: 부활 증거

세례를 통하여, 각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며 그분 안에서 영원하고 풍성한 삶을 약속 받는다. 우리는 기독교 장례식을 세례의 완성으로 이해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 눈물과 기쁨으로 복음의 기쁜 소식과 부활의 소망을 확증한다. 우리는 홀로 비통해 하는 대신에 성령의 능력과 믿음의 공동체에 의해 지지를 받는다.

W-4.0702: 장례식 방침

당회는 누군가 죽었을 경우에 거행할 수 있는 예식에 대해 전반적인 방침을 세워, 소박하고, 위엄이 있으며, 선한 청지기직을 표현해 주며, 부활의 소망을 증거해 주고,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의 중요성을 전달해 주는 장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다.

W-4.0703: 예식을 위한 설정

부활을 증거하는 예식은 공동체의 신앙, 생활, 그리고 소망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평상시의 예배 장소에서 가장 적절하게 거행된다. 이 예식을 평상시의 예배 장소에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들이 있을 때, 가정이나 장의사나 화장터나 장지와 같은 다른 곳에서 거행될 수 있다. 이 예식은 어느 날이나 거행될 수 있으며, 당회의 승인이 있으면 주일 예배의 한 부분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이 예식은 하관하기 전이나 혹은 후에 거행될 수 있다. 이 예식은 장소 제공 교회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지시에 따라 거행된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재량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여 예식을 함께 진행할 수도 있다.

W-4.0704: 예배 순서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사망했을 때, 고인의 몸은 땅에 묻거나, 화장하거나, 의학적 목적을 위해 기증하거나, 아니면 책임있고 경건한 다른 방식으로 안치할 수 있다. 보통, 고인의 가족과 공동체 회원들과 교회의 목사(들)가 고인의 시신이 안치되는 곳까지 동반하여 기도, 축복 및 기타 예배 순서를 진행한다.

고인의 시신을 안치하는 장소까지 동반하는 과정 중에, 혹은 안치를 하기 전이나 이후의 다른 시간에 더 정식의 [full] 예배 예식을 드릴 수도 있다. 예식은 성경 말씀으로 시작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니는 부활과 산 소망을 증거한다. 예배자들은 부활과 영생과 성도가 서로 교통함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주는 찬송가와 시편과 영적 노래들을 부를 수 있다. 치유 및 화해를 위한 기회로서 고백과 용서의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며

W-4.0701: 스코틀랜드 3.17; 웨스트민스터 6.177-6.179; 제 2 헬베틱 5.235-5.237.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표현한다. 믿음의 확증이 뒤따를 수도 있다. 기도를 드린다: 그리스도 안의 생명과, 복음의 약속과, 고인의 생애와 간증과, 성령님의 위로와, 신앙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슬퍼하는 자들과, 유족들을 돌보는 자들과, 상실로 인해 아파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중보한다; 이러한 상실의 시기에 믿음과 은혜를 주시라고 간구한다; (만약 성만찬 예전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주기도문으로 끝맺는다. 당회의 승인을 받아 성찬식을 거행할 수도 있다. 예식은 고인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에 위탁하고, 고인의 시신을 안치시키며 (다른 때에 안치하지 않는 한), 그리고 축도로서 조객들을 보냄으로 종결된다.

관 혹은 유골단지는 관보로 덮어 놓을 수 있으며, 이것은 세례 시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나타내 주는 상징이다. 예식은 세례반에서 시작할 수 있다. 부활절 paschal 촛불을 사용하는 것이 교회의 관례라면, 그것을 관 근처에 놓을 수 있다. 음악은 하나님께 관심을 이끌고, 교회의 신앙을 표현해 준다. 꽃과 다른 장식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니는 고결함과 검소함을 반영해 준다. 이 예식에는 믿음의 공동체와 그 문화적 상황에 공통적인 다른 행위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단 그러한 행위들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동호회 fraternal 의례, 시민 civic 의례, 혹은 군장 military 의례는 별도로 거행되어야 한다.

제 5 장: 예배와 그리스도인의 삶

W-5.01: 예배와 개인적 삶

W-5.0101: 개인적 삶

우리는 공동 예배와 섬김을 통해, 그리고 개인적 예배 행위와 제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한다. 개인적 삶과 공동 예배는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독교 예배에서 흘러나오며, 우리는 거기에서 믿는 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제자로서의 우리의 소명을 발견한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삶의 봉헌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시 예배로 흘러 들어간다.

개인적 삶 속에서, 우리는 매일의 기도 훈련과, 제자로서의 다른 훈련들, 가정 예배,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소명 및 섬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려 노력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말씀에 의해 형성되고 성령님에 의해 능력이 부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게 된다.

W-5.0102: 일상 생활 속의 기도

우리는 기도의 선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한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매일 직면하는 도전들로 말미암아 매일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는 기도의 삶이라 할 수 있다. 기도는 우리와 대화하시고 교통하고 싶어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개방하는 것이다. 기도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 하나님과의 의식적인 conscious 대화; 세심한 기대 속에서의 침묵; 성경 묵상; 예식서, 묵상집 및 시각 예술품의 사용; 노래, 춤, 노동, 혹은 신체 운동 등이다. 개인적 신앙 훈련을 위해 매일 기도에 대한 교회의 모범(W-5.0202)을 사용할 수 있다. 기도는 또한 공적 증언 및 항거 protest, 긍휼을 베푸는 행위, 그리고 다른 형태의 훈련된 섬김을 통해 행동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기도는 임무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로운 선물로 여겨져야 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영감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다. 이것은 매일의 삶을 위해 성령의 은사들과 인도하심을 지속적으로 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기도는 평생 가꾸어야 cultivate 할 훈련이며, 또한 많은 열매를 맺는 훈련이다.

W-5.0103: 제자도의 다른 관행들

우리는 제자도의 다른 관행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한다: 안식일 지키기, 성경공부, 묵상과 행동, 금식과 잔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무와 헌신. 이러한 모든 관행들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활동에 주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하신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예배와 쉼과 갱신을 위한 시간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교회 초창기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날(주일, 혹은 일요일)에 공동 예배를 위해 모임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해 왔다. 한 주의 첫 날인 이 날은 제자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형성해 준다. 따라서 주일은

W-5.0101: 엡 4:15; 벧후 3:18.

W-5.0102: 시 119; 130; 마 6:5-14; 눅 11:1-13; 롬 8:26-27; 12:12; 고전 12-14; 살전 5:17; 웨스트민스터 6.117.

W-5.0103: 창 2:1-3; 출 20:8-11; 신 5:12-15; 고전 4:1-2; 벧전 4:10; 히 4:12; 하이델베르크 4.103; 제 2 헬베 5.223-5.226, 5.227-5.231; 웨스트 6.117-6.119; 소요리 7.057-7.062; 대요리 7.225-7.231.

공동 예배에 참석하기 위한 시간이며, 섬김과 증언과 긍휼의 사역에 참여하는 시간이고, 쉼과 여가 활동을 위한 시간이다. 일요일에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 중에 안식일 Sabbath 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을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위한 의미와 방향과 위로와 도전을 발견한다. 규칙적이고 훈련된 성경과의 관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단순한 말씀 읽기, 성경으로 기도하기, 주석 연구, 중요 구절 암송,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기 등이다. 우리는 성경 속의 다양한 책들을 읽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항상 성령님의 조명 및 신앙 공동체의 도움을 의지해야 할 것이다.

금식과 잔치는 슬픔과 축하를 표현하는 고대적 방식들이다. 교회력의 축일과 절기들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속사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하는 금식과 잔치의 주기들을 제공해 준다. 세계와 나라와 공동체 혹은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또한 감사, 슬픔, 회개 혹은 항거를 위한 행위들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무와 헌신을 다하는 훈련은 세상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응답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검소하고, 관대하고, 환대를 베풀며, 긍휼히 여기고, 피조물을 돌보는 삶을 살라는 부름을 받았다. 십일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무와 헌신의 기초적인 관행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떻게 우리의 물질, 영적 은사들, 그리고 시간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

W-5.0104: 가정 예배

우리는 개인관계의 맥락에서, 특별히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한다. 가정 또는 가족 예배를 위한 기회 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안식일 준수 및 매일 기도의 주기; 성경 읽기, 연구, 혹은 암송; 식사 전 기도; 찬송, 시편, 영적인 노래 부르기;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표현들이 있다. 개체교회들의 가정과 이 식구들이 이러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구비 시키는 것이 촉진된다.

가정 예배는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고대하며, 정해진 성경 구절을 연구하고, 세례와 성만찬의 성례전을 묵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들을 제공해 준다. 대림절, 크리스마스, 사순절, 부활절과 같은 교회력의 절기들은 가정 예배를 위해 보다 많은 형식과 의미를 제공해 준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에는 생일, 세례 받은 날, 그리고 기타 의미 있는 기념일들에 대한 인식이 포함될 수 있고, 또한 자연의 주기, 시민 의례 civic observance,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반영할 수도 있다.

자녀들은 자기 부모들이나 그들을 돌보아주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예배하게 된다. 자녀들은 노래와 기도를 함으로써, 성경 이야기를 경청하고 말함으로써, 교리문답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과 나눔으로써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참여할 수 있다. 가정 예배는 자녀들이 교회 예배에 온전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일 예배의 형식과 요소들을 가르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

W-5.0105: 그리스도인의 소명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한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을 위해 우리에게 은사들을 부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즉 일할 때와 놀 때,

---

W-5.0104: 신 6:4–9; 수 24:15; 웨스트민스터 6.117; 대요리문답 7.228.
W-5.0105: 엡 4:1.

우리의 생각과 행위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 관계 및 공적 관계들에서—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러한 섬김과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보답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개혁 전통에서 특별히 중요한 주제로 여겨져 왔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생활과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돌려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매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 일, 그리고 증언은 분리될 수 없다.

W-5.02: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와 교회의 사역

W-5.0201: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교회 사역

하나님은 상호적 사랑과 섬김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부르신다.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의 예배는 깊은 연관이 있다; 사실 예배가 사역이다. 교회의 사역은 예배에서 솟아나오며,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위한 축하와 염려들을 하나님께 가져갈 때, 교회의 사역은 다시 예배로 흘러 들어간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매일 기도, 기독교 교육 및 목회적 돌봄의 사역, 교회 공의회들의 활동, 그리고 교인들의 여러 다른 모임들의 주기를 통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기를 힘쓴다. 교회의 사역들은 말씀과 성례전에 의해 형성되고 육성되며, 끊임없는 기도의 영성 안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W-5.0202: 매일 기도 예식

예수님의 이름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부르신다. 매일 기도 예식은 우리에게 교회와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중보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준다. 그러한 예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시편을 노래하거나 기도하기; 성경 읽기; 감사와 중보의 기도,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침 등이다. 매일 기도 예식은 하루 중 정해진 시간 (아침, 정오, 저녁, 하루의 끝 시간)에 드리거나, 일상의 요구와 개인 및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유형을 따를 수도 있다. 그런 예배는 교회의 공의회에서, 개체교회에서, 신자들의 소그룹에서, 가정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드려 질 수 있다. 개체 교회에서 드려질 경우에는 이러한 예배는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교회의 교인은 누구나 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

W-5.0203: 기독교 교육

하나님은 교회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는 사역을 지속하며, 삶의 모든 계절과 변화들을 통과하는 동안 서로를 인도하고 양육하게 하신다. 특별히 교회는 교인들이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기독교의 소명을 발견하고, 세상에서 책임을 감당할 때에 교육과 성장을 위한 기회들을 제공한다. 교인들의 양육을 위한 교회의 기본적인 표준과 자료는 진리와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길을 증거해주는 성경 속의 하나님 말씀이다.

교인들의 양육을 위한 중요한 기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행해지는 주일 예배 시간이다. 예배 시간에 주어지는 말씀과 행위들은 공동 예배에서 일어나는 교인들의 성장 과정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 연구와 묵상을 위한 특별히 풍성한 자원들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교인들은 이러한 집회에 참석하고 참여하도록 촉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예배에 참석하고 참여하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는 교육 활동들을 계획해서는 안 될 것이다.

W-5.0201: 요 13:12–17, 31–35; 롬 12:9–21; 갈 6:2; 엡 4:11–16.
W-5.0202: 롬 12:12; 살전 5:17.
W-5.0203: 마 28:20; 제 2 헬베틱 5:146, 5.233.

교회의 교육 사역은 개체교회가 기독교적 교인들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서약하는 세례의 약속들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당회는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들의 개발과 감독에 대해, 장로들과 집사들을 교육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모든 교인들의 제자 훈련에 대해 책임을 진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말씀과 성례전의 사역을 통해, 교회 학교 교육을 통해, 기도의 은사를 통해, 그리고 삶의 모범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양육에 기여한다. 훈련 받은 공인 기독교 교육사들은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과 적절한 훈련을 받은 자들로서 교인들의 양육과 성장을 위한 교회 사역에 기여할 수 있다. 당회는 기독교 교육을 위한 은사가 있는 자들을 발굴하여 격려하고 구비시킬 책임을 지니고 있다. 당회는 또한 어린이들의 신앙을 양육하고자 하는 부모들 및 다른이들을 지원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교회 학교 모임들은 노래, 기도, 말씀 듣기를 포함한 예배 기회들을 제공한다. 이러한 모임들은 또한 헌신 및 봉사를 위한 기회들을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교회 학교에서의 예배는 온 교인들과 더불어 참석하는 주일 예배를 대체하지 못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양육을 위한 다음과 같은 다른 기회들을 제공한다: 신학교 교육 및 계속 교육; 특별한 주제 또는 제목의 워크샵; 음악 프로그램 및 연습; 선교 및 프로그램 해석; 위원회, 이사회, 공의회 모임; 수련회, 캠프, 및 컨퍼런스 등이다.

W-5.0204: 목회적 돌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을 지속하게 하라고 교회를 부르셔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스트레스와 힘든 시기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권고와 용서와 화해를 제공하게 하신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들을 의지하면서 교인들이 위험과 죽음, 질병과 상실, 위기와 축하, 갈등과 죄의 시기를 통과하는 동안 그들을 보살피기 위해 힘쓴다. 특별히, 이러한 사역들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몸과의 관계를 확인해 주고 인쳐주는 세례와 성만찬의 성례전으로부터 흘러나오며 또한 그것으로부터 자양분을 얻는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목회적 돌봄을 위한 기초이며 상황이다. 교인들은 서로를 돌보는 일에 예배 자료들을 사용한다. 즉, 말씀의 은혜와 도전, 성례전의 선물과 부름, 기도 시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능력, 신앙 공동체의 교제와 위로를 함께 나눈다. 그들은 이러한 자료들을 취하여 가정, 병원, 이웃, 학교, 및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를 나눈다.

모든 교인들은 병든 자를 방문하고, 약한 자를 지원하며, 또한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과 같은 목회적 돌봄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사역 장로들, 집사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목회적 돌봄을 해야 할 특정한 책임을 맡고 있다. 특별한 은사들과 적절한 훈련을 받은 자들은 목회 상담이나 기관 사역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적절한 상담과 돌봄을 받기 위해 다른 자격 및 인증을 받은 전문가들에게 의뢰될 수도 있다.

전인적 건강[wholeness]과 치유를 위한 예배들은 교회에서 목회적 돌봄의 사역을 규정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러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도로서,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구하거나 받은 치유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다. 전인적 건강을 위한 예배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약속 받은 것에 초점을 맞추는 말씀의 선포가 포함된다. 기도는 안수 및 기름 부음을 통해 행해질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행위들은 조심스럽게 소개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치유는 인간의 기도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 주님의 성만찬은 말씀을 통해 선포된 전인적

W-5.0204: 고후 5:16–20; 약 5:13–16; 제 2 헬베틱 5.234; 웨스트민스터 6.086, 6.147; 1967 년 9.07, 9.22.

건강의 약속을 인치는 적절한 방법이다. 전인적 건강을 위한 예배는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지시를 따르지만, 사역 장로와 집사와 기도의 은사를 지닌 다른 사람들의 인도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이러한 예배는 정기적으로, 즉 특별 행사나 또는 주일 예배의 한 부분으로 진행될 수 있다.

용납 및 화해의 예배에서는 죄와 고통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그러한 예배는 깨어진 관계들과 죄로 가득 찬 사회 구조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적절한 방법을 제공해 준다. 이러한 예배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평화 및 화해의 적절한 표시들과 더불어 고백과 용서이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해 주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포함되고, 기도와 감사의 표현과 헌신을 다짐하는 순서들이 포함될 수 있다.

W-5.0205: 교회 공의회

하나님은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정신 mind 을 추구하도록 초청하신다. 미국장로교 교인들은 당회와 노회와 대회와 총회의 모임들을 통해 공의회들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정신을 추구한다. 이러한 공의회들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신앙 고백서의 증언과 이 예배 모범의 원리들에 따른 것이다. 당회 위의 상위 공의회들은 정기적 말씀 선포와 성만찬 거행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 공의회들의 모임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맺는다. 공의회들은 또한 분별과 심의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찬양과 감사와 고백과 중보기도와 간구를 위한 다른 기회들을 제공해 준다.

W-5.0206: 기타 모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기타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배우고 기도하고 섬기며, 또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즐기도록 초청하신다. 주중 어느 시간에라도 교회 건물이나, 교인들의 집이나, 기타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 기도 모임, 언약 그룹 및 기타 다른 모임들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모임들은 다음과 같은 소중한 기회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과 양육을 위한 기회; 서로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회; 개인적인 이야기들, 축하할 일들 및 염려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 공동 작업, 식사, 교제,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기회; 증거와 섬김을 통해 복음을 실천하는 기회 등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배움과 예배와 섬김과 레크리에이션을 위해 수련회 장소, 캠프장, 그리고 집회 장소에서 모이기도 한다. 이러한 장소들에서 하는 예배는 해당 공의회에 의해 허락을 받아야 하며, 성경과 신앙 고백서, 그리고 본 예배 모범의 원칙들에 의해 안내를 받는다. 행사의 성격에 따라, 예배 순서들은 매일 기도 예배 순서, 주일 예배, 또는 이 예배 모범에 설명된 다른 예배 순서들을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주님의 성만찬은 그 행사를 감독하는 공의회나, 그 행사가 거행되는 지역의 공의회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에큐메니칼 그룹들이 함께 모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을 증언한다. 그러한 예배들은 교단적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유하는 세례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한 모임에서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하도록 초청을 받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은 그들의 참여가 성례전에 대한 개혁 신앙의 이해와 일치한다면 참여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종교 간 interfaith 모임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증언한다. 그러한 모임들은 우리가 우리 이웃들의 말을 듣고 배움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W-5.0205: 빌 2:5; 웨스트민스터 6.173-6.176.
W-5.0206: 마 18:20; 히 10:25.

실증해 보이고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다. 타 종교 간 행사들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관행에 대한 자율성, 고결성, 및 다양성을 존중하는 반면, 자신들의 말과 행위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반영해야 한다.

W-5.03: 세상에서의 예배와 교회의 선교

W-5.0301: 세상에서의 교회의 선교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보내신다. 예수님의 선교와 교회의 예배는 깊은 연관이 있다; 사실 예배는 선교이다. 교회의 선교는 예배로부터 솟아나오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의 실제와 약속을 어렴풋이 알게 된다. 교회의 선교는 우리가 세상의 기쁨과 고통을 하나님께 가져오면서 예배로 다시 흘러 들어온다.

교회는 세상에서의 선교를 담당하며 복음 선포, 긍휼 사역, 정의와 평화를 위한 일, 그리고 피조물을 돌봄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증언하려 한다. 교회의 선교는 말씀과 성례전에 의해 형성되고 양육되며, 또한 세상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삶으로 표현함을 나타낸다.

W-5.0302: 복음 전도

하나님은 세상에서 복음을 선포하도록 교회를 보내신다: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사랑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일;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으라고 초청하는 일;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의 약속을 소개하는 일 등이다.

주일 예배 시에, 우리는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들으며, 믿음으로 응답하고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재 헌신하는 기회를 가진다. 따라서, 일요일 예배에서는 세례 받을 준비를 하며, 세례에서 결단했던 제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초청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 그들이 받은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그들도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일에 함께 하도록 초청하는 일을 위해 또한 준비시킨다.

복음 전도를 위한 특별 예배를 당회가 승인할 수도 있다. 이러한 예배의 핵심 순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예수님께 속한 우리의 생명과, 또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그분의 초대를 강조하는 말씀의 선포이다. 이러한 말씀 선포의 행위는 기도로 둘러싸인다. 그리스도의 초대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 수 있도록 구비시켜 주는 신앙 공동체의 양육과 지지를 받아야 한다. 만약 그들이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주일 예배에서 공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다. 전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세례의 재확인을 통해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새로운 결단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W-5.0303: 긍휼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에 보내셔서 긍휼을 베풀게 하신다: 굶주린 자를 먹이며, 병든 자들을 돌보고, 갇힌 자를 방문하며, 포로 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노숙자들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낯선 자들을 환영하며,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한다. 단체로 혹은 개인으로 행해진 이러한 긍휼 사역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전체 교회의 사역이다. 우리는 사람들의 당면한 상처와 필요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라는 부름을 받았다. 교회는 또한 인간의 고통을 영구화시키는 제도들에 직면하여 도전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증거와

W-5.0301: 요 20:19-23.
W-5.0302: 웨스트민스터 6.055-6.058, 6.187-6.190.
W-5.0303: 사 61:1-4; 마 25:31-46; 막 1:32-34; 눅 4:18-21; 6:17-19; 갈 6:9-10; 약 1:27, 2:14-17.

옹호의 지역적 활동을 통해, 광역[larger] 교회의 프로그램들을 통해, 그리고 인간 복지를 위해 일하는 다른 기관들 및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그리스도의 긍휼 사역에 참여한다.

주일 예배 시에, 말씀을 통해 긍휼 사역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 선포되고 성례전을 통해 제정된다. 우리는 억압 구조에 우리가 공모했음을 고백하고, 상처 받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고, 또한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돌보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바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좇아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며, 줄 뿐만 아니라 받기도 하며, 심지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생명의 위협도 감수하겠다고 맹세한다.

W-5.0304: 정의와 평화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에 보내셔서 정의를 위해 일하게 하신다: 공동의 유익을 위해 힘을 행사하기; 개인 및 공공 영역에서 정직하게 처신하기;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과 자유를 추구하기; 이 땅의 낯선 자를 환영하기, 법의 정의와 공정성을 추구하기; 빈부격차를 극복하기; 억압과 폭력의 제도를 대항하여 증언하기; 그리고 개인, 집단 및 대중에게 가해진 잘못들을 시정하기 등이다. 하나님은 또한 교회를 보내 다음과 같은 곳에서 평화를 추구하게 하신다: 보편적 교회 안에서, 교단 내에서, 개체 교회 수준에서; 나라들과 종교 혹은 민족 그룹들이 서로를 대항하여 전쟁을 벌이고 있는 세상에서; 그리고 지역 사회, 학교, 직장, 이웃 및 가정에서 등이다. 중재와 정의를 위한 이러한 활동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신과 화해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 위에 세워지며,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중보 혹은 변호에 참여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주일 예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선포하고, 받고, 또한 제정[enacted] 한다. 말씀의 선포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평화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며, 다른 사람들과 이러한 선물들을 나누고자 하는 감동을 받는다. 세례와 주님의 성만찬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며, 지금도 우리들 서로간의 사이를 갈라 놓는 적개심이라는 분열의 벽들을 허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우리는 불의한 제도에 참여한 것을 고백하고, 폭력과 불의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받은 은사들을 드려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일을 지원하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는 일에 헌신한다.

W-5.0305: 창조물을 돌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내셔서 피조물을 돌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의 유익과 영광을 보존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시며, 창조의 선물들을 통해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돌보는 자들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땅, 물, 및 공기를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경외심과 감탄의 마음을 가지고 돌보기; 지구의 자원들을 약탈, 오염, 혹은 파괴함이 없이 지혜롭게 사용하기; 생명을 보존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과학기술을 사용하기; 모든 사람들의 필요들을 채워주기 위해 우리의 생산과 소비를 측정하기; 생식과 번식에 관한 책임 있는 관행들을 촉진시키기;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아름다움, 질서, 건강, 조화 및 평화를 추구하기 등이다.

W-5.0304: 출 22:21–27; 레 19:33–34; 시 82; 사 2:1–5; 32:1–8, 16–17; 암 5:6–15, 21–24; 미 6:6–8; 마 23:23–24; 눅 4:16–21; 고후 5:16–21; 약 3:13–18; 웨스트민스터 6.127–130; 소요리 7.067–7.081; 대요리 7.244–7.258; 1967 년 9.43–47.

W-5.0305: 창 1:26–31; 2:15–20; 시 8; 24:1–2; 사 11:6–9; 1967 년 9.53; 간추린 11.3.

주일 예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우리가 창조물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과 지속적인 돌보심에 대해 감사; 지구를 관리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 창조물을 돌보는 일에 우리가 실패했음을 고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 선포된 구속과 갱신에 대한 약속을 즐거워함; 우리의 삶과 재원을 만물의 창조주가 사용하시도록 드림;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 피조물에 대하여 선한 청지기들로 살겠다고 다짐함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물을 성실히 돌보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 보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종이 사용, 성례전 시에 필요한 요소들, 예배 공간의 건축 및 기타 다른 자원들을 포함한 예배를 위한 자료들을 책임 있게 선택하는 것이다.

W-5.04: 예배와 하나님의 통치

W-5.0401: 하나님의 통치

교회는 예배와 섬김 속에서 현재의 실재이며 동시에 미래의 약속인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살아있는 표지이다. 교회의 활동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의 활동들은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응답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확신과 함께, 그리고 그 통치가 곧 충만함과 영광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섬기려 한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빌 2:10-11) 하시는 날을 고대하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계 7:12)

W-5.0401: 마 6:33; 막 1:15; 히 12:28-29; 계 11:15; 스코틀랜드 3.25; 하이델베르크 4.128-4.129; 웨스트민스터 6.180-6.182; 소요리문답 7.107; 대요리문답 7.306; 1967 년 9.54-56.

권징조례

The Rules of Discipline

D-1.0000 제 1장 교회권징의 원리

전 문

D-1.0101 교회권징

교회 권징은 교회의 교인들을 인도하고 통제하고 바른 방향으로 교육시키며, 또 범법자에게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비판하여 선도하기 위한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회의 권위행사이다. 교회권징 절차는 세속적 사법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사법절차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위해 존재한다. 권징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됨의 의미를 분명히 밝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신앙 공동체의 생활 가운데서 개인을 양육시킴으로써 교회의 순결성을 보존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 대해 공의로움과 인애를 이룩하며; 잘못 행동하는 교인의 언동을 교정하거나 제재하여 회개와 회복에 이르도록 하고; 권징사유에 의해 피해를 받은 개인의 위엄을 지키고; 불화와 분열의 원인들을 제거하여 교회의 일치를 회복하고; 과정의 올바르고 신속하고 실속 있는 결정을 확보하는 데 있다. 모든 점에서 모든 당사자들에게 절차상 안전과 합당한 과정이 허용되어야 함에 이 조례를 마련한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

D-1.0102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여된 권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주신 권위, 곧 교회가 권징을 행사하는 데서 나타나는 권위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파괴하자는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함이며, 또 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자는 것이다. 권징은 분노로 할 것이 아니라 자비한 마음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교회의 큰 목적을 달성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흠없이 나타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D-1.0103 조정과 중재

분쟁 없이 견해 차이를 조정하고 중재하고 조절하는 전통적인 성서적 의무는 본 권징조례로 인해 감소되지 않는다. 권징조례가 교회 내에서 필요시 사법절차가 수행되어야 할 방편을 설명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방식의 사법절차를 권장하거나 비용을 더 들게 하거나 더 힘들게 하려는 데 그 의도나 목적이 있지 않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마태 5:25)하신 교인에 대한 성경적 의무가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교회 교인의 의무는 불화, 불평, 비행이나 변칙의 조절이나 해결을 (기도함으로 신중히) 위해서 노력하는 일과, 또 기도하는 심정으로 논의한 후 그것들이 교회의 순결과 목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확정되는 경우 외에는 본 권징조례 하에서 공식 절차를 피하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D-2.0000 제2장 사법절차의 정의

D-2.0100 1. 사법절차

D-2.0101 교회권징

사법절차는 목회적 돌봄과 감독의 맥락에서 교회권징이 수행되는 수단이다. 그것은 다음 사항을 위해 교회의 공의회들에 의한 권위 행사이다.

a. 공의회들, 또는 총회 산하 기관의 변칙과 비행의 예방과 교정 (교정사건, D-6.0000);

b. 개인들에 의한 위법의 방지와 시정 (징계사건, D-10.0000).

D-2.0102 교회 공의회들

사법절차를 위한 교회의 공의회들은 당회, 노회, 대회, 그리고 총회이다. 당회는 자체적으로 재판과 청문을 진행한다. 노회, 대회, 그리고 총회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를 통하여 재판을 주관하고 청문회를 가진다.

D-2.0103 해결의 대안형식

D-1.0103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소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전문교육과 자격증을 받은 조정자들과 중재자들에 의해 처리되는 해결의 대안 형식을 개시할 수 있다. 이 절차의 취지는 중재와 조정을 통하여 모든 관련 인물들에 대한 정의와 연민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 절차에서, 혹은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진술은 서면이든 구두이든 간에 차후 조사나 재판에서 그 자체가 증거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D-2.0200 2. 사건의 형태

D-2.0201 교정이나 징계

사법절차는 두가지 사건으로 이루어진다: 교정사건과 징계사건.

D-2.0202 교정사건

교정사건은 하위 공의회나 총회 산하 기관의 변칙과 비행이 상위 공의회에 의해 교정될 수 있는 사건이다.

변칙

a. 변칙이란 잘못된 결정이나 행동을 뜻한다.

비행/직무태만

b. 비행/직무태만이란 행동의 결여나 불이행을 뜻한다.

D-2.0203 징계사건

징계사건이란 교회 교인이나 직제사역자가 위법으로 책벌받을 수 있는 사건을 뜻한다.

직제사역자

a. 직제사역자는 말씀과 성만찬의 목사, 사역장로, 및 집사이다.

위법

b. 위법이란 교회의 교인이나 직제사역자의 성경이나 미국장로교 헌법에 위배되는 어떤 행위나 행동의 결여이다. **공의회의 정당한 성적 비행 방침 및/또는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정책에 의해 금지된 행위 또는 결여는 미국장로교의 성경 또는 헌법에 위배되므로 이 규칙의 목적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D-3.0000 제3장 사법절차 관할권

D-3.0101 관할권

사법절차에 있어서 각 공의회는 다음과 같은 관할권을 갖는다;

당회

a. 개체교회의 당회는 그 교회 교인들이 개입된 징계사건에 대해 원 관할권을 갖는다.

노회

b. (1) 노회는 그 노회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회원들과 그 노회 소속의 지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목회자들이 개입된 징계사건에 대해 원 관할권을 갖는다 (G-3.0307).

(2) 자신의 회원권이 속한 노회가 아닌 다른 노회 *지경* 내에서 사역을 하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그의 사역이 그 노회의 관할권에 속하든지 안하든지 상관없이, 징계의 목적을 위하여서는 현재 사역을 하고 있는 노회의 관할권에 종속된다. 이 조항에 따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에 대해 징계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 회원권을 가진 노회에 통보되어야 한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의 경계 안에 있는 노회가 그 징계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고,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노회에게 그 관할권을 넘겨주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혹은 모든 징계 심사, 해결의 대안 방안, 혹은 재판에 있어 회원권을 가진 노회와 협력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본 단락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다음과 같은 인정된 목회에서 사역할 경우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즉 당회 이상의 공의회나 이들 공의회에 관련된 기관의 직원과 같은 본 교단의 다른 사역;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교단들 (그 중의 하나는 본 교단임)이 후원하는 기관 - 예를 들면, 연합 선교 교회, 특수 사역, 행정 사무실, 교단간의 대행기관 - 에서의 사역; 또는 미국 밖에 있는 교단과 함께 관련된 선교에 동역자로 사역하는 경우 등이다.

노회, 대회, 총회

c. 노회와 대회와 총회는 교정사건(D-6.0000)과 상소사건(D-8.0000, D-13.0000)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다.

교회해산

d. 교회가 해산되면, 노회가 당회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종결되지 않은 모든 징계사건에 대해 확정지어야 한다.

D-3.0102 더이상 사법적 결의 못함

교정사건이건 징계사건이건 간에,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일단 사건이 회부될 경우, 발의한 공의회는 그 사건에 관하여 더 이상 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D-3.0103
하위 공의회가 결의하지 못할 때

하위 공의회가 교정사건에 관한 고소나 징계사건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고 나서 90일 동안 해당 교정사건이나 징계사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상위 공의회가 어느 쪽이든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사건의 관할권을 맡을 수 있다. 상위 공의회는 하위 공의회에 사건처리에 관한 특정한 지시를 보내거나 그 문제 자체를 종결지을 수도 있다.

D-3.0104
이명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관할권

한 노회에서 다른 노회로 이명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두 번째 노회에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첫번째 노회의 관할권에 속한다. 한 노회에 의해 다른 교단으로 이명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그 교단에 입교되기까지는 그 노회의 관할권에 속한다.

D-3.0105
판결과 결정의 집행 및 인정

각 공의회는 다른 모든 공의회가 *권징조례*에 의해 취한 판결과 결정과 명령들을 집행하고 인정해야 한다.

D-3.0106
관할권의 종결시

사법절차에 있어서 관할권은 교회 직제사역자나 교인이 그 교회의 관할권 파기선언을 할 때 종결된다. 만일 징계사건의 피소자가 G-2.0407과 G-2.0509에 명시된 대로 관할권 파기 선언을 할 경우, 서기나 정서기는 공의회에 피소자의 이름, 조사나 재판 도중에 관할권을 파기한 사실과 날짜, 제기된 혐의사항을 포함하여, 그 당시 사안의 진행상태와 파기선언을 보고해야 한다.

D-4.0000 제4장 참조 의뢰

D-4.0100 1. 참조 의뢰

D-4.0101 정의

참조 의뢰는 당회 또는 노회나 대회의 상임 사법전권위원회가 미결의 교정사건 및 징계사건의 재판, 결정, 또는 상소 청문을 차상위 공의회로 참조 의뢰하는 서면청원이다.

D-4.0102 적절한 내용

참조 의뢰의 적절한 내용은 상위 공의회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또는 필요한 사안들과 논점들이다.

D-4.0103 하위 공의회 의무

상위 공의회에 서면으로 참조 의뢰 청원을 할 때, 하위 공의회는 그 청원의 이유를 상술해야 하고 그 사건 절차의 전체 기록을 송부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어떠한 결정도 취할 수 없다. 만일 참조 의뢰 청원이 수락되면, 재판이나 상소 청문을 포함한 모든 절차는 그 이후부터는 상위 공의회에서 주관한다.

D-4.0200 2. 참조 의뢰 결의

D-4.0201 상위 공의회 의무

참조 의뢰 청원이 접수되면, 상위 공의회 정서기는 이를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송부하여 사건을 맡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해야 한다.

D-4.0202 접 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참조 의뢰 청원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 동 위원회가 재판이나 결정 또는 상소의 청문을 주관해야 한다.

D-4.0203 거 부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참조 의뢰 사건을 맡기를 거부하고 하위 공의회로 돌려보낼 수 있으며, 거부하는 사유를 첨부한다. 그렇게 될 경우, 하위 공의회가 재판이나 상소 청문을 주관하고 판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D-5.0000 제5장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D-5.0100 1.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직임

D-5.0101 선출

총회, 각 대회 혹은 협력하는 대회들과 각 노회는 그 관할권에 속하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사역장로(장로) 중에서 상임사법 전권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각 전권위원회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사역장로(장로)가 가능한 한 동수로 구성되어야 한다. 총회 전권위원회의 위원수가 홀수일 경우에는 그 추가되는 위원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일 수도 있고 사역장로(장로)일 수도 있다. 전권위원회는 각 산하 대회 당 1 명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대회의 전권위원회는 가능한 한 산하 노회 가운데서 균등하게 배분된 11 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된다. 11 개 이하의 노회를 갖고 있는 대회에서는 각 노회가 적어도 1 명을 보내야 한다. 둘 혹은 그 이상의 대회들이 공유된 상임사법전권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전권위원회 위원 수가 12 명 이하이어서는 안되며, 각 대회는 가능한 한 각 대회에 속한 노회의 숫자에 비례해서 위원들을 선출해야 한다. 협력하는 대회들은 공유된 상임사법전권위원회에 접수된 사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들 사이에 한 명의 정서기를 지명해야 한다. 노회의 전권위원회는 노회 산하 어느 한 교회의 사역장로(장로) 위원이 1 명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7 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노회의 전권위원회 위원 중 2 인을 선정하여, 징계사건의 조사가 진행중인 동안 조사위원회 절차 검토에 대한 청원 검토 (D-10.0204)와 고발을 접수하지 않는다는 결정 검토에 대한 청원 검토 (D-10.0303)를 하게 해야 한다. 이 두 위원은 추후의 심리에 참여할 수 없다. 당회는 노회의 전권위원회에 이 두 청원 양식 중 하나를 회부하여야 한다.

D-5.0102 임기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각 위원의 임기는 6년이어야 한다. 단, 총회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회원권은 그 위원이 공천받은 대회 밖에 있는 개 교회 또는 노회로 회원권을 이명할 때 끝나야 한다. 매 짝수 연도에 총회는 그때 생긴 공석을 메꾸기 위해 6년 임기로 위원들을 선출해야 한다. 그들의 직무 임기는 그들을 선출한 총회가 폐회될 때부터 시작한다.

D-5.0103 연조

대회나 노회는 전권위원들은 각 3개조로 선출하되, 한 조 내의 위원수가 전체의 반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처음으로 설립되었을 때는 한 조는 2년 간, 두 번째 조는 4년 간, 그리고 세 번째 조는 6년 간 봉사해야 한다.

D-5.0104 공석

사임, 사망 또는 그 밖의 어떤 이유로 생긴 공석은 어떤 회의에서든지 잔여 임기를 채울 위원을 선출할 선출 공의회에 의해 충원될 수 있다.

D-5.0105 자격

6년의 전체 임기를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서 봉사한 사람은 6년 임기가 만료된 후 4년이 경과한 후라야 재선될 자격이 있다. 아무도 동시에 하나 이상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서 봉사해서는 안 된다.

총회에 의해 선출된 다른 어느 기관의 위원인 사람은 그가 그 회원권을 사임하기까지는 총회 상임사법 전권위원으로 봉사해서는 안 된다. 어느 공의회의 의장이나 서기나 직원 또는 그 소속기관의 직원은 그 공의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봉사해서는 안 된다.

D-5.0106 위원회 비용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모든 필요한 경비는 그 선출 공의회 *혹은* 공의회들이 지불해야 한다. 협력하는 대회들은 공유된 상임사법전권위원회의 비용을 동동하게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각 대회는 그 대회의 지경안에서 일어난 특정한 사법 사건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불해야 한다.

D-5.0200 2. 회의

D-5.0201 임원

각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회의를 갖고 그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서기를 선출해야 한다.

D-5.0202 권한의 근거

송부된 사건의 경우,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미국장로교 헌법에 의해 규정된 권한만을 가지며 그것에 따라 그 절차를 집행해야 한다.

D-5.0203 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회의는 선출 공의회 혹은 공의회들이 지시한 때와 장소에서 모여야 하며, 그런 지시가 없었을 때는 그 전권위원회가 결정하는 때와 장소에서 모여야 한다."

D-5.0204 정족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정족수는 위원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단, 징계사건에 대한 노회 전권위원회의 정족수는 D-10.0204 또는 D-10.0303에 따라 책임이 부과된 2인의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법 절차에 대한 당회의 정족수는 당회장 및 사역장로(장로) 회원들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D-5.0205 참여치 못할 자

개체교회 또는 하위 공의회가 어떤 사건의 대상자라면, 그 교회나 그 하위 공의회나 그 하위 공의회 지역 내에 있는 교회의 교인인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은 그 사건의 심리나 상소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D-5.0206 정족수 부족

만일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수가 결석이나 실격이나 신체장애로 인해 정족수에 미달하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정족수를 얻을 때까지 회의를 휴회해야 한다.

정족수 확보 불능

a.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그 사건들을 진행하도록 지명된 정서기에게 정족수 미달을 보고해야 한다.

전임 위원의 명단

b. 지명된 정서기는 지난 6년 이내에 임기가 끝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의 최근 명단을 보관해야 한다. 그 명단은 가장 최근 연조로 시작하여 연조별 가나다 순으로 정리해야 한다.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정족수를 얻을 수 없다고 보고할 때 마다, 정서기는 정족수를 이루기 위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이전 위원 중에서 충분한 수를 그 명단에서 윤번으로 즉시 선택해야 한다. 정서기는 공의회 혹은 공의회들에게 매년 그 명단을 보고하여야 한다.

참석자 비용

c. 만일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정족수 부족으로 사건 심리를 하지 못하면, 그 사법 사건이 발생한 지경의 관할 공의회는 참석하도록 요청된 사람들에게 발생한 비용을 적정하게 지불해 주어야 한다.

D-6.0000 **제 6장 교정사건**

D-6.0100 **1. 교정사건의 착수와 집행유예**

D-6.0101
착수 방법

교정사건은 관할권을 가진 공의회의 정서기에게 고소를 접수함으로 시작된다. 만일 공유된 사법전권위원회를 위하여 사법 사건을 처리하도록 다른 서기가 이미 지명되었을 때에는, 관할권을 가진 서기는 즉시 그 고소를 그 정서기에게 이양해야 한다.

D-6.0102
고소의 정의

고소란 어느 특정한 결정이나 결의에 있어서 변칙을 주장하거나 비행을 주장하는 서면 진술을 말한다. (D-2.0202) 고소의 제기는 그 자체가 결정이나 결의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다.

D-6.0103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고소나 상소가 최종적으로 확정지어질 때까지 판결이나 결정을 정지시키는 상임사법전권위원회의 서면 명령서이다.

유예신청 접수의
시간제한

a. 고소나 상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의회의 변칙적인 결정 혐의로부터 30 일 이내에 또는 상소될 상임사법전권위원회의 교정 결정으로부터 30 일 이내에, 그 사건을 심의할 관할권을 가진 공의회의 정서기에게 고소나 상소를 접수하고 동시에 그 집행유예를 청원할 수 있다. 이 청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공의회 결정이나 결의가 내려졌을 당시 출석한 것으로 기록된 회원들의 3 분의 1 이 서명한 청원서;

(2) 교정사건을 결정한 상임사법전권위워회 위원들의 3 분의 1 이 서명한 청원서; 또는

(3) 고소나 상소의 심문 관할권이 있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들 중 최소한 3 명이 집행유예를 서명해 주도록 요청하는 청원서를 고소인이나 상소인이 서명하여 제출했을 때.

위원장과 서기에게
전달된 청원서

b. 고소장이나 상소장은 집행유예 청원서과 함께 서기에 의해 즉시,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상임사법전권위워회 위원장과 서기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다음 사항을 결정받아야 한다:

(1) 고소나 상소가 D-6.0305 또는 D-8.0301 의 예비 쟁점들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그리고

(2) 그 청원서가 D-6.0103a(1) 또는 D-6.0103a(2) 에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a) D-6.0103a(1) 에 따라 작성된 청원서가 빠짐이 없고 기일 내에 제출되었는지(서명인증과 서명인들 의도의 확인 등); 또는

(b) D-6.0103a(2)에따라 작성된 청원서가 빠짐이 없고 기일 내에 제출되었는지.

예비 조사를 위한
시간 소요

c. 상임사법전권위원회 위원장과 서기는 청원서를 접수받고 그로부터 7 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상입사법전권위원회와 당사자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집행유예를 시행하기 위한 시간 소요

d. 상임사법전권위원회는 위원장과 서기의 조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다음의 방법으로 집행유예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 동 위원장과 서기에 의해 D-6.0103a(1)나 D-6.0103a(2)에 따라 작성된 청원서가 빠짐이 없고 기일 내에 제출되었으며, 고소와 상소를 위한 예비 쟁점들이 충족되었다고 확정함으로써,

(2) 그 청원서가 D-6.0103(a)(3)에따라 작성되었을 경우, 3 명의 상임사법전권위원회 위원들이, 각 위원의 판단으로 그 결정이나 결의가 중지되지 않을 경우 중대한 해를 끼칠 것이라는 것과, 각 위원의 판단으로 결정이나 결의가 오류라고 판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존재한다는 진술서를 사건 심의를 관할하는 공의회 서기에게 제출함으로써. 각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은 유예될 공의회의 해당결정이나 판결의 적요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유예 사본의 배포

e. 정서기는 집행유예 사본을 당사자들과 상임사법 전권위워회 위원들에게 보내야 한다.

유효기간

f. 집행유예는 고소나 상소의 통보 제기의 기일이 만료되기까지나, 또는 기일에 맞추어 접수했으면 차후에 있을 조건을 제외하고, 그 사건의 관할권을 가진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정이 내릴 때까지 유효해야 한다.

집행유예에 대한 반대

g.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제기 45 일 이내에 그 사건의 관할권을 가진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집행유예에 대한 반대의사를 접수시킬 수 있고, 그 뒤 그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 3 명 이상이 집행유예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양편 당사자들은 그 청문회에 참석하거나 대표를 보낼 수 있다. 그런 청문회에서 집행유예는 조절되든지, 종결되든지,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그 사건의 공과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까지 계속되든지 할 수 있다.

D-6.0200 2. 교정사건의 고소 제기

D-6.0201 당사자들

교정사건에 있어서 고소를 제기한 당사자나 당사자들을 고소인이나 고소인들이라 하고 고소를 받은 당사자나 당사자들을 피고인이나 피고인들이라 한다.

D-6.0202 고소 제기자

변칙의 고소나 비행의 고소는 어느 공의회의 관할권에 종속하면서 거기에 조치를 상신하는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 또는 공의회에 의해서 제기될 수 있다.

노회, 대회나 동등한 수준의 공의회 상대

a. 노회나 대회를 상대로 하는 고소나 어느 공의회가 동등한 수준의 다른 공의회를 상대로 고소하는 경우, 변칙의 고소는 변칙혐의가 발생한 후 90 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비행의 고소는 비행혐의가 발생한 후, 교정 요청이 차기 회의 전에 서면으로 이루어 졌으나, 피고가 차기 회의에서 교정하지 않거나 교정을 거부한 후 90 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 그런 고소를 제기할 자격자는 다음과 같다.

(1) 노회원으로 등록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나 사역장로가 회원인 기간 동안 일어난 노회의 변칙이나 비행에 대해 대회에게;

(2) 대회의 총대가 총대기간 동안 대회에서 일어난 변칙과 비행에 대해 총회에게;

(3) 당회가 노회를 상대로 대회에게;

(4) 노회가 대회를 상대로 총회에게;

(5) 공의회가 같은 수준의 공의회를 상대로 피고 공의회의 차상위 공의회나 혹은 피고 공의회의 치리권을 가지는 공의회에게;

(6) 공의회나 기관에 의해 신상이나 재산에 상해나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노회, 대회, 혹은 협력 대회 또는 노회나 대회 기관의 고용직원이 노회를 상대로 대회에게, 혹은 대회나 협력 대회를 상대로 총회에게.

당회나 총회 선교사역부/기관에 대한 상대

b. 당회나 총회 선교사역부 또는 총회의 기관을 상대로 고소하는 경우, 변칙의 고소는 변칙혐의가 발생한 후 90 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 비행의 고소는 비행혐의가 발생하고 이의 교정을 요구하는 서면요청서가 차기 회의 전에 제출되었으나 피고인이 차기 회의 때 주장된 비행을 교정하지 않거나 교정하기를 거부했을 때, 그로부터 90 일 이내에 접수 되어야 한다. 그런 고소를 제기할 자격자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교회의 당회를 상대로 특정교회의 교인이 노회에게;

(2) 총회 선교사역부나 총회의 기관을 상대로 당회, 노회, 대회가 총회에게;

(3) 총회 선교사역부나 총회의 기관에 의해 신상 또는 재산상 상해나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총회 선교국이나 총회 기관의 고용직원이 총회에게;

(4) 당회 또는 당회의 기관에 의해 신상 또는 재산상 상해나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특정 교회의 고용인이 당회를 상대로 노회에게.

D-6.0300 3. 사전 심리 절차

D-6.0301
고소 진술

고소는 다음 사항을 진술해야 한다:

a. 고소인의 이름과 피고인의 이름.

b. 날짜, 장소, 그리고 그 환경을 포함한 특정한 변칙; 또는 그 비행을 교정하기 위한 서면 요구서의 날짜와 피고인이 그렇게 하는데 실패했던 차기 회의의 날짜를 포함한 특정한 비행.

c. 변칙 또는 비행에 대한 고소 사유.

d. 당사자가 고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다는 이유를 밝힌 고소인의 관심과 관계.

e. 요청한 구제책.

f. 고소 사본이 피고인에게 배달 증명 우편이나 교부송달 personal service 로 전달되었다는 사실. 고소인은 수취인의 서명이 있는 영수증이나 교부송달의 공술서를 첨가하여 상위 공의회의 정서기에게 서류를 접수시켜야 한다.

D-6.0302
변호인단

공의회나 총회 선교사역부, 또는 총회의 기관이 고소인이나 피고인이 되면 세 명 이하의 변호인단을 지명해야 한다. 이 변호인단은 그 사건을 상소한 최상위 공의회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사건에서 고소인이나 피고인을 대표해야 한다.

규칙에 따라 마련

a. 공의회나 총회 선교사역부 또는 총회의 기관은 규칙에 따라 변호인의 임명을 허용할 수 있다.

봉사 못함

b. 당회 서기, 노회나 대회의 정서기나 총무는 봉직하는 공의회의 변호인단으로 봉사해서는 안된다.

D-6.0303
고소에 대한 답변서

피고인의 변호인단은 고소가 접수된 후 45 일 이내에 간명한 답변서를 상위 공의회의 정서기에게 제출해야 하고, 고소인에게 답변서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그 답변서는 고소의 혐의 사실 중 진실인 것은 인정해야 하고, 진실이 아니거나 잘못 진술된 주장을 부인해야 하고, 또한 변칙이나 비행으로 지목된 상황을 설명할 다른 사실들을 내세워야 한다. 답변서는 D-6.0305 에 언급된 어떤 다른 문제도 또한 제기할 수 있고 고소기각 명령신청을 포함할 수도 있다.

D-6.0304
심리 이전 절차

고소와 답변이 상위 공의회의 정서기에게 제출되었을 때, 정서기는 즉시 그들 서류를 그 공의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임원들에게 넘겨야 하고, 그리고 그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D-6.0305
서류 검사

D-6.0304 에서 규정한 문서를 접수하면, 그 사건을 심리할 공의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과 서기는 신속히 다음 사항을 결정짓기 위하여 서류 심사를 해야 한다.

a. 그 공의회의 관할권 여부;

b. 그 고소인이 그 사건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

c. 그 고소가 적시에 제출되었는지 여부;

d. 그 고소가 구제책이 부여될 수 있는 주장을 하고 있는지 여부.

D-6.0306
예비 질문 결정

위원장과 서기는 그들의 조사 결과를 당사자들과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a. 만일 소견이 접수되고 30 일이내에 사건의 어느 당사자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이 위원장과 서기의 소견에 항의를 제기하면, 해당 소견에 관한 증거와 논의를 제시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당사자들은 사법적인 질문에 대한 청문회 이전에 요약서를 제출하도록 요청 받아야 한다.

b. 만일 해당 소견을 판결하는 데 청문이 필요하면, 금전적 고려를 포함한 제반 상황 상, 고소의 심리 전에 즉시로 예비질문들을 처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닌 한, 그 청문은 고소에 관한 심리 이전 적어도 30 일 전으로 일정을 정해야 한다.

c. 만일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D-6.0305 에 열거한 어느 사항이라도 부정적으로 답변되었다고 확정하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그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

d. 만일 D-6.0305(또는 D-8.0301 이나 D-13.0106) 에 열거된 항목 중 하나 이상의 항목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되었다는 위원장과 서기의 소견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되지 않는다면, 그 사건은 더 이상 상임사법위원회의 결의나 명령 없이 기각되어야 한다.

D-6.0307
응답해야 하는 당회 서기 또는 [공의회]의 서기
회의록 및 서류들

a. 고소가 접수된 후 45 일 이내에, 피고 당회의 서기나 피고 공의회의 정서기, 또는 피고 기관이나 협의회는 그 사건에 관련된 모든 서류들과 다른 자료들을 모든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열거해 주어야 한다.

b. 그 후 15 일 이내에, 고소인은 피고에 그 사건에 관련된 추가 회의록 또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도 있다.

c. 관할 상위 공의회의 정서기에 의해 그 사건이 수리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면, 피고 당회 서기나 피고 공의회의 정서기는, 입수 가능한 추가적인 서류들에 대한 요청들과 기록물의 목록과 함께, 그 사건에 관련된 회의록과 서류들을 지체함이 없이 상위 공의회의 정서기에게 송부해야 한다.

D-6.0308
등록 절차

회의록과 서류가 상위 공의회의 정서기에게 제출되었을 때, 정서기는 그들 서류를 그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그리고 예상 심리 날짜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D-6.0309
심리 요약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원 절차 진행에 있어서 당사자 중 어느 한 편에게 제출할 증거와 그 증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논지의 개요를 담은 심리 요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D-6.0310
예심 회의

한 사건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의해 접수된 이후 어느 때나, 그 위원회는 규칙에 따라 당사자들이나, 만일 있다면, 그들의 변호인이 해결 가능성들을 모색하거나; 또는 예심

회의에서 사실 진술과 논쟁 이슈에 관해 합의를 구하고, 문서와 기타 증거를 교환하고, 그 논쟁을 합리적으로 편견 없이 좁히고 그것의 해결을 진척시킬 수 있는 다른 어떤 결의를 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D-7.0000 제7장 교정사건의 재판

D-7.0100 1. 재판의 집행

D-7.0101 재판-교정사건

교정사건의 재판은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집행하여야 한다.

D-7.0102 정식으로 집행

재판은 그 상황에 적합한 중립 장소에서 정중한 예의와 격식을 갖추어 진행되어야 한다.

D-7.0200 2. 소환과 증언

D-7.0201 당사자와 증인 소환

당사자들이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요청한 증인들에 대한 재판 출두 소환장은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서기가 반드시 서명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소환받는 회원

a. 미국장로교 회원에게만 출두 소환을 할 수 있다.

기타인들 요청

b. 기타인들에 대해서는 출두 요청만 할 수 있다.

타 공의회의 증인

c. 본 교단의 다른 공의회 관할권 하에 있는 사람을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할 필요가 있을 때, 재판을 주재하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신청하면, 다른 공의회 서기나 정서기는 증인들에게 재판 장소에 출두하여 요청에 따라 증언을 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비 용

d. 증인은 재판에 출두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증인소환을 요청한 당사자 측으로부터 변상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D-7.0202 소환장 송달

소환장 송달은 인편이나 배달증명 우편으로 한다. 사건의 재판을 주재하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정서기는 전달 또는 배달 사실과 날짜를 증명해야 한다.

D-7.0203 2차 소환

미국장로교 회원인 당사자나 증인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2차 소환장은 당사자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시간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에 그 당사자나 증인은 불순종과 모욕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되고 그러한 위반은 징계 조치에 처해질 수 있다는 통지가 첨부되어야 한다.

D-7.0204 증인의 증언거부

증인으로 소환받아 출두한 미국장로교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하기를 거부하고, 경고를 받은 후에도 또 계속 증언을 거부하면 징계 조치에 처해질 수도 있다.

D-7.0205
선서 증언

선서 증언은 D-14.0304의 규정에 따라 받아들이고 접수될 수 있다.

D-7.0300 3. 재판 절차

D-7.0301
변호인

교정사건의 각 당사자들은 출석할 권리가 부여되어야 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나, 미국장로교의 회원이 아닌 사람은 변호인 역할을 할 수 없다.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변호인으로서 그 위원회에 나오지 말아야 한다.

D-7.0302
자료의 배포

교정사건의 어느 당사자나 어느 누구도 사건에 관련된 어떤 서면 자료나 인쇄물이나 시각 자료들을 사건이 최종 처리되기 이전에 상임사법 전권위원들에게 배포하거나 배포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이런 금지에도 불구하고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추가 자료들을 요구하거나, 혹은 제출한 것을 허락할 수도 있다.

D-7.0303
재판 진행 통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재판의 집행이 극도로 정중하고 격식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재판 진행과 모든 당사자들, 증인들, 변호인, 일반 방청인들의 행동을 전적으로 통솔하는 권한과 힘을 가진다. 여기에는 그들을 퇴장시키는 권한도 포함된다.

절차에 관한 질문

a. 재판 과정에서 일어나는 절차상의 문제나 증거 채택 여부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양편 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가진 다음에 위원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 당사자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은 전권위원회에 상소할 수 있으며, 그 위원회는 과반수 투표에 의해 그 문제를 결정한다.

결 석

b. 재판이 시작된 다음에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이 결석하면 이는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그 사람은 그 이후 그 사건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D-7.0304
정족수 미달

정족수의 미달은 무효재판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그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D-7.0400 4. 재 판

D-7.0401
교정사건의 절차

교정사건의 재판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위원장이 선언

a. 위원장은 D-1.0101과 D-7.0102의 본문을 큰소리로 낭독하고, 공의회가 재판을 집행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위원들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의회의 판정관들로서의 고매한 인격을 상기하여 지키며, 맡은 바 임무를 엄숙하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전권위원들의 자격

b. 당사자들이나 그들의 변호인은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조직과 관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부적격성

(1)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적으로 재판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어느 한편 당사자와 혈연이나 혼인으로 인척 관계이거나, 어느 한편 당사자를 적극 지지 또는 반대해 왔거나 또는 D-5.0205 규정에 의해 자격이 없을 경우 실격하게 된다.

이의 제기

(2)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은 누구나 당사자 어느 편으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을 수 있으며, 이의의 타당성은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나머지 위원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절차에 대한 이의

c.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예심에서의 모든 반대사항과 재판 절차 질서나 규칙성에 영향을 끼치는 기타 반대사항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고소장 수정

d. 고소인이 재판시에 고소장을 수정하는 것이 허락되어야 한다. 단, 수정이 고소장의 본질을 바꾸거나 피고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개정 진술

e. 당사자들에게 모두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증거의 규칙

f. D-14.0000에 있는 증거의 규칙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증 거

g. 증거가 필수적이고 적절한 것이 있다면, 고소인과 피소인을 대신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최종 진술

h. 당사자들에게는 최종 진술을 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고소인에게는 논의를 개시하고 마감할 권리가 있다.

D-7.0402
판결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그 다음 비공개로 회집하여야 한다. 전권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제외되어야 한다.

심 의

a. 증거의 우세에 의해 증명되지 않는 한, 어떠한 교정사건의 고소도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증거의 우세란 증거와 반증을 저울질 하여 볼 때 증거가 보다 설득력 있고 사실일 개연성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심사숙고한 후 전권위원회는 고소에 명기된 각 변칙이나 비행에 대해 투표해야 하고, 그 회의록에 표결을 기록해야 한다.

판결

b.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그 다음에 그 사건을 판결해야 한다. 만일 고소내용의 전부나 일부가 인정되면, 그 전권위원회는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명령하거나, 또는 하위 공의회로 하여금 그 사안에 대해 추후 절차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판결문

c. 판결문은 회기 중에 작성되어야 하고, 판결문 사본에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가 서명할 때 최종 판결문이 된다. 판결문의 사본은 교부송달이나 배달증명 우편으로 그 사건 당사자들에게 즉시 송달되어야 한다.

즉시 서류제출

d. 판결문은 재판 종료 30일 이내에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게 사건을 위임한 공의회 정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공개

e.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는 그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지시하는 대로 그 판결문을 배포해야 한다.

D-7.0500 5. 상소의 규정

D-7.0501
상소 시기

각 당사자의 상소 제출 시점은 결의가 당사자에게 전달되었거나 또는 당사자가 이를 거부한 일자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D-7.0502
상 소

상소는 원 당사자들의 한 사람이나 그 이상에 의해서만 개시될 수 있다. 상소의 규칙은 D-8.0000에 있다.

D-7.0600 6. 절차의 기록

D-7.0601
절차의 기록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서기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축어적 기록

a. 모든 증언과 구두 절차를 축어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게 사전에 준비한다.

증거물

b. 증거로 제시된 모든 증거자료 (증거로 채택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표하여) 확인하고 보존하고 모든 증거자료의 목록을 작성한다.

회의록

c. 절차의 의사록을 기록한다. 여기에는 사건에 관련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조치나 명령, 그리고 표결의 기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 록

d. 다음을 필히 포함하는 사건 기록을 준비한다.

(1) 고소와 그에 대한 소답;

(2) 그 사건에 제출된 모든 회의록과 서류들;

(3) 요청이 있을 경우, 인증 필기록;

(4) 적절히 표시된 모든 증거물, 기록, 문서, 그리고 기타 서류;

(5) 결의문; 그리고

(6) 사건에 관련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모든 결의나 명령 및 그에 관한 표결.

보 존

e. 결의가 최종적이 된 후 14일 이내에 선출 공의회 정서기에게 그 사건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고 이를 송부해야 하며 정서기는 그것을 최소한 2년간 보관해야 한다.

필기록

f. 요청에 의해, 요청 당사자의 비용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과정에 있었던 모든 증언과 구두 절차에 관한 사실과 틀림없고 완전한 필기록이 준비되어 있도록 한다. 이 필기록의 사본이 기록 담당자에 의해 사실과 틀림없는 완전한 내용으로 인증될 때, 만족할 만한 수수료 결제 방식에 의해 사본 요구 당사자에게 배달되어야 하며, 이 기록의 추가 사본 1부를 만들어 기록에 포함시켜, D-8.0000에 의거하여 상소가 있을 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D-7.0602
기록에 추가

재판 진행 담당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에 의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간주되지 않은 한, 어느 누구도 사건 기록을 보충하거나 추가할 수 없다. 기록 보충에 관한 요청이 하의 공의회 정서기에 의해 서면으로 접수되고, 이것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정서기에 전달될 때까지는 어떤 보충 요청도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요청서 사본이 모든 당사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각 당사자는 10일의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응답해야 한다.

D-7.0700

7. 정서기의 임무

D-7.0701
판결 보고

공의회가 회기 중에 있을 때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서기로부터의 판결이 접수되면, 공의회 정서기는 이를 즉시 알리고, 판결 내용 전체를 공의회 회의록에 포함시켜야 한다. 공의회가 회기 중에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접수 후 첫 번째 정기회의나 접수 후 폐회한 직후 회의, 또는 그 목적을 위해 소집한 회의에서 정서기는 그 판결을 공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판결 전내용을 공의회 회의록에 포함시켜야 한다.

D-8.0000 제8장 교정사건의 상소

D-8.0100 1. 상소의 착수

D-8.0101 정의

교정사건의 상소는 절차와 결정을 교정하거나 수정하거나 취소하거나 보류하거나 번복시키기 위한 재검토를 인정받기 위해, 하위 공의회에서 판결이 난 사건을 차상위 공의회로 이전하는 일이다.

D-8.0102 상소의 착수

상소는 그 사건의 원 당사자들 중 하나나 그 이상에 의해서 착수될 수 있으며 서면 상소장을 제출함으로 이루어진다.

D-8.0103 상소의 효력

상소장은 집행유예가 D-6.0103 의 규정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한, 상소 중인 판결을 시행하는 추가적인 어떤 결의도 보류시켜서는 안된다.

D-8.0104 상소의 철회

신청에 따라 상위 공의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상소의 철회를 위한 청원을 승낙할 수있다.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만일 그것의 승낙이 정의의 목적을 무효화시킨다면 청원을 거부해야 한다.

D-8.0105 상소의 근거

상소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a. 절차상 변칙;

b. 당사자에게 청문이나 증거를 획득하거나 제시할 합리적 기회의 거부;

c. 부적절한 증거나 증인을 받거나 적절한 증거나 증언 받기를 거절;

d. 증거나 증언을 충분히 받기 전에 판결을 조급히 서두름;

e. 사건 처리 과정에서 편견의 발로;

f. 과정이나 판결에 있어서의 부정;

g. 헌법 해석 상의 과오.

D-8.0200 2. 상소 과정의 제출

D-8.0201 서면 상소장 접수 기간

서면 상소장은 판결문의 사본이 상소하는 당사자에게 배달(서면)증명 우편이나 교부송달로 전달된 후 45 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a. 서면 상소장은 상소가 취해진 판결을 내린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를 선출한 하위 공의회의 정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b. 상소하는 당사자는 상소장의 사본을 상대 당사자 각 사람에게와 그 상소를 청문할 공의회의 정서기에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

D-8.0202 서면 상소장 내용

서면 상소장은 다음 사항을 진술하고 포함시켜야 한다.

a. 상소인 또는 상소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상소를 제출하는 당사자나 당사자들과, 만일 있다면, 그들의 변호인 성명;

b. 피소인 또는 피소인들이라고 불리 우는 상대편 당사자나 당사자들과, 만일 있다면, 그들의 변호인의 성명;

c. 상소가 취해진 결정을 내린 공의회;

d. 상소가 취해진 결정이나 판결, 그리고 날짜와 장소 (상소장과 함께 판결이나 결정 사본을 동봉할 것);

e. 상소를 위한 근거인 상소에 관한 심의 또는 청문회를 처리했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과실 진술서(D-8.0105); 및

f. 상소장의 사본이 상대 당사자들 각 사람에게와 상소를 청문할 공의회의 정서기에게 배달 증명 우편이나 교부송달로 제공되었다는 확인서.

D-8.0203 상소장을 임원들에게 전달

상소장과 상소가 취해진 판결이 접수되면, 상위 공의회의 정서기는 이것들을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임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D-8.0300

3. 청문 이전 절차

D-8.0301 서류 검사

D-8.0203 에서 규정한 서류 접수 시, 그 사건을 청문할 공의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워원장과 서기는 다음 사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서류를 즉시 검사해야 한다.

a. 그 공의회의 관할권 여부;

b. 그 상소인의 상소를 제기할 자격 여부;

c. 그 상소 서류가 적절히 그리고 적시에 제출되었는지 여부;

d. 그 상소가 D-8.0105 에 정해진 상소를 위한 근거들 중 한 가지 이상의 근거를 진술하고 있는지 여부.

D-8.0302 예비질문 결정

위원장과 서기는 당사자들과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게 그들의 소견을 보고해야 한다.

a. 만일 소견이 접수되고 30 일이내에 사건의 어느 당사자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에 의해 위원장과 서기의 소견에 항의가 제기되면, 해당 소견에 관한 증거와 논의를 제시할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b. 만일 해당 항목을 결정하는데 청문이 필요하면, 재정을 포함한 제반 상황상, 상소에 관한 청문 바로 전에 예비 질문을 처리하는 것이 권고되지 않는 한, 그 청문은 상소에 관한 청문 적어도 30 일 이전으로 일정을 정해야 한다.

c. 만일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D-8.0301 에 열거한 어느 사항이라도 부정적으로 대답 되었다고 확정하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그 상소를 기각해야 한다.

d. 만일 D-6.0305(또는 적용되는 D-8.0301 이나 D-13.0106) 에 열거된 하나 이상의 항목들에 대해 아니요 라고 답이 내려졌다는 위원장과 서기의 소견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되지 않는다면, 그 사건은 더 이상 상임사법위원회의 결의나 명령 없이 기각되어야 한다.

D-8.0303
상소 기록의 목록

상소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a. 서면 상소장의 접수 후 45 일 이내에, 하위 공의회 정서기는 그 사건의 기록을 이루는 모든 서류와 기타 자료들을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목록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D-7.0601d)

추가기록

b. 그 후 15 일 이내에, 어느 당사자나 정서기에 의해 목록이 만들어진 사건 기록의 정확성이나 완결성에 항의하는 서면 진술서를 하위 공의회의 서기에게 접수시킬 수 있다. 그 서면 항의서는 사건의 기록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고자 하는 D-7.0601d 에 열거된 항목이나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한다.

상소 기록의 접수

c. 관할 상위 공의회의 정서기가 본 사건이 인정되었다고 통지하면, 하위 공의회의 정서기는 사건의 기록을 확인하고 상위 공의회의 정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거기에는 기록에 포함된 것들의 인증 사본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그 기록의 완결성과 정확성을 논박하는 모든 서면 항의서를 포함시켜야 한다.

기록의 교정

d. 만일 당사자 어느 편에게 중요한 자료가 실수나 사고로 그 기록에서 누락되었거나 그 안에 허위진술이 되었으면 누락이나 허위진술은 교정될 수 있다. 당사자들이 그 교정을 명기하거나, 당회나 하위 공의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보충기록을 확인하고 전달하거나, 상위 공의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누락이나 허위진술을 교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그 기록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다른 질문들은 상위 공의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제기되어야 한다.

접수 일자의 통보

e. 상위 공의회의 정서기는 상소에 관한 기록이 접수된 일자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본 제공 비용

f. 서면 요청에 따라서, 상위 공의회의 정서기는 상소 당사자 어느 편에게든지 그들의 비용 부담으로 상소 기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연장

g. 정당한 이유가 제시되면, 상위 공의회의 정서기는 D-8.0303 에 규정된 시간 제한을 적당한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D-8.0304
상소인의 적요서 접수

상소 기록을 제출한 일자로부터 30 일 이내에, 상소인은 상소 통지서내의 오류혐의 명세서와 변론서, 논의서, 그리고 명시된 오류혐의에 관해 상소인의 주장을 지지하는 당국의 소환장을 포함하는 서면 적요서를 상위 공의회의 정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상대편에게 사본 전달

a. 그 적요서는 사본 한 통이 상대편 당사자나 당사자들에게 제공되었다는 확인서를 동반해야 한다.

연장

b. 정당한 이유가 제시되면, 상위 공의회의 정서기는 이 시간 제한을 적당한 기간 동안 연장 할 수 있다.

적요서 제출 실패

c. 피소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간 내에 적요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이를 상소를 포기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D-8.0305
피소인의 적요서 접수

상소인의 적요서 제출 후 30 일 이내에, 피소인은 거기에 응하는 서면 적요서를 상위 공의회의 정서기에게 접수시켜야 한다.

상대편에게 사본 전달

a. 그 적요서는 사본 한 통이 상대편 당사자나 당사자들에게 제공되었다는 확인서를 동반해야 한다.

연장

b. 정당한 이유가 제시되면, 상위 공의회의 정서기는 이 시간 제한을 적당한 기간 동안 연장 할 수 있다.

적요서 접수 실패

c. 피소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간 내에 적요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이는 적요서 제출과 출두와 청문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D-8.0306
기록 및 적요서 전달

기록과 적요서가 접수되거나, 그것들의 제출 시한이 만료되면, 상위 공의회의 정서기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서기에게 그 기록과 적요서를 전달해야 한다.

D-8.0307
사전청문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상소를 접수한 후 어느 때에라도, 그 위원회는 규정대로, 상소내의 논쟁점에 관한 일치를 구하거나, 합리적으로 그리고 공평하게 논쟁을 좁혀주고 그 해결책을 촉진시키기 위해, 당사자들과 혹 있다면, 그들의 변호사를 위해 사전청문회의를 제공할 수도 있다.

D-8.0400 4. 상소의 청문

D-8.0401
청문 통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워원장이나 서기는 상소를 제출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본인 자신이나 변호인에 의해 상입사법 전권위원회 앞에 출두할 수 있는 일자를 그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D-8.0402
출두 실패

어느 편 당사자가 본인 자신이나 변호인에 의해 출두하지 못하면 상소에 관한 청문 참여의 포기로 간주해야 한다.

D-8.0403
청문

청문에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행해야 한다.

새 증거

a. 새 증거의 축어적 verbatim 기록을 규정하는 D-14.0502 의 규정 하에서, 새로이 발견된 증거를 용인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청문

b. 상소인이 변론의 개시와 종결의 권한을 가지면서, 청문의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한 당사자들에게 상소의 근거에 관해 청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D-8.0404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판결

청문과 심의 후에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오류혐의의 각 세목을 분리해서 투표해야 한다. 투표 시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 “오류의 세목이 인정되는가?” 회의록에는 오류의 각 세목에 대한 투표수를 기록해야 한다.

만일 오류가 발견 안 되면

a. 만일 오류의 세목 중 어느 하나도 인정되지 않고 다른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하위 공의회의 판결은 확정되어야 한다.

만일 오류가 발견되면

b. 만일 한가지 이상의 오류가 발견되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하위 공의회의 판결을 확정할 것인지, 조절할 것인지, 파기할 것인지, 번복할 것인지, 아니면 그 사건을 새로운 심리를 위해 반송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서면 결정서

c. 서면 판결문은 회기 중에 준비되어야 하고 서면 판결문의 사본에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가 서명할 때 그것이 최종 판결문이 되어야 한다. 판결문의 사본은 교부송달이나 배달 증명 우편으로 사건 당사자들에게 즉시 배달되어야 한다.

각 오류의 판결

d. 판결문은 상세한 오류의 판결을 포함해야 하고 D-8.0101 에 규정된 대로 구제책을 진술해야 한다.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중복을 피하며 모든 실질적인 질문들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판결문을 준비하여야 한다. 여기에 판결에 대한 해설이 포함될 수도 있다.

즉시 제출

e. 판결문은 청문 종결 30 일 이내에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를 임명했던 공의회의 정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공개

f.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서기는 그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지시하는 대로 그 판결문을 배포해야 한다.

D-9.0000 제 9장 결백 입증의 요청

D-9.0001 결백 입증의 요청

소문이나 험담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미국장로교 회원은 혐의 전말의 명료한 서술 진술서를 당회서기나 노회 정서기에게 제출함으로 결백 입증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공의회에 의한 검토

a. 적절한 위원회를 통하여 공의회가 청원을 허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의할 경우, 그것은 D-10.0201에 규정된 대로 조사위원회를 통하여 진행도어야 한다.

조사위원회

b. 조사위원회는 사실과 정황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서면으로 공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D-9.0102 사건의 종결

조사위원회가 결백 입증을 요청한 사람을 상대로 고소가 제출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하지 않는 한, 보고서로서 사안이 종결되어야 한다. 만일 고소가 제출되어야 한다면, D-14.0402로 시작하는 적절한 사법절차가 그 사안에 대해 진행되어야 한다.

D-10.0000 제 10 장 징계사건

D-10.0100 1. 징계사건에 대한 예비절차

D-10.0101 예비절차의 착수

징계사건에 대한 예비절차는 범법 협의의 서면 진술서를 입증 자료와 함께 그 회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당회의 서기나 노회의 정서기에게 제출함으로 착수된다(D-3.0101). 그 진술서는 구술 내용이 분명해야 하고 만일 사실임이 증명되는 경우 징계 결정에 귀결될 만한 혐의 사실을 주장해야 한다. 그런 주장은 조사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D-10.0201).

D-10.0102 범법의 진술

서면 진술은 다음 사람에 의해 제출될 수 있다.

고소

a. 다른 사람을 상대로 고소하는 미국장로교의 공의회의 관할권하에 있는 개인;

공의회

b. 징계의 목적으로 조사받아야 할 범법이 발생했으리라는 정보를 어떤 출처로부터 얻은 공의회의 회원;

자책

c. 자책감을 갖고 나아오는 미국장로교회 공의회의 관할권하에 있는 개인.

D-10.0103 조사위원회에 회부

범법 혐의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접수하면, 당회서기나 노회 정서기는 더 이상 조사하지 말고 피소인의 이름이나 범법 혐의의 성격을 밝히지 않고 범법 혐의가 있다는 사실만을 공의회에 보고해야 하고 그 진술서를 조사위원회에 즉시 회부해야 한다.

D-10.0104 타 공의회의 고소

한 회원이 본인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는 다른 공의회에 제출된 서면 진술에 의해 범법이 있다고 고소 받게 되면, 그 당회서기나 그 노회 정서기는 그 회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당회서기나 노회 정서기에게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연루된 공의회들은 사법 절차를 상호 협력하여 진행시켜야 한다.

D-10.0105 이명 불가

조사나 고발이 심리 중이면, 당회는 교인에 대한 이명 증서를 발부해서는 안 되고 노회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에 대한 이명 증서를 발부해서는 안 된다. 이명 증서를 발부할 수 없는 이유를 당회서기나 노회 정서기가 해당된 사람들에게 알릴 수도 있다.

D-10.0106 행정 휴직/임

누구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범했다는 주장의 서면진술이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를 상대로 접수되는 경우에, 그러한 주장을 접수 받은 정서기는 즉각 이 주장을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은 3일 이내에 2명의 위원들(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전임 위원명부에서 임명 가능)을 지명하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러한 범법 혐의자를 유급 행정휴직/임에 처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를 위한 비용부담은 고용기관이 가능한 한 부담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노회가 분담해야 한다. 행정휴직/임 실시 중에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목회, 행정, 교육, 감독 업무를 돌볼 수 없으며, 세례식, 장례식, 또는 결혼식과 같은 그 어떤 예식에서도 집례할 수 없다.

a.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지명된 위원들은 혐의자에게 청문의 기회를 준 다음에, 주장된 범법행위의 성격과 혐의가 사실일 가능성에 비추어 고려해 볼 때,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에게 행정휴직/임이나 다른 제재를 가하는 것을 요구하는 위험이 교인들과 잠재적 성적 학대 피해자들에게 있는 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한 행정휴직/임 같은 제재들은 권징조례에 지시된 방법들 가운데 한 가지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혹은 행정 휴가나 제재들이 전권위원회의 지명된 위원들에 의해 변경되거나 삭제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b. 만일 전권위원회의 지명된 위원들이 행정휴직/임 같은 제재들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주장된 범법행위를 조사하도록 임명된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아무 시점에서나 자유롭게 행정휴직/임이나 제재들의 부과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자료를 지명된 위원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D-10.0200 2. 조사

D-10.0201 조사위원회

조사는 고발이 접수되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그 회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공의회가 임명한 조사위원회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회원권

a. 조사위원회의 위원 수는 5 명이 넘지 않으면서 3 명 이하가 아니어야 하며, 만일 적절하다면 D-10.0104 에 따라 타 공의회에서 온 위원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당회는 당회원들을 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규칙대로 임명

b. 노회는 규칙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임명을 규정할 수 있다.

비용

c. 조사위원회의 비용은 일반적으로 동 위원회를 임명한 공의회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회원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 다른 공의회에 제출된 정보의 결과로 서면진술서가 작성되었다면, 범법혐의가 일어난 구역 내의 공의회가 그 구역내의 조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D-10.0202 조사위원회 책임

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

a. 범법 혐의가 사실이라면 D-2.0203b 에 정의된 바와 같은 범법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법 혐의 진술서를 검토해야 한다. D-2.0203b 에 정의된 바와 같은 범법 혐의가 없다면 조사위원회는 조사를 종결 짓고 그 사실을 그 기구의 서기에게 보고해야 한다. D-2.0203 에 정의된 바와 같은 범법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b. 피소인에게 D-10.0101 에 기술된 범법 혐의에 대한 진술서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c. 고발인에게 조사위원회 절차에 관한 진술서를 제공해야 한다;

d. 피소자에 대한 고발이 이전 고발 내용의 반복인 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그럴 경우, 조사위원회는 피소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공의회에게, 본 고발이 조사를 정당화 하는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거나, 종결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보고해야 한다.

범법 혐의에 대한 사실과 상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e. 그것에 해당되는 모든 관련 서류와 문서와 기록을 조사한다;

f. 입수 가능한 모든 관련 서류와 상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g. 구할 수 있는 모든 증인들을 확인하고 그들을 조사한다;

h. G-3.0102 와 D-2.0203b 에 따라 범법이 피소인에 의해 범행이 저질러졌다고 믿을 수 있는 가능한 근거와 원인이 있는 지를 결정해야 한다;

i. 구할 수 있는 증인들과 증거의 성격, 활용성, 신용도를 적절히 고려한 후, 제출된 고발(들)이 – 서류, 문서, 기록, 증언, 또는 다른 증거의 근거 위에서 – 합리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지를 결정해야 한다;

j. 일반적으로 조사가 완료되고 예상되는 원인이 결정된 다음, 그러나 고소가 제기되기 전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안적 해결방식을 개시해야 한다. 해결의 대안 방식의 목적은 제기될 수 있는 고소에 대해 조사위원회와 피소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데 있을 것이다.

(1) 모든 조정은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의해 연기가 허락되지 않는 한 120 일 이내에 완결되어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모든 해결 합의서를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승인을 위해 보고해야 한다.

(3)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해결 합의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이 안은 표결에 부쳐져서 최소한 3 분지 2 이상의 투표권자 회원들의 찬성 투표를 받아야 한다; D-11.0601d 규정에 따라 회의절차를 기록하되, 여기에 피소인 이름, 혐의(들)과 징계의 요지가 들어가야 한다; 당회의 서기나 정서기에게 그 결정을 보내고, 당회서기나 정서기는 D-11.0701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보고해야 한다.

(4) 조사위원회는 해결 협상의 전과정에서 피고인이 변호인을 제공받게 해야하며,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도 변호인을 제공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

(5) 조사위원회와 피소인 쌍방에게 만족스러운 대안적 해결방식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사위원회는 D-10.0202l 에 따라 기소위원회를 지정해야 하고, 제기된 고발에 대한 사건을 진행시켜야 한다.

k. 피소인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공의회에게 고발을 제기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보고한다; 그리고

기소위원회 지명

l. 만일 고발이 제기될 것이면, D-10.0401– .0404 의 규정에 따라 그것들을 준비하여 제기하며 그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 그 회원 중에서 한 사람 이상을 (기소위원회로 불려지게 됨) 지명한다.

D-10.0203
고소인의 권리

a. 고발인이 조사위원회와 기소위원회와 당회,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와 모든 회의를 할 때마다 변호인과 함께 참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조사위원회가 반드시 고발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변호인의 역할은 상담해주고 지원해주는 일이다.

피해자의 권리

b. 고발 진술서가 범법혐의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된 사람을 대신하여 제출되었다면, 그 피해자가 조사위원회와 기소위원회와 당회,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와 모든 회의를 할 때마다 변호인과 함께 참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조사위원회가 피해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가해 용의자의 권리

c. 위원회나 혹은 그 위원과 더불어 갖게 되는 모든 회의를 그리고 모든 회의를 시작할 때, 위원회나 그 위원은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 묵비권과 변호인에 의해 대표될 수 있는 권한과, 만일 고발이 추후에 제기되면 변호인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변호인을 지명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D-11.0301-.0302)

D-10.0204
전권위원회에
절차 검토 청원

조사과정 동안, 피소인은 조사위원회의 절차를 검토하도록 전권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다. 그러한 청원을 위한 합당한 사안은 조사위원회가 적법하게 증거 수집과정을 따랐는지 여부, 고려 중인 증거를 적법하게 확보했는지 여부, 조사위원회가 피소인이 제출한 관련 증거를 면밀하게 조사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

a. 청원의 검토는 양 당사자 및 변호인이 출석한 가운데 D-5.0101 에 따라 임명된 전권위원회의 위원 2 인이 주관하는 청문회에서 행해야 한다. 청문회는 청원접수 30 일 이내에 열려야 한다. 청문회 후 15 일 이내에 판결이 양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b. 검토 결과를 전권위원회 의장에게 전달해야 하고 D-10.0405 의 고발 검토를 통지한다.

D-10.0300 3. 결정의 전달

D-10.0301
결정의 전달

만일 조사위원회가 대안적 해결 방식을 발의하면, 그 위원회는 해당 당회서기나 정서기를 통해 공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D-10.0302
만일 고발이
제기되면

만일 조사위원회가 고발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면, 심리시 이 고발을 뒷받침할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사실들의 개요를 포함하여, 그 고발을 서면으로 피소인에게 즉시 연락해야 한다. 그 위원회는 그 개인이 정식 재판을 피하기 위해 그 고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 바라는지를 피소인에게 물어야 하고,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제안할 견책을 지적해야 한다.

D-10.0303 검토청원

만일 아무런 고발이 제기되지 않는다면, 조사위원회는 당회 서기나 노회 정서기에게 그 사실의 서면 보고서만을 제출해야 하며,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던 그 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a. 보고서 접수 후 30 일 이내에, 그 개인은 고발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조사위원회의 결정을 검토해 줄 것을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다. 그 청원서는 조사위원회가 D-10.0202 에 명시된 의무를 완수하지 않았다는 사례들을 주장해야 한다.

b. 조사위원회는 청원서에 나타난 혐의사실에 대해 서면 응답서를 제출해야 한다.

c.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지명 위원들은, D-10.0202 에 명시된 의무와 고발을 접수하지 않기로 한 조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교회 징계의 원리가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 청원과 응답을 고려해야 한다. 그 청원과 응답에 관한 전권 위원회의 지명 위원들의 결정은 90 일 이내에 인도되어야 한다.

d. 이 지명 위원들이 청원을 승인할 경우, 새 조사위원회가 당회나 노회에 의해 임명되어야 한다.

e. 만일 또다시 고발이 제기되지 않으면, 그 사건은 종결된다.

g. 만일 고발이 제기되면, 회부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D-4.0000)

D-10.0304 기록의 처리

만일 고발이 제기되지 않으면, 조사위원회의 기록의 처리는 당회나 노회의 정책과 일치해야 한다.

D-10.0400 4. 고발

D-10.0401 시간제한

범법 혐의가 있던 때로부터 5 년이 지나거나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일자로부터 1 년이 지나면, 고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단 둘 중 먼저 일어난 일이 적용된다. 다음의 예외 조항이 있다.

a. 민사 사법기관의 재판이 시작된 상황 하에서, 조사위원회가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나 당회에 고발 제기 기한을 민사 사법기관의 수사나 재판이 종결된 후 6 개월까지 연장해주도록 신청하고 이를 허가를 받았을 때이다. 조사위원회는 그러한 민사 재판이 언제 종결될지 판정할 수 있도록 민사 사법기관과 접촉을 계속해야 한다.

b. 다른 사람에 대한 성적 학대의 경우에는 5 년 시간제한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D-10.0401c (1) 또는 (2)에 정의된 타인의 성적 학대의 합리적 위험을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한 사람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청구에 대한 기한 제한이 없다. 두 사항 모두 범법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어느 일자에 상관없이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c. 다른 사람의 성적 학대는 다음과 같은 사람에 관련된 성적행위를 포함하는 범법이다.

(1) 18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동의할 능력이 없는 사람; 또는

(2) 그 사람과의 행위가 강제, 위협, 강요, 협박, 또는 직제사역이나 직위의 남용을 포함할 때.

[역사적 주: D-10.0401c 의 원문은 제 214 차 총회(2002 년)의 결의로 삭제되었다.]

d. 이전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권징사례에서 고발 당하는 동안 관할권을 포기한 사람이 교회에 다시 올 때에,** 범법 혐의가 있던 때부터 고소를 제기할 때까지 어떤 시간 제한도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전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관할권을 파기했을 당시까지 제기되었던 모든 혐의사실에 기초한 고소들은 그러한 범죄가 일어났다고 주장된 날짜에 상관없이 제기될 수 있다.

D-10.0402 사건의 기소

만일 고발이 제기되면, 기소위원회는 그 사건을 기소하고 모든 상소가 있는 동안 교회를 대표해야 한다(D-10.0202l).

당사자들

a. 모든 징계사건은 미국장로교의 이름으로 조사위원회와 기소위원회를 통해서 공의회에 의해 제출되고 기소되어야 한다. 기소위원회는 그 교회의 대표이며 그런 자격으로 그 사건에 있어서 해당 공의회의 모든 권리를 갖는다.

두 당사자들 만

b. 징계사건에서 당사자들이란 기소공의회와 피소인 만을 의미한다.

D-10.0403 고발의 형식

한 건의 고발은 단지 한 건의 범법만을 주장해야 한다(D-2.0203b).

여러가지를함께

a. 동일인을 상대로 여러 건의 고발을 동시에 공의회에 제기할 수 있다.

고발의 명세서

b. 매 고발에 대해서는 번호를 매겨야 하고 범법을 구성한 행위를 설명해야 한다. 매 고발은 (가능한 한) 혐의 받은 행위의 범행 시간, 장소, 상황을 제시해야 한다. 매 고발은 기소를 위해서 증인의 성명과 주소, 그리고 그것의 뒷받침을 위해 소환될 기록과 문서의 설명서가 역시 첨부되어야 한다.

함께 심리

c. 동일인에 대한 여러 개의 고발은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재량으로 함께 심리 될 수 있다.

D-10.0404 고소의 접수

매 고발은 서면으로 준비되어서 당회서기나 노회 정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당회

a. 고발의 접수와 함께 당회 서기는 차기 회의 시 당회에 고발을 제출해야 한다. 당회는 그 사건을 심리할지 아니면 노회에 회부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D-4.0000)

노회

b. 고발의 접수와 함께 노회 정서기는 그 노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에게 즉시 전달해야 한다.

D-10.0405
사전 심리회의

그 사건을 심리할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고발들의 접수 후 30 일 이내에 사전 심리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시간과 장소

a. 당회장과 당회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는 피소인, 만일 있다면, 피소인의 변호인 그리고 기소위원회에게 사전 심리회의의 시간과 장소를 통보해야 하고, 고소장(들)의 사본을 피소인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

참석자들

b. 사전 심리회의의 정해진 시간에, 당회장과 당회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 기소위원회, 피소인, 만일 있다면, 피소인의 변호인 그리고 위원장과 서기의 재량에 따라 다른 해당되는 사람들이 보통 출석해야 한다. 위원장(당회장)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1) 피소인에게 고소를 읽어 주어야 한다;

(2) 피소인에게 변호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D-11.0301);

(3) 피소인에게 당시 알려진 모든 증인들의 성명과 주소, 그리고 고소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공될 기록과 문서의 명세서를 전해주어야 한다;

(4) 논쟁의 여지가 없는 고소 내용들을 피소인과 기소위원회와 결정하고 정식재판에 대한 대안을 토의해야 한다;

(5) 조사 위원회의 활동 검토를 위한 청원보고서를 검토하고, 고발의 일부 또는 전부의 해제, 사건의 해제 또는 고발 내용의 수정을 허가하기 위한 예비 행동을 취하면서, 고발의 적절함과 관련한 추가적인 신청들을 청문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예비 결정들은 D-11.0402c 에 따라서 노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검토해야 한다.

(6) 모든 당사자들이 고소에 포함된 사실들이 진실이고 제안된 책벌의 정에 동의하면, 책벌 청문 일정을 정한다;

(7) 모든 당사자들의 출두를 명령하여야 한다.

그 이상 못함

c. 그 회의에서는 그 이상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D-10.0406
증인 공개

피소인은 주소를 포함하여 예상되는 증인들의 명단을 적어도 재판 일자 20 일 전에 당회서기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와 기소위원회에게 제공해야 한다. 기소위원회와 피소인은 재판 일자 전 10 일보다 늦지 않게 증인들의 최신 명단을 그 전권위원회와 상대편 당사자에게 각각 제공해야 한다.

D-11.0000 제11장 징계사건의 재판

D-11.0100 1. 재판의 집행

D-11.0101
재판 - 징계사건

징계사건의 재판은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

D-11.0102
정식으로 집행

재판은 그 상황에 적합한 중립적인 장소에서 정중하게 정식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D-11.0200 2. 소환과 증언

D-11.0201
당사자와 증인소환

당사자들이나 어느 편 당사자가 요구하는 증인들이 재판에 출두하도록 하는 소환장은 당회장이나 당회서기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서기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소환받는 회원

a. 미국장로교 회원만이 출두하도록 소환받을 수 있다.

요청받는 사람들

b. 다른 사람들은 출석을 요청받을 뿐이다.

타 공의회의 증인

c. 교단의 다른 공의회의 관할권하에 있는 사람을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할 필요가 있을 때, 사건을 재판하는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청원에 의하여 다른 공의회의 서기나 정서기가 재판 장소에 출두하여 요구되는 증거를 제공하라고 증인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해야 한다.

비용

d. 어느 증인이나 재판에 출석함으로 발생한 비용의 상환을 증인을 부른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D-11.0202
소환장 전달

소환장은 교부송달이나 배달 증명 우편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사건을 재판하는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서기는 전달했다는 사실과 일자를 확인해야 한다.

이차 소환

a. 만일 미국장로교 회원인 당사자나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2 차 소환장이 다음과 같은 단서를 붙여서 발송되어야 한다: 만일 당사자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를 말하지 않고 정한 시일에 출두하지 아니하면, 당사자나 증인은 불순종과 모독의 과오를 범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런 범법으로 인해 징계 결의를 받을 수도 있다.

피소인이 출두 아니함

b. 징계사건에서 피소인이 이차 소환에도 출두하지 않으면,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피소인을 변호인으로서 대표할 사람(들)을 임명한 후, 피소인의 궐석으로 재판이나 판결을 진행할 수 있다.

D-11.0203
증인의 증언 거부

증인으로 소환받아 출두한 미국장로교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하기를 거부하고, 경고를 받은 후에도 또 계속 거부하면 징계 결의를 받을 수도 있다.

D-11.0204
녹취 증언

녹취에 의한 증언은 D-14.0304 의 규정에 따라서 행해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

D-11.0300 3. 재판 절차

D-11.0301 변호인

징계사건에 있어서 각 당사자들은 출두할 자격이 주어져야 하며 변호인에 의해 대표될 수도 있으나 단, 미국장로교의 회원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변호인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재직 중 변호인으로서 그 위원회 앞에 출두해서는 안 된다. 변호인은 유급 대표나 변호사일 필요는 없다.

D-11.0302 변호인을 얻지 못함

만일 징계사건에 있어서 피소인이 변호인을 구하지 못하면,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피소인을 위한 변호인을 임명해야 한다. 합리적 변호 비용은 사건이 발단한 공의회에 의해 승인 받고 상환 받아야 한다.

D-11.0303 자료의 회람

징계사건의 어느 당사자나 어느 누구도 당회원이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들에게 사건의 최종처리 이전에 사건에 관련된 그 어떤 기록물, 인쇄물, 혹은 시각 자료들을 배포하거나 배포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이런 금지에도 불구하고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추가 자료들을 요구하거나 제출을 허락할 수 있다.

D-11.0304 재판집행 통괄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재판의 집행과 양측 당사자, 증인, 변호인. 그리고 일반인들의 행동을, 그들을 면직하는 일을 포함하여, 권위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괄할 전적인 권위와 권한을 가져야 한다.

절차에 대한 질문

a. 재판 과정에서 일어나는 절차나 증거물의 채택에 대한 질문은 양편 당사자들이 청문할 기회를 가진 다음에 위원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한편, 당사자나 당회원이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 당회나 전권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으며, 그 당회나 위원회는 과반수 투표에 의해 그 질문을 결정해야 한다.

결 석

b. 재판이 시작된 후 당회원이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어느 회원의 결석은 기록해 두어야 한다. 그 후로부터 그 사람은 그 사건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D-11.0305 정족수 미달

정족수의 미달은 그 사건을 미결 재판으로 끝나게 하고 그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D-11.0306 비공개 회의 절차

절차는 일반적으로 공개회의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어느 편의 요구나 그 자체의 발의로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그 절차의 어느 과정에서나 출석회원 2/3 의 투표로서 당사들이나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들을 제외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D-11.0400 4. 재 판

D-11.0401 무죄의 추정

징계사건에 있어서 피소인은 그 반대가 증명되기까지 무죄로 추정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가 성립되지 않는 한 피소인은 무죄로 인정될 자격이 있다.

D-11.0402 징계사건의 절차

징계사건의 재판은 다음과 같이 진행해야 한다:

위원장에 의한 선포

a. 위원장은 D-1.0101 과 D-11.0102 를 큰 소리로 읽고 공의회가 재판을 진행시키려 한다고 선언하고 위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공의회에 속한 판정관들로서의 높은 인격과 그들이 수행하려는 엄숙한 의무를 기억하며 중시하도록 일러야 한다.

전권위원의 자격

b. 당사자들이나 그들의 변호인은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조직과 관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의견이 청취되도록 할 수 있다.

부적격성

(1) 당회원이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은 그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과 관계되었거나 어느 한편 당사자와 혈연관계나 결혼관계가 있거나, 어느 한편을 적극 지지나 반대를 해왔거나, 또는 D-5.0205 의 규정에 의해 적절치 못한 사람이면 실격하게 된다.

항의

(2) 당회원이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은 어느 편 당사자로부터 항의를 받을 수 있으며, 항의의 타당성은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나머지 위원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예비적 반론

c.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모든 예비적 반론과 절차 진행의 질서나 규칙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어떤 반론을 확정해야 한다. 당회나 전권위원회는 그 사건을 기각하거나 정의의 촉진을 위해 고소에 대한 개정을 허용할 수 있다. 단, 그런 개정이 고소의 본질을 변경시키지 않고 또는 피소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야 한다.

변론

d. 만일 절차가 질서 있게 되어 있고 고소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피소인이 매 고소에 대해 “유죄” 나 “무죄” 라고 답변하게 해야 한다. 그 답변은 기록해 두어야 한다. 만일 피소인이 답변을 거절하거나 “무죄”라고 답변하면, “무죄”의 답변을 기록해 두고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만일 피고인인 “유죄”라고 답변하면 그 공의회는 D-11.0403 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개정진술

e. 당사자들에게 모두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증거의 규칙

f. D-14.0000 에 있는 증거의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

기소

g. 기소위원회는 피소인에 의한 반론과 대질심문을 조건으로 고소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반론

h. 피소인은 기소위원회에 의한 반론과 대질 심문을 조건으로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반박

i. 기소위원회는 그때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데, 다만 피소인을 위하여 제출된 증거를 반박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 추가 증거는 피소인에 의한 반론과 대질 심문을 조건으로 한다.

최종 진술

j. 당사자들에게 최종 진술을 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기소위원회가 그 논의를 시작하고 마감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D-11.0403 판결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그 다음 비공개로 모여야 한다. 당회원이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제외되어야 한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a. 신중한 심의 후에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매 고소를 분리해서 투표하고 회의록에 투표를 기록해야 한다. 피소인에게 고소에 대한 유죄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그 고소의 적절한 사실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결해야 한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은 모든 증거의 비교와 고려에 의해 고소를 입증할 물적 사실이 진실이라는 부동의 확신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때 존재한다.

2/3 투표에 의한 유죄판결

b. 투표권이 있는 당회원이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의 적어도 2/3 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한, 고소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서면 결정서

c. 매 고소에 대한 판결과, 만일 있다면, 책벌의 정도의 결정을 진술하는 서면 판결문은 회기 중에 준비되어야 한다. 그것은 당회장과 당회서기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가 서명했을 때 최종 판결이 된다.

공개회의에서 공포

d.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판결에 이르렀을 때, 당회장(위원장)은 공개회의에서 각 고소에 대한 평결을 각각 분리해서 공포해야 한다.

책벌의 정도

e. 피소인이 유죄로 판명되거나 유죄 답변을 한 후,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손상입은 정도, 경감, 복권과 배상에 관한 증언을 청문해야 한다. 이 증거는 당사자의 어느 편이나 원고나 그 사람의 대리인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범법행위에 의해 직접적으로 손상을 입은 사람은 피해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진술에 대해 반대신문을 해서는 안된다. 그 다음에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부과할 책벌의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비공개로 모여야 한다 (D-12.0000). 그런 결정에 이어 공개회의에서, 당회장이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은 그 후 책벌을 선포해야 한다.

즉시 접수

f. 그 결정은 당회서기나 공의회의 서기에게 즉시 제출되어야 한다.

당사자들에게 통보

g. 당회서기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서기는 교부송달이나 배달증명 우편으로 그 판결에 이름이 적힌 매 당사자에게 판결문의 사본을 전달해야 한다.

공 개

h. 당회장이나 당회서기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서기는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지시하는 대로 그 판결문을 배포해야 한다.

D-11.0500 5. 상소의 규정

D-11.0501 상소의 시일

상소를 제출할 시일은 판결 유죄로 판명된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그에 의해 거절된 일자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D-11.0502 상 소

유죄로 판명된 사람만이 상소의 첫 단계를 주도할 수 있다. 당사자 어느 편이나 항소 판결의 상소를 주도할 수 있다. 상소의 규칙은 D-13.0000 에 나와 있다.

D-11.0600 6. 절차의 기록

D-11.0601 절차의 기록

당회의 서기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서기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축어적기록

a. 모든 증언과 구술 절차에 대한 정확한 축어적 기록을 미리 조처해야 한다.

증거물

b. (증거물로 인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명시해서) 증거로 제시된 모든 증거물을 확인하고 보존하며 모든 증거물의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회의록

c. 절차의 회의록을 기록해야 하며 거기에는 투표와 함께 그 사건에 관련된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모든 결의나 지시 및 이에 관한 투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기 록

d. 다음 사항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의 기록을 준비해야 한다.

(1) 고발;

(2) 매 고발에 관해 피소인에 의해 제출된 답변의 기록;

(3) 만일 요청이 있다면, 인증된 녹취서;

(4) 적절히 표시된 증거물, 기록, 문서, 그리고 기타 서류;

(5) 매 고소에 대한 평결과, 만일 있다면, 공의회가 부과할 책벌의 정도를 포함한 서면 판결문; 그리고

(6) 그 사건에 관련된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모든 결의나 지시 및 이에 대한 투표.

기록의 보존

e. 모든 기록의 원본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보존해야 한다;

(1) 당회서기는, 판결이 최종적이 된 후, 사건의 기록을 적어도 2 년간 보유해야 한다.

(2)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서기는, 판결이 최종적이 된 이후 14 일 이내에, 사건의 기록을 인증하고 그것을 선출 공의회 정거시에게 전달해야 하며, 정서기는 그것을 적어도 2 년간 보관해야 한다.

녹취록

f. 요청이 있을 때, 그리고 요청하는 측의 비용으로, 여건이 허락하는 한 신속히 재판과정에 있었던 모든 증언과 구두 절차의 정확하고 완전한 녹취록이 마련되게 하여야 한다. 이 녹취록의 사본은 정확하고 완전하다고 작성한 사람이 인증할 때, 만족할 만한 비용 지불 절차에 따라 그것을 요구한 각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또 D-13.0000 에 의한 상소에 대비하여 발송될 수 있도록 추가 사본 1 부를 만들어 기록에 포함시켜야 한다.

D-11.0602 기록에 추가

재판 집행의 책임을 진 당회장과 당회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에 의해 타당하다고 결정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사건의 기록에 보충하거나 추가해서는 안 된다. 기록을 보충하겠다는 요청은 당회서기나 하위 공의회의 정서기에게 서면으로 접수 되기 전까지는 고려 될 수 없으며, 당회

서기나 정서기는 이를 당회장이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에게 전달해야 한다. 요청서의 사본은 모든 당사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각 당사자는 서면으로 응답하는 데 10 일 기한을 가져야 한다.

D-11.0700 7. 정서기의 임무

D-11.0701 결정 보고

만일 노회가 회기 중일 때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서기로부터 판결을 접수하게 되면, 정서기는 그 판결을 즉시 노회에게 낭독해야 하며, 노회 회의록에 판결 전문을 기록해 넣어야 한다. 만일 노회가 회기 중이 아니면 정서기는 접수 후 첫 번째 정기회의나 접수 후 휴회한 회의, 혹은 그 목적을 위해 소집한 회의에서 그 판결을 노회에게 낭독해야 하며, 그 노회의 회의록에 판결 전문을 기록해 넣어야 한다.

D-11.0800 8. 집 행

D-11.0801 공의회에 의한 집행

당회가 재판을 끝내고 피소인의 유죄가 판명되고 그 판결이 언도되었을 때, 또는 상위 공의회의 정서기가 피소인이 유죄하다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판결을 접수했을 때, 당회나 상위 공의회는 그 판결의 집행을 진행해야 한다. 판결이 언도된 사람은 당회나 노회가 상소 계류 중에 그에게 직제사역을 계속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요청을 구체적으로 승낙하지 않는 한, 상소의 판결이 나거나 상소 기간이 만료되기까지는, 직제사역의 수행이나, 상황에 따라서 회의에 참석하여 투표를 하는 일을 자제하여야 한다.

D-12.0000 **제12장 징계사건의 책벌과 복권**

D-12.0100 **1. 책 벌**

D-12.0101
교회 책벌의 등급

교회 책벌의 등급은 견책, 감독 갱생의 견책, 직제사역이나 회원권의 행사로부터의 일시 배제, 그리고 직제사역이나 회원권으로부터의 제척 removal 이다.

D-12.0102
견책

견책은 범법에 대한 책벌의 최하 등급이고 인도되었을 때 완료된다(D-11.0403e). 그것은 책망과 더불어 성격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또는 유사한 형식으로 언도되어져야 한다:

당신,(이름)_____은 _____ (범법내용을 기입해 넣는다)의 범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그런 범법(들)에 의해 당신은 (성경과/또는 미국장로교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_____ 노회(또는 당회)는 미국장로교의 이름과 권위로 이 범법에 대한 단죄를 표명하고 당신을 견책합니다. 당신은 이제 이후로 더욱더 조심하여 그런 범법을 피할 것을 명 받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더욱 부지런히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순종하게 될 것을 촉구합니다.

기 도

이 공식적 견책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증보기도가 따라야 한다.

D-12.0103
감독 갱생의 견책

감독 갱생의 견책은 책벌의 최하등급의 바로 위다. 그것은 책망, 그리고 당회와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의해 부과된 일정 기간의 감독 갱생을 명하는 일과 함께, 범법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다(D-11.0403e). 이 책벌은 다음과 같은, 또는 유사한 형식으로, 언도되어야 한다.

당신(이름)___ _____은 _____ 의 범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그런 범법(들)에 의해 당신은 성경/또는 미국장로교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_____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또는 당회)는 미국장로교의 이름과 권위로 이 범법에 대한 단죄를 표명하고 당신을 견책하며, 아래에 기술된 바와 같이, _____의 감독하에 갱생 프로그램을 마칠 것을 명령합니다: _____.

당신은 이제 후로 더욱 조심하여 그런 범법을 피할 것을 명 받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더욱 부지런히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순종하게 될 것을 촉구합니다.

a. 견책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기도가 뒤따라야 한다.

b.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감독관(들)에게 주어진 구체적 권한과 갱생의 목적을 감독기관과 책벌 받은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c. 갱생 프로그램의 기술서는 진전 사항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감독 갱생이 만족스럽게 완수된 시기와 완수여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d.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학대한 범법 사건에 있어서 갱생 프로그램은 유죄로 판명된 자가 자발적 회개 행위나 행위들을 완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포함될 수도 있다. 그러한 행위들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공개적으로 죄를 인정하는 것, 커뮤니티 봉사, 해를 당한 사람이 잃은 것에 대한 상징적인 복구, 그리고/또는 해를 당한 사람이 지게 된 입증된 의료/심리상담 경비 분담.

D-12.0104
일시 제척 exclusion

직제사역이나 회원권으로부터의 일시 제척은 더욱 심한 범법에 대한 보다 높은 등급의 책벌이고, 한정된 기간 동안 또는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의해 부과된 감독 갱생의 완료에 의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이어야 한다(D-11.0403e). 이 책벌은 다음과 같은, 또는 유사한 형식으로 언도되어야 한다:

당신(이름)_____은 _____ (범법 내용을 기입해 넣는다)의 범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그런 범법(들)에 의해 당신은 (성경과/또는 미국장로교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_____ 노회(또는 당회)는 미국장로교의 이름과 권위로, 당신은_____로 부터 _____의 기간 동안 또는 _____의 감독하에서 다음의 갱생 프로그램을 아래에 기술된 바와 같이 완료할 때 까지 일시적으로 제척 되었다는 것을 공표합니다:

_____.

기도

a. 이 공식적 공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기도가 뒤따라야 한다.

감독 갱생

b. 만일 일시 제척 기간이 감독 갱생의 완료에 의해 정해졌다면,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감독관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권한을 감독기관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보고 의무

c.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학대한 범법 사건에 있어서 갱생 프로그램은 유죄로 판명된 자가 자발적 회개행위나 행위들을 완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포함 할 수 있다. 그러한 행위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공개적으로 죄를 인정하는 것, 커뮤니티 봉사, 해를 당한 사람이 잃은 것에 대한 상징적인 복구, 그리고/또는 피해자가 지게 된 증명된 의료/심리상담 경비 분담.

직제사역 수행의 자제

d. 직제사역으로부터의 일시 제척의 기간 동안,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직제사역의 모든 기능의 수행을 지체해야 한다.

투표권이나 직책 못 가짐

e. 회원권으로부터의 일시 제척의 기간 동안,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회의에 참석하고 투표하는 일과 어떤 직책을 갖거나 수행하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

목사의 일시 제척의 결과

f. 만일 목사가 직제사역의 직무수행으로부터 일시 제척되었다면, 노회는, 만일 사건의 상소가 계류 중이 아니라면, 목회 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선언할 수 있다.

일시 제척의 통지

g. 일시 제척의 책벌이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에 관련하여 언도되었을 때, 노회 정서기는 총회 정서기에게 취해진 결의에 관한 정보를 즉시 보내야 하며, 총회 정서기는 교단 산하 모든 노회에 그런 모든 정보에 대한 계간 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일시제척 책벌의 종료

h. 일시 제척의 책벌 하에 있는 사람은, 제척 기일이 종료되거나 언도된 감독 갱생이 완료 되었을 때, 공의회에 당회 서기나 정서기를 통해, 서면으로 복권을 신청해야 한다. 책벌을 부과했던 공의회는 제척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또는 공의회가 언도된 감독 갱생의 완료에 전적으로 만족할 때, 복권을 승인해야 한다.

조기 복권

i. 직제사역의 수행이나 회원권으로부터 일시 제척의 책벌 하에 있는 사람은 제척 기간의 만료나 책벌에 정해진 감독 갱생의 완료 이전에 복권시켜 주기를 (서기를 통해) 책벌을 부과했던 공의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의회는 그 결의의 정당함에 전적으로 만족할 때, 복권을 허락할 수 있다.

D-12.0105 직제사역이나 회원권 제척

직제사역이나 회원권으로부터의 제척이 책벌의 최고 등급이다.

직제사역 제척

a. 직제사역으로부터의 제척은 유죄 받은 사람의 안수와 선출을 파기하고, 그 사람의 회원권으로부터의 제척은 없이, 모든 직제사역에서 제척되는 책벌이다.

회원권 제척

b. 회원권으로부터의 제척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회원권이 종결되며, 그 사람이 모든 명부에서 삭제되고 그 사람의 안수와 모든 직제사역에의 선출이 파기되는 책벌이다.

이 책벌은 다음과 같은 또는 유사한 형식으로 언도되어야 한다.

당신(이름)_____은 _____ (범법내용을 기입해 넣는다)의 범법에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런 범법(들)에 의해 당신은 (성경과/또는 미국장로교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_____노회(또는 당회)는 미국장로교의 이름과 권위로 당신을 _____ (여기에 제척이 모든 직제 사역과 선출된 직위로부터인지 또는 모든 직제사역으로부터의 제척을 포함하는 회원권으로부터의 제척인지를 기술한다)로부터 파기하고 제척합니다.

기도

c. 이 공식적 선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기도가 뒤따라야 한다.

직제사역으로부터 제척의 결과

d. 만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회원권으로부터의 제척이 없이 직제사역으로부터 제척되면, 노회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선택하는 기독교 교회의 회원증명서를 그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에게 주어야 한다. 만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목회자면, 그 목회 관계는 책벌에 의해 자동적으로 해소된다.

제척 통지

e. 제척의 책벌이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에 관련하여 언도되었을 때, 해당 노회의 정서기는 총회 정서기에게 취해진 결의에 관한 정보를 즉시 보내야 하며, 총회 정서기는 교단 산하 모든 노회에 그런 모든 정보에 대한 계간 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D-12.0200 2. 복권

D-12.0201 공의회의 결정

직제사역이나 회원권으로부터의 제척의 책벌 하에 있는 사람은, 공의회가 그 결의의 정당함에 전적으로 만족할 때와 그 사람이 회원권 복권을 위해 신앙의 재확인을 하거나 직제사역에 복권되기 위해 다시 안수를 받을 때, 그 책벌을 부여한 공의회에 의해 복권될 수 있다. 복권의 양식은 D-12.0202 와 D-12.0203 에 기술되어 있다.

D-12.0202 제척 후 직제사역의 복권 양식

직제사역에로의 복권은 다음과 같은, 또는 유사한 형식으로 공의회 의장에 의해 선언되어야 한다:

양식

a. 당신(이름) _____은 교회를 만족시킬 만한 회개를 분명히 보여 주었으므로, _____노회 (또는 본 교회의 당회) 는 이제 당신을 본교단의 헌법에 따라 이 안수 행위에 의해_____의 직제사역에 복권시키고, 그 사역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명부에 복권

b. 그 후에 정식 안수 예식이 거행되어야 하고, 그 이름이 해당 명부에 복구되어야 한다 (W-4.04).

D-12.0203 제척 후 회원권 복권양식

회원권에의 복권은 다음과 같은, 또는 유사한 형식으로 공의회의 회의에서 의장에 의해 선포되어야 한다:

양식

a. 당신(이름)_____
은 교회를 만족시킬 만한 회개를 분명히 보여 주었으므로, _____ 노회 (또는 당회) 는 이제 당신을 이 재확인 행위에 의해 교회의 완전한 회원권으로 복권합니다.

명부에 복권

b. 그 후에 재확인 행위가 취해져야 하고, 그 사람의 이름이 해당 명부에 복권되거나 그 사람이 선택하는 기독교 교회로의 회원 증명서가 되어야 한다.

직제사역 복권

c. 만일 회원이 직제사역에도 복권되는 것이라면, D-12.0202 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D-13.0000 **제13장 징계사건의 상소**

D-13.0100 **1. 상소의 착수**

D-13.0101 정의

징계사건의 상소는 판결을 교정하거나, 수정하거나, 파기하거나 번복 시키기 위해 절차와 판결에 대한 검토를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위 공의회에서 판결이 난 사건을 차상위 공의회에 이전하는 일이다.

D-13.0102 상소의 착수

유죄 판결을 받은 자만이 서면의 상소문을 제출함으로써 첫단계 상소를 착수할 수 있다.

D-13.0103 항소판결의 상소

어느 편 당사자나 서면 상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항소 판결의 상소를 착수할 수 있다.

D-13.0104 상소의 효력

상소장은, 만일 적절하게 시간에 맞추어 접수되었다면, 하위 공의회에 의한 더 이상의 절차를 중지시켜야 한다. 단, 예외적으로, 직제사역의 수행이나 회원권의 일시 배제 또는 직제사역이나 회원권으로부터 제적의 경우, 그 판정을 인도 받은 그 사람은 상소가 최종적으로 판정되기까지 직제사역의 수행이나 회의에 참여하여 투표하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

D-13.0105 상소의 철회

신청에 따라 상위 공의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상소의 철회를 위한 청원을 승낙할 수 있다.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만일 그것의 승인이 정의의 목적을 좌절 시킨다면 청원을 거부해야 한다.

D-13.0106 상소의 근거

상소의 근거들은 다음과 같다

a. 절차상 변칙;

b. 한 쪽 당사자에게 청문이나, 증거를 얻거나 제시할 합리적 기회를 거부;

c. 부적절한 증거나 증언을 인정하거나, 적절한 증거나 증언을 인정하기를 거부;

d. 증거나 증언을 충분이 얻기 전에 판결을 조급히 서두름;

e. 사건 처리 과정에서 편견의 발로;

f. 과정이나 결정에 있어서의 부정;

g. 헌법 해석에 있어서 과오; 그리고

h. 책벌의 지나친 가혹성.

D-13.0200 **2. 상소 과정의 제출물**

D-13.0201 서면 상소장의 접수 기간

서면 상소장은 판정문의 사본이 상소하는 당사자에게 배달 증명 우편이나 교부송달로 전달된 지 45 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a. 서면 상소장은 당회서기나 상소가 취해진 판정을 내린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를 선출한 하위 공의회의 정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b. 상소하는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 각 사람에게와 그 상소를 청문할 공의회의 정서기에게 상소장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D-13.0202 서면 상소장의 내용

서면 상소장은 다음 사항을 진술하고 포함시켜야 한다.

a. 상소인 또는 상소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상소를 접수시키는 당사자나 당사자들의 이름, 그리고, 있는 경우, 그들의 변호인의 이름;

b. 피소인 또는 피소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상대편 당사자나 당사자들의 이름, 그리고, 있는 경우, 그들의 변호인의 이름;

c. 상소가 취해진 판정을 내린 공의회;

d. 상소가 취해진 판정이나 판결, 그리고 날짜와 장소 (상소장과 함께 판정 또는 판결의 사본을 동봉할 것);

e. 상소의 근거인 상소에 관한 심리 또는 청문을 진행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또는 당회의 과오 진술서(D-13.0106); 및

f. 상소장의 사본이 상대방 당사자 각 사람들에게와 상소를 청문할 공의회의 정서기에게 배달 증명 우편이나 교부송달로 제공되었다는 확인서.

D-13.0203 임원들에게 상소장 전달

상소장과 상소가 제기되고 있는 판결문이 접수되었을 때, 상위 공의회의 정서기는 그것들을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임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D-13.0300 3. 청문 이전 절차

D-13.0301 서류 검토

D-13.0203 에서 규정된 서류 접수 시, 그 사건을 청문할 공의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는 다음 사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서류를 즉시 검토해야 한다.

a. 공의회의 권할권 여부;

b. 상소인이 상소를 접수시킬 자격이 있는지 여부;

c. 상소 서류의 적절한 그리고 적시의 접수되었는지 여부;

d. 상소가 D-13.0106 에 설명된 상소를 위한 근거 중, 한가지 이상을 진술하고 있는지 여부.

D-13.0302 예비 질문결정

위원장과 정서기는 당사자들과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게 그들의 소견을 보고해야 한다.

a. 만일 소견이 접수되고 30 일이내에 사건의 어느 당사자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에 의해 위원장과 정서기의 소견에 항의가 행해지면, 해당 소견에 관한 증거와 논의를 제출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b. 만일 해당 항목을 판결하는 데 청문이 필요하면, 재정적 고려를 포함한 다른 정황 상, 상소에 관한 청문 바로 전에 예비 질문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상소 청문 이전 적어도 30 일 이내에 청문 일정이 잡혀져야 한다.

c. 만일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D-13.0301 에 열거된 사항 중 어느 것이라도 부정적으로 대답 되었다고 확정하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그 상소를 기각해야 한다.

d. 만일 D-6.0305 (또는 적용되는 D-8.0301 이나 D-13.0106)에 열거된 항목 중 하나 이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대답이 되었다는 위원장과 정서기의 소견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 되지 않는다면, 그 사건은 더 이상의 상임사법위원회의 결의나 명령 없이 기각되어야 한다.

D-13.0303 상소 기록

상소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록의 목록

a. 서면 상소장의 접수 후 45 일 이내에, 당회서기나 하위 공의회 정서기는 그 사건의 기록을 이루는 모든 서류와 기타 자료들을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목록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D-11.0601d).

추가 기록

b. 그 후 15 일 이내에, 어느 당사자나 정서기에 의해 목록이 만들어진 사건 기록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항의하는 서면 진술서를 하위 공의회의 정서기에게 제출할 수 있다. 서면 항의서는 사건의 기록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고자 하는 D-11.0601d 에 열거된 항목이나 항목들을 명확하게 진술해야 한다.

상소기록의 접수

c. 관할권을 가진 상위 공의회의 정서기로부터 해당 사건이 수리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하위 공의회의 정서기는 사건의 기록을 보증하고 상위 공의회의 정서기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그 기록 부분들의 인증 사본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그 기록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논박하는 서면 항의서를 포함시켜야 한다.

기록의 교정

d. 만일 당사자 어느 편에게 필수적인 자료의 어느 부분이 실수나 사고로 기록에서 누락되었거나 허위로 진술되었으면, 누락이나 허위 진술은 교정될 수 있다. 당사자들이 그 교정을 명기하거나, 당회나 하위 공의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보충 기록을 보증하고 전달하거나, 상위 공의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누락이나 허위 진술을 교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기록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다른 모든 질문은 상위 공의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접수일자 통보

e. 상위 공의회의 정서기는 상소에 관한 기록이 접수된 일자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본제공 비용

f. 서면 요청에 따라서 상위 공의회의 정서기는 상소하는 당사자 어느편에게든지 그들의 비용 부담으로 상소 기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연장

g. 이유가 합당하면 상위 공의회의 정서기는 D-13.0303 에 있는 시간 제한을 적당한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D-13.0304 상소인의 적요서 접수

상소 기록을 제출한 일자 후 30 일 이내에, 상소인은 상소장에서 주장하는 혐의의 명세서와 변론서, 논의서, 그리고 명세된 오류 혐의에 관해 상소인의 주장을 지지하는 당국의 소환장을 포함하는 서면 적요서를 상위 공의회의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사본 전달
a. 그 적요서에는 사본 한 통이 상대편 당사자나 당사자들에게 제공되었다는 확인서를 동반해야 한다.

연장
b. 이유가 합당하면, 상위 공의회의 서기는 이 시간 제한을 적당한 기간동안 연장할 수 있다.

적요서 접수 실패
c.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내에서 적요서의 제출을 상소인이 하지 못할 때,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이를 상소의 포기로 간주해야 한다.

D-13.0305 피소인의 적요서 접수
상소인의 적요서 제출 후 30 일 이내에, 피소인은 상위 공의회의 정서기에게 거기에 응답하는 서면 적요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사본 전달
a. 그 적요서에는 사본 한 통이 상대편 당사자나 당사자들에게 제공되었다는 확인서가 동반되어야 한다.

연장
b. 이유가 합당하면, 상위 공의회의 정서기는 이 시간 제한을 적당한 기간동안 연장할 수 있다.

적요서 접수 실패
c.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내에서 적요서의 제출을 피소인이 하지 못했을 때, 이는 적요서 제출과 출두와 청문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D-13.0306 기록과 적요서 전달
기록과 적요서가 접수되거나, 그것들의 접수 시기가 만료되면, 상위 공의회의 정서기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서기에게 그 기록과 적요서를 전달해야 한다.

D-13.0307 사전 청문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상소를 접수한 후 어느 때에라도, 그 위원회는 규칙대로, 상소내의 논쟁점에 관한 일치를 구하거나, 합리적으로 그리고 공평하게 논쟁을 좁혀주고 그 해결책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른 조처를 취하기 위해, 당사자들과, 있다면 그들의 변호인을 위해 사전청문회의를 제공할 수 도 있다.

D-13.0400 4. 상소의 청문

D-13.0401 청문통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서기는 상소를 제기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본인들 자신이나 변호인에 의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앞에 출두 할 수 있는 일자를 그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D-13.0402 출두실패
어느 편 당사자가 본인 자신이나 변호인에 의해 출두하지 않으면 이는 상소에 관한 청문 참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D-13.0403 청문
청문 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행해야 한다.

새 증거
a. 새로운 증거의 축어적 기록을 규정하는 D-14.0502 의 규정하에서 새로히 발견된 증거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청문

b. 상소인이 변론의 개시와 종결의 권한을 가지면서, 청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한 당사자들에게 상소의 근거에 관해 청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D-13.0404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정

청문과 심의 후에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오류혐의의 각 세목을 분리해서 투표해야 한다. 투표는 "오류의 세목들이 정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회의록에는 오류의 각 세목에 대한 투표수를 기록해야 한다. 만일 상소가 무죄 평결에 불복하는 기소위원회에 의해 개시되고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그 부분의 상소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새로 재판을 하도록 사건을 환송해야 한다.

만일 오류가 발견 안 되면

a. 만일 오류의 세목 중 어느 하나도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다른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하위 공의회의 결정은 확인되어야 한다.

만일 오류가 발견되면

b. 만일 한 가지나 그 이상의 오류가 발견되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하위 공의회의 판결을 확인할 것인지, 파기할 것인지, 번복할 것인지, 조절할 것인지, 아니면 그 사건을 새 심리를 위해 환송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서면 판결문

c. 서면 판결문은 회기 중에 준비되어야 하고, 서면 판결문의 사본에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서기와 위원장이 서명할 때 최종판결이 되어야 한다.

각 오류의 판결

d. 판결은 명시된 오류에 대한 결정을 포함해야 하고 D-13.0101 에 규정된 대로 구제책을 진술해야 한다.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중복을 피하여 실질적인 모든 질문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판결을 마련한다. 거기에는 판결에 대한 설명이 포함될 수도 있다.

즉시접수

e. 판결은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를 임명한 공의회의 정서기와 그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교부송달이나 배달 증명 우편으로 즉시 제출되어야 한다.

공개

f. 위원장이나 서기는 그 전권위원회가 지시하는 대로 판결을 배포해야 한다.

D-13.0405 징계사건에 있어 상소에 의한 번복 효력

징계사건의 상소를 맡은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모든 유죄 판명을 번복할 경우, 그것은 사실상 무죄 방면이며 그 사람은 교회의 직제사역이나 회원권에 자동적으로 복권된다. 이 효력에 대한 선언은 하위 공의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D-14.0000 제14장 교정사건이나 징계사건의 증거

D-14.0100 1. 증 거

D-14.0101 증거의 정의

증거는 증인들의 구술 증언 외에, 사실의 존재나 부재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된 기록과 글, 중대한 물적증거와 기타 사물들을 포함할 수 있다. 증거는 관련성이 있는 것만 인정되어야 한다. 필수적 증명의 등급에서 직접 증거와 정황적 증거 사이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D-14.0200 2. 증 인

D-14.0201 이의 제기

어느 당사자나 증언할 증인의 능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이의 제기를 받은 증인의 법적 능력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D-14.0202 남편이나 아내

다른 면에서 증언능력이 있는 경우, 남편이나 아내는 서로 상대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증인이 될 수는 있으나, 남편과 아내는 서로 상대를 반대하는 증언을 하도록 강요 받아서는 안 된다.

D-14.0203 상담자

공의회 관할권 안의 사람들에게 상담업무를 제공하도록 공의회로부터 정식 임명을 받은 사람은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나와 증언할 수 없다. 단, 증언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이러한 제한을 면제할 때는 예외이다.

D-14.0204 당사자들의 변호인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의 변호인은 개인기밀 문제에 관한 증언을 강요 받지 않을 수 있으며, 그들이 대의 하는 당사자들로부터의 명시적인 승낙이 없이는 다른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증언하지 않을 수 있다.

D-14.0205 증인의 신빙성

신빙성이란 증인의 증언이 믿을 만한 것인지의 정도를 의미한다.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증인의 신빙성을 결정함에 있어,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안들을 고려할 수 있다.

D-14.0300 3. 증 언

D-14.0301 분리 심문

어느 편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어떤 증인도 다른 증인이 심문을 받는 중에 출석할 수 없다. 이것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단의 출석 권리 또는 전문가 증인을 출석시킬 권리를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D-14.0302 증인의 심문

징계사건이나 교정사건의 증인들은 증언을 요청한 쪽의 심문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반대편 쪽의 대질 심문을 받는다. 그런 다음에 당회 회원이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이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다.

선 서

a. 증인은 증언을 하기 전에 다음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함으로써 선서를 해야 한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당신이 제공하게 될 증거가 진실이고, 거짓 없은 완전한 진실이 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까?"

확 약

b. 만일 증인이 선서하기를 반대할 경우, 다음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야 한다:

"증언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건에서 당신이 지금 제공하게 될 증거가 진실이고 거짓없는 완전한 진실이 되게 할 것을 엄숙히 확약합니까?"

D-14.0303 증언의 기록

각 증인의 증언은 공인 속기사에 의해,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정확하게 전부 기록되어야 한다.

D-14.0304 증언녹취에 의한 증언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계류 중인 담당 사건과 관련하여 어느 편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 증언녹취의 형태로 증언을 받아 기록하도록 한 명 이상의 사람들을 임명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타 공의회에서 온 사람

a. 필요할 경우, 그와 같이 임명받은 사람(들)이 타 공의회의 지역 내에서 올 수도 있다.

증언의 취득

b. 증인들의 심문 시간과 장소가 모든 당사자들에게 통지된 다음에 증언 녹취를 임명 받은 사람은 어느 일방의 당사자가 제공하는 증언을 녹취해야 한다. 당사자들에게 모두 출석할 권리가 주어져야 하며, 반대 심문할 기회가 허락되어야 한다.

증거로서 제공

c. 인증을 위해 임명된 사람(들)의 서명(들)에 의해 적절하게 인증된 녹취서는 현안이 계류 중인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서기에게 즉시 발송되어야 하며, 이 증언은 어느 쪽 당사자에 의해서나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

증거 허용성의 쟁점들

d. 녹취 증언에서 진술된 내용의 증거 허용성에 관한 모든 쟁점들은 그러한 증언 기록이 증거로서 제출될 당시에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판정을 내린다.

D-14.0305 증인으로서 회원

현안이 계류 중인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회원이 증언을 할 수는 있으나, 일단 증언을 한 다음에는 그 사건에 그 밖의 방법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

D-14.0400 4. 증거로서의 기록

D-14.0401 기록의 허용성

공의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인증된 서면기록은 어떤 절차에나 증거로 허용되어야 한다.

D-14.0402 증언의 허용성

한 공의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의해 작성되었고, 정식으로 인증이 된 증언의 기록이나 사본은 타 공의회의 어느 재판 과정에서나 증거로 허용되어야 한다.

D-14.0500 5. 새 증거

D-14.0501 새 재판 신청

상소문을 제출하기 이전, 상소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서, 위법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나 또는 교정사건에서 명령이나 판결이 내려진 당사자는 새로이 발견된 증거에 근거하여 새 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그러한 증거가 합리적으로 다른 판결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고 납득될 때, 그리고 합리적인 주의의무 행사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가 재판 당시에는 제출될 수 없었을 수도 있다고 납득이 될 때, 그런 신청을 허락할 수도 있다

D-14.0502 상소의 고려

만일 어느 편 당사자에 의해 상소가 제출된 다음에, 합리적인 주의의무 행사에도 불구하고 상소통지 접수 이전에 발견될 수 없을 수도 있었던 새 증거가 발견되면, 상소를 접수 받은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재량으로 새로이 발견된 증거를 받아들이고 청문회를 개최하고 사건을 확정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새 증거 도입을 추구하는 당사자가 상대편 당사자에게 보내는 사본과 함께 청문회를 개최하기 적어도 30일 전에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새로이 발견된 증거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 신청서에는 반드시 증거의 요약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부 록

A. 사법절차 양식
(반대와 항의 포함)

B. 합의 조항 (남북장로교 통합시의)

C. 합의 약정서 (교단간의 완전교류를 위한)

D.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가시적 표시

E. 미주한인장로회와 미국장로교 간의 계약관계

F. 한국어 어휘

부록 A

사법절차 양식

(반대와 항의 포함)

양 식

개인의 고발장에 의해 고발, D-10.0102a
(Form No. 26)..... A-15

공의회 회원의 고발장에 의해 고발, D-10.0102b
(Form No. 27)..... A-16

고소에 대한 답변서, D-6.0303
(Form No. 9)..... A-7

검토 청원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답변서, D-10.0204
(Form No. 28-B)..... A-18

검토 청원에 대한 조사위원회 답변서, D-10.0303b
(Form No. 32)..... A-21

고소에 대한 답변서 송달 증명서, D-6.0303
(Form No. 10)..... A-7

적요서 송달 증명서, 징계사건, D-13.0304a, D-13.0305a
(Form No. 49)..... A-32

적요서 송달 증명서, 교정사건, D-8.0304a, D-8.0305a
(Form No. 22)..... A-13

고소장 송달 증명서, D-6.0301f
(Form No. 7)..... A-6

소환장 송달 증명서, 징계사건 D-11.0202
(Form No. 43)..... A-27

소환장 송달 증명서, 교정사건 D-7.0202
(Form No. 16)..... A-10

상소 통보 송달 증명서, 징계사건 D-13.0202f
(Form No. 47)..... A-30

상소 통보 송달 증명서, 교정사건 D-8.0202f
(Form No. 20)..... A-12

공소, D-10.0403, D-10.0404
(Form No. 34)..... A-23

교정사건 당사자에게 소환장, D-7.0201, D-7.0202
(Form No. 12)..... A-8

교정사건 당사자에게 소환장, 사전심리 회의, D-6.0310
(Form No. 11)..... A-8

피소인에게 소환장, D-11.0201a, D-11.0202
(Form No. 37)..... A-24

피소인에게 소환장, 사전심리 회의, D-10.0405a
(Form No. 35)..... A-23

기소위원회에게 소환장, D-11.0201a, D-11.0202
(Form No. 39)..... A-25

기소위원회에게 소환장, 사전심리 회의, D-10.0405a
(Form No. 36)..... A-24

증인에게 소환장, 징계사건, D-11.0201a, D-11.0202
(Form No. 40)..... A-26

증인에게 소환장, 교정사건, D-7.0201a, D-7.0202
(Form No. 13)..... A-9

고소장, D−6.0301
(Form No. 6)..... A-6

조사의 종결, D-10.0202g, D-10.0300
(Form No. 29)..... A-20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의한 검토 종결, D-10.0204b
(Form No. 28-C)..... A-19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의한 검토 종결, D-10.0303
(Form No. 33)..... A-22

위임에 관한 상임사법 전권원회의 결정, D-4.0200
(Form No. 51)..... A-33

반대, G-9.0303
(Form No. 1)..... A-1

상소인과 피상소인의 적요서 양식, 징계사건, D-13.0304, D-13.0305
(Form No. 48)..... A-31

상소인과 피상소인의 적요서 양식, 교정사건, D-8.0304, D-8.0305
(Form No. 21)..... A-13

상소 통보, 징계사건, D-13.0100, D-13.0201, D-13.0202
(Form No. 46)..... A-30

상소 통보, 교정사건, D-8.0100, D-8.0201, D-8.0202
(Form No.19)..... A-12

소환장 송달 명령, 징계사건, D-11.0202
(Form No. 42)..... A-27

소환장 송달 명령, 교정사건, D-7.0202
(Form No. 15)..... A-10

불기소 결정에 대한 재심 청원, D-10.0303a
(Form No. 31)..... A-21

조사과정중, 조사 절차에 대한 검토 청원, D-10.0204
(Form No. 28-A)..... A-17

항의, G-9.0304
(Form No. 2)..... A-1

피소인에 의한 고소장 수신확인, D-6.0301f
(Form No. 8)..... A-7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수신확인, D-10.0300
(Form No. 30)..... A-20

위임, D-4.0000
(Form No. 50)..... A-32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결백임증 절차, D-9.0101b
(Form No. 25)..... A-15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 3명이 서명한 집행유예의 요구, D-6.0103a
(Form 5-A) A-5

증언녹취에 의한 증언취득 요구, 징계사건, D-11.0204, D-14.0304
(Form No. 45)..... A-28

증언녹취에 의한 증언취득 요구, 교정사건, D-7.0205, D-14.0304
(Form No. 18).....A-11

결백입증 요구, D-9.0101
(Form No. 23)..... A-14

미국장로교 회원이 아닌 사람을 증인으로 요구, 징계사건, D-11.0201b
(Form No.44)..... A-28

미국장로교 회원이 아닌 사람을 증인으로 요구, 교정사건, D-7.0201b
(Form No. 17).....A-11

결백입증 요구의 검토, D-9.0101a
(Form No. 24)..... A-14

피소인에게 2차 소환장, D-11.0202a, b
(Form No. 38)..... A-25

증인에게 2차 소환장, 징계사건, D-11.0202a
(Form No. 41)..... A-26

증인에게 2차 소환장, 교정사건, D-7.0203
(Form No. 14)..... A-9

회원이 범법자술서로 자신을 고발, D-11.0102c
(Form No. 28)..... A-16

집행유예, 치리회의 1/3이 서명, D-6.0103a(1)
(Form No. 3)..... A-2

집행유예, 사건을 주재하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들 1/3의 서명, D-6.0103a(2)
(Form No. 4)..... A-3

집행유예, 고소나 상소를 접수하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 3명의 서명, D-6.0103a(3)
(Form No. 5)..... A-4

집행유예, 고소나 상소를 접수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 3명의 서명 요구, D-6.0103a(3)
(Form No. 5-A)..... A-5

증인 – 비밀유지 권리의 제한된 포기, D-4.0201 (G-4.0301)
(Form No. 45-A)..... A-29

공의회의 결정에 불찬성을 기재하는 양식

양식 No. 1
반대, G-3.0105a

본인_____은 _____(공의회의 명칭)에 회원 또는 총대로서 _____(결정 또는 결의)에 본인의 반대표를 등록한다.

_____
(서명)

[반대는 결정이 취해진 특정 회기가 휴회하기 전에 구두로 표명해야 한다. 상기 양식은 반대를 하는 사람이 반대의사를 확실히 하기 위해, 서기나 정서기 또는 자신의 보좌관에게 줄 수 있다. 반대하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에 들어가야 한다.]

양식 No. 2
항의, G-3.0105b

본인 _____은 _____(공의회 이름)에 회원 또는 총대로서, _____(변칙 또는 직무태만)에 항의하고자 한다.

본인의 항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_____.

_____
(서명)

[항의의 서면 통보는 항의 사건이 발생한 그 공의회 회기 중에 제출되어야 한다.
그 항의는 폐회 되기 이전에 당회서기 또는 정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교정사건의 양식

양식 No. 3

집행유예
공의회의 1/3이 서명 D-6.0103a(1)

수신자: (고소인이 공의회의 결정에 대해 유예를 원하는 공의회의 서기)와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관할권을 가진 공의회 서기)

_____ ,
고소인

대

_____ ,
피소인

하기 서명인들은 _____ (공의회 이름 삽입) 회원들 중 최소한 1/3을 구성하며, _____ (집행유예되기 원하는 결의 삽입)에 대한 결의나 결정이 취해졌을 때 그 모임에 출석하였하였으며, 그 결의가 변칙적이었다고 믿는다.

[이 집행유예는 반드시, 취해진 결의에 도전하는 공의회 위원 한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변칙에 대한 고소장과 동시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피소인은 시행중지가 제기된 30일 이내에 집행유예에 대한 반대를 제기해야 한다. 집행유예를 존속시킬 것인지 제거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청문회가 열리고 나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사건의 시비곡직에 따라 판결을 내릴 때까지 그 유예를 수정하거나 종료하거나 지속시킬 수 있다.]

_____ , 날짜 _____ _____ , 날짜 _____
_____ , 날짜 _____ _____ , 날짜 _____
_____ , 날짜 _____ _____ , 날짜 _____

[주: 필요한 수의 서명을 기록하도록 충분한 용지를 사용해야 하며, 각 서명은 본인의 실제 서명이어야 한다. 이름만 기입된 페이지 또는 서명 페이지의 부본은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주: 고소인이 집행유예를 추구하는 결의를 취한 공의회 서기나 정서기는 그 서명자들이 공의회 회원들이었다는 사실과 그 결의나 결정이 내려질 때 출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그 증명서를 관할권을 가진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공의회 서기에 보내야 한다.]

양식 No. 4
집행 유예
사건을 주재하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들 1/3의 서명 D-6.0103a(2)

_____ ,
고소인, 상소인, 피상소인

대

_____ ,
피소인, 상소인, 피상소인

다음의 _____(공의회 이름)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들은 상기 사건의 결의에 참여하였으며, 상위 공의회에서 사건의 상소가 재심될 때까지 집해유예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믿는 바, 여기에 서명을 한다.

_____ , 날짜 _____		_____ , 날짜 _____	
_____ , 날짜 _____		_____ , 날짜 _____	
_____ , 날짜 _____		_____ , 날짜 _____	
_____ , 날짜		_____ , 날짜 _____	

오늘 본인은 요구되는 수의 서명을 접수하였다.

_____ _____
날짜 서기나 정서기의 서명

[주: 고소인/상소인은 청원서를 반드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서기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공의회 서기에게 송부해야 한다.]

양식 No. 5
집행유예
고소나 상소를 접수하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 3명의 서명, D-6.0103a(3)

_____ ,
고소인, 상소인, 피상소인

대

_____ ,
피소인, 상소인, 피상소인

하기에 명기된 사람들은 _____(결정이나 결의 제목 삽입)과 관련하여, _____(공의회나 그 공의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또는 D-6.0202b(3)에 기명된 피소인 이름 삽입)의 결정이나 결의에 대한 고소나 상소를 _____ (날짜 삽입)에 심리할 관할권을 가진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들로서, 집행유예 청원과 고소 또는 상소 통보를 접수하였으며, 결정이나 결의에서 오류를 발견할 만한 논거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결정이나 결의가 유예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믿는 바, 집행유예를 허가한다.

_____ , 날짜 _____ _____ , 날짜 _____
_____ , 날짜 _____ _____ , 날짜 _____
_____ , 날짜 _____ _____ , 날짜 _____
_____ , 날짜 _____ , 날짜 _____

오늘 본인은 요구되는 수의 서명을 접수하였다.

_____ _____
날짜 서기나 정서기의 서명

[주: 고소인/상소인은 반드시 고소나 상소를 심리할 관할권을 가진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공의회 정서기에게 집행유예 청원서와 집행유예 양식과 고소, 또는 상소 통보장을 송부해야 한다. 이 청원서는 고소나 상소 통보와 더불어, 직접 전달하거나 배달증명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양식 **No. 5**와 양식 **No. 5A**가 동시적으로 접수되어야 한다.]

양식 No. 5-A
집행유예
고소나 상소를 접수하는 상임 사법전권위원회의 위원 3명의 서명 요구서, D-6.0103a(3)

_____,

고소인, 상소인, 피상소인

대

_____,

피소인, 상소인, 피상소인

본 고소인 혹은 상소인은 _____ (결정이나 결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근거를 간단히 기술)에 관련하여 _____(날짜 기입)에 _____ (공의회나 그 공의회의 상임사법전권위원회 또는 D-6.0202b(3)에 기명된 피소인 이름 기재)가 취한 결정이나 결의에 대한 집행 유예를 위한 이 요구서를 접수합니다.

만일 취해진 결정이나 결의가 유예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해(불이익)가 일어날 것입니다: _____(결정이 유예되지 않을 경우 일어날 불이익에 대해 간단히 기술).

이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전화번호 및 주소와 함께 아래에 적혀 있습니다.

_____, 고소인/상소인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피소인/피상소인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_____

날짜 서기나 정서기의 서명

[주: 고소인/상소인은 고소나 상소를 심리할 관할권을 가진 상임 사법전권위원회의 공의회의 정서기에게 집행유예 청원서와 집행유예 양식과 고소 및 상소 통보장을 송부해야 한다. 이 청원서는 고소나 상소의 통보장과 함께 직접 전달하거나 배달증명 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양식 **No. 5-A**와 양식 **No. 5**가 동시에 접수되어야 한다.]

양식 No. 6
고소장, D-6.0301

_____

고소인

대

_____

피소인 (당회, 노회, 대회, 총회 선교사역부나 총회 기관)

고소 진술

본인(우리) _____ (고소인(들) 이름(들))은/는 _____(공의회, 총회 선교사역부, 또는 총회기관 이름)이/가, 20___년 __월 __일자 ____(장소)의 회의에서 범한 _____ (변칙 또는 직무태만)와/과 관련하여, 상기 언급의 _____ (공의회나 기관 이름)를 상대로 (변칙 또는 직무태만의 결정이나 결의)에 대한 고소를 _____(차상위 공의회나 총회)에게 제기한다.

고소인들은 그 결정/결의가 변칙적이었다고 믿는다, 또는 공의회가 다음의 관점 _____ (그 결정/결의가 왜 변칙적인지, 또는 불이행이 왜 직무태만인지 사유를 기입)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대로 이행되지 못하였다고 믿는다.

고소인(들)은 다음의 근거 _____ (D-6.0202a, b 명기된 대로 고소인의 입장 진술)에 의해 고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고소인(들)은 _____(고소를 접수시킨 공의회 명칭)가 _____ (피소된 공의회 명칭)에게 _____(특정 구제책 명시)을 하도록 명령할 것을 청원한다.

_____ _____

날짜 고소인(들)의 서명

[고소인(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양식 No. 7**이 함께 접수되어야 함.]

양식 No. 7

고소장 송달 증명서, D-6.0301f

본인은 상기의 고소장 사본이 _____(서기, 정서기, 총회 선교사역부 또는 총회기관)에게 _____(배달증명이나 등기우편, 수취확인 반송 요청의 우송방식이나 또는 인편 배달)의 방식으로 _____ (피소된 공의회 또는 기관명)에게 20____년 __월 ___일자 송달되었음을 증명한다.

_____ _____

날짜 고소인(들)의 서명

양식 No. 8

피소인에 의한 고소장 수신확인, D-6.0301f

본인은 _____ (공의회나 총회 선교사역부 또는 총회 기관명)의 _____ (공의회나 총회 선교사역부나 총회기관 서기, 지정서기, 대리인 이름)으로서, _____(인편 배달 또는 배달증명이나 등기우편, 또는 수취확인서 반송 요청)의 우송방식으로, _____, 20_____ (날짜 기입)에 (고소인 이름)의 고소장을 수신하였음을 확인한다.

날짜 서기, 정서기, 또는 대리인

양식 No. 9
고소에 대한 답변서 D-6.0303

고소인

대

(당회, 노회, 대회, 총회 선교사역부, 피소인, 또는 총회 기관)

답 변

_____(피소인의 변호인단)은 _____(고소인(들) 이름)의 고소장에 제기된 _____ (변칙 및 직무 태만) 고소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답변서를 제출한다.

[답변서는 고소장에 제기된 그러한 주장들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거나, 또는 사실이 아니라거나, 오류진술이라고 부인해야 하고, 이럴 경우에는 변칙이나 직무태만으로 확인된 상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국면들을 주장해야 한다. 답변서는 D-6.0307에 열거된 사항들에 대해 이슈를 제기할 수도 있다.]

날짜 피소인의 변호인의 서명

[피소인(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양식 No. 10**을 함께 접수해야 함.]

양식 No. 10
고소에 대한 답변서 송달 증명서, D-6.0303

본인_____(이름)은 _____의 고소에 대한 답변서로서 첨부문서가 제출되었으며, 본 답변서 사본이 _____ (배달증명이나 등기우편, 수취확인서 반신요청의 우송방식, 또는 인편배달)의 방식으로 고소(들)에게 20____년 ___월___일자로 제공되었음을 증명한다.

날짜 피소인(들)의 변호인의 서명

양식 No. 11
교정사건 당사자에게 소환장
사전심리 회의, D-6.0310

수신자: _____(고소인이나 변호인단)

발신자: _____(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_____(당회 서기 또는 노회, 대회, 또는 총회 서기)에게 제기된 고소와 관련하여, 권징조례 D-6.0310에 명시된 바에 의거하여 _____ (도시)의 _____(장소)에서 20____년 ___월 ___일 (오전/오후) ____시에 예심을 개최할 예정이므로, _____ (공의회 이름)의 _____(당회 또는 상임사법전권위원회)의 회의에 출두하도록 귀하에게 소환장을 발부한다.

날짜

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12
교정사건 당사자에게 소환장, D-7.0201, D-7.0202

수신자: _____(고소인이나 변호인단)
발신자: _____(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_____20____년 ___월 ___일자, (당회 서기 또는 노회, 대회, 또는 총회 서기)에게 귀하를 상대로 제기되었거나 또는 귀하가 제기한 고소와 관련하여, 귀하가 자신을 변론하거나, 또는 귀하가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내용이 충분히 심리되고 판결되도록 하기 위해, _____ (도시)의 _____(장소)에서 20____년 ___월 ___일 오전/오후 ____시, _____ (공의회 이름)의 _____(당회 또는 상임사법전권위원회)의 회의에 출두하도록 귀하에게 소환장을 발부한다.

날짜

(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13
교정사건 당사자에게 소환장, D-7.0201a, D-7.0202

수신자: _____(이름)
발신자: _____(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_____(고소인 또는 피소자 공의회 기관 이름[들])의 요청에 따라, 귀하가 _____ (공의회 이름)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회의에 _____(도시), _____(장소)로 20_____년 ___월___일 (오전/오후) ____시에 출두하여, 교정사건_____(사건 이름)에 대해 증언하도록 소환한다.

_____ _____
날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14
증인에게 2차 소환장, 교정사건, D-7.0203

수신자: _____(이름)
발신자: _____(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본 소환장은 장소와 날짜의 필요한 변경을 제외하고는 양식 No. 13과 동일해야 한다. 또한 다음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본 소환장은 2차 소환장이므로, D-7.0203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에게 통보한다: 만일 귀하가 정당하게 인정된 사유 없이 명시된 날짜와 장소에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출두하지 하지 않을 경우, 징계조치에 처해질 수 있다.

_____ _____
날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15
소환장 송달 명령, 교정사건, D-7.0202

수신자: _____(이름)
발신자: _____(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_____(이름)에게 발부된 첨부 소환장을 그 사람에게 직접 배달하도록 귀하에게 지시한다. 송달증명서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서기에게 반드시 보낸다.

_____ _____
날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16
소환장 송달 증명서, 교정사건, D-7.0202

수신자: _____(이름)
발신자: _____(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본인은 _____(이름)에게 발부된 소환장을 20___년 ___월 ___일자 직접 송달하였음을 증명한다. (또는, 본인은_____[이름]을 찾지 못하였으며 그사람에게 발부된 소환장을 송달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한다).

_____ _____
날짜 서명

양식 No. 17
미국장로교 회원이 아닌 사람을 증인으로 요구, 교정사건, D-7.0201b

수신자: _____(증인의 이름)
발신자: _____(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이름)

_____(고소인 이름[들])의 요구에 따라, _____ (공의회 이름)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회의에 _____(도시), _____(장소)로 20_____년 ___월___일 (오전/오후) ____시에 귀하가 출두하여 줄 것과, 교정사건 _____(사건 이름)과/와 관련하여 귀하의 증언을 요청한다.

_____ _____
날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18
증언녹취에 의한 증언취득 요구,
교정사건, D-7.0205, D-14.0304

수신자: _____(상임사법 전권위원회)
발신자: _____(고소인[들]이나 피소인의 이름)

본인 _____은/는 _____(사건 이름)의 재판에서 _____(증인 이름)의 증언을 요구하는 바이며,
요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_____(사유 열거).

본인은 이 요구서 사본이 _____ (고소인이나 피소인)에게 제공되었음을 증명한다.

_____ _____
날짜 서명

양식 No. 19
상소 통보,
교정사건, D-8.0100, D-8.0201, D-8.0202

수신자: _____(상소를 요청한 판결을 내린 공의회 정서기)
발신자: _____(상소인)

제목:

_____
상소인(고소인이나 피소인)

대

_____
피상소인(피소인이나 고소인)

_____(노회 이름)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20___년 _____월_____일자 _____(장소)에서 내린 결정에 대한 상소에 대해 _____(대회나 총회)에 통보하였다.

(D-8.0202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날짜 상소인 서명

[상소인(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반드시 **양식 No. 20**을 함께 제출한다.]

양식 No. 20
상소통보 송달 증명서,
교정사건, D-8.0202f

본인은 상소통보 사본이 _____(청문회를 주재할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속한 상위 공의회 정서기)와/과 _____(다른 당사자들과 그들의 변호인)에게 _____(배달증명이나 등기우편, 수취확인 반송 요청의 우송방식이나 또는 인편 배달)의 방식으로 20___년 ___월 ___일자 제공되었음을 증명한다.

날짜 상소인 서명

양식 No. 21
상소인과 피상소인의 적요서 양식
교정사건, D-8.0304, .0305

상소인(고소인이나 피소인)

대

피상소인(피소인이나 고소인)

오류 명세서

[하위 공의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오류를 범했다고 하는 주장. D-8.0105에서 상소 근거를 참조한다. 피상소인은 상소인의 적요서에 열거된 오류 명세서를 인용해야 한다.]

진상 진술서

[사건이 상소에 이르게 된 사실의 경위를 간단 명료하게 서술한다.]

논증

[오류 명세서의 각 내용에 대해 변론을 진술하되, 변론에 적절한 표제를 붙이고 어느 오류에 속하는지 표시한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권위있는 근거의 인용과 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종결

[만일 상소인이면, 요구하는 구제책이나 교정을 진술한다. 만일 피상소인이면, 요구된 구제책이나 교정의 제거를 진술한다.

부록

[해당될 경우, 하위 공의회가 취한 결정사항의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적요서에 언급되었을 경우, 공의회 회의록의 적합한 부분들이 함께 첨부되어야 한다.]

_____ _____

날짜 상소인 서명

[상소인(들)과 피상소인(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반드시 **양식 No. 22**을 함께 제출한다.]

양식 No. 22

적요서 송달 증명서, 교정사건, D-8.0304a, D-8.0305a

본인_____(이름)은/는 _____(상소인, 피상소인)의 적요서 사본이 _____(다른 당사자들과 그들의 변호인)에게 _____(배달증명이나 등기우편, 수취확인서 반송요청의 우송방식이나 인편배달)의 방식으로 20____년 ____월 ___일에 송달되었음을 증명한다.

_____ _____

날짜 상소인이나 피상소인의 서명

양식 No. 23
결백 입증 요구, D-9.0101

수신자: _____(당회 서기, 노회 정서기)
발신자: _____(결백입증 요구자 이름)

본인 _____(이름)이 _____의 위반을 했다고 주장하는 _____(소문이나 험담)에 의해 본인이 명예손상을 입었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_____ (당회나 노회)가 조사위원회를 지명하여, 주장된 범법과 관련된 사실과 정황을 조사하고 진상을 파악해줄 것을 요구한다.
[주장된 사실경위에 대한 서술서와 진술서를 제공한다. 소문이나 험담에서 귀하가 위반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를 했다고 주장되었는지? 그에 대응하여 귀하는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지? 기타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_____ _____
날짜 서명

양식 No. 24
결백입증 요구 검토, D-9.0101a

수신자: _____(당회 서기나 노회 정서기)
발신자: _____(목회위원회나 기타 적합한 위원회)

조사위원회 임명 여부의 결정 권한을 가진 _____(위원회 이름)는 _____ (이름)이/가 접수한 결백입증 요구를 검토한 다음, D-10.0201에 의거하여 조사를 진행하도록 조사위원회가 임명되어야 (한다/안된다) 고 _____(날짜)에 결정하였다.

_____(당회서기나 노회 서기)는 D-10.0201 조항에 의거하여 그러한 조사위원회 임명을 마련해야 한다.

_____ _____
날짜 서명

양식 No. 25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결백 입증 절차, D-9.0101b

수신자: _____(당회 서기나 노회 정서기, 또는 결백 입증 요구자)
발신자: _____(조사위원회 위원)

_____ (사람 이름)에 관한 소문과 험담을 조사하기 위해 _____(날짜, D-10.0401)에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_____(고발을 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고발할 것이다).

[소문과 험담이 일어난 사실과 상황이 보고되어야 한다.]

[만일 조사위원회가 그 문제 대해 고소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D-10.0402에서 시작되는 적절한 사법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_____ _____
날짜 서명

징계사건의 양식

양식 No. 26
개인의 고발장에 의해 고발, D-10.0102a

수신자: _____(당회 서기나 노회 정서기)
발신자: _____(고발자나 고발자들 이름)

본인_____은/는 _____(당회나 노회 이름)의 관할하에서, 성경과 미국장로교헌법에 위배되는 _____의 범법을 한 _____(피고발자 이름)을/를 상대로 고발하며 상기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의 자료를 제출한다.

상기인_____(피고발자 이름)이/가 _____(날짜)에 범한 행위는 다음과 같다: _____(고발내용을 입증할 사건전말과 주장된 사실 삽입).

_____ _____
날짜 고발자 서명

양식 No. 27

공의회 회원의 고발장에 의해 고발, D-10.0102b

수신자: _____(당회 서기나 노회 정서기)
발신자: _____(고발자나 고발자들 이름)

본인_____(고발자 이름)은/는 _____(당회나 노회 이름)의 회원으로서, 성경과 미국장로교헌법에 위배되는_____의 범법을 한 _____(피고발자 이름)을/를 상대로 고발하며 상기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의 자료를 제출한다.

상기인_____(피고발자 이름)가/이 _____(날짜)에 범한 행위는 다음과 같다: _____(고발내용을 입증할 사건 설명과 주장된 사실 삽입).

_____ _____
날짜 고발자 서명

양식 No. 28

회원이 범법자술서로 자신을 고발, D-10.0102c

본인은 _____(당회, 노회) 관할하에 있으며, 성경과 미국장로교 헌법에 위배되는 _____의 죄가 있음을 진술한다. 본인 스스로 고발하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의 자료를 제출한다.

본인은 _____ 은 _____ (날짜)에 다음을 행하였다:
_____ (자신을 상대로 고발하는 내용 삽입).

_____ _____
날짜 고발자 서명

양식 No. 28-A

조사과정중, 조사 절차에 대한 검토 청원서, D-10.0204

수신자: _____(당회 서기 혹은 노회 정서기)

발신자: _____(조사받고 있는 사람)

나, _____는 현재 _____(노회 혹은 당회)가 임명한 조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바, 조사위원회의 조사 절차에 관련된 다음의 사안을 검토해 줄 것을 _____(당회 혹은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청원합니다.

[조사위원회가 오류를 범하고 있거나 빠뜨리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설명하는 이야기를 쓴다. 이러한 검토에 적절한 내용은 D-10.0204에 열거된 것에 국한된다

[주: 이 청원은 조사위원의 답변과 함께 노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두명의 지명된 위원이 검토할 것이다. 당회는 이러한 요청을 노회의 상입사법 전권위원회에 조회하도록 해야 한다(D-5.0101). 이러한 검토를 마친 후에, 조사위원회의 절차를 그대로 승인하거나 조사위원회에 적절한 제안을 하게 된다. 검토의 결과는 재판전에 있는 사전 심리회의에서도 검토될 수 있다(D-10.0405).]

_____ _____

날짜 서명

[주: 이 청원은 고발이 접수되기 전까지만 (즉 조사 과정 중에) 받아들일 수 있다. 고발이 접수된 후에, 조사 절차에 대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때는 사전 심리회의 때이다 (D-10.0405).]

양식 No. 28-B
검토 청원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답변서, D-10.0204

수신자: _____ (당회 서기 혹은 노회 정서기)

발신자: _____ (조사위원회)

_____(이름)에 대한 범법 혐의를 조사하도록 임명된 조사위원회는 지금까지의 본 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검토해 달라고 한 (그/그녀)의 청원서에 _____(이름)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제출합니다.

[주장한 각 사실에 대해 답변]

_____ _____

날짜 조사위원회 위원의 서명

[주: 양식 **No. 31**을 보낸 것과 같이, 당회 서기는 이 답변서를 노회의 정서기에게 보낸다]

양식 No. 28-C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의한 검토 종결, D-10.0204b

수신자: _____(당회 서기 혹은 노회 정서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발신자: _____(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

상임사법 전권위원회(_____ 교회의 당회를 대신하여, D-5.0101)는 _____ (이름)가 이의를 제기한 조사위원회의 조사 절차가 D-10.0204 에 기술된 기준과 일치 (하였다/하지 않았다)고 D-5.0101 와 D-10.0204a에 근거하여서 결론지었다. 따라서 _____ (청원자의 이름)의 청원은 아래에 기술한 바와 같이 (인정된다 혹은 인정되지 않는다).

[청원서의 어느 부분이라도 인정이 되면,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조사 절차를 수정하도록 제안을 해야 한다. 이 검토의 결과는 조사위원회가 고발을 신청할 것인지의 여부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 검토의 결과는 사전 심리회의에서도 참조될 수 있다 (D-10.0405).]

_____ _____

날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

[주: 재판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필요를 암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D-4.0000), D-5.0101 조항은 청원서의 검토는 전권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는 두 사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두 위원은 재판이 행해질 경우에 이 재판에 참여하지 못한다. 당회는 이러한 청원을 노회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검토를 맡은 두 위원은 검토의 결과를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서기에게 통보해야 한다.]

양식 No. 29
조사의 종결, D-10.0202g, D-10.0300

수신자: _____(당회 서기나 노회 정서기, 서면진술서 제출자 또는 피고발자)

발신자: _____(조사위원회 위원)

_____ (사람 이름)을/를 상대로 고발된 주장을 조사하기 위해 _____(날짜, D-10.0401)에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_____(공소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공소할 것이다).

[공소 하기로/또는 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이어 그러한 결의(D-10.0300 조항에 명시된)는 반드시 조사위원회가 해야 한다.]

_____ _____

날짜 서명

양식 No. 30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수신확인, D-10.0300

20___년 ___월 _____일자에 구성된 _____ (공의회 이름)의 조사위원회가 위임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_____(공소 하기로 또는 공소하지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발표한 보고서를 수신하였음을 확인한다.

_____ _____

날짜 서기 또는 정서기

양식 No. 31
불기소 결정에 대한 재심 청원, D-10.0303a

수신자: _____(당회 서기나 노회 정서기)
발신자: _____(처음 고발장을 낸 사람)

본인 _____은/는 본인이 _____(당회 혹은 노회의 이름)의 _____(당회 서기 또는 정서기)에 제출한 서면 고발장과 관련하여 어떤 죄목도 공소하지 않기로 한 조사위원회의 결정을 _____(날짜)에 받은 바, 공소하지 않기로 한 조사위원회 결정 대해 _____(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검토를 청원한다.

[조사위원회가 고소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된 데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들에 대해 서술한다.]

[이 청원서는 조사위원회의 답변서와 함께 당회에 의해 또는 노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의해 검토될 것이다. 검토 결과, 조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새로 조사하도록 결정될 것이다.]

_____ _____
날짜 서명

양식 No. 32
검토청원에 대한 조사위원회 답변서, D-10.0303b

수신자: _____(당회 서기나 노회 정서기)
발신자: _____(조사위원회)

_____(이름)이/가 _____(이름)을/를 상대로 제기한 서면 고발장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공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내린 바, 이에 대한 검토 청원을 받고 _____(이름)에 의해 주장된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서를 제출한다:

[주장된 사실의 각 내용에 대한 답변서]

_____ _____
날짜 조사위원회 위원 서명

[주: 당회 서기는 양식 No. 31을 전송한 방식과 동일하게, 이 답변서를 노회 정서기에게 보낸다.]

양식 No. 33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의한 검토 종결, D-10.0303

수신자: _____(당회 서기나 노회 정서기, 서면진술서 제출자. 또는 피고발자)

발신자: _____(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_____(당회나 상임사법전권 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_____(사람 이름)을 상대로 공소하지 않기로 한 조사위원회 결정이

_____ (적절한 또는 적절하지 않은) 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본다.

_____(청원자 이름)의 청원은 _____(인정된다 또는 인정되지 않는다).

[만일 청원이 인정될 경우, 새로운 조사위원회가 임명되어야 한다 (D-10.0303d). 만일 청원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 사안은 종결된다.]

_____ _____

날짜

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주: 종국적인 재판 (D-4.0000)에 대한 위임의 필요를 피하려면,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 청원서와 답변서의 검토자로서 2~3명의 위원들을 임명할 수 있도록 내부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편리할 것이다. 재판이 종국적으로 일어날 경우에 그러한 위원들은 그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

양식 No. 34

공소, D-10.0403, D-10.0404

미국장로교는 귀하_____ (교회 또는 노회 회원 이름)를 다음의 죄목(들)으로 공소한다:

[“범법이란 교회의 교인이나 제직원이 성경이나 미국장로교 헌법에 반하는 어떤 행위나 행동의 결여를 뜻한다.”]

귀하 _____(이름)는/은 _____ (날짜) 또는 그 즈음에 다음과 같은 범법을 행하였다: _____.

[각 공소 항목에 대해 번호를 붙이고 범법을 구성하는 행위를 명시한다. 각 공소 항목에 대해, 주장된 행위를 저질은 시간, 장소, 상황을 가능한 대로 명시해야 한다. 각 공소 항목에 대해 공소를 지지하는 증인의 이름과 주소를 열거하고, 입증을 위해 소환될 기록과 문서 종류를 열거한다.]

공소를 지지하는는 증인들(이름과 주소 열거):

공소 항목을 입증할 기록과 문서(각각의 이름과 종류 열거):

_____ _____

날짜 서명, 조사위원회

양식 No. 35

피소인에게 소환장

사전심리 회의, D-10.0405a

수신자: _____(피소인 이름)

발신자: _____(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_____(당회나 노회 이름)을 통한 미국장로교 대 _____ (피소자 이름) 사건이 권징조례 D-6.0405에 명시된 절차에 의거하여 예심이 _____(도시)의 _____(장소)에서 20___년 ___월 ___일자 오전/오후 ____시에 개최될 예정이며, 귀하에게_____ (교회나 노회 이름)의 _____(당회 또는 상임사법전권위원회)에 출두하도록 소환장을 발부한다. 첨부문서는 공소장 사본이다.

_____ _____

날짜 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전권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36

기소위원회에게 소환장, 사전심리 회의, D-10.0405a

수신자: _____(기소위원회 이름)
발신자: _____(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_____(당회나 노회 이름)을 통한 미국장로교 대_____(피소자 이름) 사건이 권징조례 D-10.0405에 명시된 절차에 의거하여 예심이 _____(도시)의 _____(장소)에서 20___년 __월 __일자 오전/오후 ____시에 개최될 예정이며, 귀하에게 _____(교회나 노회 이름)의 _____(당회 또는 상임사법전권위원회)에 출두하도록 소환장을 발부한다. 공소장 사본 첨부.

날짜

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37

피소인에게 소환장, D-11.0201a, D-11.0202

수신자: _____(이름)
발신자: _____(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귀하_____(이름)을/를 상대로 미국장로교가 _____(당회나 노회 이름)을 통해 공소를 제기한 바, 이의 절차가 _____(도시)의 _____(장소)에서 20___년 __월 __일자 오전/오후 ____시에 개최되므로, 귀하에게 _____ (교회나 노회 이름)의 _____(당회 또는 상임사법전권위원회)에 출두하여 공소에 답변하도록 소환장을 발부한다. 공소장 사본 첨부.

날짜

당회자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삽법 전권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38
피소인에게 2차 소환장, D-11.0202a, b

수신자: _____(이름)
발신자: _____(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소환장은 날짜와 장소에 관한 필요한 변경을 제외하고는 양식 No. 37과 동일해야 한다. 또한 다음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본 소환장은 2차 소환장이므로, D-11.0202b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에게 통보한다. 즉, 만일 귀하가 정당하게 인정된 사유 없이 명시된 날짜와 장소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_____(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귀하의 변호인으로서 대리인이나 대리인들을 임명하고, 마치 귀하가 출석한 것처럼 귀하 사건의 증언 청취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나아가, 귀하는 권징결의에 처해질 수 있고, 불순종과 모욕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D-11.0202a).

_____ _____
날짜 당회자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39
기소위원회에게 소환장, D-11.0201a, D-11.0202

수신자: _____(이름)
발신자: _____(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귀하가 _____(이름)를/을 상대로 20____년 ___월 ___일자, _____(당회 서기 또는 노회 서기)에게 제기한 공소 절차가 _____(도시)의 _____(장소)에서 20____년 __월 __일 오전/오후 ____시에 있을 예정이므로 _____(치리회 이름)의 _____(당회 또는 상임사법전권위원회)의 회의에 출두하여 공소하도록 소환장을 발부한다.

_____ _____
날짜 당회장이나 당회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40
증인에게 소환장, 징계사건, D-11.0201a, D-11.0202

수신자: _____(이름)
발신자: _____(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미국장로교가 _____(당회나 노회 이름)을/를 통해 공소를 제기한 바, 이의 절차가 _____(도시)의 _____(장소)에서 20___년 __월 __일자 오전/오후 ____시에 개최되므로, 귀하에게 _____(교회나 노회 이름)의 _____(당회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출두하여 증언하도록 소환장을 발부한다.

_____ _____
날짜 당회장이나 당회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41
증인에게 이차 소환장, 징계사건, D-11.0202a

수신자: _____(이름)
발신자: _____(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소환장은 날짜와 장소에 관한 필요한 변경을 제외하고는 **양식** No. 40과 동일해야 한다.
또한 다음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본 소환장은 2차 소환장이므로, D-11.0202a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에게 통보한다: 만일 귀하가 정당하게 인정된 사유 없이 명시된 날짜와 장소에 _____(교회나 노회 이름)의 _____(당회,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출두하지 하지 않을 경우, 징계조치에 처해질 수 있다.

_____ _____
날짜 당회장이나 당회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42
소환장 송달 명령, 징계사건, D-11.0202

수신자: _____(이름)

발신자: _____(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_____(이름)에게 발부된 첨부 소환장을 그 사람에게 직접 배달하도록 지시한다. 송달증명서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서기에게 반드시 보낸다.

_____ _____

날짜 당회장이나 당회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43
소환장 송달 증명서, 징계사건, D-11.0202

수신자: _____(서기)

발신자: _____(소환장 송달자)

본인은 _____(이름)에게 발부된 소환장을 20___년 ___월 ___일자 직접 송달하였음을 증명한다. (또는, 본인은_____[이름]을 찾지 못하였으며 그사람에게 발부된 소환장을 송달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한다).

_____ _____

날짜 서명

양식 No. 44
미국장로교 회원이 아닌 사람을 증인으로 요구,
징계사건, D-11.0201b

수신자: _____(이름)
발신자: _____(당회장이나 당회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장이나 서기)

미국장로교가 _____(당회나 노회 이름)을/를 통해 제기한 공소 사건의 절차가 _____(도시)의 _____(장소)에서 20___년 __월 __일자 오전/오후 ____시에 개최되는 바, _____(교회나 노회 이름)의 _____(당회 또는 상임사법전권위원회) 회의에 귀하의 출석과 증언을 요청한다.

_____ _____
날짜 당회장이나 당회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45
증언 녹취에 의한 증언취득 요구,
징계사건, D-11.0204, D-14.0304

수신자: _____(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이름)
발신자: _____(기소위원회 또는 피소자 이름)

본인 _____은/는 _____(사건 이름)의 재판에서 _____(증인 이름)의 증언을 요구하는 바이며, 요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_____(사유 열거).

본인은 이 요구서 사본이 _____ (기소위원회)에게 제공되었음을 증명한다.

_____ _____
날짜 서명

양식 No. 45-A

증인 – 비밀유지 권리의 제한된 포기

D-14.0201, G-4.0301

수신자: _____(당회 혹은 상임사법전권위원회 이름)

발신자: _____(기소위원회)

참조: _____(이름)의 증언, 기소를 위한 증인

본 증인은 본인의 증언이 사건을 기소하는데 사용되기 위해서는 비밀유지의 권리를 제한적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충고받았다. 이러한 포기는 본 징계사건의 소송절차에 국한된다. 이는 반대 심문의 목적으로, 피소인이 (그의/그녀의) 변호인과 사건에 대한 정보와 증인이 이들 사건의 정황에 관해 피소인에게 말했을지도 모르는 정보를 서로 나누는 것을 허용하기 위함이며, 또 피소인이 재판에서 증언하기를 선택할 때에 피소인으로 하여금 동일한 사건과 대화에 대해 증언하도록 허용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포기는 그러한 비밀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증인과 피소인 간의 은밀한 대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증인은 *규례서*의 규정 (G-4.0301)이나 상담 혹은 고백의 관계에서 비밀을 지켜야 하는 민사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목적으로 정보가 사용되도록 이 포기 선언서에 서명한다.

_____ _____

날짜 증인의 서명

_____ _____

날짜 기소위원회 위원장의 서명

양식 No. 46
상소 통보, 징계사건, D-13.0100, D-13.0201, D-13.0202

수신자: _____(당회 서기나 상소받은 판결을 내린 공의회 정서기)
발신자:_____(상소인)
제목: _____

상소인(공의회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D-13.0103**])
대
피상소인(공의회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_____(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20_____년 ___월___일자 _____(장소)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상소가 제기되어 이를 _____(노회, 대회 또는 총회)에 통보하였다. (D-13.0202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_____ _____
날짜 상소인 서명

[상소인(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반드시 양식 **No. 47**을 함께 제출한다.]

양식 No. 47
상소 통보 송달 증명서,
징계사건, D-13.0202f

본인은 상소 통보가 _____(청문회를 주재할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속한 상위 공의회 정서기)와/과 _____(다른 당사자들과 그들 변호인)에게 _____(배달증명이나 등기우편, 수취확인 반송 요청의 우송방식이나 또는 인편 배달)의 방식으로 20___년 ___월 ___일자 제공되었음을 증명한다.

_____ _____
날짜 상소인 서명

양식 No. 48
상소인과 피상소인의 적요서 양식, 징계사건, D-13.0304, D-13.0305

_____
상소인

대

_____
피상소인

오류 명세서

[하위 공의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거 오류를 범했다고 하는 주장. D-13.0106에서 상소 근거를 참조한다. 피상소인은 상소인의 적요서에 열거된 오류 명세서를 인용해야 한다.]

진상 진술서

[사건이 상소에 이르게 된 사실 경위를 간단 명료하게 서술한다.]

논 증

[오류 명세서의 각 내용에 대해 변론을 진술하되, 변론에 적절한 표제를 붙이고 어느 오류에 속하는지 표시 한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권위있는 근거의 인용과 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결 론

[만일 상소인이면, 요구하는 구제책이나 교정을 진술한다. 만일 피상소인이면, 요구된 구제책이나 교정의 제거를 진술한다.]

부 록

[해당될 경우, 하위 공의회가 취한 결정사항의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적요서에 언급되었을 경우, 공의회 회의록의 적합한 부분들이 함께 첨부되어야 한다.]

_____ _____
날짜 상소인 서명

[상소인(들)과 피상소인(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반드시 **양식 No. 49**을 함께 제출한다.]

양식 No. 49
적요서 송달 증명서,
징계사건, D-13.0304a, D-13.0305a

본인_____(이름)은 _____(상소인, 피상소인)의 적요서 사본이 _____(다른 당사자들과 그들 변호인)에게 _____(배달 증명이나 등기우편, 수취확인서 반송요청의 우송방식이나 인편배달)의 방식으로 20___년 ____월 ___일자 송달되었음을 증명한다.

_____ _____
날짜 상소인 서명

위임 양식

양식 No. 50
위임, D-4.0000

수신자: _____(차상위 공의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발신자: _____(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_____(교회, 노회, 대회)의 _____(당회,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_____(차상위 공의회 이름)의 상임사법전권위원회에게 다음의 사건에서 _____(재판과 판결, 또는 상소 청문회) 관할권을 맡도록 청원한다:

_____
고소인
대
_____
피소인

또는

_____
미국장로교
대
_____
피고인

사건을 위임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상위 공의회가 사건을 취급해야 마땅하다고 보는 사유 설명):

_____
공의회 의장

_____ _____
날짜 서기

양식 No. 51
위임에 관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정, D-4.0200

수신자: _____(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발신자: _____(차상위 공의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_____(노회, 대회, 또는 총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_____ (징계 또는 교정) 사건을 본 공의회에 의해 처리되도록 하는 _____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요청에 대해 _____(승인한다, 또는 불승인한다).

_____(공의회 이름)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_____ 사건의 원 관할권을 _____ (수락한다, 또는 거절한다).

[거절 사유를 기술한다, (D-4.0203).]

[만일 차상위 공위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관할권 거절할 경우, 하위 공의회가 재판이나 상소 청문을 주재하고 판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_____ _____
날짜 상임사법 전권위원장이나 서기

부록 B

남장로교와 연합장로교의

합의조항

Articles of Agreement Between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합의조항

Articles of Agreement

서 문

본 합의조항은 두 교회의 고백문서, 회원, 제직원, 치리회, 법정, 대행기관, 단체와 재산이 미국 장로교의 고백문서, 회원, 제직원, 치리회, 법정, 대행기관, 단체와 재산이며, 또 그렇게 되는 방편에 관하여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계약적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본 합의조항은 재연합의 세목을 기록한다. 그 내용들은 각기 그 전례를 가진 재연합 교회의 지속성을 증명한다. 재연합 교회는 모든 교회적, 사법적, 법적, 그리고 다른 모든 사항에 있어서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지속적인 실재가 될 것이다.

두 교회가 그들의 개별적 헌법에 따라서 그 계획을 승인했고, 재연합이 효력을 발생했으므로 재연합된 단일 교회로 존재하며, 두 교회의 개별적 존재는 해소된다. 원래 합의에 따라 두 당사자들은 개별적 교회로 더 이상 존재치 않으며, 따라서 그 합의는 향후 변경될 수 없다. 재연합 행위에 의해 그 합의에 반영된 두 당사자의 개별적 이해관계는 단일의 재연합 교회로 연합되었으며, 그 합의에 있어서 어떤 변경이 제안되지 않는 한, 그 교회는 이전 조직의 관심을 대표할 수 없을 것이다.

재연합 교회 수립에 곧이어, 그 새헌법(G-1.0500)[1]이 유효하게 될 것이다. 본 합의조항보다는 새 헌법이 단일 교회의 기본문서이며 그 규정에 따라서 개정될 것이다.

---

[1]다음 약자가 쓰여진다:

G - 정치형태

D – 권징조례

S - 하나님 예배 지침서(1988년 이후 이 책은 예배모범으로 불리운다).

제1조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가 더불어 갖는 미국장로교의 지속성

1.1 본 합의조항은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가 미국장로교라고 불리우는 단일 교회를 형성하도록 의도하고 규정하는 것이다. 연합 이후 미국 남장로교나 미국 연합장로교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미국장로교가 각자의 후계자이고 그렇게 되어야 하며 그 후계자가 그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미국장로교의 역사는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역사이며, 그것을 구현한다. 본 조항들은 전술한 내용과 일치되게 해석되어야 한다.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회 그리고 미국장로교(PCUSA)는 각각, 미국장로교(PCUSA)가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재연합의 결과에 의해 일어난 지속적 교회이고, 단일 교회의 실체로 이루어져야 함을 재연합 시부터 확인한다.

1.2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전교인은 각각 미국장로교의 교인이어야 한다.

1.3 미국 남장로교외 미국 연합장로교의 전 안수 제직원은 각각 목사나 치리장로나 집사이든 간에, 미국장로교의 대등한 안수 제직원, 목사나 장로나 집사가 되어야 한다.

1.4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모든 지교회는 각각 미국장로교의 지교회여야 한다.

1.5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에 있는 담임목사, 동사목사, 부목사나 보조목사와 지교회와의 모든 목회관계는 미국장로교에서 계속되어야 한다. 평신도 설교자나 파송 교회 사역자로서의 현존하는 관계는 미국장로교의 수립에 의해 방해받아서는 안 되며,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개인이 동일한 지교회와 그 관계를 계속하는 한 방해 받지 않아야 한다.

1.6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모든 당회, 노회, 대회 각각은 미국장로교의 대등한 치리회여야 한다.

1.7 미국장로교의 총회는 교회의 최고 치리회이며, 미국남 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 총회의 후계자여야 한다.

1.8 미국 남장로교나 미국 연합장로교, 또는 두 교회의 공동 감독하에 있는 모든 이사회, 대행기관, 단체와 위원회들은 각각 지금 미국 남장로교나 미국 연합장로교의 치리기관에 대해 가진 것과 동일한 관계를 미국장로교의 해당치리회와 가져야 한다.

1.9 미국 남장로교나 미국 연합장로교의 총회의 지시에 의해 채택되었거나 공포된 모든 정책 선언들은 각각 미국장로교 총회의 행동으로 폐기, 변경, 또는 대체되기까지는 그것을 채택했거나 공포한 교회에서와 같이 미국장로교에서도 동일한 권한과 효력을 가져야 한다.

제2조 재단이사회와 법인체 조직

2.1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지교회, 치리회, 이사회, 대행기관과 단체의 모든 수탁자와 법인체 조직 각각은 그들에 의해 보유된 모든 재산, 곧 부동산 및 동산과 더불어, 미국장로교의 지교회, 치리회, 이사회, 대행기관 및 단체의 수탁자가 되고 법인체 조직이 된다. 그와 같은 법적 절차는 필요에 따라 지체없이 신속하게 취해져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러한 수탁자들과 법인체 조직들은 그들이 보유하는 모든 재산(부동산과 동산)과 더불어 미국장로교의 수탁자들이고 법인체들이고 조직들이며 재산으로 명백히 식별되어야 한다.

2.2 그런 수탁자나 법인체에 의해 신탁 보관된 모든 기금의 지속성과 보존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신탁증서에 명백히 설정된 대로 재산 양도자나 유언자의 의도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필요하면, 미국장로교의 적절한 기관이 그런 신탁증서에 지명된 수익자를 승계했음을 제시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제3조 고백문서들

3.1 두 선행 교회의 고백문서들은 재연합 교회의 고백문서들이어야 한다. 미국장로교의 임시서기는 G-1.0501에 정의된 대로 고백문서들의 공식 원문을 작성해야 한다.

3.2 재연합 장로교의 총회는 재연합 교회 내의 다양한 관점과 그룹을 대표하는 위원회를 개회 초기에 임명하여, G-18.0201에 마련된 대로 *신앙고백서*에 삽입할 만한 개혁신앙의 간추린 선언을 준비토록 해야 한다.

3.3 개혁신앙의 간추린 선언이 신앙고백서에 통합되기까지, 미국장로교(PCUSA)는 1962년 미국 남장로교의 제102차 총회에 의해 채택된 "*간추린 신앙 선언*" (A Brief Statement of Belief)을 성경에 명시되었고, 미국장로교의 고백서들에 포함된 역사적 기독교 교리의 개혁교회 이해의 개요로서 수락한다. 그 과도기 기간동안, "*간추린 신앙 선언*"은 교인들과 제직들의 교육에서, 안수 이전의 목사후보생들과 타노회/타교단 이명에 의해 노회 회원권을 구하는 목사들의 오리엔테이션과 목사 고시에서, 교회 신앙고백서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4조 총회 사무처

4.1 재연합에 곧 이어 총회사무처의 임무가 다음과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

연합하는 교회의 두 최고 치리회 기관은 기록과 기능이 새 최고치리회로 질서있게 인계되게 하기 위해 재연합의 발효일 이후 1년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그 과도기 기간에 미국 남장로교의 서기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서기는 총회의 임시 서기로서 자격을 가지며, 총회 중앙협의회와 협의하여 기능을 수행한다. 임시 서기들은 총회 중앙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연합이 발효된 일년 후에 총회 사무처에 대한 임무와 조직기구를 제안해야 한다.

4.2 총회 중앙협의회는 연합의 발효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서기 공천 특별위원회를 선출해야 한다. 동 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재연합 교회의 전 지리적 구역을 대표해야 한다. 동 위원회에 뽑힌 위원은 총회 서기직에 공천될 수 없다. 동 위원회는 재연합 교회 내의 개인과 치리기관의 공천을 받은 전 후보자들에 대해, 그들이 직책을 맡을 용의가 있는지, 자격이 있는지를 즉시 검토하고, 동 위원회 자체적으로 적임자들을 적극 찾아야 한다. 동 위원회는 적임자로 고려되는 추천자 명단을 3명이 넘지 않은 범위로 작성하여 차기 총회에 직접 제출할 준비를 해야 한다.

총회는 총회 서기 공천위원회를 수립하고, 상기 문단에서 언급된 특별위원회로부터 추천에 대한 보고를 받게 해야 한다. 동 총회위원회는 특별위원회가 추천한 명단에 제한하여 선택할 필요가 없다고 이해된다. 특별위원회와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다음, 총회위원회는 2명 이하의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며, 그 명단이 총회 폐회 48시간 전까지 총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만일 피지명자가 단 한명이고 회의장에서 더 이상 지명이 없을 경우, 박수로 선출할 수 있다.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총회장 선출 방식과 동일한 방식이 되어야 한다. 과반수 이상의 표를 받은 후보자가 당선자로 선언되어야 한다.

제5조 총회 중앙협의회와 대행기관의 과도기적 구성과 임무

5.1 재연합 직후 기간 중 총회 중앙협의회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즉 총회장과 두 교단의 가장 최근 총회장 두 명, 그리고 아래의 5.2에 명시된 대로 총회에 의해 선출된 48명이다. 투표권을 가진 위원들 외에도, 총회서기와 총회중앙협의회 추천에 의해 총회가 수시로 임명하는 직원들은 발언권만 있고 투표권이 없는 객원위원이 된다.

5.2 미국 장로교의 첫 총회는 총회 중앙협의회 위원 48명을 선출해야 한다. 24명은 남장로의 마지막 총회에 의해 지명되어야 하며, 그 중 21명은 그 총회 선교이사회 위원중에서,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이 기관들의 추천을 받은 총회 운영위원들이어야 한다. 24명은 미국 연합장로교의 마직막 총회에 의해 지명되어야 하며, 피지명자는 총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동 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선출된 위원중 최소한 1명씩은 교단의 각 대회 거주자여야 한다. 선출된 위원들은 연합하는 교단의 총회중앙협의회와 기관 및 부서에서 나와야 하고, 교회 인종협의회, 교회여성협의회, 여성관련위원회를 포함해야 한다. 선출된 사람들의 절반은 목사들이고 나머지 절반은 평신도들이어야 한다. G-9.0104와 G-9.0105 규정에 합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렇게 선출된 위원들은 변동없이 5년간 시무한다. 단 위원의 사임이나 사망 시에는 총회 공천위원회 추천에 따라 총회가 결원을 채운다. 5년이 되었을 때, 총회 중앙협의회가 그 위원들을 동수로 3개조로 나누어, 1년 추가, 2년 추가, 3년 추가 기간 말에 만료되도록 할당한다. 그 이후에는 G-13.0202와 의거하여 위원들을 선출한다.

5.3 재연합 후 첫 5년간, 총회 중앙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자체적으로 선출하고, 직원 임명을 하나, 이 임명과 선출은 총회의 재가에 종속된다. 총회 서기는 기록 서기여야 한다.

5.4 총회 중앙협의회는 G-13.0201에 열거된 책임을 가지며, 더하여 재통합하는 교단 총회들의 기능, 부서, 대행기관, 협의회, 전권위원회, 시설기관에 대한 필수적인 조정과 관리와 통합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장로교의 첫 총회가 폐회하면서, 미국 연합장로교의 총회 선교협의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미국 남장로교의 총회 선교이사회(총회중앙협의회의 선출 이후에 잔류 위원들로 구성)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프로그램부, 협력부와 소명부는 총회의 결의에 의해 조기 종결되지 않은 한, 그들 각자에 의해 이전에 수행된 프로그램의 관리를 계속할 것이다. 이 기간 중 상기 부서에 선출된 위원들은 변동없이 계속 시무해야 한다. 단 위원의 사임이나 사망 시에는 총회 공천위원회 지명을 받고 총회 선거를 통해 결원을 채운다.

총회 중앙협의회는 본 합의조항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재연합 교회의 총회 기능, 부서, 대행기관, 협의회, 전권위원회, 시설기관을 효과적으로 관련시키는 총회 업무 기획을 개발하여 차기 총회에 제안해야 한다. 단, 아래의 제11장에 마련된 은급기관은 제외한다. 그 기능이 재연합 교회의 다른 기관이나 다른 방식으로 제공될 때 그 대행기관은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5.5 총회 중앙협의회는 재연합 이전에 양 총회가 승인한 지속적 선교 방향과 우선순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총회 대행기관들의 프로그램 사역을 조화시킬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총회 중앙협의회는 세계선교· 복음전파· 교육· 교회갱신과 확장· 경제-사회 정의의 분야들에서 교회 일치의 맥락으로 전세계에서 조직적인 접근을 지속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총회 중앙협의회는 기관의 창설과 인적/재정적 자원의 투입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각 나라와 남녀 각각에게 알려지는 방식이 되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이것이 미국 국내외적으로, 타 교단들 및 타 단체들과 협력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5.6 총회 중앙협의회는 총회사역기획을 개발함에 있어서 교회 인종협의회(양 교단)와 여성 관련위원회(미국 남장로교) 및 교회여성협의회(미국 연합장로교)와 같은 기존 협의회에 대한 지지와 기능 감독의 지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총회사역의 기획이 완성되고 이런 기능들이 보장될 때까지는 기존 기관의 체계와 기능들이 유지되어야 한다.

5.7 재연합 교회 총회들의 다양한 이사회, 대행기관, 협의회, 사무국이 재연합 교회의 삶 안에서 계속적으로 기능을 하는 가운데, 또는 새로운 대행기관들이 재연합 시에 창설되는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총회 사무처와 대행기관들이 들어설 위치나 위치들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채용된 직원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민감성이 보여져야 한다. 총회 중앙협의회는 가능한 한 대등한 차원에서 고용의 지속을 보장해야 한다. 직원의 결원이 생길 때 그 자리는 평등고용기회(G-13.0201b)와 전체 참여 원칙(G-4.0403)에 관한 전체 교단의 계획과 일치되게 충원되어야 한다. 총회 중앙협의회는 형평성있는 해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6조 총회 대행기관들의 장소

6.1 총회 중앙협의회는 즉시 대표위원회를 임명하고, 총회 대행기관들의 소재지로 단일 지역이 좋을지, 복수 지역이 좋을 지에, 전문가 자문가들과 검토해야 한다. 동 위원회는 가능성있는 지역이나 지역들을 제안해야 한다. 동위원회는 만일 재배치가 포함될 경우, 이전 계획표를 짜서 제안해야 한다.

제7조 노회와 대회 구역 특별위원회

7.1 노회와 대회 구역 특별위원회가 조직되게 하고, 기존 교단들의 노회와 서로 중복되는 곳에서 치리회들과 협력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노회들과 대회들도 도와야 한다. 동 위원회 임무는 총회를 대신하며, 총회 결의를 받기 위해 상정된 권고안을 연구검토하는 것이다. (G-13.0103, l, m)

7.2 재연합 교단의 각 대회에서 1명씩 뽑아 구성된 이 특별위원회는 기존 교회의 정규 공천절차를 통해 재연합 총회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동 위원회는 재연합 총회가 폐회되고 나서 즉시 임시 총회서기에 의해 개회될 때 자체적으로 그 위원장을 선출한다.

7.3 특별위원회는 중복 노회들과 대회들의 절충 절차를 추진하고, 상호 절충을 통해 양방이 만족스러운 계획 개발을 위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동 계획은 재연합한 후 5년 내에 효력을 발생한다. 영향을 받는 노회들과 대회들의 치리기관들이 총회에 예비교섭의 방식으로 구역 조정을 개시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 노회들과 대회들이 서로 중복되어 오랜 세월 나란히 존재해온 사실을 인정하며, G-9.0104에 반영된 공정대표제 원칙이 준수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쏟고, 노회 회원이 현재 누리는 치리의 책임과 특권이 존중되고 증대되도록 해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치리기관 지침서를 개발하여 절충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된 치리기관들과 특별위원회에 의해 승인을 받은 각 안을 총회로 보내 승인을 추천한다.

7.4 지역을 지리적으로 연관시킬 때 친교의 가능성이 훨씬 증대되고 치리회 업무 관장도 용이해진다는 원칙 하에서 특별위원회는 전체 교단의 선교를 증대시키는 충분한 교세와 지리적 근접성을 가진 치리기관들의 위치가 유래될 수 있도록 하는데 보다 높은 목표를 두어야 한다. 새로 형성된 치리기관에서 지도자들이 책임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연합하는 치리기관 회원들의 권리와 특권이 보호되어야 하고 여기에 대해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한다.

7.5 특별위원회는 치리회들이 이룩하는 경과 보고를 총회에 매년 상정해야 한다. 만일 재연

합한 후 5년 내에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만족할만한 재조정이 상호 개발되지 않으면, 그 과정의 연장을 총회에 신청할 수 있다. 허가될 경우, 그 성과에 대해서는 연합하는 차기 총회가 향후 10년 한도 내에서 지역적 통합을 완전히 이룩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매 총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7.6 민종이나 언어적 고려가 바탕이 된 노회일 경우나 민종 그룹의 회원들이 지배적인 노회의 경우, 재조정안은 10년의 기간 내에 완성되어야 한다. 만일 이것이 성취되지 않을 경우, 절차의 연장을 신청하고, 이것이 총회에 의해 허가되면 총회가 연합된 후 15년까지 성취되어야 한다.

7.7 그때에는 경계 중복에 관한 모든 문제들과 기타 노회들과 대회들의 관련문제들은 총회 결정으로 수락되어야 하고, 특별위원회는 해소되어야 하며, 미래의 경계이슈들은 G-13.0103 l, m의 조항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제8조 민종 대표, 참여와 조직

8.1 미국장로교는 당회 위의 각 상회 치리회에 대표위원회를 마련해야 한다. 그 회원권은 남녀 동수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수 위원들이 치리회 내에 있는 민종그룹에서 선출되어야 하고, 전체 회원에 다음의 각 범주에서 나온 사람들을 포함되어야 한다:

a. 다수 남성회원

b. 다수 여성회원

c. 민종 남성회원

d. 민종 여성회원

e. 남녀 청년회원

동 위원회의 주 기능은, 치리회의 회원권 및 치리회에 속한 위원회, 이사회, 대행기관 및 다른 부서 회원권에서 참여와 포괄성의 원칙이 반영되도록 치리회를 지도하고, 교회의 의사 결정에서 효과적인 대표를 보장하는 것이다.

8.2 교회의 치리회들은 회원들의 풍부한 다양성이 전적으로 반영되도록 참여와 포괄성에 관한 교회의 결단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모든 치리회는 보다 개방적이고 포괄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민종적 배경을 근거로 차별해왔던 과거의 행동 양식을 시정해야 한다.
미국내 민종계 회원들(아프리카계, 히스패닉계, 아시아 혈통과 본토 아메리카 장로교인들)이 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전적으로 참여하고 접근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하며, 민종계 코커스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민종회원 참여와 대표는 대표위원회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8.1).

8.3 총회 중앙협의회는 8.2 명시된 다양성과 포괄성의 원칙과 일치되게, 교단 민종 코커스와 협의하고 입력정보를 받아들여야 하고, 그러한 협의에 필요한 경비의 준비금을 마련해야 한다. 그와 같은 협의 목적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민종교회와 목회 지원의 우선순위 결정,

민종교회 개발을 위한 교단적 전략 개발,

역사적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타민종 그룹의 필요를 위해 운영되어 왔던 학교와 기타기관의 기금과 운영상 필요를 보장하는 방법을 추구하는 일.

8.4 민종 교육기관은 민종교회 지도력을 개발했던 주요 원천이 되어왔다. 총회 중앙협의회는 민종교회 지도력의 시급한 필요와 일치되게, 총회가 대학과 고등교육을 통한 교육에 대한 책임과, 역사적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타인종 그룹의 필요를 제공해온 장로교 신학교들의 운영상, 개발상 필요를 충족하는데 책임을 수행하는 방법을 총회에 제안해야 한다.

제9조 여성의 대표, 참여와 조직

9.1 G-9.0105에 의해 당회의 각 상회 치리회에 대해 요구되는 대표위원회는 치리회의 회원권 및 치리회에 속한 위원회, 이사회, 대행기관 및 기타 부서의 회원권에서 참여와 포괄성의 원칙이 반영되도록 치리회를 지도하며, 교회의 의사 결정에서 여성과 다수인종과 민종그룹이 공정하게 대표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9.2 9.3에 기술된 대로 프로그램들이 체계화될 때까지는 양 교단의 각 인정된 여성그룹에서 선출된 대표위원들과 협의 하에, 총회 중앙협의회가 두 교단에 있는 각급 여성 프로그램들과 기구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준비금을 마련해야 한다.

9.3 양 교단의 각 인정된 여성 그룹들에 의해 선출된 일단의 대표자 그룹은 회집하여 프로그램과 기구를 개발하고, 이러한 제안들은 대표자들이 대표한 그룹들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그런 승인은 각 여성그룹의 집행위원회에 의해 총회 중앙협의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그 그룹은 총회에 매년 보고해야 하고, 그들의 임무는 6년 내에 완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10조 신학교육기관

10.1 재연합 교단은 신학교육기관들에 대해 계속적인 책임을 진다. 이 기관들은 안수직 목회를 위한 남녀와 다른 전문직 교회 지도자의 소명을 준비시키며, 전체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강력한 신학적 자원센터를 제공할 책임을 떠맡고 있다.

10.2 미국 남장로교의 신학기관들:

Austin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Austin, Texas,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Decatur, Georgia,
Louisvill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Louisville, Kentucky,[2]
Presbyterian School of Christian Education,
Richmond, Virginia,

[2]이 신학교들은 미국 연합장로교와 공동으로 운영된다.

Union Theological Seminary in Virginia,
Richmond, Virginia,
미국 연합장로교의 신학기관들:
Dubuque Theological Seminary,
Dubuque, Iowa,
Johnson C. Smith Seminary, of the Interdenominational
Theological Center, Atlanta, Georgia,
Louisvill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Louisville, Kentucky,[3]
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
Chicago, Illinois,
Pittsburgh Theological Seminary,
Pittsburgh, Pennsylvania,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Princeton, New Jersey,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
San Anselmo, California,

이 기관들은 그들의 현 이사회와 정관과 설립허가 및 경영안을 가지고 재연합 교단으로 들어와 지속되어야 한다.

10.3 재연합 당시에 이 기관들과 관련된 치리법정이나 사법법원에 의해 주어진 현 재정지원 방침을 연합교단이 지속해야 한다. 치리회들이 재연합 이전 연도에 할당한 유사한 총계 비율로 각 신학기관들이 지급받도록 하기 위해, 신학기관에 대한 대회와 총회의 재정지원 수준이 지속되어야 한다.

10.4 재연합 교회의 첫 총회에서 신학기관 특별위원회가 총회의 한 위원회로서 수립되어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22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1명은 교단 전체에서 (총회의 특별위원회를 공천하고 선출하는 절차에 따라)총회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전술한 11개 기관의 이사회들에서 각각 한명씩의 대표자를 동 위원회에 대표위원으로 선출해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첫 총회의 총회장이나 총회장의 지명자가 개회해야 하고, 그런 다음 자체적으로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총회 중앙협의회의 예산에서 자금 조달을 해야 하고 중앙협의회 직원이 지원해야 한다.

10.5 특별위원회는 신학교육기관과 재연합교회 치리회기관의 관계를 검토하고 치리회기관의 신학교육 자금 조달체계를 연구해야 한다. 현 교육기관들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 보조안을 세워야 하며, 특히 흑인장로교 구역을 유일하게 담당하는 Johnson C. Smith Seminary 신학교 개발의 필요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총회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동 위원회는 재연합 교회 총회의 6년차 개회나 그 이전에, 신학 교육기관들이 치리회기관들을 통해 자금을 조달 받는 방식에 대한 건의 사항과 함께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0.6 미국 연합장로교의 신학교 협의회와 미국 남장로교의 신학교 교육위원회는 그들의 현

[3]이 신학교는 미국 남장로교와 공동으로 운영된다.

기능과 회원권을 보유하고 지속되어야 한다. 공석이 생길 경우에는 회원권 범주에 적절한 절차를 사용하여 결원을 채워야 한다. 협의회와 위원회는 신학교 교육기관의 특별위원회 건의안에 대해 총회의 결의가 나올 때까지, 신학교 교육기관의 공동 관심사를 위해 협력적으로 일한다.

제11조 은급, 연금, 보험, 복지후생, 지원, 구제 프로그램들

11.1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연합이 완성되고 나서, 미국 남장로교의 연금과 구제 이사회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은급이사회는 그들의 책임이 11.3에 명시된 법인체로 인계되기까지는 각자 설립조항에 따라 분리된 법인체로서 기능을 지속해야 한다. 이 법인체들이 분리된 조직체로서 존속하는 동안, 이사회 회원권은 두 교단의 재연합 당시에 조직된 그대로 동결되어야 한다. 단 이사회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연합 교회 총회에서 새이사를 선출할 수 있다. 재연합 당시 효력을 가진 계약책임의 이행이나 다른 절차에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

11.2 두 교단을 재연합하기로 두 총회가 최종 표결을 하고 나서, 미국 남장로교의 연금과 구제 이사회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은급이사회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다음 사항들을 개발하여 재연합 교회 총회에 제안해야 한다:

a.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현 은급제도와 복지제도, 그리고 지원구제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새 통합 플랜과 프로그램들;

b. 연금과 구제이사회의 현 연금과 구제기금 및 보험기금에 대해, 그리고 기금을 따로 예비해 둔 목적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확인하는 은급이사회의 현 은급, 재단, 보조, 시설과 장비와 특정 신탁기금을 형평하게 적용하는 프로그램.

11.3 새 플랜들과 프로그램들이 재연합 교단 총회에 의해 승인될 때, 이 것들은 민간설립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적책임을 가진 법인체에 의해 관장되어야 하며, 이 법인체는 이러한 플랜과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업무 외에는 다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미국 남장로교회와 미국 연합장로교회의 은급제도 이사회와 구제프로그램 책임을 떠맡는다. 이 법인체 이사회의 이사들은 재연합교회의 총회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기존 기금의 형평 적용 프로그램에 대해 재연합 교회 총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 그러한 기금은 법적 필수 요구사항이 충족됨과 동시에 곧 바로 이전 문항에서 명시한 법인체의 관리 하에 두어야 한다.

11.4 새 플랜과 프로그램이 발효할 때까지는 두 교단의 기존 플랜과 프로그램들이 수정없이 지속될 것이다. 모든 회원들은 재연합 되기 전에 속한 플랜으로 계속할 것이다. 단, 새 안수목사, 새 평신도 직원, 그리고 교회의 시무처를 바꾸거나 고용기관을 바꾸는 사람들의 경우, 참여 플랜을 선택할 수 있으되, 이때 고용기관과 개인이 같은 플랜에 동의해야 하고, 선택 플랜의 봉급과 필수적인 부과금에 대해서도 동의해야 한다.

새 통합 플랜들과 프로그램들은 재연합 교회의 모든 목사들과 평신도 직원의 모든 회원들이 참여한 현 플랜과 프로그램에 대해 적절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새 은급 플랜과 복지후생 플랜들이 일단 운용된 다음에는, 어떤 새 회원도 이전에 존속한 플랜에 가입할 수 없으며, 새 플랜이 발효된 날짜 다음에는 월급과 관련하여 징수된 부과금은 이전에 존속하던 플랜으로 징수될 수 없다.

각 연금과 은급 기금은 모든 법적 의무사항과 일치되게 계약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전 자산 최종분배에 목적을 두고, 그 사용을 회원들, 활동회원과 은퇴회원의 회원 그리고 그들의 유족들이 독점적 사용을 위한 보험 회계학적으로 튼튼한 기반 위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제12조 에큐메니컬 관계

12.1 교단 재연합 전에 한 쪽 교단과 관계된 교단들과 재연합 교회가 일차적으로 관계를 지속한다면, 재연합교회의 총회가 에큐메니컬 관계를 확정해야 한다.

제13조 자산을 가진 지교회의 교단 이적 절차

13.1 본 합의서 조항의 취지는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회를 미국장로교(PCUSA)로 조직하는 재연합에만 적용하는 것이며, 교회 재산에 관한 소유권 원칙은 교회법과 민사법에 의해 설립된 대로, 이전 교회에서나 재연합 교회에서나 어떤 형태로도 변경이나 축소나 무효화되지 않는다.

13.2 연합이 완성된 후 18개월 동안은 어떤 지교회도 이적할 수 없다. 단 총회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다. 재연합 교단에 남기를 원치 않는 회원이나 제직이나 목사들은 G-10.0102r, G-10.0302b(1), G-11.0103n에 명시된 대로, 어느 때라도 다른 교단이나 특정 교회와 연합할 수 있다.

13.3 연합이 완성된 1년 후, 이전에 미국 남장로교 교단에 속했던 지교회는 다음 조건을 충족할 때 이적할 수 있다:

a. 교회의 당회는, “미국장로교회(PCUSA)의 _____(이름)는 스스로 선택한 다른 개혁교단으로 이적을 요청할 것인가?” 의 문제를 논의하는 목적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해야 한다. 그러한 회의소집에 대한 정당한 공고가 연속적으로 두 주일날, 교회의 정기 주일예배 시에 강단에서 구두로 전달되어야 하고, 첫번 공고는 회의가 소집되기 적어도 10일 전에 되어야 한다. 요구되는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회원수가 100명 이하일 경우 정족수는 회원의 1/4; 또는

회원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 25명이나 회원의 1/10 중에서 더 많은 숫자이다.

b. 관할 노회가 공동의회에서 교인들과 회합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임명한다.

c. 그 회의에서 어떤 목적으로나 어떠한 종류의 표결도 하지 않는다.

d. 이적문제 고려의 목적으로 공동의회가 소집된 날짜로부터 적어도 6개월이 지난 후, 그러나 12개월이 넘지 않은 기간 내에 당회가 특별 공동의회를 소집한다.

e. 그러한 회의 소집에 대한 정당한 통보가 적어도 회의 개최되기 30일 전에 전 교인들 에게 우송되어야 하고, 연속 두 주일날, 교회의 정규 주일예배 시에 강단에서 구두로 공고되어야 하며, 첫번 째 구두 공고는 적어도 회의 개최 10일전에 발표한다. 노회위원회가 그 회의에 발언권을 가지고 참석하게 한다.

회의 소집 양식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미국장로교의 _____(이름)는 ‘타 개혁교단으로 이적을 요청할 것인지 요청하지 말 것인지?’를 숙고하고 결정하기 위해 20_____년 _____월

_____일자 (오전 또는 오후) _____ 시에 _____(장소)에서 특별공동회의를 소집한다. 이 특별회의 소집의 근거와 권위는 합의조항 제13조에 있다. 이 합의조항은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가 한 교회로 다시 합쳐서 미국장로교(PCUSA)를 세우기로 합의를 체결한 연합계획의 일부이다.

이 취지의 정족수는 정식으로 등록되고 확인된 활동회원의 1/3 보다 적어서는 안 한다. 그처럼 중대한 사안의 결정은 전체 교인의 의사를 진정하게 반영시킬 만큼 충분히 큰 그룹에 의해 의결되게 하도록 촉구한다. 토의 후, 다음의 단언적 질문을 비밀투표에 부친다:

미국장로교(PCUSA)의 _____ 교회가 타개혁교단인
_____ (으)로 옮길 것을 요구할 것인가?

이적을 요구한다_____ 이적을 요구하지 않는다_____

만일 출석한 투표 교인의 2/3가 교단이적을 요구하면, 이 개체교회는 본 합의서 제13조의 특별조항에 의해 이적될 것이며, 기존의 압류 처분이나 채무 책임과 함께 동 교회의 전재산을 보유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장로교의 지교회로서 회원권을 반환해야 될 것이다.

f. 10일 내에 패자 쪽의 어느 누구라도 관할 노회에 보낸 공동의회 서면통보 규정이나 투표과정이나 투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노회는 이슈가 된 문제들을 검토해야 하고, 이의 제기가 인정되면 새로운 공동의회를 소집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g. 만일 미국장로교 교단으로부터 이적 찬표를 던진 사람들로부터 이의 제기가 접수될 경우, 그 이의 제기는 노회에 의해 인정되지 않으며, 그러한 교회는 미국장로교의 회원교회로서 존속해야 한다. 이의 제기가 이적 반대표를 던진 사람에 의해 접수되고 노회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그러한 교회는 타 개혁교단으로 이적되어야 하며, 부동산의 보유가 (압류처분이 채무가 있을 경우 이와 함께) 허락되어야 한다.

h. 본 정관에 의해 제기된 모든 이의는 노회 권한이 최종적이다.

13. 4 연합의 완성으로부터 8년이 지난 후에 재산을 가지고 교단 이적을 청원할 경우, 그러한 청원은 정치형태의 적절한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제14조 재연합 실행 절차

14.1 재연합한 두 교회의 총회들이 찬성 투표로서 공식질문 1을 승인할 때, 두 교단의 노회들은 다음 해 2월에 회의를 개최하고 그 사안을 숙고해야 한다.
공식질문 1:

결 의: 총회는, 합의서와 합의조항(G-1.0500)에 정의된 대로 미국장로교 헌법을 구성하는 재연합 제안의 계획 하에서, 그리고 이 결의와 결부되어 있거나 필수적으로 함축되어 있으며, 또한 언급에 의해 그 일부로서 병합된 모든 기타 문서와 수반 절차들과 더불어, 미국 연합장로교의 총회와(미국 남장로교총회) 완전한 조직적 연합을 하는 것을 승인하며 노회들에게 추천한다.

14.2 각 노회는 다음의 공식 질문 2에 대한 결의를 2월 말 이전에 그 노회가 속한 총회의 서기에게 보고해야 한다. 표결 보고는 총회서기가 제공한 투표용지를 사용한다. 연합노회들은 그들의 표결을 양 총회 서기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식질문 2:

결 의: _____의 노회는, 합의서와 합의조항(G-1.0500)에 정의된 대로 미국장로교 헌법을 구성하는 재연합 제안의 계획 하에서, 그리고 이 결의와 결부되어 있거나 필수적으로 함축되어 있으며, 또한 언급에 의해 그 일부로서 병합된 모든 기타 문서와 수반 절차들과 더불어, 미국 연합장로교의 총회와(미국 남장로교와) 완전한 조직적 연합을 하도록 조언하며 동의(승인 함)한다.

14.3 연합하는 두 교단들의 필수적 숫자의 노회들이 공식질문 2에 승인하면, 연합하는 두 교단들의 총회들은 다음의 공식질문 3을 승인해야 한다:

결 의: 총회는, 합의서와 합의조항(G1.0500)에 정의된 대로 미국장로교 헌법을 구성하는 재연합 제안의 계획 하에서, 그리고 이 결의와 결부되어 있거나 필수적으로 함축되어 있으며, 또한 언급에 의해 그 일부로서 병합된 모든 기타 문서와 수반 절차들과 더불어, 미국 연합장로교의 총회와(미국 남장로교총회) 완전한 조직적 연합을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승인한다.

그런 다음 각 총회의 총대들이 공동회의 장소에 회집하여 미국장로교(PCUSA)의 총회를 개회한다. 재연합하는 교회 총회들의 모든 총대들은 재연합된 교회에서 총회의 총대가 되어야 하며, 동 총회는 재연합하는 양 총회의 적절하게 예정된 안건의 모든 업무에 대해, 그리고 재연합에 관한 정치형태의 요구사항에 따라 동 총회에 제기되는 모든 업무에 대해, 적절히 조처를 취할 권한을 위임받아야 한다.

14.4 재연합하는 총회의 두 서기는 재연합된 교회의 임시 서기가 되어야 하며, 그들은 재연합 계획 합의서 4.1에 명시된 대로, 총회 위원회들의 임명과 회원권 계획을 작성하고 수립하며, 적절한 업무 위임에 대한 건의 사항을 재연합된 교회 총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수립한다.

14.5 총회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의식을 거행하고 주님의 만찬을 집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총회장 선출은 주님의 만찬이 끝나고 나서 처음 개회되는 총회에서 초반 안건으로 처리해야 한다.

부록 C

표준 에큐메니칼 선언 지침서(참조 G-5.0203):

공식 본문

합의 약정서

미국복음주의 루터교회
미국장로교
미국개혁교회
그리스도연합교회

간에

*공동소명*에 입각한
완전교류에 관해 체결

제209차 총회(1997년)에서 승인

제210차 총회(1998년)에서 선포

공식 본문

합의약정서

합의 약정서

미국복음주의 루터교회,

미국장로교,

미국개혁교회,

그리스도연합교회

간에

***공동소명*에 입각한**

완전교류에 관해 체결

서 문

1997년 개혁전통을 가진 네 교단들이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에큐메니컬 제안을 결의하기로 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교회가 현대 사회에서 일치의 복음을 선포할 긴급성의 점증에 비추어 지난 32년 이상 발전해 온 교리적 일치를 반영하는 것이다. 확인된 교리적 일치에 비추어, 교회의 일치를 향한 가시적 증거를 하려는 열망과 하나님의 선교에 다 함께 참여하도록 부름을 들으면서 다음이 제안되었다:

즉, 미국복음주의 루터교회(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America), 미국장로교(Presbyterian Church (U.S.A.), 미국개혁교회 (Reformed Church in America) 및 그리스도연합회(United Church of Christ)는 *공동소명(Common Calling)*과 본 *합의약정서*(A formula of Agreement) 채택을 바탕으로 상호 완전교류를 하고 이를 선언한다. 이로써 각 교단은 다른 세 교단과 완전 교류에 들어가며 이를 확인한다.

"완전교류"(full communion)란 용어는 여기서 네 교단이 아래와 같은 일을 한다는 특별한 의미로 이해된다:

- 서로의 교회에서 복음이 올바르게 전파되고, 성례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게 집전되고 있다고 인정한다;
- 우리 교회들의 삶과 신앙을 잘못된 것으로 서로 비방해온 우리의 역사적 관행을 지금 철회한다;
- 계속하여 상대교회의 세례를 서로 인정하고, 완전교류 회원들 간에 서로의 교회에서 집례하는 주님 만찬에 참여하도록 권고한다;
- 상대 교회의 다양한 목회사역을 인정하며, 말씀과 성례전 목사들의 질서있는 상호 교환 규정을 마련한다;

- 교단들의 현 조직 내에서 적절한 협의와 의사결정의 경로를 수립한다;
- 신앙에 대한 공동 이해를 더욱 분명하게 하고, 전도·증거·봉사의 공동 표현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신학적 대화를 하기로 결단한다;
- 신앙에 대한 공동 이해를 명확하게 하고, 전도와 증거와 봉사에 대한 공동 표현을 조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신학적 대화를 하기로 결단한다;
- 복음 아래서 삶을 함께 할 것이며, 상호확인과 권고는 상대방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신뢰관계의 기초가 되게 할 것을 서약한다.

이 문서는 <공동소명: 현대북미개혁교회들의 증언>에 논리정연하게 표현된 교리적 합의를 수용하며, 그 문서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합의협정서*의 목적은 완전교류를 체결하는 기본원칙으로서 상호확인과 권고의 상호보완성에 대해, 그리고 *공동소명*에 기술된 그러한 결정에 함축된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데 있다.

*공동소명*은 루터—개혁교회 신학대담위원회(1988-1992)의 보고서로서, 1962년에[1] 시작된 그 절차가 지속되어 왔다. 그 보고서 안에는 "미국 복음주의루터교회, 미국장로교, 미국개혁교회 및 그리스도연합교회가 서로 완전 교류를 하고 있다고 선언한 만장일치의 권고사항"이 있다(*공동소명*, 66-67). 이어, 완전교류가 신학적대담의 연구와 함께 개발되어 실행될 수 있는 7개 권고안이 나온다(*공동소명*, p. 67). 그 결과로서 완전교류에 대한 요구가 4개 교단에 제시된 것이다. 각 교단 내의 회의에서 완전교회 선언에 대한 표결은 1977년에 있을 예정이다.

상호확인과 권고
Mutual Affirmation and Admonition

1차 루터교회-개혁교회 대화에서 일찍이 확인된 개념으로서 신학적 대화에 대한 이해의 기틀이 되었다. 그 대화의 참석자들은 "진리의 왜곡 가능성을 방지하려는 노력의 결과로서, 관련 교리들에 다양한 강조가 초래되었으며, 이것은 서로 상호모순적이 아니라 실제로 보완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었다(*Marburg Revisited*, 서문). 동 신학적 대화의 참석자들은 이러한 통찰에 함축된 의미들을 재발견하고 숙고했으며, 이를 네 교단간의 완전교류에 대한 권고의 기초로 보았다. 상호확인과 상호권고의 보안성이라는 이 획기적인 개념은,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받은 하나님의 구속적 은혜를 증거하는 상호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서로 화해할 수 없었던 개혁교회들의 여러 전통들을 서로 관련시키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

[1]북미 루터교회-개혁교회 대담의 연혁에 대한 요약은 *공동소명* pp. 10–11에서 참조한다. 제1차 대화(1962–1966년)의 결과는 *마르부르크의 재방문*(*Marburg Revisited)* (Augsburg, 1966)에 발표되었다. 제2차 대화는 1972–1974년에 개최되었다. 이의 간추린 보고서는*An Invitation to Action* (Fortress, 1983)의 pp. 54–60에 발표되었다. 제3차 대화는 1981년에 시작되어 1983년에 종결되었으며, 이것은 *An Invitation to Action*의 책에 발표되었다. 제3차 대화에 이어, "신학적 대화(Theological Conversations)" 의 모임이 1988~1992년에 개최되었고, 이에 대한 그 보고서로서 <공동소명: 현대 북미 개혁교회들의 증거> (Augsburg, 1993)가 출간되었다. 더 나아가, 루터교회-개혁교회 대화에 참석한 북미 참석자들은, 1973년 유럽 개혁교회들간의 일치선언문으로서, *An Invitation to Action*, pp. 61–73에 발표된 Leuenberg Agreement와 루터교 세계연합 국제공동위원회와 세계 개혁교회연맹의 보고서(1985–1988)인 *Toward Church Fellowship* (LWF and WARC, 1989)에서 발견된 신학적 사고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다.

이 개념은 루터교회-개혁교회 관계에 대해 세가지 본질적인 국면을 인정하는 기틀을 제공한다. (1) 각 교회들은 그 삶의 바탕을 그리스도의 정통적 신약성서의 전통에 둔다; (2) 이들 교회들의 핵심 전통들은 다같이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에 속한다; 그리고 (3) 이들 교회들이 역사적으로 주고받은 논쟁(give-and-take)은 묵과할 수 없는 근본적인 상호비방을 초래했으나, 이는 "우리의 공동 고백인 하나의 복음에 대해 다양한 증거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공동소명*, p. 66). 서로를 이해하는 하나의 인식이 전개되었고, 이것은 새로운 빛으로 16세기 논쟁에 현대적 통찰력을 던져주었다.

> 우리의 공동 고백에 나타나는 신학적 다양성은 복음(상호확인)의 완전 적절한 증언에 필요한 상호보완과, 모든 신학적 접근이 복음의 부분적/불완전한 증언(상호권고)이라고 바로 잡아주는 각성을 제공한다(*공동소명*, p. 66).

"상호확인과 권고"라는 실용적인 원리는 전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에서 상호 고양과 교정의 과정을 허용하는 가운데, 합의서 확인을 허용하였다. 서로 공유하고 추구하는 믿음의 일치를 더욱 명백하게 하기 위해 지속적인 신학적 고찰과 대화를 고취하는 가운데, 각 전통은 다른 전통에 대해 "교정적 증거"를 가져온다. "상호확인과 권고"의 원리는, 잔류하는 상이점들을 공동 고백인 하나의 복음에 대한 다양한 증거로서 보는 것이다. 재래적 사고방식은 불일치의 선언에 들어있는 일치의 기반을 가려지게 한 반면, 새 개념은 잔류하는 상이점들에 대해 부조화의 범위까지라도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확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재하는 일치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잔류하는 상이점들은 교회분열의 요소가 아니다.

상호확인과 권고의 개념은 중대한 성과로 이어지며, 두 개념은 네 교단들이 상호 연결되는 관계를 설명해준다. 상호 보완의 원리와 수반되는 해석양식에서 분명해지는 것은 이들 교단들이 완전교류에 들어감에 있어서,

- 고유한 전통적 고백서 성격과 교회적 성격에 타협의 여지가 조금도 없다고 간주하지 않는다;
- 상대 교단들의 고백서 성격과 교회적 성격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인정한다;
- 중요한 상이점들에 대해서는 완전교류 관계 안에서 솔직하고 분명하게 표명할 의도이다;
- 명백한 상이점들이 서로의 교단 안에서, 그리고 완전교류의 관계 안에서 충만한 교회로 상호 성장할 기회가 되도록 허용한다.

근본적 교리 합의
A Fundamental Doctrinal Consensus

신학적 대담(theological conversations)에 참여한 회원들은 완전교류의 필수조건들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을 맡았다. 그들은 루터교회 고백서 언어를 차용했다: "교회의 참 일치는 복음의 가르침과 성례전의 집례에 관한 것으로 충분하다"(*satis est consentire*) (*Augsburg Confession*, 7장). 신학적 합의는 완전교류를 위한 현 제안의 기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당성, 성례전, 목회, 교회와 세계를 포함한다. 지속적인 다양성 문제는 더 이상 "교회 분열" 요소로 보아서는 안 되며, 신학적 대담에서는 다음의 표제로 다루어졌다: 정죄, 그리스도의 현존, 그리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제1차 대화(dialogue)의 참석자들은 의롭게 됨(Justification)의 문제 대해, "각 전통마다 죄의 용서와 생명의 새롭게 됨이 포함되는 복음의 전체성 보존을 추구했다"는 점에 동의했다(*Marburg Revisited*, p. 152). 제3차 대화의 회원들은 의롭게 됨(Justification)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루터교회와 개혁교회들은 둘 다,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위에 관한 복음 속에 뿌리를 내리고 이를 생활지침으로 삼으며, 그것을 선언하고 고백한다"(*An Invitation to Action*, p. 9). 그들은 더 나아가, "두 전통 다, 믿음만으로, 은혜에 의해, 의롭게 된다는 말로 이 복음을 고백한다"고 선언했으며, "의롭게 됨과 관련하여 우리를 갈라놓는 본질적 문제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An Invitation to Action*, pp. 9–10).

루터교와 개혁교는 세례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된 인간들을 구원의 교제로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새로운 신앙생활, 매일의 회개, 그리고 제자직에 부름으로 체험된다(참조 *Leuenberg Agreement*, III.2.a.). 각 대화와 신학적 대담에서 주의 만찬에 예수님 임재의 중심교리가 주목을 받았다. *Marburg Revisited(마르부르크의 재방문)*의 개요선언문은 다음을 주장하며 합의점을 반영한다:

> 종교개혁 시대에 개혁교와 루터교가 주의 만찬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행위로 보고 이해했을 때 동 교회는 둘 다 복음의 의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공동 의도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용어와 개념들이 사용되었고…… 이것은 상호불신과 오해로 이어졌다. 이러한 용어들과 개념들의 차이들이 적절하게 해석될 때는 상호 모순적이라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일 때가 많다(*Marburg Revisited*, pp. 103–4).

제3차 대화는, 루터교나 개혁교의 어느 쪽도, 주의 만찬에 그리스도가 <u>어떻게</u> 임재하시며, 받아들여지는지 설명하는 선언은 하지 않았으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찬상의 주인<u>이시다</u>…… 그리스도께서 친히 전적으로 <u>임재하시고</u> 성찬에서 그가 받아들여진다"[재강조 삽입] 고 단언했다고 결론을 지었다(*An Invitation to Action*, p. 14).

목회 주제는 제3차 대화에서만 고찰되었다. 루터교회와 개혁교회를 갈라야 할 본질적 사유가 없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가운데, 그 대화는 이렇게 확인했다:

> 우리 전통의 목회는, 구원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하며, 목회는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을 향하는 것이다. 목회는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의 집례가 중점이 되며, 오직 믿음과 은혜와 성경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혜택이 계시된다는 확인에 기초한다 (*An Invitation to Action*, p. 24).

그 대화는 이어 모든 세례인들이 그리스도의 종의 사역에 참여할 책임을 언급하고, "안수 목회자들에 대해, 말씀의 전례와 성례전을 통해 은혜를 중재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지적했고, "말씀이 참되게 전파되고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적절한 감독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An Invitation to Action*, pp, 26, 28, 31).

제1차 대화는 교회와 세상의 주제를 아주 중요한 연구 주제로 간주했다. 그 대화는 차이점들을 고찰했고, 교정의 필요성을 주목했으며, 교회가 현재 처해있는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져 있음을 주목했다. "개혁 신학에 기독교 윤리의 공동 복음적 근거가 있다"고 동의하는 가운데(*Marburg Revisited*, p. 177), 그 대화는 교회와 세상, 율법과 복음, "두 왕국,"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권의 관계에 관한 칼빈과 루터의 상이한 "강조점'을 되풀이해서 언급했다. 그 대화에서 발견한 것은, "율법과 복음사이의 관계에 대한 서로 다른 공식은 한편으로는 율법주의 오류를 타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만을 강조하는 도덕폐기론(antinomianism)의 오류를 타파하려는 공동 우려에 의해 자극받았다"는 것이다. 크리스챤 삶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역할에 관한 차이점들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 대화는 "이것을 분열의 요소로 간주하지 않았다"(*Marburg Revisited*, p. 177). 더

나아가, 20세기 세계가 급격히 변화하는 것에 비추어, 현재 루터교-개혁교 증거를 확정적 요인으로 만드는 가운데, 그들이 16세기에 취한 입장과 선택들을 방어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간주되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의 선언"에 관한 신학적 대화는, 개혁교회와 루터교회의 다른 "강조점들"을 목회적 섬김과 교회의 증거에 도전하는 "상호 보완적이고 고무적인" 차이점들이라고 확인했다. "진행 중인 '의롭게 됨(justification과 정의'에 관한 토론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의식이다. 우리의 전통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약속을 분별하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한다"(*A Common Calling*, p. 61).

강조점들의 차이
Differing Emphases

정죄 The Condemnations:

종교개혁 시대의 정죄는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고 보호하려는 시도였다; 따라서 그 정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대의 교회적 상황 때문에, 그러한 정죄로 교회를 계속 분열시켜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공동소명*의 상호확인과 상호권고의 개념은 정죄 언어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공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우위와 성례전 은사에 대한 공동 이해로서 서로 강조점이 다른 것을 허용한다. 공동소명은 *Leuenberg Agreement(로이엔베르크 합의)*를 지지하여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즉. 교리적 합의 결과로서 고백문서에 표현된 정죄는 서로 찬동하는 교회들의 현대 교리적 입장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Leuenberg Agreement*, IV.32.b). 신학적 대담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 우리는 오늘의 과제가 분리와 배제의 관점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역자 교회들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자신들의 솔직한 우려점을 말하고 듣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우리 자신의 신앙 에큐메니컬 공동체의 정체성에 통합될 수 있도록 공동언어를 찾는데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A Common Calling*, p. 40).

정죄의 주요한 초점은 주님의 만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문제였다. 루터교인과 개혁교인들은 성례전에 대한 그들의 공동 이해에서 하나님 말씀은 타협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성을 느낀다. 따라서 그들은 주님의 만찬의 특정 국면에 대해 협력 교회들 간에 합의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담에 의해 다루어진 문제를을 상기하는 가운데 루터교인과 개혁교인들은 그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주의 만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약속의 말씀으로, 떡과 포도주와 함께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그의 살과 피 안에서 자신을 나누어주신다. 따라서 그는 떡과 포도주를 받은 모두에게 무제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신다; 신앙인은 구원의 주의성찬을 받고, 불신자는 심판의 주의성찬을 받는다(*Leuenberg Agreement,* III.1.18).

> 우리는 그의 살과 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류하는 것을 먹고 마시는 행위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 이러한 행위로부터 분리하여 주의 만찬에 그리스도의 임재하시는 방식에 참여하는 것은, 주의 만찬의 의미를 모호하게 할 위험이 있다(*Leuenberg Agreement*, III.1.19).

그리스도의 임재 The Presence of Christ:

제3차 대화는 이미 달성한 합의에 바탕을 두고, 성례전의 신비에 대한 이해를 보다 깊게 하기를 추구했다.

우리 개혁교인들과 루터교인들은 주의 만찬에 관하여 갖고 있는 공통점들에 대해 감사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단들은 성례전 신비를 전적으로 풍요하게 인식의 깊이를 더해 가기 위해 계속 성장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한다(*An Invitation to Action*, p. 14).

신학적 대담에 가입한 회원들은, 16세기로부터 내려오는 고백적 진술들(confessional formulations)을 공동언어와 조화시켜서……"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모든 통찰력, 확신, 관심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음을 인정했다(*A Common Calling*, p. 49). 그러나, 이 신학적 대담은 지속적인 차이에 대해 주의 만찬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다양성으로 인정했다. 제3차 대화의 전통에 따라, 그들은 이런 차이들이 교회분열의 요소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고 확인하면서, 자신들의 선조가 고백했던 신앙과는 다른 견해와 확신에 대해 존중하였다. 양 교회는, "주의 만찬의 문제에서 개혁전통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고 목적도 동일하다고 함께 말할 수 있다. 즉 용서, 권능부여,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려고 친히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만찬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것"이라고 한다. 루터교회와 개혁교회는 이렇게 동의한다:

주의 만찬에서, 부활하신 예수그리스도는 그의 약속의 말씀으로, 떡과 포도주와 함께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그의 살과 피 안에서 자신을 나누어 주신다. 그는 그것으로 죄의 용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로운 신앙의 삶을 위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의 지체의 일부임을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체험하게 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신다. (공식 원문은 "*Er starkt uns zum Dienst an den Menschen*," 이며, 이는 모든 인류에게"라고 번역할 수 있다) (*Leuenberg, Agreement*, II.2.15).

우리가 주의 만찬을 축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세상과 자신을 화해시키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우리에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는 영광 속에서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Leuenberg Agreement*, II.2.16).

주의 성찬에서 찾을 수 있는 상호보완성과 신학적 합의와 함께, 성찬례 집전의 함축적 의미도 인정되며, 이것은 개혁교회들의 전통을 대표한다.

우리 개혁교단 교단들은 각기 성찬식을 거행하는 방식에서 많은 중요한 요소들을 공유한다. 그러나 우리가 분열되고 수세기를 거치는 동안, 집례에 관한 특징적 차이들이 교단 별로 개발되었고, 이런 것들로 인해 상대 교단에서 축하하는 만찬에 참여하면 거북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차이들은 여러 분야에서 판별된다. 즉, 성례전 양식과 성례전의 세목에서, 집전의 언어적 해석에 있어서, 주의 만찬에 대해 우리가 체험하는 감정적 양상에서, 그리고 주의 만찬에서 우리가 찾는 교회/개별 회원들의 삶과 선교임무에 대한 함축성에서 차이가 드러난다……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차이들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다양성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우리의 확신을 재천명한다. 우리의 양 교단은, 우리의 다양한 성례전 전통을 음미하면서 성장할 필요를 느끼며, 그 안에서 서로 풍요하게 되는 것을 발견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우리는 주의 만찬의 신비에 대한 우리 공동 체험과 표현을 더욱 깊게 하는 방향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 (*An Invitation to Action*, pp. 16–17).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God's Will to Save:

루터교회와 개혁교회는 하나님 은혜의 구원하시는 힘이 자신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구원을 오직 하나님 은혜에만 의존하며 인간 협력에 있지 않다고 믿는다. 이러한 공동 믿음에 불구하고 두 전통을 분리해온 이슈 가운데 예정론이 있다. 루터교회와 개혁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에 대한 믿음의 실천 방식에서 서로 강조하는 방식이 다를지라도, "모든 문화적 낙관주의나 비관주의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무조건적 구원의 뜻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동의한다(*A Common Calling*, p. 54). 주목되는 것은 "과거의 논쟁을 초월하면서 루터교회와 개혁교회가 공통

예정론에 대해 증언하는 공동언어가 신앙적 저서와 우리 교단들 내의 공식/비공식적 선언문 속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A Common Calling*, page 55). 두 전통은 교리적 균일성을 고집하기 보다는, 자신의 전통이 논쟁에서 생겨났다는 것, 현 신학적/교회적 정체성은 그러한 논쟁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을 기꺼이 인정한다. 교회를 분열시켰던 그러한 분야들에 대한 근본적 교리합의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성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의 여정을 함께 나누어 온 그러한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부인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거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사를 우리의 분열에 의해, 세상에 공동 증거하는 일을 박탈하게 된다면 더 한층 큰 비극이 일어날 것이다.

완전 교류에 대한 구속력 있는 효과적인 결단
The Binding and Effective Commitment to Full Communion

*공동소명*에 입각하여 최고수준의 *합의약정서*를 공식 채택함으로써 교회들은 강력한 상호 결단을 한다고 인정한다. 그들은 상호 공약과 약속을 하고 있다. 동 교회들은 양방적인 전면 결단이 진지한 의도와 각성과 헌신을 포함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들은 단순한 공식 결의 이상의 훨씬 더 큰 범위로 결속하고 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은사와 변화와의 관계에 있다.

동 교회들은 이러한 의도의 선언이 자신들의 자아 이해, 생활/활동 방식, 자신들의 교회구조, 그리고 전체 교회적 특성에까지 도전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동 교회들은 새로운 관계의 중심에서 완전 교류에 들어가기 위해, 스스로의 역량에 관한 타당한 우려를 억누르기로 스스로 결단한다.

동 교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공동소명*에 전적으로 결단한다는 것, 신앙과 교리에 관해 앞서 기술한 상호 확인을 공약하며 변함없이 공약할 수 있다는 것,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상호 확인과 권고를 실천하고 받아들이기로 결단한다고 선언한다. *합의약정서*는 "가시적 일치의 목적이나, 교회일치의 관심과 세계 투쟁의 참여에 관심을 연합하는 단일 에큐메니컬 운동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에큐메니컬 확신에 응답하고 있다("완전한 코이노니아로 가는 과정: 신앙과 직제에 관한 제5차 세계대회의 메시지", 1983). 그리고 성 바울이 우리 모두에게 상기한 대로,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고 그는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살전 5:24).[2]

---

[2] **미국복음주의 루터교회:**

미국복음주의 루터교회(ELCA)가 이들 교단들(미국장로교, 미국개혁교회, 그리스도연합교회)과 완전교류를 맺기 위해서는, 최고 입법기관인 1997년 교단 총회(Churchwide Assembly)에서 2/3 찬성표가 요구될 것이다. 이어서 헌법과 정관에서도 완전교류를 맺기로 결정한 총회의 구속력 있는 결의안에 순응되도록 적절하게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복음주의 루터교회 (ELCA) 헌법과 정관은 비루터교회들과 완전교류를 맺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가장 근접한 유사 추론(analogy)은 ELCA의 헌법이나 정관이 수정에 있다고 본다. 동 헌법은 그러한 수정 절차를 제공한다(제22장). 둘 다의 경우에서 출석/투표권 회원의 2/3 표결이 요구되었다.

미국장로교(PCUSA):

미국장로교의 총회에서 통과됨과 동시에 완전교류가 선언되고, 그 영향은 장로교 *규례서*와 본 *합의약정서*에 일치되게 전 교단에 파급될 것이다. 이는 총회의 과반수 투표와 노회들 안에서 과반수 투표, 그리고 노회들의 과반수 투표를 의미한다.

미국장로교는 헌법과 정치, 제직들과 재정 및 행정규칙을 가진 조직으로서의 삶을 규율 한다. 이들은

선교임무의 도구이지, 그 자체로서 목적은 아니다. 다양한 직제들이 복음을 섬기나, 어느 직제도 배타적인 타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장로교 정치체제는 모든 목회 회원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교단 내의 모든 개체교회들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한다. 동 교단은 교회적/세속적 권력 야심에 의한 착취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자 한다. 각 교회 직제는 그것을 화해 선교를 위해 더욱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런 개혁에 대해 반드시 개방적이어야 한다("1967년도 신앙고백," *신앙고백서,* p. 40).

미국장로교는 장로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노회들로 구성된 대표제에 의해 치리된다. 이러한 치리기관들을 당회, 노회, 대회, 그리고 총회라고 부른다(*규례서*, G-9.0100). 교회의 모든 치리 기관들은 교회의 본질에 의해 연합되며, 이 헌법이 부여하는 책임과 권리와 권한을 같이 공유한다.

치리 기관들은 개별적이고 독립적이나, 어느 한 기관의 행동은 전체교회 행동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상호 연관되어 있다. 각 치리회의 관할권은 헌법에 명시된 조항에 의해 제한되며, 각 노회의 행동은 차상급 노회의 검토에 종속된다 (G-9.0103).

미국개혁교회:

미국개혁교회(RCA)는 General Synod에서 통과되면서, 완전교류를 선포하며, 그 효과는 전체 교회적으로 파급될 것이다. 즉 기독교일치 전권위원회가 *교회규례서(Book of Church Order)*에서 부여한 책임과 일치되게, 그리고 *합의약정서*에 기술된 대로 완전교류가 의도될 수 있게 되도록 일을 추진하고 감독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교회일치 전권위원회는 1997년 완전교류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General Synod와 교단을 자문해왔다. 동 전권위원회는 *합의약정서*와 관련 제안들을 모두/어느 것이나 General Synod에 제시하고, 미국개혁교회가 미국복음주의 루터교회와 미국장로교 및 그리스도연합교회와 완전교류를 한다고 선언할 수 있게 효력이 발생하도록 추구할 것이다.

미국개혁교회(RCA) 헌법은 에큐메니컬 관계에 대한 책임을 General Synod에 부여한다(교회규례서, 제1장, 5부, 2조, 5항). 에큐메니컬 소명에 충실하기 위해 General Synod는 동 교단의 기독교 일치 전권위원회에게 타기독교 교단의 최고치리회나 총회와 통신관계 및 협력관계 관련의 결정,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관한 모든 사안들을 주제로" 교단간의 대화에 참여하는 결정을 주도하고 감독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RCA 헌법은 "현재 진행 중인 에큐메니칼 개발국면을 교단에 알리고, 에큐메니칼 참여와 관계에 관해 교회를 자문하는" 책임을 기독교일치 전권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규례서*, 3장 1부 5조 3항).

General Synod에 의해 권한을 받은 기독교일치 전권위원회는 1962년 이래 지금까지 RCA에 대화와 대담 상대자들을 지정하였다. 동 위원회는 모든 보고를 접수했고, 결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General Synod에 교회의 투표와 시행 제안을 제시했다.

그리스도연합교회:

그리스도연합교회(UCC)는 1997년 General Synod의 투표에 의해, 미국복음주의루터교회, 미국장로교, 그리고 미국개혁교회와 완전교류를 하는 제안에 결의를 할 것이다. 이 투표는 General Synod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지방 교회들과 협회들 및 대회들에 의해 수락되고, 그리스도연합교회 헌법 제14, 15, 16항에 개요된 계약정치체제(covenantal polity)와 일치되게 시행한다.

UCC는 "지방교회, 협회, 대회, 그리고 General Synod"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스도연합교회의 헌법과 정관은 에큐메니컬 삶의 책임을 UCC의 총무와 총회장과 더불어 회장 General Synod에 맡기고 있다. 동 헌법 제7조는 General Synod에 특정 권한을 부여한다. 이 권한들에 다음이 포함된다:

- UCC와 에큐메니칼 조직들, 세계 고백단체 조직들, 기타 초교파 조직들과 관계를 결정한다(7조, 45h).

- 타 교단들과 대화를 장려하고, 적절하다면 그들과 공식연합을 지향하면서 그들과 교섭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자문한다(VII, 45i).

UCC 정치체제에서 General Synod의 권한은 헌법의 구절을 사용하자면, 절대로 “대회나 협회나, 또는 지방교회의 자치권을 침범”하지 않는다. 지방교회 자치권은 “고유한 권한이며, 그 자체 결정에 의해서만 수정이 가능하다(IV, 15).” 그러나, 자치권에 대해 “크리스천의 상호 배려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 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IV, 14). 이러한 그리스도론적이고 전통적인 자치권의 이해는 교회 자치권에 관한 논의에 이어 즉각 나오는 헌법 구절에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다.

> UCC의 지방교회는 성도의 교제 안에서, 자체 교회와 사역과 확장에 관해 하나님께 받은 책임이 있듯이, 성도의 교제 안에서 지방교회 복지와 필요와 포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받은 책임이 있다. 크리스천의 상호 배려에서,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에서, 한 교회와 많은 교회는 공동의 크리스천 체험과 책임을 분담한다 (IV, 14).
>
> General Synod나 대회 또는 협회에 의해서, 또는 General Synod나 대회 또는 협회로부터 나오는 결정이나 조언에 대해 각 지방교회는 최고의 경의로서 대한다 (IV, 16).

부록 D

에큐메니컬 일치

성명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가시적 표시

표준 에큐메니컬 성명서
제211차 General Assembly (1999) 승인
제212차 General Assembly (2000) 공표
(G-5.0203)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가시적 표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 의 회원이 되는것은 참여 교회들이 다음과 같은 가시적 표시들을 통해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1.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인 교회에 대한 진정한 표현으로써 상호 인정.*** 구체적으로 말하면, 참여 교회들이 상대방 교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로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말씀과 성령으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성결케 하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구세주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

—신앙의 궁극적인 표준이자 규칙이 될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전통에 대해 증언하고 전통이 그것에 대해 증언하는 성경에 대한 성실성;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두 성례전인 세례와 주님의 만찬에 성실히 참여하려는 결단;

—하나님의 복음전도 및 예언자적 선교와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의 통치에 대한 결단;

—성령이 교회에 명백하게 부여한 목회사역을 감사하게 받아들임.

2. ***하나의 세례 안에서 회원들의 상호 인정.*** 이는 또한 모든 신자들이 공동의 사제직을 함께 나누며 그로부터 하나님이 안수 받을 교인들을 부르신다는 목회직의 인정을 함축하고 있다.

3. ***안수 사역의 상호 인정.*** 구체적으로 말하면, 참여 교회들이 서로의 안수 목회직이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은사의 도구로서 주어진 것이며, 이러한 목회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실하고자 하며, 성령의 내적인 부름과 더불어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았다고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인정은 2007년까지 상호 화해사역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나타난다('교회연합협의회 제18차 총회 보고서'의 제5항 규정에 기술됨).

4. ***각 교회가 사도신경과 니케아신경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성경과 전통에 대한 사도적인 믿음을 확인하고, 자신들의 삶과 선교에서 사도적인 신앙의 증거를 하고 추구한다고 상호 인정.***

5. ***의도적이고 규칙적으로 성만찬을 축하 하는 규정.*** 이것은 성례전이 교회 삶의 중심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주님의 만찬을 함께 축하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표시한다.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모든 다양성 안에서 주님의 만찬의 한 자리에 모일 때, 그들이 그리스도와 교류하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류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하나의 성례전에 함께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하고 싶지 않을 때, 그들은 서로 반대한다는 입장임을 증언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과 인간 공동체의 깨어짐을 가시적으로 나타낸다.

6. ***정규적이고 의도적 차원에서 그리스도 선교, 특히 인종주의 타파에 함께 간여.*** 교회는 예배, 복음선포, 전도, 교육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 평화와 사랑을 구체화시키는 행동으로서 그리스도 선교에 참여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교회들'의 결단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마음과 정신이 변화될 수 있다. 그러나, 참여 교회들은 미국이 사회와 교회 자체 내에서 삶을 왜곡시키는 백인 특권제도에 도전함으로써 '인종주의 철폐'에 관한 강력한 부름('교회연합협의회 제18차 총회 보고서', 제 6항에 그 이유 개요)을 또한 인정한다.

7. *교회 안에서 총체적 일치를 증진하기로 의도하고, 인종, 나이, 성별, 장애형태, 성적지향, 계급을 바탕으로 한 모든 소외와 배타적 행위에 반대하기로 의도하는 결단.*

8. ***현재 진행중인 신학적 대담의 절차.*** 그러한 대담은 구체적으로 다음을 시도한다:
   (1) 인종주의 반대 입장을 보다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2) 사도적 신앙에 대한 공유 증거를 강화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에 의해 확인된 신학적 논점을 명확하게 한다;
   (3)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에 의한 안수 목회직에 대해 상호 화해의 기초를 마련한다.

9. ***협의와 의사 결정을 위한 적절한 책임체제와 적절한 방안.*** 새로운 관계의 표시가 효력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들간에 상호책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항들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취지로 개발된 구조는 유연성이 있어야 하고, 상황 적응성이 있어야 한다 (교회연합협의회 제18차 보고서의 제 9항에 기술). 현재 진행 중인 그러한 조직 구성과는 별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은 중대한 이슈를 제기하기 위해서나 공동 관심사에 대해 함께 증거하기 위해, 수시로 회의를 회집할 수 있다.

이러한 가시적 표시에의해 표현된 관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이는 조직의 통합이 아니며, 교단들 간의 다양성 안에서의 연합이다.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이들 교회들의 삶은 전에 없었던 가시적인 방식으로 서로 얽히게 될 것이다.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 관계는 우호적인 공존이나 협의의 관계가 아닌, 그리스도 사랑을 능동적으로 구현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는 구속력 있는 공동체 관계가 될 것이다.

부록 1

공식 문서

연합교회협의회
제18차 총회 보고서

1. 서 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낡은 것은 모두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나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의 사역을 주셨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죄를 세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고린도 후서 5:17-20)

나는 결코 피곤치 않네.
나는 출발한 곳으로부터 너무 멀리 왔다네.
그 어느 누구도 이 길이 쉬우리라 얘기해주지 않았네.
주님이 나를 버려 두기 위해 이렇게까지 멀리 데려왔으리라 믿지 않네.
("나는 결코 피곤치 않네." 아프리카계 미국인 복음성가, 가수 커티스 브르웰, 1978년, 세가스 음악회사 발행, 허가를 받고 사용함).

1999년 1월 20-24일 세인트 루이스에서 교회연합협의회(COCU) 제18차 총회에 모인 우리 교회연합협의회 회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시적인 연합으로 가는 길에 대해 항상 확신이 있었거나 우리 여정의 속도를 항상 견뎌왔던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채워지지 않은 도전들과 놓쳤던 기회들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드리기는, 그 여정을 외로히 가지 않으며, 우리가 여정을 함께 하는 중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또 성경에서 얻은 자신감을 가지고 이 길을 걷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도다" (에베소서 4:6).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연합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 증거하고 함께 공의를 행하기 바라면서, 우리가 받은 이 선물에 대한 응답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치를 주셨으나,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는 사회의 인종적인 불공평에 참여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자신들을 서로 갈라지게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백인 특권을 영속화시키는 사회제도 안에서 우리의 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의 편안에만 안주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었음을 표시합니다. 우리는 또 신학적 견해 차이가 교회 분열을 초래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우리가 저질은 이러한 죄를 하나님과 우리 형제 자매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선언서에 들어있는 권고안들이 우리 복음 사명에 충실함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치된다 할지라도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보다 깊게 인정하고 화해하기 위해 함께 일하면서, 서로를 향해 보다 큰 인내와 관용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 자신의 이익을 버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서로간에 존중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또한, 고통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의를 베풀어야 할 책임이 있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능력이 있으며 이를 저지하는 것들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 자신처럼 여기는 어려운 작업을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아프리칸 아메리칸 복음 성가의 가사는 우리가 불확실한 미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함께 계신다는 심오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연합협의회의 우리 동역자들은 불확실성과 망설임에 대해, 심지어 절망에 대해서까지도 많이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홀로 투쟁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또한 압니다.

II. 배 경

1988년 교회연합협의회(COCU) 제17차 총회는 계약교류 교회를 구성하는 계획서로서 *계약 교류의 교회들: 연합 그리스도 교회* 문서를 승인했으며, 이를 9개 회원 교회들에게 권고하고 다음의 3개 공식 결의를 취하도록 했다:

1. 다른 참여 교회들과 계약교류에 들어가는 확정적인 합의서로서, 이를 가능케하는 충분한 결의를 포함하여, 이 문서를 승인한다.

2. COCU의 회원 교회들, 그리고 이 합의서를 유사한 방식으로 승인하는 여타 교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기꺼운 용의를 선언한다.

3. 목회사역의 화해와 이 문서에 명시된 계약교류 준비에 필요한 절차들 및 과정들을 스스로 확인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계약 과정"을 설계함에 있어서 제 17차 총회는, "참여 교회들이 두 문서, 곧 *COCU 합의서와 계약 교류의 교회들*에 들어있는 협의 제안에 대해 숙고하고 결의를 하고 나서, 교회연합협의회가 권고안에 대한 교회들의 결의를 신중히 심의하고, 그에 따라 그 다음 단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세인트 루이스에서 모임을 가졌던 COCU 제18차 총회가 한 일이었고, 총회의 초점이었다. 우리는 전체 아홉(9) 회원 교회들로부터 보고서를 접수했으며, 전체 회원 교단들 가운데 일곱(7) 회원 교회들(African Methodist Episcopal Church, African Methodist Episcopal Zion Church,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Christian Methodist Episcopal Church, International Council of Community Churches, United Church of Christ, United Methodist Church)만이 계약관계 제안에 대해 공식 결의를 취했고, 그리고 계약관계 절차에 더욱 고려할 필요가 있는 여러 논점과 관심사들을 확인하는 일을 하였다.

미국장로교는 계약관계로 들어가는 제안을 총회 수준에서 승인하였다. *미국장로교 헌법*에서 필요한 수정을 실행하고자 추구하던 과정에서, 노회들은 감독제와 계약 관계협의회들 및 치리회 장로 역할에 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감독사역에 관련하여 요구되는 수정안을 부결시켰다.

감독교회에서 제18차 총회로 보낸 장문의 보고서는, 감독교회가 계약 교류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된" 상태임을 선언하고, *COCU 합의서*와 두 문서에 대해 수많은 의구심을 표명했다고 선언한 1994년 연차총회의 결의에 대해 자세하게 해명하였다. 이 보고서는 또한 COCU 절차에 앞으로 감독교회의 참여를 알리는 5개 지침 원리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갖고서, 우리는 세인트 루이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분별하고자 노력했다. 교회들의 결의와,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 대화의 신중한 고찰을 통해 몇가지 광범위한 확인들을 신속히 하기에 이르렀다:

1. 현재 가능한 교류의 모든 표시들에 대해 가시적 표명을 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협의회 교회들 사이에서 새로운 관계가 이룩되기 갈망한다;

2. 그 새로운 관계 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함께 하는 보다 확실한 인식을 향해 나아가길 갈망한다;

3. 우리가 함께 사는 삶의 중심 표시로서 인종적 정의에 대한 결단하길 갈망한다.

다음의 권고사항이 우리 교회들의 결의, 본 총회의 노력과, 그리고 이러한 근본적 확인에서 나오

기를 바란다.

III. 권고 사항

교회연합협의회 제18차 총회는 참여 교회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즉, 참여 교회들이 공식 결의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로 불리울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동의하고, 2002년에 있을 '크리스챤 일치를 위한 기도 주간' 중에 공식 선언과 예전을 통해 이 새로운 관계를 함께 개시한다.[1]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교회의 삶에 필수적인 수많은 것들에 대한 일치를 가시적으로 표현할 것이며(제 4항에 개요됨), 공동체 회원들까지도 소속 교회와 타 교회들과 더불어 이 일치 안에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추구할 것이다.

제18차 총회는 COCU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들이 2002년에 새로운 관계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소망한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할 수 없는 교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그러한 일치가 전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지속적인 관계의 동역자 교회로서 참여할 수 있게 초대될 것이며(제5항 참조), 다음과 같은 관계의 표시들을 가능한 한 많이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받을 것이다. 그외 다른 교단들도 이러한 기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교회들과 관련를 갖도록 초대될 것이다.

IV.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가시적 표시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이 된다는 것은 참여 교회들이 다음과 같은 가시적 표시들을 통해 서로 맺는 관계를 표현한다:

4.1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인 교회에 대한 진정한 표현으로써 상호 인정.* 구체적으로 말하면, 참여 교회들이 상대방 교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로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 말씀과 성령으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성결케 하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 구세주이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

— 신앙의 궁극적인 표준이자 규칙이될 뿐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전통에 대해 증언하고 전통이 그것에 대한 증언하는 성경에 대한 성실성;

—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두 성례전인 세례와 주님의 만찬에 성실히 참여하려는 결단;

— 하나님의 복음전도 및 예언자적 선교와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의 통치에 대한 결단;

— 성령이 교회에 명백하게 부여한 목회사역을 감사하게 받아들임.

4.2 *하나의 세례 안에서 회원들의 상호 인정.* 이는 또한 모든 신자들이 공동 사제직을 함께 나누며 그로부터 하나님이 안수 받을 교인들을 부르신다는 목회직의 인정을 함축하고 있다.

4.3 *안수 사역의 상호 인정.* 구체적으로 말하면, 참여 교회들이 서로의 안수 목회직이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은사의 도구로서 주어진 것이며, 이러한 목회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실하고자 하며, 성령의 내적인 부름과 더불어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았다고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인정은 2007년까지 상호 화해사역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나타난다(제5항에 기술).

4.4 *각 교회가 사도신경과 니케아신경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성경과 전통에 대한 사도적인 믿음을 확인하고, 자신들의 삶과 선교에서 사도적인 신앙의 증거를 하고 추구한다고 상호 인정.*

4.5 *의도적이고 규칙적으로 성만찬을 축하 하는 조항.* 이것은 성례전이 교회 삶의 중심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주님의 만찬을 함께 축하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표시한다.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모든 다양성 안에서 주님의 만찬의 한 자리에 모일 때,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교류하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류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하나의 성례전에 함께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하고 싶지 않을 때, 그들이 서로 반대 한다는 입장임을 증언을 하며, 그리스도 몸과 인간 공동체의 깨여짐을 가시적으로 나타낸다.

4.6 *정규적이고 의도적 차원에서 그리스도 선교, 특히 인종주의 타파에 함께 간여.* 교회는 예배, 복음선포, 전도, 교육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 평화와 사랑을 구체화시키는 행동으로서 그리스도 선교에 참여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결단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마음과 정신이 변화될 수 있다. 그러나, 참여 교회들은 미국이 사회와 교회 자체 내에서 삶을 왜곡시키는 백인 특권제도에 도전함으로써 '인종주의 철폐'에 관한 강력한 부름(제 6항에 그 이유 개요)을 또한 인정한다.

4.7 *교회 안에서 총체적 일치를 증진하기로 의도하고, 인종, 나이, 성별, 장애형태, 성적지향, 계급을 바탕으로 한 모든 소외와 배타적 행위에 반대하기로 의도하는 결단.*

4.8 *현재 진행중인 신학적 대담의 절차.* 그러한 대담은 구체적으로 다음을 시도한다:

1. 인종주의 반대 입장을 보다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2. 사도적 신앙에 대한 공유 증거를 강화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에 의해 확인된 신학적 논점을 명확하게 한다;
3.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에 의한 안수 목회직에 대해 상호 화해의 기초를 마련한다.

4.9 *협의와 의사 결정을 위한 적절한 책임체계와 적절한 방안.*

새로운 관계의 표시가 효력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들 간에 상호책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항들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취지로 개발된 구조는 유연성이 있어야 하고, 상황 적응성이 있어야 한다(제 9항에 기술). 현재 진행 중인 그러한 조직 구성과 별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은 중대한 이슈를 제기하기 위해서나 공동 관심사에 대해 함께 증거하기 위해, 수시로 회의를 회집할 수 있다.

이러한 가시적 표시들에 의해 표현된 관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이는 조직적 통합이 아니며 교단들 간의 다양성 안에서의 연합이다.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이들 교회들의 삶은 전에 없었던 가시적인 방식으로 서로 얽히게 될 것이다.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 관계는 우호적인 공존이나 협의의 관계가 아닌, 그리스도 사랑을 능동적으로 구현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는 구속력 있는 공동체 관계가 될 것이다.

V. 우리가 추구하는 보다 충분한 일치 표시

새로운 차원의 가시적인 결단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상호관계가 아직은 충분히 완성되지 않았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로서 공유하는 것 보다 더욱 깊이 있는 은사의 공유로 특징을 이룬 함께 사는 삶의 강렬함을 앞으로 추구해 갈것이다. 우리는 각 참여 교회들의 안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관련되는 하나의 사역이 될 수 있게 하는—이미 시작 되였으나 아직 그것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 화합의 절차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이 절차를 완성시키는 방식들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 감독 받는 목회는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개별적, 집합적 감독 받는 교회들과 역사적 감독(bishop) 계승을 하는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일치의 방편으로 나가야 할것이다. 그러한 목적을 촉진하기 위해, *본 총회는 COCU 내의 아홉(9)개 회원교회 대표자 회의를 가까운 장래에 개최할 것과 목회의 화합의 의미를 명확하게 할 것을 동 집행위원회에게 지시한다.* 그러한 의미의 명확성은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로서 출범하려고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 안에서 함께 사는 삶에서 이러한 화합의 논점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드러날 것을 희망한다. 전적인 목회의 화합은 남은 과제의 해결과 더불어, 2007년 '크리스찬 일치를 위한 기도주간' 시기까지 달성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이다.

우리는 확장일로에 있는 우리 서클에 미국개혁교회와 미국 복음주의루터교회가 포함되리라는 희망을 품어보는데 이들 교회들은 공식 자문 참여자들이기도 한다. 우리는 보다 넓은 서클 안에서 대화를 추구하는데, 이들은 로마 카톨릭교회, 정교회들, 오순절교회들, 성결교회, 침례교회들, 그리고 기타 역사적 흑인교회들과 토의하는 일을 포함한다.

한층 더 확대된 서클에서, 우리는 선의와 동정적 주장을 하는 모든 사람들및 운동권과 협력하는 것 처럼 유대교와 회회교, 기타 현존하는 종교들과의 대화를 추구한다. 우리는 많은 핵심 서클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우리와 합의하고 제휴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안다. 우리는 인류의 일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의 징표와 방편들을 추구하며, 우리는 정의와 평화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그 화해의 표현으로서 창조 질서의 지속성을 함께 추구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유에 편재 하시며, 더 이상 인간 손으로 신전을 지을 필요가 없는 시기가 종국에는 올 것이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전인류 가족이 온전하게 화해하기를 갈망한다.

VI.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특징으로서 제도적 백인 특권제도 철폐 투쟁 서약

인종차별의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분열적인 이슈이다. 본 총회가 이 새로운 관계를 규정짓는 주요 특징을 인종정의를 위한 투쟁이라고 말하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백인 특권에 의해 대표되는 자만죄의 지속적 실상은 그들의 힘과 편견에 기초하고 있다. 만일 유럽계 미국인들이 제도적 백인 특권에 의해 야기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평등에 대한 장애의 철폐 투쟁에 능동적인 참여를 꺼리고 자신들이 누려온 특권의 일부를 기꺼이 포기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아프리카계 미국인 교회들과 회중들과 교인들은 유럽계 미국인 교회들과 회중들과 교인들의 상대자로서 일치의 부르짖음에 진실성이 있다고 완전히 믿기가 힘들 것이다.

둘째, 만일 이 공동체의 백인 교인들이 부당한 제도에서 취득한 부당한 이득을 비판없이 받아들임으로써 흑인 교인들에게 충만한 삶을 부인하는 부당한 사회질서에 침묵의 공범자로 남아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 안에 참된 기독교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 제도적 백인 특권은 정의에 대한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분석에 따라서, 우리 안에서 이 악의 세력이 도전받지 않고 존재하는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 안에서 참된 공동체가 이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 안에서 우리가 장려해야 할 것은 단순한 교리적 기독교 이념이 아니라, 실존적 신앙이어야 한다. 그러한 신앙은 생동하는 상호 책임의 표시들을 요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러한 책임의 표시들은 경건한 선언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그 표시들은 백인 특권 철폐에 대한 명시적 목적을 가진 구체적인 결의여야 한다. *특별히 언급하자면, 우리는 교회들이 교회연합협의회 제18차 본회의에 의해 승인된 "크리스챤 결단과 인종주의 타파 결의 선언"에서 제시한 행동을 하도록 권고한다. 우리는 또한, 미국의 제도적 백인특권의 작용과 파급효과를 공동 후원으로 분석 연구한 안을 채택하도록 권고한다.*

보상적 정의는 인종불평등 문제에서 고려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접근 방법이다. 우세한 백인 교회들은 과거 수세기 동안의 노예 노동 또는 다른 형태의 인종에 기반을 둔 경제착취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형성된 자본구조의 수혜자들이다. 그 결과로 인한 권리 침해는 보상적 정의를 요구하는데 여기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동체와 기관들을 강화시켜서 교회와 사회에 지속적으로 공헌하도록 자산을 공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우리는, 불평등 관련 사항들을 조사하고 향후 결의를 건의하고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회원들이 함께 모여 미래의 결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회들이 각자 교단 내에서 인종적 정의목회의 책임자들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도록 권장한다.*

하나의 참된 공동체로 되기 위해 정진하는 교회들의 한 그룹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은 반드시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 가하는 억압의 지속적인 파급 효과를 다루어야 한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해 있는 가장 명확한 악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종 분석으로서 우리의 관심사는 반드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당면하는 억압과 사회적 소외를 근절하는 것이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이 기독교 공동체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능동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삶을 보다 풍요하게 하는 구체적이고 희생적인 결의에 참여함으로써만 가능하다.

VII. 지역및 지방 생활을 위한 관련 사항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 안에서 우리가 일체감으로 사는 것은 교단 차원과 특히 개체교회 차원에서 주도력과 창조성을 발휘하는 것을 요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체감을 가시화시키는 성공 여부는, 그러한 주도력이 우리가 교회를 이룩하려는 방식의 일부가 되느냐에 달려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교회를 구상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는 방식으로, 우리 동역자들을 포함시키는 훈련을 해야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모든 참여 교회들에 대한 역사와 신학과 정치체제를 우리의 신학교에서 가르치도록 하고, 목회후보생들이 타 교단들에 대한 지식을 보여주도록 한다;

— 한 개체교회의 선교나 사법행정조직에 관해 주요 결정을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 안에 있지 않은 다른 개체교회들이나 사법행정조직과 대화를 포함한다;

—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말씀과 성례전의 선포와 연구에서 보다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공통의 성구집이 사용되도록 한다;

— 각 지역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개체교회들은 인종주의 타파에 대한 공동 참여를 결정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출범과 함께 모이도록 한다;

— 정규적으로 성례전을 함께 나누는 절차가 각지역에서 일어나게 한다;

— 안수식이 거행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에 소속한 사람들의 출석과 참여가 있게 한다;

— 그 교회들의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에큐메니컬 구성에 참여할 것과, 에큐메니컬 단체의 참여와 공동 프로젝트에서 에큐메니컬 리더쉽을 제공하도록 권한을 갖게 제안한다.

개체교회들과 사법행정조직들은 우리의 단결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끊임없는 돌봄과 창조성을 장려할 것이다:

— 정규적인 합동 선교와 프로젝트;

— 합동 예배, 설교자 교환, 세례식과 취임식 및 의사결정을 하는 핵심 그룹에 교회 대표자들의 출석;

— 교회와 사회의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우리의 합동 투쟁에 대한 빈번한 평가;

— 전체 참여 교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에 대하여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

— 동역 교회 회중의 삶에 대표 회원들의 참여.

본 총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을 출범하면서 각 개체교회들이 어떤 창조적인 활동을 지역 단위로 실시하도록 강조하는 뉴스레터의 제공을 집행위원회에 요청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이 제4항에 열거된 가시적 표시들을 실천하기 바라는 많은 연방교회, 연합교회, 유니온교회 및 협력 목회회중(에큐메니컬 협력목회)의 증언들을 듣게 되리라고 희망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에게 우리가 헌신한다고 해서 타 교단들과의 합동목회를 배제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그러나, 회원 교회들은 회원들 서로 간에 삶과 선교활동을 함께 하는 특별한 부름을 받은 것을 확실하게 인정한다.

VIII. 시 행

교회 연합협의회 회원교회들은 각자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방식으로 이 보고서에 들어있는 권고안들에 대해 응답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여덟(8)개 참여 교회들이 제4항에 열거된 "가시적 표시들"의 대부분에 대해 이미 공식적으로 승인했음을 인지한다.

새로운 관계가 공식 출범하도록 하기 위해, 총회는 교회연합협의회의 집행위원회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1. 모든 참여 교회들을 대표하는 대표자 회의를 개회하여, (a) 권고안을 수용하는 계획서를 공유

하고, (b)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출범을 위해 전국적, 지방적, 지역적 단위로 함께 준비하고, (c) 시행을 더욱 촉진시킬 책임자들을 임명한다.

2. 2002년 1월에 출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준비에 필요한 자금 제공을 교회들에게 요청한다.

3. 새로운 관계 출범을 축하하는 적절한 예식을 위한 조항을 작성한다.

IX. 상호 권한과 책임 체제

교회들에 의해 수립된 새로운 관계가 예배와 증거와 봉사의 새로운 공동생활로 교회들을 초대한다. 이 공동 생활은 상호 권한과 책임의 체제에 의해서 전국적, 지방적, 지역적 표현들에 의해 운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교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가시적 방식들을 장려하고 조정할 것이다. 교회들이 공동 생활의 새로운 표현을 하게 되면서, 그것들은 공동 의사 결정과 상호 노력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우리 교회들은 미래를 구상하면서, 우리는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교회 안의 리더쉽과 의사 결정 체제에서 그들의 위치를 확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우리의 비전을 수행해 가도록 힘쓸 결단을 해야한다.

우리는 다음의 원칙들이 이러한 새로운 체계를 형성하는 지침이 될 것으로 이해한다:

다양성 상호권한과 책임 체제는 지역 교회와 문화적 상황에 따라서 지역 별로 다를 수 있다. 그 목표는 지역적 상황과 그 지역 교회들이 개입하고 있는 특정 과제들에 적절한 형태를 제공하는 것이다.

포괄성 그 체계는 공동생활을 함께 하는 교회들의 다양성과 풍부함이 반영된 체계여야 한다. 공동생활의 특정 지역과 표현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동역 교회들까지도 포함한다. 그 목표는 모든 교회들이 공동생활과 증거에서 상호 간에 책임을 지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가시성 그 체계는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이 그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사실상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주장할 수 있는 체계여야 한다. 물론 교회에 관료 체제를 새로이 만드는 것이 교회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 목표는 그들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 충실하고 지속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충분한 방편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들에 비추어, *이 새로운 관계에서 회원 교회들을 섬기는 최상의 체계가 분명히 정의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시행전략대회를 회집할 것을 권고한다. 이 대회의는 집행위원회와 회원 교단들의 핵심 지도자들을 포함할 것이다.*

X. 보다 폭넓은 관계들

교회연합협의회는 그 초기부터, 폭넓은 에큐메니컬 운동의 틀 안에서 교회의 가시적 일치를 추구하고자 목표하고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은 조직 되면서부터, 연합된 교회들 및 연합하고 있는 교회들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공표하고 있다. 동 조직은 그 연합의 경험을 통해 그리스도 교회의 본질과 세상에 대한 증거에 관해 이들 교회들과 함께 나누기를 희망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은 회원 교단들이 세계의 다양한 기독교 교단들과 맺고 있는 연결과, 회원 교단들이 지역, 지방, 전국 단위의 에큐메니컬 기관들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한다.

교회연합협의회는 양방 관계나 그 이상의 관계에서 공동생활의 표현을 함께 해온 여러 교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African Methodist Episcopal, African Methodist Episcopal Zion, Christian Methodist Episcopal 교회들 간에 논의, United Methodist Church, the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United Church of Christ Partnership 간에 논의들이 포함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은, 전체적으로 교회를 풍요케 하는 요소들로서, 이러한 지속적 관계를 환영하며 이런 관계를 통해 기독교 생활과 신앙의 특정 국면을 이해함으로 발생하는 성장을 환영한다.

일부 교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에 속하지 않은 비회원 교회들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성공회와 미국 복음주의루터교회 사이에 제안된 협약, 그리고 그리스도연합교회와 미국장로교와 미국개혁교회와 미국 복음주의루터교회 사이의 완전교류 관계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이들 교회들은 그들이 가져올 은사의 기대감으로 인해 환영 받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일치를 보다 가시적으로 표현하고자 끊임없이 탐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자처한다. 우리는 보다 넓고 깊은 공동체로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갈망한다. 미국복음주의루터교회와 미국개혁교회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일부 교회들과 이해와 공동생활에서 이룩한 특별한 성장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교회들이 우리의 여정에 합류하도록 정식 초대장을 보내는 시기가 무르익은 것으로 생각하며, 집행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는 방식을 심의하도록 제안한다.

우리의 가시적 일치 탐구에 대해 로마카톨릭교회가 헌신적으로 지원을 제공해준 데 대해 정식으로 사의를 표하며, 우리가 새로운 차원으로 공동생활을 탐구하는 가운데, 협조하고 서로의 삶을 풍요하게 하는 기회를 찾을 것으로 희망한다.

송 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로서 우리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 희망과 환희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린다.

"아멘! "가로되 아멘! 축복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 요한계시록 7:12

부록 1에 대한 각주(註)

1. '기독교인 일치를 위한 기도 주간'은 그러한 축하를 위해 상징적으로 적절한 시기이다. 특히 마틴 루터 킹 목사 생일이 전국 공휴일로서 이 주간에 거행된 이래로 더욱 그러하다. 지방과 지역적 축하행사는 지역적 맥락에 보다 적절할 경우, 추후 거행할 수도 있다.

부록 2

인종차별 타파를 위한 기독교인 결단과 결의 요구

다음은 제18차 교회연합협의회 (COCU) 대표자들이 아홉(9)개 회원 교단들에게 결의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공동 증거와 공동 봉사는 에큐메니컬 조직체를 나타내는 두 개의 표시이다. COCU 회원 교회들은 회원 교회들 내에서, 회원 교회들 간에, 모든 교회들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인종차별 타파 운동의 필요에 대해 관심의 초점을 맞추면서, 특별히 이 결단의 삶을 살기로 선택하였다.

교회연합협의회의 경험은 교회의 일치가 창조와 구속에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을 명백하게 한다. 이 일치는 교회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전 인류 공동체와 전 창조계를 위해서도 주어져 있다. 이 것은 전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내어주신 선물이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위해 의도하신 친교와 정의의 징표이자 도구가 되기로 부름 받은 것이다.

이러한 진실이 COCU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가시적 교회 일치를 탐구하도록 지시한다.

— 이는, 교회가 신앙과 성례전과 목회에서 일치감을 추구하는 것과, 교회와 인간 공동체 내에서 인종주의를 극복하는 투쟁과의 사이에 논박할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음을 암시한다.

— 이는 참된 진리는 포용적이라는 것과, 교회와 사회 생활 내에서 인종적 정의를 요구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 이는 인종주의와 모든 억압 권력에 반대하는 우리의 예언적 증거가 이러한 교회들의 성실성을 일차적으로 시험하는 것임을 내포한다.

인종주의를 타파하는데 있어서, 교회연합협의회 제18차 총회는 아홉(9)개 회원 교회들에게, 그들이 해방의 일치와 화해의 일치에 결단하도록 촉구한다. 이 일치는 복음서에 제공된 일치이며, 그러나 이들 교회 생활과 조직에서 아직은 완전하게 구현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COCU 교회들

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이 되기를 추구하면서, 우리 자신과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결단을 하고있다.

미국의 인종 관계에는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 미국의 전통과 문화적 관습에 깊게 침투된, 가장 현저한 악의 하나는 인종차별주의다. 특정 민종 그룹에 대해 유전적, 문화적 열등성을 간주하는 편견과/또는 그룹의 민종적 정체성을 이유로 그들의 전인성을 배제하거나, 박탈하고 종속시키는 관습이다.

인종 차별주의는 이와 같이 우리의 관습과 제도에 깊숙이 배어있으므로, 여기에서 도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참으로 지배 그룹의 일원으로 있는 한 그 제도의 혜택을 완전히 피할 수 없고, 피지배 그룹의 일원으로 있는 한 억압의 의도를 벗어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인종주의는 힘에 관한 것이다—정치, 경제, 사회 또는 교회적 특권을 보존하고자 하는 지배 그룹의 의도에 의한 힘의 남용이며, 그 결과적 일어나는, 피지배 그룹에 가하는 기회의 박탈이다.

현 사태와 추세를 되돌리기 위한 중대한 주도권을 취하지 않은 한, 인종주의, 특히 백인의 인종적 우월감은 "전체를 위한 자유와 정의"를 참되게 실현하는 사회를 꿈꾸는 국가적, 교회적 열망을

더럽힐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종차별주의와 백인특권주의 죄를 타파하는데 새롭게 결단하도록 정부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호소한다. 이 투쟁에는 우리 나라와 교회들의 도덕적 고결성과 신뢰감이 걸려있다. 특히 COCU 회원 교회들에게는 그 일치가 인종적 결속을 구현하지 않고 인종 평등과 공명정대함에 대한 핵심적 공적 증거를 내놓지 않는다면, 가시적 일치를 바라는 우리의 추구는 부적절하며 –사실은 사기이다. 그 교회들은 COCU 회원 교회들에 의해 구상된 교회연합협의회를 통해서 이 결단을 함께 구체화 시켜 가야한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화해를 요구하는 기독교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인종주의는 악마적이고 벌받을 죄이다. 인종주의는 각 사람의 창조에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을 부인하는 것이고, 세례를 통해 각 사람이 새로운 창조에 들어서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이 되기를 갈망하는 교회연합협의회 회원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인종주의를 타파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되게 보편적이고 참되게 복음적이며 참되게 개혁된 교회로서, 인종주의 반대투쟁을 통해 가시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들을 있게 하시고, 일하게 하도록 부르시는 사실을 통찰하고, 그 부르심에 대한 효과적인 응답을 지금 방해하는 것들을 고려해볼 때, 본 제18차 총회는 우리의 회원 교회들에게 다음의 아홉(9)개 전략적 결단을 설정하게 하고 이러한 결단을 함께 시행하도록 호소한다:[1]

1. *계속적으로 인종주의 반대론의 설득력 있는 신학적 주장을 펴나간다.* 인종주의가 교회를 피난처로 찾거나 위안처로 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알려진 진리를 부인하는 일이다. 주님은 우리를 소외된 신앙 공동체로 갈라놓은 그 벽을 허물으신다(에베소서 2:13-14).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 대해 동등한 차원에서 완전히 개방되어 있지 않은 한, "참되게 보편적"인 교회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따라서 하나님 창조계의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나타내는 예언적 표징으로서 모범이 되고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교인들은 정규적으로 그리고 설득력있게 이 주장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2. *우리 회원 교회들 가운데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인종주의 타파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과 발의안들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고 명칭을 붙이고 공유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2002년 출범을 앞두고 대비하는 성실한 첫 걸음으로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고 여기서 얻은 지식에 비추어 더 한층 결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협의 대회의 조직 가능성이 탐사되어야 한다.

3. *마틴루터 킹 목사 기념일과, 이와 유사하게, 제도적 변화로 이끌어 대화할 적절한 기회를 갖는다.* 교회들 내부와 그들 사이에서, 전체 공동체 회원들 안에서 인종간 대화를 장려하고 가능하게 한다. 대화가 적절하게 계획될 때, 이는 정의와 화해를 위해 – 의심과 공포와 적의감을 줄이고, 상호존중과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 없어서는 안 될 도구가 될 수 있다. 마틴 루터 킹 목사 기념일과 '크리스챤 일치를 위한 기도 주간' 사이의 연결은 인종주의와 우리의 일치 추구에 관한 관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잠재력이 있다.

4. *사회 윤리 기강을 진지하게 받아드리느데, 그 이유는 그러한 기강이 요구하는 신중한 토론과 뉴앙스 있는 구별은 효과적인 주창에 걸림돌이 되는 단순화 선동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

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소수계 보호법의 선호 형태들에 대한 적절한 방어는 부분적으로는 분배와 보상정의에 대한 건전하고 섬세한 해석에 달려있다. 사회윤리는 인종주의 반대 전략에 필요한 깊이를 가져올 수 있다.

5. *예배가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의도적 증거가 되게 하고 복음의 충만함이 반영되게 한다.* 예배는 때로 인종분리와 억압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성찬식은 신학적 장벽에 의해서 분리될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와 교회들 사이의 인종분리에 의해서도 일어난다. COCU의 회원 교회들은 공동 성찬식을 추구하는 가운데, 반드시 예전적 자원과 관행을 평가하고, 인종적 민감성과 포용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6. *인종주의 역학과 인종 정의의 요구에 관한 강력한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한다.* 특별히 가정 교육과 관련하여,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인종평등을 지지하는 일관성 있는 증거가 되도록 예전적 자원 등 교육 자원들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7. *교회 조직과 정치체제와 프로그램에 박혀있는 인종차별 관념을 발굴하기 위해 자체검열 활동을 벌일 것과, 우리의 개선을 측정하는 목표 설정을 한다.* 변화의 대상을 제공하는 가운데, 이러한 자체 감사를 실행하는 것은 인종 차별적 불법성을 극복하고 인종화해를 진전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것은 교회들 사이의 상호 책임과 권고와 확인의 맥락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이룩될 수 있다.

8. *옹호운동을 통해 인간의 평등권을 위한 투쟁을 벌이기로 한 교회의 결단을 새롭게 한다.* 민권의 의제를 계속 추구하는 가운데, 네(4)가지 정의 도구가 특별히 우리 시대에 적절해 보인다: (1) 연방민권법 보존과 강화, (2) 인종주의에 의해 초래된 불균형과 박탈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 소수계 보호법의 지속화, (3) 주택, 의료, 영양, 고용, 기타 중요 필수 조건들을 포함하는 경제적 권리 방어 (4) 형사 재판제도의 개혁.

9. *새 이민및 문화 그룹에 대한 회원 교회들의 수용능력과 대응력에서 인종차별 관련의 이슈에 대처하는 자원을 개발한다.*

이 "인종차별 타파 결단과 결의 요구"에 대한 첫 행보로서, 제18차 총회 대의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이 되는 필수 요소로서, 우리 나라와 교회 안의 인종주의 타파의 공동결단을 능동적으로 추구하기로 결속하였다.

인종주의 타파는 보통 만만한 난제가 아니다 – 이를 근절시킨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이것은 개인들의 사고 개조와 교회의 전면 변화가 함께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쟁에 대해 희망을 품고 끈기를 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다 – 가장 주요하게는 하나님께서 인종적 결속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끊임없이 창조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인종주의를 극복하고 보다 의도적인 일체감으로, 그리스도 교회의 보편성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로 한 COCU 교회들의 결단은 하나의 약속이고 기도이다. 이것은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된 구속으로, 교회의 본질을 향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안으로 안내할 것이다. 이들 아홉(9)개 교회들의 이러한 결단 안에서, 그리스도 연합의 교회들이 되고자 하는 추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일치의 표시이고 예고이다.

이 보고는 1999년 1월 24일, 미주리 주 세인트 루이스 시에서 개최된 교회연합협의회 제18차 총회의 아홉(9)개 교단 대의원들의 만장일치 표결에 의해 채택되었다.

– 부록 2에 대한 각주 –

1. 이 아홉 (9) 개 결단은 "인종주의 철폐: 인종적 정의의 일치 추구 전략" 에 상세히 기술되어있다. 이 문서는 COCU 제18차 총회의 기본 자원 문서로서, 1998년 7월/10월판 *Mid-Stream* Vol. 37, Nos. 3-4에 발표되어 있다. 집행위원회는 그 문서를 회원 교단들에게 연구와 실행에 사용하도록 추천한다.

부록 E

해외한인장로회 (구 미주한인장로회, KPCA)와 미국장로교(PCUSA) 간의 계약관계

인준받은 에큐메니컬 성명서
제 218 차 총회(2008 년) 승인
노회들의 다수 표결에 의해 승인
(G-5.0203)

해외한인장로회
와
미국장로교
간의 계약관계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히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4:1–6 (표준새번역)

I. 역사적 관계

미국장로교(PCUSA)와 해외한인장로회(구 미주한인장로회, KPCA)는 개혁전통에 공통적인 뿌리를 두고 이에 헌신하는 교단들이다. 두 교회 간에 흐르는 정서적 유대감은 양 교회 선교 역사의 유산이다. 한국의 개신교는 1885 년 미국장로교 선교사들이 파송됨으로써 시작되었다. 지난 세기동안 한국에서 장로교회는 고난의 어려운 경험을 겪고서도 경이적인 성장을 이룩한 바 있다. 한국의 장로교회는 한국과 아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 선교와 에큐메니칼 운동의 참된 동반자가 되었다.

1960 년대 중반, 미국 이민법이 바뀌고 수많은 한국인들에게 미국 이민 문호가 열렸으며, 이로써 한인장로교에 새 역사의 장이 시작되었다. 유감스럽게도 미국장로교는 많은 수의 한인장로교인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일부 한인들이 미국장로교로 합류했으나, 다른 일부는 미국 내에서 독자적으로 한인장로회를 세워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코리안-어메리칸 장로교회들로 조직된 이러한 그룹들은 각기 그들의 고유한 은사와 부름을 통해 미국에서 장로교의 증거사역의 성장과 개발에 기여를 해 왔다.

수년에 걸쳐 양 교단 지도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상호 협력을 해오다가, 미국장로교의 제 204 차 총회 (1992 년)와 미주한인장로회의 17 차 총회 (1992 년)에서 PC(USA)와 KPCA 간에 장로교협력 합동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허락했다. 지난 30 여년간 동 합동위원회는 목회사역, 교육, 세계선교, 평화, 정의, 화해, 교회 정치제도 분야에 초점을 두어왔다. 지금 특별히 주목되는 점 가운데 하나는 미국에서 출생하고 교육을 받은 코리안 어메리칸들이 우리 교회들을 이민 중심적 목회로부터 벗어나 미래 세대를 위한 사역을 지향하도록 제시하는 기회인 것이다. 합동위원회는 PC(USA)와 KPCA 간에 관계를 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합동위원회는 하나님께서우리를 부르시어 PC(USA)와 KPCA 간에 보다 긴밀한 유대관계를 지향하게 하고, 두 교단 간의 계약관계를 선포하도록 양 총회에게 요구한 사실을 믿는다. 계약관계는 교회와 선교의 삶에서 공식적인 상호결단을 확립한다. 계약관계의 본질은 핵심신학 원칙에 기초를 둔 상호관계에 이르게 하는 부름이다.

II. 상호 인정과 화해

A. 세계개혁교회연맹에 가입한 개혁전통의 교단들로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복음이 전파되고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실천되고 있는 교회들임을 서로 인정한다.

B.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교회에 속한다는 표징이다. 성경말씀대로,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다"(엡 4: 5).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는 서로의 교회 세례를 인정하고 서로의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 환영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기 희생적 사랑의 길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하고 생명의 빵을 먹고 구원의 잔을

마시도록 주님의 성찬 예식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는 교회의 모든 장소에서 주님의 성찬을 함께 나누도록 격려한다.

C.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모든 제자들에게 복음의 사역을 맡기셨으며, 사랑, 의로움, 평화, 정의의 길에서 그를 따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안수는 교회의 특정한 목회 사역을 하도록 남녀를 선별해 내는 행위이다. 우리는 이러한 목회 사역자들을 집사, 장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라고 밝히고 지칭한다. 우리는 교회와 세상에서 봉사하도록 사람들을 불러서 선별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선교 때문임을 인정한다. 우리는 상호간에 교회의 목사, 장로와 집사 안수의 진정성을 인정한다.

D. 교회는 하나님의 소명을 세상에서 달성하는 삶을 산다. 교회는 자체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사역을 증거하고, 교회의 삶과 증거의 모든 분야에게 복음, 정의와 화해를 위한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증거하는 일을 추구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치의 은사가 교회의 증거를 강화 시킨다. 교회의 분열이 교회 선교를 파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분파는 교회의 메시지와 선교로부터 관심을 흩어지게 한다. 우리는 우리들 교회의 선교가 개체 교회의 지원, 자원과 지도자 개발, 국내 및 세계 선교의 분야에서 협력하며 사역하기로 결단 함으로써 강화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III. 계약의 결단

A. 우리는 기도, 대화와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통해 서로를 지지하기로 서약한다. 우리는 상호 확인과 권고를 통해, 성실한 관계를 갖으며, 거기에서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시련을 나누며, 이 계약을 강하게 하는데 목표를 두고 불일치를 함께 다루기로 서약한다. 우리는 우리들 교회의 증거를 확인하도록 노력하며, 교정이 필요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 사랑이 담긴 말을 한다.

B. 우리는 상호 교회의 목회의 진정성을 인정하면서, 질서있는 목사교환의 절차를 개발하기로 서약한다. 이 조항은 누가 노회원이 되며 교회의 사역에 부름 받을지를 허락하는 일을 노회가 결정한다는 원칙에 좌우될 것이다. 이 절차는 목사들이 다른이의 교회에서 목회 분담을 하도록 허용하고 목사들의 이명 절차와 목사들의 이중 교단 가입을 위한 절차를 확인하게 할 것이다. 이 절차는 무흠한 목사들에게만 적용될 것이며, 양방의 교회 정치제도에 의거한 권징의 절차를 포함할 것이다.

C.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요, 우리 회중들이 공통의 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한다. PC(USA)와 KPCA 소속의 많은 한인들은 한국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는 질서있는 개체교회 이명의 절차를 개발하기로 서약한다. 이 절차는, 실행할 수 있다면, 개체교회들이 목회사역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이중 교단 가입을 취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우리는 양 교회의 증거를 강화시키는 절차를 개발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분열에 기여하지 않기로 서약한다. 이 절차는 양 교단의 교회 정치제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개발될 것이다.

D. 우리는 공동 선교에서 많은 공통점이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다음의 선교 분야에서 함께 사역할 것과 다른 사역의 분야들이 나타날 것을 위해 기도하기로 서약한다: 커리큘럼 개발; 2 세와 청소년/청년의 목회; 개체 교회 지원과 지도자 개발; 여성 지도자 및 자원 개발; 세계 선교와 세계 내의 정의와 화해의 분야.

IV. 결의의 동기 부여

A. 이 계약은 양 교단의 적절한 경로를 통해 양방 총회로 전달되어 2008 년까지 결의되도록 할 것이다.

B. 양방의 총회는 계약관계를 체결하고 이 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 헌법 수정을 하도록 요청할 것이며, 노회로 보내 재가를 받도록 할 것이다.

C. 노회의 재가를 받을 때, 계약관계가 수립될 것이며, 공식적인 계약관계를 경축하는 예배의식은 2010 년까지 거행될 것이다.

D. 계약실행위원회가 설립되여 계약 맺는 절차를 구체화하고 지원하며 우리로 이 계약을 완전히 지키도록 할 권고안을 만들 것이다.

V. 미래를 위한 기도

우리는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만민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나이다. 당신께서는 장로교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해 한국에 복음을 보내셨나이다. 성령의 권능을 통해, 이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한국인들의 믿음을 양육 하셨으며, 저희들은 한국에서와 미국의 한인장로교인들 가운데서 교회의 성장을 목격하였나이다. 저희들은, 인간적 제약 때문에 분리가 있었다 하여도, 당신께서 친히 저희 두 교회를 통해 계속 사역하시고 계심을 알고 있나이다. 당신께서는 저희들의 문화, 관습 및 언어의 차이를 받아들이시고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나이다. 당신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을 보다 긴밀한 관계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미주 한인장로교회와 미국장로교회 사이에 지금부터 여러 세대에 걸쳐 계약관계에 들어가고자 하오니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축복 내리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비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3: 20 -21 (표준새번역)

부록 F

한국어 어휘

Korean Glossary

한국어 어휘

Korean Glossary

A

1.	Active Member	1. 활동교인
2.	Administration	2. 행정
3.	Administrative Commission	3. 행정전권위원회
4.	Administrative Manual of Operations	4. 행정 운영 지침서
5.	Administrative Review	5. 행정적 검토, 평가, 검열
6.	Administrative Staff	6. 행정 직원
7.	Administrator	7. 행정 책임자
8.	Admission to the Lord's Table	8. 성찬 참여 허락
9.	Admission to membership	9. 회원 가입
10.	Adult Members	10. 성인 회원
11.	Advent	11. 강림절
12.	Advisory Committee on the Constitution	12. 헌법자문위원회
13.	Affiliate member	13. 관련교인
14.	Affirmation of Faith	14. 신앙의 확인
15.	Affirmative Action	15. 소수계보호법/차별철폐 조처
16.	Agency	16. 대행기관
17.	Allegation of Offense	17. 범법 혐의
18.	Amend	18. 수정/개정하다
19.	Amendment	19. 수정/개정(안)
20.	Annual Consultation	20. 연례 협의
21.	Annual Report	21. 연례 보고서
22.	Annual Review	22. 연례 검토
23.	Answer to Protest	23. 항의에 대한 답변
24.	Appeals	24. 상소(문)/항소(문)
25.	Appellant	25. 상소인/항소인
26.	Appellee	26. 피상소인/피항소인
27.	Approval	27. 승인
28.	Article of Agreement	28. 합의조항
29.	Associate Pastor	29. 부목사
30.	Audit	30. 감사
31.	Automatic termination	31. 자동 해직/해임

B

32.	Ballot	32. 투표용지
33.	Baptism	33. 세례
34.	Baptized Member	34. 세례회원
35.	Benefits	35. 혜택
36.	Bereaved	36. 유가족
37.	Bible	37. 성경
38.	Bicameral System	38. 양원/이원 제도
39.	Unicameral System	39. 일원/단원 제도
40.	Book of Confessions	40. 신앙고백서
41.	Book of Order	41. 규례서
42.	Bounds of Presbytery	42. 노회 구역
43.	Briefs	43. 적요서
44.	Budget of Particular Church	44. 지체교회 예산
45.	building	45. 건물

C

46.	Call to Ordered Ministries	46. 직제사역자 청빙
47.	Called Meeting	47. 임시회의 (특별회의)
48.	Candidacy	48. 후보생(자) 자격
49.	Candidates	49. 후보자들/후보생들
50.	Candidates for the Teaching Elder	50. 교역장로(목사) 후보생
51.	Cases	51. 사건/사례
52.	Catechisms, Larger and Shorter	52. 대·소 요리문답
53.	Censures of Church	53. 교회의 책벌
54.	Certificate	54. 자격증(서)/인정증(서)
55.	Certified	55. 인정된/ 유자격
56.	Chaplain	56. 기관목사 (원목, 군목)
57.	Charge	57. 권면, 고발, 죄과
58.	Child Abuse	58. 어린이 학대
59.	Choir	59. 찬양대
60.	Christian Nurture	60. 크리스천 양육
61.	Church	61. 교회
62.	Church Discipline	62. 교회 권징
63.	Church government	63. 교회 정치
64.	Church Officers	64. 교회 직분자
65.	Church Orders	65. 교회 규례
66.	Church Polity	66. 교회 정치조직/체계

67.	Church Power	67. 교회 권한
68.	Church Property	68. 교회 재산
69.	Church School	69. 교회 학교
70.	Church Unions	70. 교회 연합
71.	Church Vocations	71. 교회 소명/직책
72.	Church Year	72. 교회력
73.	Citations	73. 소환장
74.	Civil Jurisdiction	74. 민사 관할권
75.	Civil Marriage	75. 민사법 결혼
76.	Civil Proceedings	76. 민사 (소송) 절차
77.	Clerk	77. 서기
78.	Commission	78. 전권위원회
79.	Commissioners	79. 총대/전권위원
80.	Commissioning	80. 파송/위임
81.	Committal	81. 하관/매장
82.	Committee	82. 위원회
83.	Committee on Ministry	83. 목회위원회
84.	Committee on Preparation for Ministry	84. 목회후보생 위원회
85.	Committee of Representation	85. 대표위원회
86.	Communion	86. 성만찬/친교
87.	Community	87. 공동체
88.	Compensation	88. 보수
89.	Complaint	89. 고소/불만
90.	Confessional Statement	90. 신앙고백문
91.	Confirmation	91. 확인/인준/입교
92.	Congregation	92. 개체교회/회중
93.	Congregational Meeting	93. 공동의회
94.	Conscience	94. 양심
95.	Constituency	95. 구성계층
96.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96. 미국장로교 헌법
97.	Constitutional Questions	97. 헌법적 질문
98.	Co-Pastor	98. 동사목사
99.	Corresponding Member	99. 객원회원
100.	Correspondence	100. 교신/통신
101.	Corporation	101. 법인체
102.	Council	102. 공의회
103.	General Assembly	103. 총회

104. Synod	104. 대회
105. Presbytery	105. 노회
106. Session	106. 당회
107. Counsel	107. 변호인
108. Covenant Relationship	108. 언약/계약 관계
109. Creeds and Confessions	109. 신조와 신앙고백

D

110. Daily Worship	110. 매일 예배
111. Deacons	111. 집사
112. Board of Deacons	112. 집사회
113. Death	113. 사망
114. Deletion	114. 삭제
115. Delinquency	115. 비행, 직무태만
116. Deposition	116. 증언녹취, 조서/공술
117. Designated Pastor	117. 임명목사
118. Directory for Worship	118. 예배모범
119. Disciplinary Cases	119. 징계사건, 권징사건
120. Accuser	120. 고소인
121. Accused	121. 피소인
122. Charge	122. 공소, 고소, 고발
123. Counsel	123. 변호인
124. Disciplinary Committee	124. 징계위원회
125. Enforcement	125. 집행
126. Investigating Committee	126. 조사위원회
127. Preliminary Hearing	127. 예심/ 예비청문회
128. Preliminary Procedure	128. 예비절차
129. Prosecution of Case	129. 사건의 공소/기소
130. Renunciation	130. 파기, 포기(선언)
131. Temporary Exclusion	131. 임시 정직
132. Vindication	132. 결백 입증
133. Discipline	133. 권징/징계
134. Dissent	134. 반대(자)
135. Dissolution of Pastoral Relations	135. 목회관계 해소
136. Dissolving Active Relation of Deacon or Elder	136. 집사나 장로의 시무직 해소
137. Dissolving Church	137. 교회해산/해체
138. Diversity	138. 다양성
139. Doctrine	139. 교리

E

140. Ecclesiastical Jurisdiction	140. 교회 관할권
141. Ecumenical Commitment	141. 에큐메니칼 참여/범기독교 운동 참여
142. Ecumenical Statements	142. 에큐메니칼 선언
143. Educator	143. 교육사
144. Elders	144. 장로
145. Election	145. 선출/선거
146. Election of Pastors (or Associates)	146. 목사 (또는 부목사) 의 선출
147. Election of Trustees	147. 재단이사의 선출
148. Emerita or Emeritus, Pastor	148. 명예목사
149. Enforcement of Judgment	149. 판결의 집행
150.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150. 평등 고용기회
151. Evidence in Remedial/ Disciplinary	151. 교정/징계사건에서 증거
152. Examination	152. 시험/고시/심사
153. Exceptions	153. 예외(조항)
154. Executives	154. 행정책임자
155. Ex-Officio	155. 직책상/당연직
156. Extraordinary Inquirer or Candidates	156. 특례적 지망생이나 후보생

F

157. Family worship	157. 가족(가정)예배
158. Fasting & Thanksgiving	158. 금식과 감사
159. Federated Congregation	159. 연방교회
160. Filing a Complaint	160. 고소제기
161. Filing Deadline	161. 접수시한
162. Final Assessment	162. 최종평가
163. Finance	163. 재무, 재정
164. Financial Review	164. 재정 검토
165. Floor Nomination	165. 즉석 공천, 회의장 공천
166. Form of Call to Pastor	166. 목사 청빙 양식
167. Forms of Worship	167. 예배 형식
168. Freedom of Conscience	168. 양심의 자유
169. Full Communion1	169. 완전 교류
170. Full Organic Union	170. 완전한 조직적 연합
171. Funeral	171. 장례

G

172. General Assembly (GA)	172. 총회
173. General Assembly Mission Council (GAMC)	173. 총회 선교사역부
174. Manual of Operations	174. 운영지침서
175. Gifts of the Spirit	175. 성령의 은사
176. Giving	176. 봉헌, 헌금
177. Governing Bodies	177. 치리회(기관)
178. Government, Church	178. 교회 정치
179. Government, Form of	179. 정치형태

H

180. Head of the Church	180. 교회의 머리
181. Healing Services	181. 치유예배
182. Higher Council	182. 상위 공의회
183. Lower Council	183. 하위 공의회
184. Holy Spirit	184. 성령
185. Holy Week	185. 고난주간
186. Honorably Retired Teaching Elder	186. 명예 은퇴 목사
187. Household Worship	187. 가족(가정) 예배
188. Hymnals and Song Books	188. 찬송가와 찬양집

I

189. Immigrant Congregations	189. 이민교회
190. Inclusive Language	190. 포괄적 언어
191. Inclusiveness	191. 포괄성
192. Incorporation	192. 법인체 조직
193. Individual Worship	193. 개인 예배
194. Ineligibility	194. 부적격
195. Infants	195. 유아
196. Inquirer	196. 지망생
197. Inquiry	197. 문의/지망
198. Installation	198. 위임/취임
199. Instruction	199. 지침/지시/가르침
200. Interfaith	200. 종교 간 상호관계
201. Interim Supply	201. 임시 설교자
202. Interpretation	202. 해석/해설/통역
203. Irregularity	203. 변칙/오판

J

204. Joint Congregational Witness	204. 선교를 위한 교회연합
205. Judgment of Court	205. 법원의 판정/판결
206. Judicial Case	206. 사법사건(사례)
207. Judicial Commission	207. 사법전권위원회
208. Judicial Process	208. 사법절차
209. Jurisdiction	209. 관할권/교직권
210. Jurisdiction of Council of the Church	210. 교회 공의회의 관할권
211. Jurisdiction of Judicial Process	211. 사법절차 관할권
212. Justice	212. 정의

L

213. Laboring Outside Bounds	213. 노회구역 밖에서 사역/목회
214. Laying on of Hand in Ordination	214. 안수식에서의 안수
215. Lectionary	215. 성구집
216. Lent	216. 사순절
217. Liturgical Calendar	217. 예전 월력
218. Local Congregation	218. 지교회/회중
219. Lord's Day	219. 주님의 날/주일
220. Lord's Supper	220. 성(만)찬
221. Administration	221. 집례

M

222. Manual of Administrative Operations	222. 행정운영 지침서
223. Marriage	223. 결혼
224. Mediation	224. 중재
225. Members, Church	225. 교인/회원
226. Active Member	226. 활동교인
227. At-large Member	227. 일반/보통 회원
228. Affiliate Member	228. 관련교인
229. Baptized Member	229. 세례교인
230. Minimum Compensation	230. 최저 사례
231.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231.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232. Ministry	232. 목회/사역
233. Committee on Ministry	233. 목회위원회
234. Committee on Preparation for Ministry	234. 목회후보생(준비)위원회
235. Minutes	235. 회의록
236. Mission	236. 선교, 사명, 사역
237. Moderator	237. 의장/사회자

238. Motion to Dismiss	238. 기각 동의, 해산 동의
239. Music in Public Worship	239. 공중예배 음악
240. Mutual Forbearance	240. 상호관용

N

241. New Church Development	241. 새 교회 개척 (개척교회)
242. Nominating Process	242. 공천 절차
243. For Deacons & Ruling Elders	243. 집사와 사역장로(장로)를 위한
244. For Pastor	244. 목사를 위한
245. Non-geographic Presbyteries	245. 비지역노회
246. Nonresident Member	246. 타지역거주 교인/회원
247. Notice of Appeal	247. 상소 통보
248. Notice of Meeting	248. 회의 통보

O

249. Oaths Administered to Witness	249. 증인에게 선서시킴
250. Obligation	250. 의무(사항)
251. Offense	251. 위반/범법
252. Offerings	252. 헌금
253. Openness	253. 개방성
254. Ordered Ministry	254. 직제사역
255. Ordering Worship	255. 예배 순서
256. Ordination	256. 안수(식)
257. Ordination to the Ordered Ministry	257. 직제사역자의 안수(식)
258. Ordination for the Teaching Elders	258. 교역장로(목사) 안수(식)
259. Ordination of Deacons and Ruling Elders	259. 집사와 사역장로(장로) 안수(식)
260. Organic Union	260. 조직적/기구적 연합
261. Organizing of a Congregation	261. 개체교회 조직
262. Original Jurisdiction in Judicial Process	262. 사법절차에 관한 원 관할권
263. Oversight	263. 감독
264. Overture	264. 헌의 (안)

P

265. Parity	265. 동격(동등)
266. Parliamentary Procedure	266. 회의진행 절차
267. Participation	267. 참여
268. Particular Church	268. 개체교회
269. Federated Church	269. 연방교회
270. Union Church	270. 연합교회

271. Partner in Mission	271. 선교 동역자
272. Pastor	272. 목사/담임목사
273. Call	273. 목사 청빙
274. Election	274. 목사 선출
275. Pastoral Care	275. 목회적 돌봄
276. Pastoral Counseling	276. 목회 상담
277. Pastoral Relations	277. 목사(목회)관계
278. Associate Pastor	278. 부목사
279. Co-Pastor	279. 동사목사
280. Designated Pastor	280. 임명목사
281. Dissolution of Relationship	281. 관계의 해소
282. Pastor	282. 담임목사
283. Temporary	283. 임시 (잠정)
284. Peace	284. 평화
285. Pension Plan	285. 연금 플랜
286. Per Capita Funds	286. 상회비
287. Permanent Judicial Commission	287.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288. Personal Worship	288. 개인예배
289. Polity, Church	289. 교회 정치(운영)제도
290. Power	290. 권한
291. Prayer	291. 기도
292. Preaching	292. 설교
293. Preparation for Ministry	293. 목회/사역 준비
294. As a Ruling Elder and Deacons	294. 사역장로(장로)와 집사로서
295. As a Teaching Elder	295. 교역장로(목사)로서
296. Presbyteries' Cooperative Committee on Examinations	296. 노회 목사후보 고시위원회
297. Presbytery	297. 노회
298. Pretrial	298. 심리(재판) 전의
299. Principles of Administration	299. 행정의 원리
300. Principles of church Order	300. 교회 규례 원칙
301. Principles of Presbyterian Government	301. 장로교 정치원리
302. Private Judgment	302. 개인 판단/사적 소견
303. Privilege	303. 특권
305. Profession of Faith	305. 신앙고백
306. Property	306. 재산
307. Prosecuting Committee	307. 기소(징계)위원회
308. Prosecution of Call	308. 청빙 절차 시행

309. Protest — 309. 항의(서)

Q

310. Quorum — 310. 정족수

R

311. Racial Ethnic Congregation — 311. 소수 민종 교회
312. Rebuke — 312. 견책
313. Reception of Member — 313. 교인/회원 가입
314. by Certificate — 314. 이명증서로
315. on Profession of Faith — 315. 신앙고백으로
316. on Reaffirmation of Faith — 316. 신앙 재확인으로
317. Recognition — 317. 인정, 치하/표창
318. Reconciliation — 318. 화해
319. Record of Proceedings — 319. 회의진행 기록
320. Records of a Council — 320. 공의회 기록
321. References — 321. 조회/참조, 위임/위탁
322. Reformed Church — 322. 개혁교회
323. Rehabilitation — 323. 회복, 복권
324. Remedial Case — 324. 교정사건
325. Removal from Membership — 325. 회원 이명/제적
326. Removal from Ordered Ministry — 326. 직제사역에서 제적/제명
327. Renunciation of Jurisdiction — 327. 관할권 파기/포기선언
328. Representation — 328. 대표
329. Committee on Representation — 329. 대표위원회
330. Representative Government of Church — 330. 교회의 대의 정치
331. Responsibilities — 331. 책임(사항)
332. Restoration — 332. 복직/복권
333. Review — 333. 평가, 검토
334. Roll of Members — 334. 교인명부
335. Ruling Elders — 335. 사역장로(장로)

S

336. Sacraments — 336. 성례전
337. Scripture — 337. 성경/성서
338. Sentence — 338. 판결
339. Separation of Church & State — 339. 교회와 국가 분리
340. Sermon — 340. 설교
341. Service for the Lord's Day — 341. 주일 예배

342. Service of Witness to the Resurrection	342. 장례식
343. Service for Evangelism	343. 전도예배
344. Service for Wholeness	344. 치유예배
345. Service of Acceptance and Reconciliation	345. 용납과 화해예배
346. Service of Welcome and Reception	346. 환영과 입교예배
347. Session	347. 당회
348. Sexual Abuse	348. 성적 비행/학대
349. Sexual Misconduct Policy	349. 성적비행 방지정책
350. Special Meetings	350. 특별회의
351. Staff	351. 직원
352. Standing/Permanent Committee	352. 상임/영구위원회
353. Standard Ordination Examinations	353. 정규 안수고시
354. Stated Clerk	354. 정서기 (노회, 대회, 총회)
356. Stated Meeting	356. 정기회의
357. Statute of Limitation	357. 효력기한 한정 법령
358. Stay of Enforcement	358. 집행유예
359. Stewardship of Resources	359. 자원의 청지기직
360. Supervised Rehabilitation	360. 감독/상담 하에 회복/복권
361. Supper, Lord's	361. 성만찬/주님의 만찬
362. Synod	362. 대회
T	
363. Teaching Elder	363. 교역장로(목사)
364. Temporary Exclusion	364. 임시 정직
365. Temporary Pastoral Relationships	365. 임시 목회 관계
366. Term of Ordered Ministry	366. 직제사역의 임기
367. Termination of Censure & Restoration	367. 책벌 종결 및 회복
368. Terms of Call	368. 청빙 조건
369. Testimony	369. 증언
370. Tithes	370. 십일조
371. Title	371. 직함/등기
372. Transcript	372. 사본/등본
373. Trials	373. 재판/심리
374. Trustees	374. 재단이사
U	
375. Union Church	375. 연합교회
376. Union Presbyteries	376. 연합노회
377. Unity	377. 일치
378. Unity in Diversity	378. 다양성 속의 일치

379. Unity of Church
379. 교회의 일치

380. Universal Church
380. 보편(세계)교회

V

381. Validated Ministries
381. 인정된 목회

382. Verbatim Recording
382. 축어적 기록 (말 그대로의 기록)

383. Vindication
383. 결백 입증

384. Vocation, Christian
384. 크리스천의 소명/사명/직업

385. Voters
385. 투표자

W

386. Waiver
386. 포기/보류/잠정

387. Wholeness
387. 치유

388. Witness
388. 증인

389. Worship
389. 예배

성서적 언급의 색인 [1]

장로교 정치제도의 기초

제 1 장

F-1.0201	a.	엡 1:20, 21; 시 68:18
	b.	시 2:6; 단 7:14; 엡 1:22, 23
F-1.0301	c.	골 1:18; 엡 4:16; 고전 1:18
F-1.0302a	d.	시 2:8; 계 7:9
F-1.0402	e.	겔 43:11, 12

제 2 장

F-2.02	a.	1967 년도 신앙고백, 서문 9.03
F-2.03	b.	니케아 신조 1.3, 바르멘 신학 선언 8.01, 8.06
F-2.04	c.	스콧 신앙고백서 3.08;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062, 6.065
	d.	제 2 스위스 신앙고백 5.108, 5.109;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61, 4.065; 소요리문답 7.033; 대요리문답 7.180
	e.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001, 6.006, 6.007
F-2.05	f.	스콧 신앙고백서 3.02, 3.13, 3.14;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11, 4.047, 4.117, 4.121; 제 2 스위스 신앙고백 5.074; 대요리문답 7.295, 7.299
	g.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06, 4.036; 제 2 스위스신앙고백 5.036; 소요리문답 7.004; 대요리문답 7.262
	h.	스콧 신앙고백서 3.01;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26, 4.027, 4.028; 제 2 스위스 신앙고백, 5.029, 5.030, 5.03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008, 6.024, 6.025, 6.026, 6.027, 6.030, 6.117; 소요리문답 7.008, 7.011, 7.012; 대요리문답 7.124, 7.128, 7.129, 7.130, 7.300, 7.302, 7.303, 7.305; 1967 년도 신앙고백 9.03
	i.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06; 제 2 스위스 신앙고백 5.015;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024, 6.037, 6.105; 1967 년도 신앙고백 9.15, 9.16, 9.17, 9.50; 간추린 신앙고백 11.3
	j.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79;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058, 6.190; 대요리문답 7.148, 7.303
	k.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27
	l.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14, 4.037; 간추린 신앙고백 11.3
	m.	1967 년도 신앙고백 9.15; 간추린 신앙고백 11.3
	n.	스콧 신앙고백서 제 7 장; 제 2 스위스 신앙고백 5.058;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021, 6.095, 6.193
	o.	제 2 스위스 신앙고백 5.058;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181, 6.192; 소요리문답 7.20; 대요리문답 7.189, 7.191
	p.	스콧 신앙고백서 3.05, 3.14, 3.25;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94, 4.095; 소요리문답 7.215; 대요리문답 7.218, 7.300
	q.	스콧 신앙고백서 3.14

제 3 장

F-3.0107	a.	행 15:1–32 를 보고 참조
F-3.0108	b.	마 18:15–18; 고전 5:4, 5
F-3.02	c.	행 15:1–29; 16:4 **(하단 주 6)**

정치 형태

제 1 장

G-1.0101	a.	행 2:41, 47
G-1.0103	b.	히 8:5
	c.	갈 1:21, 22; 계 2:1
G-1.0402	d.	히 8:5; 갈 6:16

제 2 장

G-2.0102	a.	딤전 3:1; 엡 4:11, 12
	b.	딤전 5:17
	c.	빌 1:1
	d.	벧전 5:1; 딛 1:5; 딤전 5:1, 17, 19
G-2.0201	e.	빌 1:1; 딤전 3:8-15
	f.	행 6:3, 5, 6
G-2.0301	g.	고전 12:28
	h.	딤전 5:17; 롬 12:7, 8;행 15:25
G-2.0501	i.	렘 3:15
G-2.0604	j.	딤전 4:14; 행 13:2, 3

제 3 장

G-3.0105	a.	고전 14:40
G-3.0108a	b.	행 15:22-24
G-3.0109b(5)	c.	행 20:17; 6:2; 15:30
G-3.0201	d.	고전 5:4
	e.	히 13:17; 살전 5:12, 13; 딤전 5:17
G-3.0201c	f.	살전 5:12, 13; 살후 3:6, 14, 15; 고전 11:27-33
G-3.0202f	g.	행 15:2, 6
G-3.0203	h.	행 20:17
G-3.0301	i.	행 6:1, 6; 9:31; 21:20; 2:41, 46, 47; 4:4; 15:4; 11:22, 30; 21:17, 18; 6:1–7; 19:18-20; 고전 16:8, 9, 19; 행 18:19, 24, 26; 20:17, 18, 25, 28, 30, 36, 37; 계 2:1-6
	j.	행 15:1-6; 고전 14:26, 33, 40
	k.	엡 6:18; 빌 4:6
G-3.0301c	l.	행 15:28; 고전 5:3
G-3.0304	m.	행 14:26-27; 행 11:18
G-3.04	n.	장로교 총회에서 예증된 교회정치의 지지의 증거는 대회 총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지한다는 확증이며, 따라서 제 10 장[원문 표기 11 장]에서 언급된 성서구절 반복이나 다른 추가 언급은 불필요하다. (1888 미국장로교회 정부형태 제 10 장)
G-3.0402	o.	행 15:10; 갈 2:4, 5
G-3.0501	p.	행 15:1–29; 16:4

제 5 장

G-5.04 a. 행 21:17, 18; 행 6; 행 15:2, 3, 4, 6, 22

G-5.05 b. 행 15:5, 6

제 6 장

G-6.03 a. 1967 년도 신앙고백; 서문 9.03; G-2.0200 참조

[1] 헌의안 01-58 에 부응하여, 총회 사무처는 성서적 언급이 포함되어 있는 정치형태의 이전 판들을 검토하였다. 현재 판의 정치형태의 대부분이 지난 판들에 있었던 조항들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것이 분명하였다. 이 검토 후에, 헌법지원부서에서는 정치형태의 이전 판들과 현재 판의 내용을 자세히 비교하였다. 그런 다음에, 정치형태의 이전 판들에서 성서적 언급을 취하여 현재 판에 삽입하였다. 이들 성서적 언급은 215 차 총회 (2003) 중에 출판된 판에 처음 표기되었었다.

색 인 INDEX

본 색인의 참조는 항목번호에 대한 것이다.

Acceptance and Reconciliation, Services of 용납과 화해 예배.....W-5.0204

Accountability to Presbytery for Worship 예배와 관해 노회가 질 책임 W-2.0305

Accused—Rights 피소인의 권리 D-10.0203c

Accuser, Rights to Petition if Charges Not Filed
고소인, 고소가 접수되지 않았을때, 청원하는 권리 D-10.0303

Active Member 활동교인: G-1.0402

Acts of Christian Service 크리스천 섬김의 행위들.....W-4.0301

Acts of Commitment and Recognition 결단과 인정의 행위 W-3.0402
W-3.0501

Acts of Recognition 인정의 행위.....W-4.0502
W-4.0503
W-5.0104

Administration (See also Principles of Administration), Defined
행정의 정의 (참조 "행정의 원리").....G-3.0106

Administrative Commissions 행정전권위원회 G-3.0109b

Administrative Leave When Sexual Abuse Is Alleged
성적 비행 혐의가 있을 때 행정적 직위정지 D-10.0106

Administrative, Manual of Operations 행정운영지침서..... G-3.0106

Administrative Review 행정적 검토/평가..... G-3.0108

Administrative Staff: 행정직원
Elected under principles of participation and representation
참여와 대표 원칙하에서 선출..... G-3.0110
Executives of, how elected and how terminated 행정책임자의 선출과 종결의 방법 G-3.0110

Administrator, Minister of the Word & Sacrament Called to Labor as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행정책임자로 사역할 때 G-3.0306

Admission to the Lord's Supper 성찬에 참여:
Baptized members 세례교인 G-1.0401
G-1.0404
Of baptized children 세례받은 자녀들의 G-1.0404
W-4.0202
W-4.0203

Advent, Season of 강림절 W-1.0202
W-5.0104

Advisory Committee on the Constitution 헌법자문위원회 G-6.02

Advisory Handbooks 자문 핸드북 G-3.0106

Advocate in Disciplinary Process 권징절차에 있어서의 변호인 ..... D-10.0203a, b

Affiliate Member 관련교인 G-1.0403
G-3.0204a

Affirmation in Place of Oath 선서 대신에 확약 D-14.0302b

Affirmation of Faith (See also "Creeds and Confessions") 신앙의 확인 (참조 "신조와 고백")W-3.0306
W-4.0204
W-4.0704

Allegations of Offense 범법 혐의 D-10.0101

Alternative Forms of Resolution 해결의 대안 방안들 D-2.0103
D-10.0202 h(1-4)
D-10.0301

Amending Action of Administrative Commission 행정전권위원회의 조치 수정 G-3.0109b

Amending the Constitution: 헌법의 개정
Book of Confessions 신앙고백서 G-6.03
Book of Order 규례서 G-6.04
Must go through Advisory Committee on Constitution 헌법자문위원회를 거쳐야 함..... G-6.04
Provisions not to be amended 개정할 수 없는 조항..... G-6.05
Special provisions 특별 조항 G-6.06

Annual (or Biennial) Review 연례 (혹은 2 년마다) 검토.....G-3.0108a

Annual Review of Pastor's Terms of Call 목사 청빙조건의 연례 검토..... G-2.0804

Apostles' Creed a Part of the Constitution 헌법의 일부로서의 사도신경 F-3.04

Appeals 상소:
Content of written notice of 서면 통보의 내용..... D-8.0202a–f
D-13.0202a–f
Decision of permanent judicial commission 상임사법전권위원회의 결정 D-8.0404a–f
D-13.0404a–f
Defined 정의 D-8.0101
D-13.0101
Effect of, in disciplinary and remedial cases 징계와 교정사건에 있어서의 효력..... D-8.0103
D-13.0104
Filings in appeal process for disciplinary case 징계사건의 상소절차에 있어서 서류접수D-13.0200
Filings in appeal process for remedial case 교정사건의 상소절차에 있어서 서류접수 ... D-8.0200
Grounds of 근거 D-8.0105a–g
D-13.0106a, b
Hearing on 청문 D-8.0403
D-13.0403
Notice of hearing 청문 통보..... D-8.0401
D-13.0401
Record on 기록 D-8.0203a–g
D-13.0303a–g
Time for filing written notice of 서면통보 제출 시한..... D-8.0201
D-13.0201
Time within which filing of briefs of appellant and appellee are to be filed
상소인과 피소인의 적요서 제출 시한 ..... D-8.0304 부터
D-8.0305 까지
D-13.0304 부터
D-13.0305 까지

Who may initiate 주도할 (시작할) 사람 D-8.0102b
D-13.0102
Withdrawal of 철회 D-8.0104
D-13.0105

Appellant 상소인:
Abandon appeal by failure to file within time allowed
허락된 시간내 제출못할 때상소 포기 D-8.0304c
D-13.0304c
Shall give notice of appeal within thirty days 30 일내에 상소 통지를 전달..... D-8.0201
D-13.0201

Appellee Shall File Response Within Thirty Days 30 일내에 피소인은 응답서를 제출..... D-8.0305
D-13.0305

Appropriate Language 적절한 언어.....W-1.0302

Approval of Presbyteries on Constitutional Amendment 헌법개정의 노회 승인 G-6.03
G-6.04

Architecture 건축 양식.....W-1.0204

“Are to be,” as a Term defined in the Preface 서문에 “이어야 한다”라고 정의된 용어 ..... 서문

Art Forms and Worship: 예술 형태와 예
Dance 댄스.....W-1.0204
W-2.0303
W-2.0304
W-3.0301
W-3.0305
Drama 드라마.....W-1.0204
W-2.0303
W-2.0304
W-3.0301
W-3.0305
General 총체적.....W-1.0204
W-2.0303
W-2.0304
W-2.0305
W-3.0301
Music (See also “Music in Public Worship”) 음악 (참조 “공중예배에 있어서 음악”).....W-3.0305
W-1.0204
W-2.0303
W-2.0304
W-2.0305
W-3.0301
W-3.0305

Associate Pastor 부목사:
Installed Pastoral Relationship 위임된 목사의 목회관계 G-2.0504a
Member of session 당회원..... G-3.0201
Not eligible to become the next installed pastor, co-pastor
차기 담임목사 혹은 동사목사가 될 수 없음 G-2.0504a
With one exception 한가지 예외 G-2.0504c

Ordination and installation 안수와 위임 W-4.04
Pastoral relationships 목회관계 G-2.0504
Relationship not dependent on that of pastor
목회관계가 담임목사의 목회관계와 상관없음 G-2.0504a
Terms of call 청빙조건 G-2.0804

Assurance of God's Pardon 하나님의 용서의 확신 W-3.0102
W-3.0205
W-3.0402

At-Large Member (See also "Member-at-Large") 보통 회원
(참조 "Member-at-large") G-2.0503b

Audit (See "Financial Review") 감사 (참조 "재정 감사")

Authentic Language 진정성의 언어 W-1.0302

Baptism 세례:
Act of Christian service 기독교 섬김의 행위 W-4.0301
Anointing and 기름 부음과 W-3.0402
As a Sacrament 성례전으로서 W-3.0402
..... W-4.0101
As a response to Great Commission 대 위임명령에 대한 응답으로서 W-3.0402
Baptismal Discipleship and 세례적 제자도 및 W-3.0307
Chaplains and other ministers of the Word & Sacrament administering
기관목사 및 다른 말씀과 성례전 목사의 집례 W-3.0403
Children and 자녀들과 W-3.0402b
W-3.0403
W-3.0404
W-4.0201 부터
W-4.0203 까지
Church responsibility 교회 책임 W-3.0403
W-4.0201
Creeds and 신조와 W-3.0405
Font or pool for 세례반이나 침례탕 W-3.0407
God's redeeming grace 하나님 구원의 은혜 W-3.0402
Immersion 침례 W-3.0407
Included in service of 예식에 포함된 W-3.0402
Infant (See under "Baptism, Children and") 유아 (참조 "세례, 어린이들")
Jesus and 예수님과 W-3.0402
Laying on of hands and 안수와 W-3.0407
Lord's Supper and 성만찬과 W-3.0408
W-3.0409
Meanings of 의미 W-3.0402
Mode 방식 W-3.0407
New members 새교우 W-4.0204
Nurturing the baptized 세례받은 자들의 양육 W-4.0201
Parental responsibility and 부모의 책임과 W-3.0402
W-3.0403
Pouring 물 붓기 W-3.0407
Preaching and 설교와 W-3.0402
Preparing for 준비 W-3.0403

W-3.0404
Profession of faith and 신앙고백과 W-3.0405
W-4.0203
Reaffirmation of 재확인 W-3.0306
W-3.0307
W-4.02
Received only once 단 한 번 받음 W-3.0402
Recording of 기록 W-3.0403
Register of, to be kept 보관할 기록부 ..... G-3.0204 b
Renewal and fresh commitment 갱신과 새로운 결단 W-4.0205
Responsibility for 책임 W-3.0403
Roll of baptized members 세례교인 명부 G-3.0204a
Scripture and 성경과 W-3.0402
Sequence of 순서 ..... W-3.0404 부터 W-3.0407 까지
Service for the Lord's Day and 주일예배와 W-3.0402
Session's responsibility and 당회의 책임과 W-3.0403
Spirit and 성령과 W-3.0402
Sponsors and 후원자와 W-3.0404
Sprinkling 물 뿌림 W-3.0407
Theology of 신학 W-3.0402
Trinitarian formula and 삼위일체적 형식 W-3.0402
Use of name of person being baptized 세례받는 이의 이름 사용 W-3.0407
Water and 물과 W-3.0402
W-3.0407
Welcome of the congregation and 회중의 환영과 W-3.0408
Welcome to the Table 식탁으로의 초대 W-4.0202
Where administered 집례하는 장소 W-3.0403
Which are valid 유효한 세례 W-3.0402
Who may present children 자녀를 소개할 사람 G-1.0404
W-3.0403

Baptized Members 세례교인:
Defined 정의 G-1.0401
Entitled to participate in the Lord's Supper 성만찬에 참여할 권리 부여받음 G-1.0401
W-3.0402
W-3.0408
Register of baptisms kept by session 당회가 보관하는 세례 기록부 G-3.0204b
Roll of 명부 G-3.0204a

Benefits Plan of PC(USA) 미국장로교의 혜택플랜
Clarification of Participation in 참여의 명시 G-2.0804
Ministers of the Word and Sacrament participation in, as stated in call
청빙에 명시된대로 말씀과 성례전 목사의 참여 G-2.0804

Bible: Confessions Subordinate to 성경: 신앙고백은 부차적임 F-2.02

Biennial General Assemblies 격년제 총회:
Commissioners 총대들 G-3.0501
Proposed amendments to the *Book of Order* 규례서에 대한 개정 제안 G-6.04

Reporting and review of proceedings and actions
진행절차와 결의의 보고 및 검토 G-3.0108a

Blessing and Charge 축도와 권고 W-3.0502

Body of Christ, Church as the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F-1.0301

Book of Confessions 신앙고백서:
How amended 개정방법 G-6.03
Part of Constituion of the Church 교회 헌법의 일부 F-3.04

Book of Order 규례서:
How amended 개정방법 G-6.04
Part of Constituion of the Church 교회 헌법의 일부 F-3.04

Briefs 적요서:
Appellant 상소인 D-8.0304
D-13.0304
Appellee 피상소인 D-8.0305
D-13.0305

Broken Relationships, Pastoral Care and 깨어진 관계와 목회적 돌봄 W-3.0308
W-5.0204

Budget of Council 공의회의 예산 G-3.0113

Budget of Particular Church, Approval of, by Session
개체교회의 예산에 대한 당회의 승인 G-3.0205

Call to Certified Christian Educator 공인 기독교 교육사 청빙 G-2.1103

Call to Ordered Ministry 직제사역자 청빙 G-2.0103

Call, to Pastor 목사 청빙:
Called to beyond the jurisdiction of the church 교회관할권밖의 사역에 청빙할 때 G-2.0503
Election of Pastor Nominating Committee 목사 청빙위원회의 선출 G-2.0802
Installation Service 위임예배 G-2.0805
Minimum requirements 최소의 청빙조건 G-2.0804
Of another denomination 타 교단의 G-2.0505
Participation in Benefits Plan of PC(USA) 미국장로교의 혜택플랜에 참여 G-2.0804
Pastoral Vacancy 목사의 공석 G-2.0801
Presbytery must be consulted 노회와 협의해야 함 G-3.0307
Process 절차 G-2.0803
Terms of call 청빙조건 G-2.0804
Viewed as request for installation 위임 요구로 간주 W-4.0401

Called Meetings (See “Special Meetings”) 임시회의 (참조 “특별회의”)

Called to Ministry 사역으로의 부름 W-4.0401

Calling of the Church 교회의 소명 F-1.03

Calling to Ordered Ministries in the Church, Gifts Bestowed on Those Called
교회 직제사역자의 소명, 소명받은 자에게 부여된 은사들 G-2.0104

Candidates for the Ministers of the Word and Sacrament (See “Preparation for Ministry”)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후보생 (참조 “목회 준비”) G-2.06

Care of Creation 피조물을 돌봄 W.5.0305

Care, Pastoral 목회적 돌봄 W-5.0204

Cases 사건:
Disciplinary, defined 징계사건, 정의 D-2.0203
Remedial, defined 교정사건, 정의 D-2.0102

Catechisms, Larger and Shorter 대•소요리문답:
Part of the Constitution 헌법의 일부 F-3.04

Celebrations and Feasts 잔치와 절기 W-1.0202

Censures of Church 교회의 책벌:
Degrees of 정도 D-11.0403e
D-12.0101
Notice of temporary exclusion or removal of minister of the Word & Sacrament to be sent to General Assembly Stated Clerk
말씀과 성례전 목사의 임시정직 혹은 제적 통지를 총회 정서기에게 보고 D-12.0104g
Rebuke 견책 D-12.0102
Rebuke with ~을 수반한 견책 D-12.0103
Removal from ordered ministry or membership 직제사역 혹은 회원권의 제적 D-12.0105
Restoration 복구 W-4.0504
Supervised rehabilitation 감독 상담하에 복권 D-12.0104b
Temporary exclusion 임시 정직 D-12.0104
Termination of 종료 D-12.0104h

Certificate 증명서:
Affiliate member 관련교인 G-1.0403
Of Transfer 이명 G-1.0303b

Certification 자격 증명 G-2.1101

Certified Church Service 공인 교회 봉사 G-2.11
Christian Educators 기독교 교육사 G-2.1103
Forms of 형태들 G-2.1101
Mandatory Reporting 필수 보고 G-4.0302
Presbytery Responsibilities 노회 책임 G-2.1103b
Roll of 명부 G-3.0305
Skills and Training 기술과 훈련 G-2.1103a
Voice and Vote 발언권과 투표권 G-2.1103

Challenge to Findings of PJC Moderator and Clerk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과 서기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Appeal in a disciplinary case 징계사건의 상소 D-13.0302a
Appeal in a remedial case 교정사건의 상소 D-8.0302a
Remedial case 교정사건 D-6.0306a

Chaplain, Minister of the Word & Sacrament Called to Labor as
기관 목사로 사역토록 청빙된 목사 G-3.0306

Chaplains Authorized to Celebrate the Sacraments: 기관목사에게 성례전 집례 권한 부여
Baptism 세례 W-3.0403
Lord's Supper 성만찬 W-3.0410

Charge 권면:

To congregation at ordination and installation 안수와 위임시 교인에게 W-4.0403
To pastor or associate pastor at ordination and installation
안수와 위임시 담임목사 혹은 부목사에게 W-4.0403

Charges, in discipline 고발, 권징에 있어서 D-10.0101
D-10.0400

Child Abuse—Report Required 어린이 학대 – 보고해야 함 G-4.0302

Child Protection Policy 어린이 보호 정책 G-3.0106

Children: 어린자녀들
Admission to the Lord's Supper of Baptized 세례받은 자의 성만찬 참여 G-1.0401
Baptism and 세례와 W-3.0403
W-3.0404
Entitled to pastoral care and instruction 목회의 돌봄과 가르침을 받음 G-1.0401
Family worship and 가정예배와 W-5.0104
General 총체적 W-5.0104
Lord's Supper and 성만찬과 W-3.0409
Members of Church 교회의 교인 G-1.04
Participation in worship 예배의 참여 W-2.0201
W-3.0303

Choir (See "Music in Public Worship") 찬양대 (참조 "공중예배의 음악")

Christ: 그리스도
Alone rule, calls, teaches, and uses the Church
홀로 교회를 다스리고 부르고 가르치고 사용하심 G-2.0101
Head of the Church 교회의 머리 F-1.02
Living God in common life, the 일생생활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W-1.0106
Perfect Human Response to God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완전한 응답 W-1.0104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 교육 W-5.0203

Christian Nurture 기독교 양육 W-5.0203

Christian Worship 기독교 예배 W-1.01
W-1.0304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 W-1.0101

God's Covenant 하나님의 언약 W-1.0103

Grace and Gratitude 은혜와 감사 W-1.0102

Holy Spirit, the 성령 W-1.0105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W-1.0104

Word and Sacrament 말씀과 성례전 W-1.0106

Worship and the Church 예배와 교회 W-1.0107

Christian Year (See also "Church Year") 크리스천 절기 (참조 "교회력") W-1.0202
W-5.0103
W-5.0104

Christmas, Day and Season of 성탄일과 계절 W-1.0202

Church 교회: W-5.0104

And its confessions 그 고백 F-2.00
And its members 그 회원 G-1.0303
And its mission 그 선교 F-1.01
And its ordered ministries 그 직제사역 G-2.0102
And its unity 그 일치 F-1.0302a
Apostolicity of 그 사도성 F-1.0302d
As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F-1.0301
Authority of Christ 그리스도의 권위 F-1.0201
Catholicity of 그 보편성 F-1.0302c
Christ calls into being 그리스도가 존재토록 부르심 F-1.0202
Christ equips 그리스도가 준비시킴 F-1.0202
Christ gives its life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을 줌 F-1.0203
Christ is hope 그리스도가 희망임 F-1.0204
Christ is the foundation 그리스도가 기초임 F-.1.0205
Dissolved or extinct 해체 혹은 없어진 교회:
Members of 교인 G-3.0301c
Property of 재산 G-4.0205
Finances 재정 G-3.0113
God's mission 하나님의 선교 F-1.01
Great Ends of the Church 교회의 위대한 목적 F-1.0304
Holiness of 거룩함 ..... F-1.0302 b
Incorporation of 법인체 조직 G-4.0101
Mark of 표지 F-1.0302
Membership 회원 G-1.04
Mission in the world 세상에서의 선교 W-5.03
Mission of 선교/사명 F-1.01
Ordered Ministries of 직제사역 G-2.0102
Powers of corporation or trustees 법인체 혹은 재단이사의 권한 G-4.0101
Property 재산 G-4.02
Reformed, always reforming 개혁했고 항상 개혁하고 있음 F-2.02
Rolls of particular 개체교회의 명부 G-3.0204a
Trustees of 재단이사 G-4.0101
Unity of 일치 F-1.0302a
Universal 보편(세계)적 F-3.0101b

Church Censures (see also "Censures of Church") 교회 책벌 (참조 "교회의 책벌") D-12.0100

Church Finances: 교회 재정
Annual financial review required 연례 재정검토 요구 G-3.0113
Session's responsibility 당회의 책임 G-3.0205
Treasurer elected by session 회계는 당회에 의해 선출 G-3.0205

Church Location 교회 위치 G-3.0303b

Church Officers (See "Ordered Ministry"; see also "Deacons," "Ruling Elders,"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교회 직분자 (참조 "직제사역"; "집사," "사역장로," "말씀과 성례전 목사")

Church Power 교회 권한:
Cannot bind conscience 양심을 속박할 수 없음 F-3.0107
Ministerial and declarative 목회적이며 선언적 F-3.0107
Not aided by the civil power 공권력의 도움없이 F-3.0101b

Church Property 교회 재산:
As a tool for mission 선교의 도구로서 G-4.0201
Congregation in schism 분열중인 교회 G-4.0207
Decisions concerning property 재산에 관한 결정 G-4.0202
Dissolved or extinct congregation 해체 혹은 없어진 교회 G-4.0205
Exceptions to provisions 규정에의 예외조항 G-4.0208
Held in trust 신탁으로 보관 G-4.0203
Selling, encumbering, or leasing 매각, 저당, 임대 G-4.0206
Subject to the authority of the session 당회의 권한에 종속됨 G-4.0101
Trustees 재단이사 G-4.0101
Used contrary to the Constitution 헌법에 어긋난 사용시 G-4.0204

Church Treasurer: 교회 회계
Elected by the session 당회에 의해 선출 G-3.0205
Work supervised by the session 당회의 감독하에 일함 G-3.0205

Church Unions 교회 연합:
Organic union by denomination 교단에 의한 조직적 연합 G-5.03
Particular churches (see also Joint Congregational Witness)
개체교회 (참조 "교회의 선교적 연합") G-5.05

Church Year 교회력:
General 총체적 W-1.0202
W-5.0103
W-5.0104
Lectionaries and 성구집과 W-3.0301
Seasons and days of 계절과 날들 W-1.0202
W-5.0103
W-5.0104

Churches 교회:
Federated 연방교회 G-3.0109b
In correspondence 통신관계에 있는 G-5.0201

Citations 소환장 D-11.0201
If defendant does not appear 만일 피고가 출두하지 않으면 D-11.0202b
Second 이차 소환 D-11.0202a
Service of 소환장 전달 D-11.0202

Civil Marriage, Recognition of 민사법에 의한 결혼 승인 W-4.0601
W-4.0604

Civil Powers and Religion 민사 권한과 종교 F-3.0101

Civil Proceedings, Concurrent with Investigating Committee Work
민사 사법 절차, 조사위원회의 일과 동시적 D-10.0401a

Clerk 서기:
Duties in case of process 절차상 의무 D-11.0601
Of congregational meeting 공동의회의 G-1.0505
Of session, presbytery, synod, General Assembly 당회, 노회, 대회, 총회의 G-3.0104
Reporting decisions 결정을 보고 D-11.0700
Responsibilities of 책임 G-3.0104

Commission of Council 공의회의 전권위원회:

Administrative 행정적 G-3.0109b
Judicial 사법적 G-3.0109a
D-5.0000
Membership of 위원 G-3.0109
D-5.0101–.0105
Permanent judicial commissions 상임사법전권위원회 D-5.0000
Presbytery and synod shall appoint permanent judicial commission
노회와 대회는 상임사법전권위원회를 임명해야 함 D-5.0101
Quorum of 정족수 D-5.0204
Size of 크기
For presbytery, synod, General Assembly 노회, 대회, 총회를 위한 G-3.0109b
D-5.0101
For session 당회를 위한 G-3.0109

Commissioned Lay Pastor: (See "Commissioning Ruling Elders to Particular Pastoral Service") 평신도 목회자 (참조 "평신도 목회자 위임/파송")

Commissioners 총대:
To General Assembly 총회에 보내는:
Number from each presbytery 각 노회에서 보내는 숫자 G-3.0501
Number required for a quorum 정족수에 필요한 숫자 G-3.0503
To presbytery 노회에 보내는 G-3.0301
To synod 대회에 보내는 G-3.0401

Commissioning (See also "Confirmation and Commissioning")
위임/파송 (참조 "입교와 파송"):
Baptism and 세례와 W-3.0402
For service 예배에서 W-4.03
Service for the Lord's Day and 주일예배와 W-4.0402
W-4.0403
Specific acts of discipleship and 제자직의 특별한 행위 W-3.0307
W-3.0402
W-4.0301

Commissioning Ruling Elders to Particular Pastoral Service 평신도 목회자의 위임/파송:
Commissioning 위임/파송 G-2.1002
Confidentiality 비밀 보장 G-4.0301
Examination 시험 G-2.1002
Functions 직무 G-2.1001
May administer baptism 세례를 집례할 수 있음 G-2.1001
May administer Lord's Supper 성만찬을 집례할 수 있음 G-2.1001
May be engaged in Validated Ministry 인정된 목회를 할 수 있음 G-2.1001
May perform services of marriage 결혼식을 주례할 수 있음 G-2.1001
Period valid 유효 기간 G-2.1001
Questions to be answered 대답해야 할 질문 W-4.0404
Training, Examination, and Commissioning 훈련, 시험, 위임 G-2.1002

Commissioning Service 위임/파송식 G-2.1003
Supervision 감독 G-2.1004

Commitment and Recognition, Acts of 결단과 인정의 행위 W-3.0501
W-4.0502
W-4.0205

Committal, Service of 하관식 W-4.0703

Committee of Counsel Defined 변호인단의 정의 D-6.0302
Provide for by Rule 규칙에 따라 제공 D-6.0302a
Who shall not serve on 봉사하지 못할 자 D-6.0302b

Committee on Ministry: (See "Pastor, Counselor, and Advisor to Ministers of the Word and Sacrament and Congregations")
목회위원회: (참조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회중에 대한 목회자, 상담자, 조언자")

Committee on Preparation for Ministry (See "Pastor, Counselor, and Advisor to Ministers of the Word and Sacrament and Congregations"; see also "Preparation for Ministry") 목회후보생위원회 (참조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회중에 대한 목회자, 상담자, 조언자"; "목회를 위한 준비")

Committee on Representation 대표위원회 G-3.0103

Committees of Council 공의회의 위원회 G-3.0109
Defined 정의 G-3.0109

Communion: 성찬/교류
Full Communion 완전교류 G-5.0202
Lord's Supper (See also ""Lord's Supper") 성만찬 (참조 "주님의 만찬") W-5.0206

Community 공동체:
Christian worship and 기독교 예배와 W-2.0301, W-5.0201
Wider human ministry to 인류를 위한 광범위한 사역 W-1.0203, W-5.02

Community of Faity, Worship and Church's Ministry within 신앙공동체, 예배와 교회사역 W-5.02

Compassion, Ministry of 구호 사역 W-5.0303

Compensation 보수 G-2.1103b, G-3.0303

Complaint 고소:
Against council at same level 동일한 수준의 공의회를 상대 D-6.0202a
Answer to 답변 D-6.0303
Committee of counsel 변호인단 D-6.0302
Defined 정의 D-6.0102
Duty of respondent 피고의 의무 D-6.0304
Employee may file 피고용인이 제출할 수 있음 ..... D-6.0202 a,b
Filed only request to correct delinquency 비행의 교정을 요청한 후에만 서류 접수 D-6.0102
Motion to dismiss 기각 동의 D-6.0303
Pretrial proceedings 사전 심리 절차 ..... D-6.0307 부터 D-6.0310 까지
Procedure prior to trial 심리 전의 절차 D-6.0305
Statements in 진술서 D-6.0301
Stay of enforcement 집행유예 D-6.0103a
Time within which to file 서류접수 시한 D-6.0103a
Trial briefs, contents of 심리 적요서의 내용 D-6.0306
Who may file and against whom 서류 접수자와 피소인 D-6.0202

Confession and Forgiveness 고백과 용서 W-3.0205

Confessional Statements 신앙고백 선언:
As Faith of the Church catholic 보편적 교회의 신앙으로서 F-2.03
As Faith of the Protestant Reformation 개신교 개혁의 신앙으로서 F-2.04
As Faith of the Reformed tradition 개혁전통의 신앙으로서 F-2.05
As Subordinate standards 부차적 표준으로서 F-2.02
Purpose of 목적 F-2.01

Confidence and Privilege 비밀 보장과 특권 G-4.03
Mandatory reporting 의무적 보고 G-4.0302
Trust and confidentiality 신뢰와 비밀 보장 G-4.0301

Confirmation and Commissioning 입교와 파송 W-4.0203

Congregation 개체교회/회중 G-1.01
Defined 정의 G-1.0101
Fellowship of 교제 G-1.0102
Governed by the Constitution 헌법에 따라 치리 G-1.0103
Mission of 선교/사역 G-1.0101
Organizing of 조직 G-1.02
Questions asked at ordination and installation 안수와 위임시에 묻는 질문:
of deacons and ruling elders 집사와 사역장로의 W-4.0404
of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말씀과 성례전 목사의 W-4.0404

Congregational Meetings 공동의회:
Annual and special meetings 연례회의와 임시회의 G-1.0501
Business Proper to Congregatinal Meetings 공동의회에 적절한 안건 G-1.0503
Calling a Congregational Meeting 공동의회의 소집 G-1.0502
For calling a pastor 목사 청빙을 위한 G-1.0503
G-2.0802
For electing ruling elders, deacons, and trustees 사역장로, 집사,
재단이사 선출을 위한 G-1.0503
G-2.0102
For matters related to church property 교회 재산에 관련된 사안을 위한 G-1.0503
For matters related to pastoral relationship 목회관계에 관련된 사안을 위한 G-1.0503
For matters requesting an exemption 예외를 요구하는 사안을 위한 G-1.0503
Minutes 회의록 G-1.0505
Moderator 의장 G-1.0504
Nominating and voting requirements 공천과 투표 요구사항 G-2.0401
Parliamentary Procedure, *Robert's Rules of Order, Newly Revised*
의사 절차, *최신판 로버트의 의사진행규칙* G-3.0105
Public notice 공고 G-1.0502
G-2.0802
Questions asked at installation of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위임시에 묻는 질문 W-4.4006a–b
Quorum of 정족수 G-1.0501
Secretary of, is clerk of session 공동의회 서기는 당회서기임 G-1.0505

Conscience 양심:
Church judicatory can make no laws to bind
교회 공의회가 양심을 구속할 법을 제정하지 못함 F-3.0107
Freedom of 자유 G-2.0105
God alone is Lord of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심 F-3.0101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미국장로교 헌법:
Amendments to special provisions 특별조항에 대한 개정 G-6.06
Always to be reformed 항상 개혁되고 있음 G-6.02
Book of Confession 신앙고백서 F-3.04
Book of Order 규례서 F-3.04
Defined 정의 F-3.04
How amended 개정방법:
Book of Confessions 신앙고백서 G-6.03
Book of Order 규례서 G-6.04
Exceptions 예외 G-6.05
Interpreting 해석 G-6.02
Reform 개혁 G-6.01

Constitutional Questions, Affirmative Answer Required 헌법 질문, 긍정적 대답 요구:
In ordaining and installing deacons and ruling elders
집사와 사역장로의 안수와 위임에 있어서 W-4.4003
In ordaining and installing ministers of the Word & Sacrament
말씀과 성례전 목사의 안수와 위임에 있어서 W-4.4003

Continuity and Change 연속성과 변화 F-1.0401

Co-Pastors 동사목사 G-2.0504
G-3.0104
Associate pastor cannot be called as 부목사 청빙받지 못함 G-2.0504a
Exception 예외 G-2.0504c
When one leaves, the other is pastor 한 목사가 떠날 때 다른 목사는 담임목사임 G-2.0504a

Corporation (See also "Incorporation") 법인체(참조 "법인 조직") G-4.0101

Correspondence: 교신관계:
Churches in 교신관계에 있는 교회들 G-5.0201
Requirement for 요구사항 G-3.0501

Councils 공의회들 G-3.01
General Assembly 총회 G-3.05
Presbytery 노회 G-3.03
Session 당회 G-3.02
Synod 대회 G-3.04

Councils of the Church 교회의 공의회들 G-3.01
W-5.0205
Administration of Mission 선교의 집행 G-3.0106
Administrative Review 행정적 검토 G-3.0108
General Review 일반적 검토 G-3.0108a
Directed Response 지시된 응답 G-3.0108c
Special Review 특별 검토 G-3.0108b
Administrative staff 행정 직원 G-3.0110
Annual audits required 요구된 연례 감사 G-3.0113
As an Expression of Unity of the Church 교회 일치의 표현으로서 G-3.0101
Can make no laws to bind conscience 양심을 구속하는 법을 만들 수 없음 F-3.0107
Clerks 서기 G-3.0104
Commissioning and 위임/파송과 W-4.0301
Committee on representation 대표위원회 G-3.0103

Committees and Commissions 위원회와 전권위원회 G-3.0109
Defined 정의 G-3.0101
Equitable compensation 적절한 보수 G-3.0106
Fair employment practices 공정한 고용 실행 G-3.0106
Finance 재정 G-3.0113
Have only ecclesiastical jurisdiction 교회 관할권만 가짐 G-3.0102
Inclusiveness 포괄성 F-1.0403
G-3.0103
Inquiry by, in disciplinary case 징계사건에 있어서 심의 D-10.0102b
Insurance 보험 G-3.0112
Jurisdiction, only ecclesiastical 오직 교회적 관할권만 G-3.0102
Maintain relations and activities with other Churches to express unity of the Church
교회의 일치를 나타내기 위해 다른 교단과의 관계 및 활동 유지 G-5.01
Majority shall govern 과반수로 다스림 F-3.0205
Manual of administrative operations to be developed 행정 지침서의 개발 G-3.0106
Meetings 회의 G-3.0105
Minutes and records of 회의록과 기록 G-3.0107
Mission determines the form and structures 사명이 형태와 조직을 규정함 G-3.0106
Moderators of 의장 G-3.0104
G-3.0105
Names of 이름 G-3.0101
Nominating Process 공천 과정 G-3.0111
Operating expenses 운영 비용 G-3.0106
Participation 참여 G-3.0103
Per capita funds 상회비 G-3.0106
Presbytery 노회 G-3.03
Principles, General Administration 일반 행정 원칙: G-3.01
Defined 정의 G-3.0106
Procedure when lower council delinquent or irregular
하위 공의회의 비행이나 변칙시의 절차 D-2.0202
Records 기록 G-3.0107
Records of lower council reviewed by next higher
하위 공의회의 기록을 차상위 공의회가 검토 G-3.0108
Regular gradation 정규적 단계 F-3.0203
Robert's Rules of Order, Newly Revised, meetings governed in accordance with
most recent edition of 최신판 *로버트 의사 진행규칙* 에 따라 회의를 진행 G-3.0105
Representation 대표 G-3.0103
Session 당회 G-3.02
Synod 대회 G-3.04
Unity of 일치 G-3.0101
Worship in 예배 W-5.0202
W-5.0202

Counsel 변호인:
If accused is unable to employ 피소인이 고용치 못할 때 D-11.0302
Right to be represented by 변호인을 대리로 세울 권리 D-7.0301
D-10.0203c
D-11.0301

Counselor for accused—not testify 피소인을 위한 변호인은 증언하지 못함 D-14.0203

Court Reporter 법정 기록자 D-7.0601a
D-14.0303

Covenant 계약:
Community 공동체 F-3.01
Constituting, for new church 새 교회 조직에 있어서 G-1.0201
Living in 계약의 삶 F-1.01

Creation, Care of 창조적 돌봄 W-5.0305

Creeds and Confessions 신조와 신앙고백:
Baptism and 세례와 W-3.0402
W-3.0405
General 총체적 W-3.0306
Lord's Supper and 성만찬과 W-3.0306
Service of the Lord's Day and 주일예배와 W-3.0306

Cultural Diversity 문화적 다양성 W-2.0201

Culture 문화 W-1.0304

Daily Prayer, Services of 매일기도, 예배 W-5.0202

Daily Worship (See also "Service of Daily Prayer") 매일 예배 (참조 "매일 기도회"):
Discipline of 훈련 W-1.0202
W-1.0203
General 총체적 W-1.0202
Prayer and 기도와 W-1.0202
Scripture and 성경과 W-1.0106
W-5.0101

Deacons 집사:
Board of 집사회 G-2.0202
Defined 정의 G-2.0201
Dissolution 해소 G-2.0405
Election 선출 G-2.0401
Examination 시험 G-2.0402
Mandatory Reporting 필수 보고 G-4.0302
Ordination and Installation 안수와 위임 G-2.0403
W-4.0404
Preparation for Ministry 사역을 위한 준비 G-2.0402
Questions in ordination 안수 서약 질문들 W-4.0404
Release from the exercise of the ordered ministry 직제사역에서 해제 G-2.0406
Renunciation of Jurisdiction 관할권의 파기 G-2.0407
Resignation of 사임 G-2.0405
Responsibilities of 책임 G-2.0201
W-2.0302
W-3.0308
Supervised by session 당회에 의한 감독 G-2.0202
Terms of Service 임직 기간 G-2.0404
Under Authority of the Session 당회의 권위하에 G-2.0202

Death (See also "Services on the Occasion of Death") 사망 (참조 "장례식"):
Care at the time of 사망시의 돌봄 W-4.0701

Delete names from the roll 명부에서 이름 삭제 G-3.0204

Deletion of Name of 이름 삭제:
Member joining some other church 다른 교회로 간 교인 G-3.0204
Renouncing jurisdiction 관할권의 파기시 G-2.0407
G-2.0509

Delinquency 비행:
Defined 정의 D-2.0202b
Statement in complaint 고소의 진술 D-6.0301
Subject of remedial cases 교정사건의 주제 D-6.0102

Deposition, Testimony Taken by 조서에 의해 취해진 증언 D-7.0205
D-14.0304

Designated Pastor 임명 목사 G-2.0805

Desire to be Restored to Ordered Ministry 직제사역에 복권되기 원함 G-2.0507

Directory for Worship: 예배 모범
Its authority 그 권위 ..... W-서문
What it is 그 내용 ..... W-서문

Disability: 신체 장애
Inclusion of persons with 신체장애자를 포함 F-1.0403

Discipleship, Other Practices of 제자도와 다른 관행들 W-5.0103

Disciplinary Cases 징계사건:
Accused, rights of 피소인의 권리 D-10.0203c
Charge, filing of 고소 접수 D-10.0404
Charge, form of 고소 양식 D-10.0403
Council inquiry 공의회 심문 D-10.0102
Counsel 변호인 D-7.0301
D-10.0203
Defined 정의 D-2.0201
Disciplinary committee inquiry 징계위원회 심문 D-10.0103
Enforcement of judgment 판결의 집행 D-11.0801
Individual and self-accusation 개인적 그리고 자책으로 D-10.0102c
Written statement regarding 문서 진술 D-10.0102c
Initiation, method of 주도 (시작)하는 방법 D-10.0101
Investigating committee 조사위원회 D-9.0101
D-10.0103
D-10.0201
D-10.0402
Designation of, between meetings of presbytery 노회 회기 사이에 지명 D-10.0201b
Notifying a presbytery other than the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s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소속 노회가 아닌 노회에 통보 D-10.0105
Parties are Presbyterian Church (U.S.A.) and accused
당사자는 미국장로교와 피소인임 D-10.0402
Petition for review 검토의 청원 D-10.0303
Quorum 정족수 D-5.0204
Scope 범위 D-10.0204
D-10.0405

Prehearing conference 예비 청문회 D-13.0307
Preliminary procedure 예비 절차 D-10.0100
Pretrial challenges 심리전 이의 제기 D-10.0204
Pretrial conference 심리 전의 협의 D-10.0405
Prosecution of case 사건의 기소 D-10.0402
Referral of allegations to special disciplinary committee
특별징계위원회에 혐의 통보 D-10.0103
Renunciation, effect of 파기의 효력 D-3.0106
Temporary exclusion 임시 정직 D-12.0103
Time limit for filing charges 고소 접수의 시간 제한 D-10.0401
Transfer prohibited while pending 계류 중 이명 금지 D-10.0105
Vindication, request for 결백 입증 요구 D-9.0101

Discipline (See also entire Rules of Discipline) 권징 (참조 "권징조례 전부"):
Context of pastoral care and oversight 목회적 돌봄과 감독의 상황 D-2.0101
Daily worship and 매일 예배와 W-1.0203
Defined 정의 D-1.0101 부터 D-1.0102 까지 D-2.0101
Judicial process 사법 절차 D-2.0100
Purpose of 목적 D-1.0101

Dismissal 퇴거/해산:
Church members 교인 G-3.0204
Churches 교회 G-3.0301

Dissent 반대:
Defined 정의 G-3.0105
When made 반대할 때 G-3.0105

Dissolution of Pastoral Relations 목회관계의 해소:
Activities following dissolution 해소 후의 활동 G-2.0905
By congregation request 회중의 요청에 의해 G-2.0903
By Pastor, Co-Pastor, or Associate Pastor Request
담임목사, 동사목사, 혹은 부목사의 요청에 의해 G-2.0902
By Presbytery Action 노회의 결의에 의해 G-2.0904

Dissolving Church 교회 해체:
Power of presbytery 노회의 권한 G-3.0301
Property of 재산 G-4.0205

Dissolving Relation of Deacon or Ruling Elder 집사 혹은 사역장로의 관계 해소:
By session 당회에 의해 G-2.0405
When change of residence or disability 거주지 변경이나 신체장애 시 G-2.0405

Diverse Language 다양한 언어 W-1.0302

Diversity 다양성 F-1.0403

Doctrine: System of, received and adopted by all persons in ordered ministry
교리: 모든 직제사역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채택된 교리 체계 W-4.0404

Duties of Presbytery and Session in Inquiry and Candidacy
지망생과 후보생 과정에 있어 노회와 당회의 의무 G-2.0605

Easter, Day and Season of 부활주일과 계절 W-1.0202
W-3.0103
W-5.0104

Ecclesiastical Jurisdiction (See also "Jurisdiction of Councils of the Church")
교회적 관할권 (참조 "교회 공의회들의 관할권): F-3.0102
A shared power 공유하는 권한 F-3.0208

Ecumenical Commitment 에큐메니컬 참여 G-5.01
Ecumenicity 에큐메니시티 G-5.0101
Full Organic Union 완전한 조직적 연합 G-5.03
Interfaith relations 종교간 관계 G-5.0102
Relations with other denominations 타 교단과의 관계 G-5.02
Correspondence 통신관계 G-5.0201
Ecumenical statements 에큐메니컬 선언서 G-5.0203
Full Communion 완전 교류 G-5.0202
Secular organizations 세속 기관들 G-5.0103

Education (See also "Christian Nurture") 교육 (참조 "크리스천 양육"):
Presbyery's responsibility for 노회의 책임 W-3.0410
Session's responsibility for 당회의 책임 W-3.0203

Educator (See also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교육자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참조) G-2.1103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also called Teaching Elder)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교역장로라고도 부름) G-2.0501

Elders (See "Ruling Elders") 장로 (참조 "사역장로")

Election of Deacons and Ruling Elders: 집사와 사역장로의 선출
By vote of congregation 교인의 투표에 의해 G-2.0102
Congregational meeting called 공동의회 소집 G-2.0401
Elected for limited term 제한된 임기를 위해 선출 G-2.0404
Election provisions 선출 규정 G-2.0401
Examined by session 당회의 시험 G-2.0402
Ordination and installation 안수와 위임 G-2.0403
W-4.0401
W-4.0403
W-4.0404
Preparation for ministry 사역을 위한 준비 G-2.0402
Procedure in congregational meeting 공동의회의 절차 G-2.0401
Who are entitled to vote in congregational meeting
공동의회에서 투표자격을 가진 자 G-1.0501

Election of General Assembly Nominating Committee 총회 공천위원회의 선출 G-3.0111

Election of Pastor Nominating Committee 목사 청빙위원회의 선출 G-2.0802

Election of Pastors (or Associates) 목사 (혹은 부목사)의 선출:
Call Process 청빙 절차 G-2.0803
Call to ministers of the Word & Sacrament of another denomination
타 교단 목사의 청빙 G-2.0505
Installation service 위임 예배 G-2.0805
Pastor Nominating Committee 목사 청빙위원회 G-2.0502

Pastoral relationships 목회 관계 G-2.0504
Temporary pastoral relations 임시 목회관계 G-2.0504b
Terms of call 청빙 조건 G-2.0804

Election of Trustees 재단 이사의 선출 G-4.0101

Employee—Standing to file remedial complaint
피고용인 – 교정사건을 접수할 수 있는 위치 ..... D-6.0202a, b

Enforcement of Judgment 판결의 집행 D-11.0801
Refrain from exercise of ordered ministry pending appeal
상소 계류중 직제사역의 직분 행사를 금지 D-11.0801

Entry to Membership 회원 가입 G-1.0303

Epiphany, Day of 현현절 W-1.0202

Equitable Compensation 적절한 보수 G-3.0106

Evangelism 전도:
Ministry of 전도 사역 W-5.0302
Services for (See also "Services for Evangelism")
전도예배 (참조 "전도를 위한 예배") W-5.0302

Evangelist 전도자 G-3.0306

Evidence in Remedial or Disciplinary Cases (See also "Testimony in Remedial or Disciplinary Cases")
교정 혹은 징계사건에 있어서의 증거 (참조 "교정 혹은 징계사건에 있어서의 증언"):
Defined 정의 D-14.0101
Kinds of 종류 D-14.0101
Newly discovered evidence 새로이 발견된 증거 D-14.0501
Proof of charge 고소의 입증 D-11.0401
Proof of complaint 고발의 입증 D-7.0402

Examination 시험/고시:
Of candidate for ordination 안수 후보생의 G-2.0607
Of deacon or ruling elder 집사와 사역장로의 G-2.0402
Of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for admission to presbytery
노회 가입을 위한 말씀과 성례전 목사의 G-3.0306

Exceptions 예외:
To church property provisions 교회 재산 규정에 대한 G-4.0208
To serve as the next installed pastor 차기 위임 목사로서 청빙에 대한 G-2.0504c
To waive any of the requirements for ordination 안수 요구조건의 면제에 대한 G-2.0610

Executives 행정 책임자:
Election of 선출 G-3.0110
Termination 종결 G-3.0110

Faith and Practice, Connection Between 신앙과 실천의 연결 F-3.0104

Faith, Reaffirmation of 신앙의 재확인 G-1.0303

Families and Worship 가족과 예배 W-5.0104

Fasting 금식 W-1.0303
W-5.0103

Federated Congregation 연방교회 G-3.0109

Filing a Complaint (See also "Complaint") 고소 접수 (참조 "고소") D-6.0200

Filing Deadline 접수 시한:
Complaint of delinquency 비행의 고소 D-6.0202
Complaint of irregularity 변칙의 고소 D-6.0202
Final judgment in judicial case 사법사건에 있어서 최종 판결 D-7.0402c

Filing of Charges 고발의 접수 D-10.0401

Filings in Appeal Process for Disciplinary Case 징계사건에 대한 상소절차의 접수 D-13.0200

Filings in Appeal Process for Remedial Case 교정사건에 대한 상소절차의 접수 D-8.0200

Final Assessment 최종 평가 G-2.0607

Finance, of Councils 공의회의 재정 G-3.0113

Financial Review (Full) Required 재정 검토(완전한) 필요 G-3.0113

Floor Nominations 현장 공천 G-2.0401

Forgiveness 용서 W-3.0205

Forms of Worship (See also "Ordering Worship") 예배 형식 (참조 "예배 순서") W-2.0102

Foundational Statements 기초 선언문 F-3.03

Freedom of Conscience 양심의 자유 G-2.0105

Full communion 완전 교류 G-5.0202

"Full Faith and Credit" Clause "완전 신뢰와 신용" 조항 D-3.0105

Full organic union 완전한 조직적 연합 G-5.03

Funerals (See also "Services on the Occasion of Death")
장례 (참조 "장례 예식") ..... W-4.0702 에서 W-4.0704 까지

Furnishings (See also "Space for Worship") 설비 (참조 "예배 공간") W-1.0204

General Assembly 총회:
Advisory Committee on the Constitution 헌법자문위원회 G-6.02
Basis of representation 대표성의 근거 G-3.0501
Budget 예산 G-3.0113
Commissioners from presbyteries 노회의 총대 G-3.0501
Committee on representation 대표위원회 G-3.0103
Composition 구성 G-3.0501
Defined 정의 G-3.0501
Fair employment practice 공정한 고용정책 실시 G-3.0106
Incorporated 법인체 등록 G-4.0101
Jurisdiction 관할권 G-3.0501a
Meetings 회의 G-3.0105, G-3.0503
Minutes and records 회의록과 기록 G-3.0107
Moderator 총회장 G-3.0501
Nominating Process 공천절차 G-3.0111

Notice of special meetings at least sixty days in advance
적어도 60 일 전에 임시회의의 소집 통보 G-3.0503
Quorum 정족수 G-3.0503
Relationship with Other Councils 타 공의회와의 관계 G-3.0502
Requirements of search committee for executives and administrative staff
총무와 행정 직원의 선정위원회의 요구사항 G-3.0110
Responsibilities 책임 G-3.0501
Staff 직원 G-3.0110

Gifts of the Spirit 성령의 은사:
Manifestation in worship 예배 중에 나타남 W-1.0105
Role in the Church 교회에서의 역할 W-2.0301

Giving, Christian 크리스천의 봉헌 W-3.0411
W-5.0104

God 하나님:
Covenant, God's 하나님의 언약 W-1.0103
Encounter with humans 인간과 대면하심 W-1.0101
Entrance into the human condition 인간의 모습으로 들어오심 W-1.0103
Glory to 영광 W-1.0101
Initiative of 주도권 W-1.0101
Spirit of 하나님의 영 W-1.0105

Governing bodies: (See "Councils of the Church") 치리회: (참조 "교회의 공의회들")

Grace and Gratitde 은혜와 감사 W-1.0102

Grounds for Appeal 상소의 근거
Disciplinary 징계사건 D-13.0106
Remedial 교정사건 D-8.0105

Harm, Risk of, Knowledge of 상해 위험이 있다는 정보 G-4.0302

Head of the Church 교회의 머리 F-1.02

Healing Services 치유 예배 W-5.0204

Higher Council, Reviews Records of Lower Councils
상위 공의회는 하위 공의회의 기록을 검토 G-3.0108

Historic Principles of Church Order 교회 규례의 역사적 원리 F-3.01

Holy Spirit 성령:
Anointed Christ in Baptism 그리스도를 세례에서 기름 부으심 W-1.0105
Baptism and 세례와 W-3.0402
W-3.0406 에서
W-3.0407 까지
Gifts for ministry and mission 사역과 선교의 선물 W-1.0105
Giver and renewer of life 생명을 주시고 갱신하심 W-1.0105
Healing and 치유와 W-5.0204
Lord's Supper and 성만찬과 ..... W-1.0105 에서
W-1.0106 까지
W-3.0409
W-3.0412
Ordering worship and 예배 순서와 W-2.0101

Preaching and 설교와 W-1.0302
Role in worship 예배에서의 역할 W-1.0302
W-3.0301
W-3.0302
Scripture and 성경과 W-2.0101

Holy Week 고난 주간 W-1.0202

Homebound—Lord's Supper 집으로 찾아 가서 행하는 성만찬 W-3.0414

"Honorably Retired"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명예은퇴" 말씀과 성만찬 목사
Defined 정의 G-2.0503c
Membership in a presbytery 노회 회원권 G-2.0503
Presbytery may so designate 노회가 그렇게 지정할 수 있음 G-2.0203c

Household Worship 가정 예배 W-5.0104

Husband Not Compelled to Testify Against Wife
남편이 아내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될 수 없음 D-14.0202

Hymnals and Song Books 찬송가와 찬양집 W-2.0305

Illness, Care in 신병중인 자의 돌봄 W-5.0204

Immigrant Congregations, Mission Needs of, and Non-geographic Presbyteries
이민교회의 선교적 필요와 비지역노회 G-3.0403

Immigrant Pastors 이민 온 목사 G-2.0505

Inclusive Language 포괄적 언어 W-1.0302

Inclusiveness 포괄성 F-1.0403
G-3.0103
In worship 예배에 있어서:
General 총체적 W-1.0302
W-2.0201
Lord's Supper and 성만찬과 W-3.0409

Incorporation 법인체 조직:
At same congregational meeting 같은 공동의회에서 G-1.0503
Members of 회원 G-4.0102
Power 권한 G-4.0101
Trustees of 재단이사 G-4.0102

Infants: Membership in Church 유아: 교회의 회원권 G-1.04
On membership roll if baptized 세례시 교인 명부에 G-1.0401
G-3.0204

Initiating Appeal in Disciplinary Case 징계사건의 상소의 주도 D-13.0102
D-13.0106a

Inquirer, Preparation for Ministry 지망생, 목회를 위한 준비:
Authorized to administer Lord's Supper if ordained
안수받으면 성만찬을 집례하도록 허락됨 G-2.0606
Covenant relationship with presbytery 노회와의 계약관계 G-2.0601
Transfer of 이명 G-2.0608
Withdrawal from 철회 G-2.0609

Enrollment of 등록 G-2.0602
Exemption from some educational requirements 일부 교육 요구사항 면제 G-2.0610
Oversight 감독 G-2.0605
Purpose of 목적 G-2.0603
Exemption from some educational requirements 명부에서 삭제 G-2.0609
Oversight 교회에 봉사 G-2.0606
Session responsibility 당회 책임 G-2.0605
Transfer to another presbytery 다른 노회로 이명 G-2.0608

Inquiry by Council 공의회에 의한 심의 D-10.0102b

Installation (See also "Call") 위임 (참조 "청빙"):
Service 위임식 G-2.0805
Service for the Lord's Day and 주일예배와 W-4.04
W-4.0401

Installation of Ruling Elders or Deacons 사역장로나 집사의 위임 ..... W-4.0401 에서
W-4.0404 까지

Installation of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말씀과 성례전 목사의 위임:
Procedure 절차 W-4.04
Questions asked candidate 후보자에게 묻는 질문 W-4.0404
Questions asked congregation 회중에게 묻는 질문 W-4.0404
Questions asked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목사에게 묻는 질문 W-4.0404

Insurance, Property and Liability 보험, 재산과 책임보증 G-3.0112

Interfaith Gatherings 종교 간 모임 W-5.0206

Interim Pastor, Associate: (See "Temporary Pastoral Relationships")
임시 목사, 부목사: (참조 "임시적인 목회관계")

Interpreting the Constitution 헌법의 해석 G-6.02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권위적 해석 G-6.02

Investigating Committee 조사위원회:
Accusation from other council 타 공의회로부터의 고소 D-10.0104
Appointment of, between meetings of council 공의회 회기 사이에 임명 D-10.0201b
Conference, term defined 협의, 내용 명시 ..... D-10.0203a, b
Expenses 비용 D-10.0201c
Inquiry by 심의 D-10.0202
Membership 위원 D-10.0201a
Petition for review 검토 청원 D-10.0303
Procedures provided to person making accusation 고소인에게 제공되는 절차 D-10.0202b
Prosecuting Committee 기소위원회 D-10.0202j
Referral of allegations to 범법혐의의 회부 D-10.0103
Responsibilities of 책임 D-10.0202
Rights of Accused 피소인의 권리 D-10.0203c
When request for vindication 결백입증을 요청시 D-9.0101a

Irregularity, Defined 변칙, 정의 D-2.0202

"Is to be" as a Term Defined in the "이어야한다"는 용어의 정의 ..... 서문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As Head of the Church (See also "Christ") 교회의 머리로서 (참조 "그리스도") F-1.02

Bearing witness to 증언 하기 W-1.0106
W-1.0204
In Christian worship 기독교 예배에서 W-1.0106
W-1.0204
Worship of 예배 W-1.0104

Joint Congregational Witness 선교를 위한 교회연합 G-5.05

Judgment of Court Suspended, Effect of Complaint Stayed
재판의 판결 보류, 고소의 효력 유예 D-6.0103

Judicial Case (See also "Appeals," "Cases," "Complaint," and "References"):
사법사건 (참조 "상소," "사건," "고소"와 "조회") D-6.0101
D-10.0101
Reversed only by appeal or complaint 상소나 고소에 의해서만 번복 D-8.0100

Judicial Commission 사법전권위원회 G-3.0109a
D-5.0000

Judicial Process 사법절차:
Councils for 공의회 D-2.0102
Defined 정의 D-2.0101
Jurisdiction in 관할권 D-3.0101
Notifying a presbytery other than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s
말씀과 성례전 목사의 소속노회가 아닌 노회에 통보 D-10.0105
Types of cases 사건의 유형 D-2.0201
Jurisdiction in Judicial Process 사법절차에 있어서 관할권:
Councils, jurisdiction of 공의회의 관할권 D-3.0101a–d
Defined 정의 D-3.0101
Of transferred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이명된 말씀과 성례전 목사의 D-3.0104
Over nonmember ministers of the Word and Sacrament
비회원 말씀과 성례전 목사에 대한 ..... D-3.0101b(2)
Renunciation of 파기 G-2.0407
When church is dissolved 교회의 해산시 D-3.0101d
When jurisdiction ends 관할권이 종식될 때 D-3.0106
When lower council fails to act 하위 공의회가 결정을 내리지못할 때 D-3.0103

Jurisdiction of Council of the Church 교회 공의회의 관할권:
Defined for each Council 각 공의회에 대한 정의:
General Assembly 총회 G-3.0501
Presbytery 노회 G-3.0301
Session 당회 G-3.0201
Synod 대회 G-3.0401
Ecclesiastical Jurisdiction 교회적 관할권 G-3.0102
Limited by Constitution 헌법에 의한 제한 F-3.0209
Ministerial and declarative 목회적이고 선언적 F-3.0107
Of presbytery over commissioned ruling elder 평신도 목회자를 감독하는 노회의 D-3.0101b
Of presbytery over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를 감독하는 노회의 D-3.0101b
Of session over members 교인을 감독하는 당회의 D-3.0101a
Original: session and presbytery 원천적: 당회와 노회 G-3.0303
D-3.0101a, b

Over nonresident ministers of the Word an dSacrament
비거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에 대한 ..... D-3.0101b(2)
Renunciation of 파기 G-2.0407
When jurisdiction ends 관할권이 종식될 때 G-2.0407
G-2.0509
D-3.0106

Justice 정의 W-5.0304

Justice and Compassion for All Parties in Judicial Process
사법절차에 있어서 모든 당사자들에 대한 정의와 동정심 D-1.0101

Language in Worship 예배에 있어서 언어:
Appropriate and authentic 적절하고 진솔한 W-1.0302
Diverse 다양한 W-1.0302
General 총체적 W-1.03
W-1.0302
Inclusive 포괄적 W-1.0302
Symbolic 상징적 W-1.2002

Laying on Hands in Ordination 안수시 손을 얹음 W-4.0401
W-4.0403

Leadership of Worship: 예배의 지도력
Congregational participation and 회중의 참여와 W-2.0201
Gifts for service 봉사의 선물 W-2.0301
Session's responsibility for 당회의 책임 W-2.0302
W-2.0303
Who may lead in worship 예배 인도자 W-2.03

Lectionary 성구집:
Church year and 교회력과 W-1.0202
Scripture readings and 성경 봉독과 W-3.0301

Lent, Season of 사순절 절기 W-1.0202
W-5.0104

Liturgical Calendar (See "Church Year") 예식 월력 (참조 "교회력")

Location of Ordination 안수 장소 G-2.0702

Lord's Day 주일:
Description of 설명 W-1.0202
Hearing of Word and celebrating Sacraments 말씀의 경청과 성찬 집례 W-1.0202
Personal use of 개인적인 사용 W-5.0104
Service for the (See "Service for the Lord's Day") 예배 (참조 "주님의 날 예배")

Lord's Supper 성만찬:
Administered by a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집례 . W-2.0304
As a Sacrament 성례전으로서 W-3.0409
Baptism and 세례와 W-3.0409
Bread and 떡과 W-3.0409
W-3.0413
W-3.0414
By ruling elder commissioned to particular pastoral service 평신도 목회자에 의해 G-2.1001

W-3.0410
Chaplains and other ministers of the Word and Sacrament administering
기관목사와 가타 사역하는 말씀과 성례전 목사가 집례 W-3.0410
Children and 자녀들과 W-3.0409
Councils and 공의회와 W-3.0410
Creeds and 신조와 W-3.0306
Cup and 잔과 W-3.0413
W-3.0414
Disposition of the elements 성찬물의 처분 W-3.0414
Ecumenical gatherings and 에큐메니컬 모임과 W-5.0206
Elements of 성찬물 (떡과 잔):
Disposal of leftover 남은 것의 처분 W-3.0414
When placed on Table 식탁위에 진설할 때 W-3.0414
Homebound receive 집에서 받음 W-3.0414
How often observed 성찬의 빈도 W-3.0409
W-3.0410
Invitation and 초청과 W-3.0412
Jesus and 예수와 W-3.0409
Meanings of 의미 W-3.0409
Music and 음악과 W-3.0412
New Testament Church and 신약교회와 W-3.0409
Not a private ceremony 사적 의식이 아님 W-3.0409
Offering 봉헌 W-3.0410
Prayer of Thanksgiving 감사 기도 W-3.0411
Preaching and 설교와 W-3.0409
Preparing for 준비 W-3.0409
Presbytery and 노회와 W-3.0410
Public notice of 공개적 통보 W-3.0409
Responsibility for 책임 W-3.0410
Retreats/special gatherings and 수련회/특별모임과 W-3.0410
Sequence of 순서 ..... W-3.0412 부터
W-3.0414 까지
Services for wholeness and 치유예배와 W-3.0410
Services on the occasion of death and 장례 예식과 W-4.0704
Session's responsibility for 당회의 책임 W-3.0409
W-3.0410
W-3.0414
Table for 식탁 W-1.0203
Theology of the 신학의 W-3.0409
Visitation of the sick and 병자의 심방과 W-3.0410
W-3.0414
When observed 집례할 때 W-3.0409
Who is welcomed 초청받는 사람 W-3.0409
Who may receive the 받을 수 있는사람 W-3.0409
Who may serve the elements 잔과 떡을 분배할 사람 W-3.0410
Wine and 잔(포도주)과 W-3.0413
W-3.0414
Words of Institution and 제정의 말씀과 ..... W-3.0412 부터
W-3.0414 까지

Loss, Care in Times of 상실했을 때의 돌봄 W-4.0704
W-5.0204

Lower Council, When Fails to Act in Judicial Process
하위 공의회가 사법절차에 있어서 행동을 취하지 못할 때 D-3.0101

Mandatory Reporting 필수 보고 G-4.0302

Manual of Administrative Operations 행정운영 지침서 G-3.0106

Marks of the Church 교회의 표지 F-1.0302

Marriage 결혼:

Christian marriage 기독교 결혼 W.4.0601
Civil marriage, recognition of 민사법에 의한 결혼 인정 W-4.0604
Commitment between two people 두 사람 사이의 서약 W-4.0601
Covenant of 언약 W-4.06
Discernment of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and session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당회의 분별 W-4.0602
Former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officiating at 전직 목사가 집례 G-2.0905
General 총체적 W-4.06
Instruction from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말씀과 성례전 목사의 상담 W-4.0602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and marriage service 목사와 결혼식 W-4.0603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may seek session counsel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당회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W-4.0602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not compelled to perform marriage service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결혼식을 집례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W-4.0605
Preparing for 준비 W-4.0602
Service for the Lord's Day and 주일 예배와 W-4.0602
Service recognizing civil marriage 시민 결혼을 인정하는 예식 W-4.0604
Session and marriage service 당회와 결혼식 W-4.0602
W-4.0603
W-4.0605
Session not compelled to authorize use of property for marriage service
당회는 결혼식을 위해 교회 시설 사용을 인가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W-4.0605
Use of church property 교회 시설의 사용 W-4.0602
W-4.0605

Matter 물질:
Jesus and 예수와 W-1.0204
Old Testament and 구약과 W-1.0204
Sacraments and 성례와 W-1.0204
Worship and 예배와 W-1.0204

Mediation 중재 D-1.0103

Meetings 회의:
Of congregation (See "Congregational Meetings") 회중의 (참조 "공동의회") G-1.05
Of Councils 공의회의 G-3.0105
Of General Assembly 총회의 G-3.0503
Of presbyteries (See also "Presbytery: Meetings") 노회의 (참조 "노회: 회의") G-3.0304
Of sessions (See also "Session, Meetings") 당회의 (참조 "당회, 회의") G-3.0203
Of synods 대회의 G-3.0405

Member-at-Large 보통 회원 G-2.0503b

Members, Church: 교회 교인
Active members 활동교인 G-1.0402
G-1.0501
Active members' roll 활동교인 명부 G-3.0204
Affiliate members 관련교인 G-1.0403
Baptized members 세례교인 G-1.0401
Baptized members' roll 세례교인 명부 G-3.0204
Certificate of transfer 이명증서 G-1.0303
Delete 삭제 G-3.0204a
Entrance into active membership 활동교인으로 가입 G-1.0303
New members 새교우 W-4.0204
Received by profession of faith, reaffirmation of faith, transfer of certificate
신앙고백, 신앙의 재확인, 이명증서에 의해 받아들임 G-1.0303
W-4.0204

Membership 회원권:
Categories of 분류 G-2.0503
Of presbytery 노회의 G-3.0306

Membership in Congregation 교회 회원권:
Active member 활동교인 G-1.0402
Affiliate member 관련교인 G-1.0403
Baptized member 세례교인 G-1.0401
Categories of 분류 G-1.04
Entry into membership 교인(회원) 가입 G-1.0303
Meaning of 의미 G-1.0301
Ministry of 목회 G-1.0304
Nonmember participants 비회원 참여자 G-1.0404
Other Participants 기타 참여자 G-1.0404
Removal from 제적 G-3.0204a
D-12.0104b
Renounced 파기된 G-3.0204
Restorational after removal 제적후 복권 D-12.0200
Roll of, kept by session 당회가 보관하는 명부 G-3.0201
Welcome and Openness 환영과 개방성 G-1.0302

Membership Roll, Session 교인 명부, 당회 G-3.0204a

Minimum Compensation 최저 사례:
Certified Christian Educators 공인 기독교 교육사 G-2.1103b
Pastors 목사 G-3.0303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Censured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에 대한 책망:
Membership placed in church when removed from ordered ministry
직제 사역에서 제명되고 교회에 교인등록 D-12.0105d
Procedure when two citations disregarded 두 개의 경고가 무시될 때의 진행 D-11.0202
Restoration after censure of temporary exclusion 임시 분리의 책망 후 회복 D-12.0200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of Other Denominations, Transfer of
다른 교단의 목사가 이명 할 시 G-2.0505

Ministers of the Word and Sacrament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Administers the Lord's Supper 주님의 성만찬 집례 W-2.0304
As associate pastor 부목사로서 G-1.0503
G-2.0504
As chaplain 기관 목사로서 G-3.0306
As co-pastor 동사 목사로서 G-2.0805
As designated pastor 임명목사로서 G-2.0504
As pastor 담임목사로서 G-2.0504
G-2.08
As teacher 교육자로서 G-3.0306
Baptism administered by 세례 집례 W-3.0403
Care, Pastoral 목회적 돌봄 W-5.0204
Categories 조항들 G-2.0503
Calling and installing of 청빙과 위임 G-2.08
Choir Director and 찬양대 디렉터 W-2.0305
Confidentiality 비밀 보장 G-4.0301
Defined 정의 G-2.0501
Engaged in a Validated Ministry 인정된 목회 활동 G-2.503a
Failure to Engage in 활동에 불참 G-2.0508
Honorably retired 명예롭게 은퇴 G-2.0503c
How received from another denomination 다른 교단으로부터의 가입 G-2.0505
Hymns 찬송가 W-2.0304
W-2.0305
Lord's Supper administered by 성만찬 집례 W-2.0304
Lord's Supper and 성만찬 W-2.0304
W-3.0410
Manner of life 삶의 태도 G-2.0104
Marriages and 혼례 W-4.0603
May be removed from ordered ministry against will in certain circumstances
특정 상황에서 본인 의사와는 반대로 직제사역에서 제적/제명 D-12.0104
Member-at-large 일반/보통 회원 G-2.0503b
Member of presbytery 노회 회원 G-2.0501
G-3.0301
Membership placed in church if deposed or divested
면직 후 교회 교인으로 등록 D-12.0105d
Music leaders, relation to pastor 음악지도자들과의 관계 W-2.0305
New Immigrant Ministers of the Word and Sacrament, recognize ordination of
새 이주민자인 말씀과 성례전 목사들의 안수 인정 G-2.0505a
Nurture of 양육 W-2.0305
Of another Church 다른 교단의 W-2.0505
Ordinarily required to hold membership in presbytery where work located
통상적으로 사역 중인 노회의 회원권을 유지하도록 요구함 G-3.0306
Exceptions 예외 사항 G-3.0306
Ordination and 안수와 W-4.0401
Pastoral care 목회적 돌봄 W-5.0204
Pastoral relationship 목회적 관계 G-2.0504
Participation in Ecumenical Lord's Supper 에큐메니컬 성만찬 참여 W-5.0206
Possesses suitable gifts 적당한 은사 소유 G-2.0104
Preaching and 설교와 W-2.0304
Presbytery and 노회와 G-2.0502

Presbytery council of original jurisdiction 본 관할권의 노회 공의회..... D-3.0101b
Procedure for restoration after release from ordered ministries
직제사역에서 제명 후 복귀 절차..... G-2.0507
Proclamation and 선포와 W-3.0301
W-3.0305
Renunciation of Jurisdiction 관할권 파기/포기 선언..... G-2.0509
Required to report child abuse 어린이 학대 필수 신고 G-4.0302
Responsibilities of, 책임 W-2.0304
W-2.0305
W-3.0205
W-3.0301
W-3.0308
Restoration after censure of temporary exclusion 임시 제외의 처벌 후 복직/복권.... D-12.0104h
Restoration after release from exercise of ordered ministries
직제사역에서 제명 후 복직/복권..... G-2.0507
Retired, honorably 명예롭게 은퇴 G-2.0503c
Service for the Lord's Day and 주님의 날 예배.....W-2.0304
W-2.0305
W-3.0205
W-3.0301
Services on the occasion of death and 장례 예배.....W-4.073
Criteria for 표준.....G-2.0503a
Description 종류 G-2.0503a
When serving Church outside the U.S. 미국 바깥에서의 사역..... G-3.0306

Ministry of the Church and Worship 교회의 사역과 예배 W-5.02
W-5.03

Ministry, Preparation for 사역을 위한 준비:
Candidacy defined 후보생의 정의 G-2.0604
Consultation and guidance 협의와 지도 G-2.0605
Covenant relationship 언약 관계 G-2.0601
Duties of presbytery 노회의 의무 G-2.0605
Duties of session 당회의 의무 G-2.0605
Inquiry defined 지망생의 정의 G-2.0603
Service to the Church 교단에 봉사 G-2.0606

Minutes (See also "Records" of a Council") 회의록 (참조 "공의회의 기록"):
Clerk of permanent judicial commission keeps proceedings in trial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서기는 재판기록을 보관함 D-7.0601
Must be kept by each council 각 공의회는 보관해야 함 G-3.0107
Of presbytery 노회의..... G-3.0305
Of proceedings in case of trial 재판시 진행기록의 D-7.0601
Of session 당회의 G-3.0204
Of synod 대회의 G-3.0406

Mission Emphasis 선교강조의 예배 W-5.0301

Mission in the World, Worship and the Church's 세상, 예배, 및 교회의 선교.....W-5.03

Mission of the Church 교회의 선교 F-1.01
And the presbytery 노회 G-3.0301
And the session 당회 G-3.0201

And the synod 대회 G-3.0401
And the general assembly 총회 G-3.0501
And worship 선교와 예배 W-1.01
W-1.0104
W-1.0201
W-1.0302
W-3.02–.04
W-3.0409
W-3.0411
W-4.03
W-4.05
W-5.0105
W-5.03

Mission of the Congregation 개체 교회의 선교 G-1.0101

Moderator 의장:
Authority of 권위 G-3.0104
Chosen by each council 각 공의회에 의해 선출 G-3.0104
Commissioned ruling elder may moderate session 평신도 목회자가 당회를 사회할 수 있음 G-2.1001
Duties of in presbytery, synod, and General Assembly 노회, 대회, 총회장의 임무 G-3.0104
Of congregation when there is co-pastor 동사 목사가 있는 교회의 G-3.0104
Of congregational meeting 공동의회의 G-1.0504
Of General Assembly 총회의 G-3.0501
Of session when pastor is absent 목사가 부재시 당회의 G-3.0104
Of session when there is no installed pastor 위임목사가 없을 시 당회의 G-1.0504
Ruling elder moderator of presbytery enrolled as member for term of ordered ministries 직제사역의 임기 동안 노회원으로 등록된 사역장로 노회장 G-3.0301

Motion to Dismiss 기각 동의 D-6.0303
Music in Public Worship 공중예배의 음악:
Anthems 찬양 W-2.0202
W-2.0304
W-3.0306
Choir 찬양대 W-2.0202
W-2.0305
Congregational singing 회중 찬송 W-1.0303
W-1.0304
W-2.0202
W-3.0102
W-3.0203
W-3.0205
W-5.0102
Hymnals and song books 찬송가와 성가집 W-2.0305
Hymns 찬송가 W-2.0202
W-2.0305
W-3.0203
W-3.0501
W-4.0704
W-5.0104

Lord's Supper and 성만찬과 W-3.0308
W-3.0412
W-3.0414
Music Leaders, relation to pastor 음악 리더와 목사와의 관계 W-2.0305
Pastor's responsibility for 목사의 책임 W-2.0304
W-2.0305
Proclamation and 선포와 W-3.0304
Psalms 시편 W-2.0202
W-3.0203
W-3.0304
W-3.0501
W-4.0704
Service for the Lord's Day and 주일예배와 W-1.0204
W-2.0202
W-2.0305
W-3.0201
W-3.0303
W-3.0304
W-3.0306
W-3.0308
W-3.0412
W-3.0414
Service of daily prayer and 매일 기도회와 W-5.0202
Services on the occasion of death and 장례예식과 W-4.0704
Session's responsibility for 당회의 책임 ..... W-2.0303 i
W-2.0304
Spirituals 영가 W-3.0203
Music Leader 음악 지도자 W-2.0305
Mutual Forbearance 상호 관용 F-3.0105
New Church Development 새 교회 개척 G-3.0301b
New Evidence 새로운 증거 D-14.0500
New Immigrant Pastors 새 이민 목사 G-2.0505
New Members 새 교인: .....
Services for reception of members 교인 영접 예배 W-4.0204
Service for the Lord's Day and reception of 주일예배와 영접 W-4.0204
Nominating Process 공천 절차 G-3.0111
Of pastor 목사의:
Elected by congregation 회중에 의한 선출 G-2.0802
Must consult the presbytery 노회와 협의해야 함 G-2.0803
Opportunity for nominations from the floor 현장 공천의 기회 G-2.0401
Non-geographic Presbyteries 비지역노회 G-3.0403
Nonmembers Entitled to Care of Church 비회원 교인도 교회의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 G-1.0404
Notice of Appeal 상소의 통보:
Effect of 효력 D-8.0103
Must be given to council within thirty days 30 일 내에 공의회에 제출해야 함 D-8.0201

Notice of Meetings (See "Time Limit for") 회의의 통보 (참조 "시간 제한")

Nurture, Christian (See also "Christian Nurture")
양육, 크리스천의 (참조 "크리스천 양육") W-5.0203

Oaths Administered to Witnesses (See also "Affirmation")
증인에게 행하는 서약 (참조 "확약") D-14.0302

Offense Defined 범법 정의 D-2.0203b

Offering 봉헌:
Bread and wine 떡과 잔 W-1.0204
W-3.0411
Deacons may assist 집사가 보조할 수 있음 G-2.0201
Material offerings 물질 봉헌 W-1.0201
W-1.0204
W-3.0411
W-5.0103
Prayer gatherings and 기도회와 W-2.0202
Response to Christ 그리스도에게 응답 W-3.0309
Self-offering 헌신 W-1.0204
W-3.0411
W-5.0103
W-5.0203
Service for the Lord's Day and 주일예배와 W-1.0204
W-3.0411
Services for wholeness and 치유 예배와 W-5.0204
Spiritual gifts 영적 은사 W-3.0401
Tithes 십일조 W-1.0204
W-3.0309
W-3.0411

One-Third Vote Required to Stay Enforcement of Action Complained Against 고소사건의
집행유예에는 투표 1/3 이 요구됨 D-6.0103a

Openness 개방성:
Called to 부름받음 F-1.04
F-1.0302
F-1.0404

Ordered Ministries of the Church 교회의 직제사역 G-2.01

Ordered Ministry 직제사역:
Adhere to essentials of Reformed faith and polity
혁신앙과 정치의 본질적인 것을 고수함 G-2.0105
W-4.0404b
Authority from Christ 그리스도로부터의 권위 G-2.0101
Election by the people 회중에 의해 선출 F-3.0106
G-2.0102
Gift of Christ to Church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선물 G-2.0101
Gifts and Qualification 은사와 자격 G-2.0104
Inalienable right of God's people to elect 하나님 백성들의 양도할 수 없는 선택 G-2.0102
Live in obedience to Scripture and conformity of confessions
성경에 순종하고 신앙고백에 부합하여 살아야 함 G-2.0104b

Mandatory Reporting 필수 보고 G-4.0302
Ordination to the ministry of 사역을 하도록 안수 G-2.0102
Removal from ordered ministry 직제사역에서 제적 D-12.0105
Renunciation of the jurisdiction 관할권의 파기 G-2.0407
Effect on judicial process 사법절차에 미치는 영향 D-3.0106
Resignation of (Ruling Elder and Deacon) 사임(사역장로와 집사) G-2.0405
Restoration 복권:
After removal 제적 후 D-12.0202
To membership 회원권에 D-12.0203
Form of 양식 D-12.0203
To ordered ministry 직제사역에 D-12.0202
Form of 양식 D-12.0202
Terms of Ordered Ministry (Ruling Elder and Deacon)
직제사역의 임기 (사역장로와 집사) G-2.0404

Ordered Ministry, Commissioning, and Certification: 직제사역, 위임, 인증
Call to 부름받음 G-2.0103
Gifts and Qualifications 은사와 자격 G-2.0104
Ordered Ministries 직제사역자 G-2.0102

Ordering Worship 예배 순서:
Church school worship and 교회 학교 예배와 W-5.0203
Cultural diversity and 문화적 다양성과 W-2.0201
Form and freedom 형식과 자유 W-2.0102
Guidance for 안내 W-2.0101
W-2.02
W-2.03
Marriage and 결혼식과 W-4.0603
Ministers of the Word and Sacrament responsible for 말씀과 성례전 목사의 책임 W-2.0304
Ordination and 안수식과 W-4.0403
Other Sunday services and 기타 주일예배와 W-2.0201
Retreats, worship at 수련회에서 예배 W-5.0206
Service for the Lord's Day and 주일예배와 W-3.01
Services for evangelism and 전도예배와 W-5.0302
Services of acceptance and reconciliation and 용납과 화해예배와 W-5.0204
Services of welcome and reception and 환영과 가입예배와 W-3.0408
Services on the occasion of death and 장례 예식과 W-4.0704
Sources of order 순서의 근원 W-2.0101
Special occasions and recognitions and 특별 행사와 인정 W-4.0205
Spirit and 성령과 W-2.0102

Ordination for the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See "Preparation for Ministry")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안수 (참조 "목회를 위한 준비")

Ordination of Deacons and Ruling Elders 집사와 사역장로 안수:
Dissolution of relationship 관계의 해소 G-2.0405
Election provisions 선출 규정 G-2.0401
Examination of 시험 G-2.0402
Nominations made by representative nominating committee
대표성을 가진 공천위원회에 의한 공천 G-2.0401
Period of study and preparation 공부와 준비 기간 G-2.0402

Persons elected to be instructed and examined by session
선출된 사람들은 당회에 의해 교육받고 시취받음 G-2.0402
Questions to be answered by congregation 회중에게 묻는 질문..... W-4.0405i(5)a
Responsibility of session 당회의 책임 G-3.0201
Setting for the service 봉사의 환경 W-4.0402
Terms of Ordered Ministry 직제사역의 임기..... G-2.0404

Ordination Service 안수식 W-4.0403

Ordination to the Ministry 사역에의 안수 G-2.0102

Ordination to the Ordered Ministry: 직제사역에의 안수
Act of whole church 전 교회의 행위 G-2.0701
Definition of 정의..... G-2.0102
General 총체적.....W-4.04
Order of Worship and 예배순서와.....W-4.0403
Recognition of ministers of the Word and Sacrament of denominations
타 교단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인정 G-2.0505
Service for the Lord's Day and 주일예배와 W-4.0402
W-4.0403

Organic Union with Other Bodies, How Effected
다른 교단과의 조직적 연합이 효력을 가지려면..... G-5.03

Organizations Within a Church Under the Session 당회의 감독을 받는 교회안의 조직들....G-3.0201c

Organizing of a Congregation: 개체교회의 조직:
By a commission 전권위원회에 의해..... G-3.0109
By the authority of a presbytery 노회의 권위에 의해..... G-1.02
Organizing covenant 조직 계약..... G-1.0201

Original Jurisdiction in Judicial Process: 사법절차에 있어 원 관할권
Of a presbytery 노회의 D-3.0101b
Of a session 당회의.....D-3.0101a
Of a synod 대회의 D-3.0101c
Over members 교인들에 대한 D-3.0101a
Over ministers of the Word and Sacrament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에 대한..... D-3.0101b
Presbytery assumes, in church where session cannot act
당회가 결정하지 못하는 교회에 대해 노회가 관할권을 가짐 G-3.0303e

Other Denominations, (See "Ecumenical Commitment")
타 교단들 (참조 "에큐메니컬 참여")

Other Sunday Services 기타 주일예배와.....W-1.0202
W-3.0307
W-4.0503
W-5.0206

Parity of Ruling Elders in Councils 공의회에서 사역장로의 동격..... G-2.0301
G-3.0301
G-3.0401
G-3.0501

Participation, Full, of Persons 회원들의 전적인 참여.....F-1.0403
G-2.0401

G-3.0103
W-2.0201

Participation in Worship 예배에 참여:
Children and 어린이들과 W-2.0201
Cultural diversity and 문화적 다양성 W-2.0201
Who may lead in worship 예배 인도자 W-2.0302
W-2.0303
W-2.0305
Who may participate in worship 예배에 참여자 W-2.0201
W-2.0301
W-2.0302
W-2.0303
W-2.0305

Parties in Cases of Process 절차상 당사자들:
Accused and Presbyterian Church (U.S.A.) are original parties
피소인과 미국장로교가 원 당사자임 D-10.0402b
Copies of charges 고소 사본 D-10.0405
Counsel, right to 변호인을 가질 권리 D-7.0301
D-10.0203c
May challenge the right of any member to sit in trial
심리에 동석하는 위원들의 정당성에 대해 도전할 수 있음 D-11.0402
May cross-examine witnesses 증인에 대한 대질 심문 D-14.0302
Shall be required to withdraw druing deliberation
판결 심의는 비공개적으로 해야 함 D-11.0403
Witnesses shall be examined in presence of accused 증인은 피소인의 면전에서 심문받음 D-14.0304

Parties in Remedial Cases 교정사건의 당사자들 D-6.0201

Pastor 목사:
And the Directory for Worship 예배모범:
Accountability to presbytery 노회에 대한 책임 W-2.0305
And choir director 찬양대 지휘자 W-2.0305
And session 당회 W-2.0305
Baptism, responsibility for 세례에 대한 책임 W-3.0403
Sacrament of 성례전 W-3.0402–.0408
Death, service on occasion of 장례 예식 W-4.07
Committal, service of 하관 예식 W-4.0703
W-4.0704
Form and order of service 예식의 형식과 순서 W-4.0704
Ecumenical Eucharist, participation in 에큐메니컬 성만찬에 참여 W-5.0206
Elements of worship 예배의 요소 W-3.01
Lord's Supper 성만찬:
Administered by ministers of the Word and Sacrament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집례 W-2.0304
And the Word 말씀과 W-3.0409
On special occasions 특별한 경우 W-3.0409
Marriage 결혼:
Discernment 분별 W-4.0602
W-4.0605
Instruction for 가르침 W-4.0602

Service 예식 W-4.0603
Particular responsibilities 특별한 책임 W-2.0304
W-2.0305
Proclaiming the Word 말씀 선포 W-2.0304
Service for the Lord's Day 주일예배 W-3.01
Setting an order of worship 예배순서 작성 W-3.0103
Call 청빙 G-2.0803
Care, Pastoral 목회적 돌봄 W-5.0204
Compensation 보수 G-3.0303
Congregational meeting to call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G-1.0502
G-1.0503
G-2.0802
Designated 임명된 G-2.0805
Designated term 임명 조건 G-2.0504a
Dissolution of relationship 관계의 해소:
After Dissolution 해소 후 G-2.0905
Congregational Meeting 공동의회 G-2.0901
Dissolved only by presbytery 노회에 의해서만 해소 G-2.0901
May be initiated by congregation 교인에 의해 주도될 수 있음 G-2.0903
May be initiated by pastor, co-pastor or associate pastor
목사, 동사목사, 혹은 부목사에 의해 주도될 수 있음 G-2.0902
Presbytery Action 노회 결정 G-2.0904
Election of (See also under "Pastor, Election of ") 선출 (참조 "목사의 선출") G-2.0802
Former pastor's pastoral services 전직 목사의 목회적 봉사 G-2.0905
Has power to convene session 당회를 소집하는 권한을 가짐 G-3.0203
Installed Pastoral Relationships 위임된 목사 관계 G-2.0504a
Moderator of congregational meeting 공동의회의 의장 G-1.0504
Must convene session when requested by two members of session
당회원 2 인의 요청이 있을 때 당회를 소집해야 함 G-3.0203
Nominating Committee 청빙위원회 G-2.0802

Pastor, Counselor, and Advisor to Ministers of the Word and Sacrament
and Congregations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회중에 대한 목회자, 상담자, 조언자 G-3.0307
Responsibilities 책임 G-3.0307

Pastor, Election of 목사의 선출:
Installation service 위임식 W-4.04
Nominating committee to be elected 공천위원회의 선출 G-2.0802
Presbytery must be consulted 노회와 협의해야 함 G-2.0803
Public notice shall be given 공고하여야 함 G-1.0502
Terms of call 청빙 조건 G-2.0504

Pastoral Care 목회적 돌봄 W-5.0204

Pastoral Counseling 목회 상담 W-5.0204

Pastoral Relationships: 목회 관계
Installed Relationships 위임된 관계:
Associate Pastor 부목사 G-2.0504a
G-2.0805
Co-Pastor 동사목사 G-2.0504a
G-2.0805

Pastor 담임목사.....G-2.0504a
G-2.0805
Temporary 임시..... G-2.0504b

Peace 평화:
Exchange of the Sign of Peace 평화의 인사 교환.....W-3.0205
W-3.0308
W-3.0408
W-3.0411
W-5.0204
Making peace, ministry of 화해조성의 사역.....W-5.0304

Pentecost, Day of 오순절.....W-1.0105

Per Capita Funds to Pay Operating Expenses 운영비 지불을 위한 상회비 기금..... G-3.0106

Permanent Judicial Commissions: 상임사법전권위원회
Closed session 비공개 회의 D-11.0306
Decision of General Assembly PJC to be authoritative
총회 상임사법전권위원회의 결정은 권위를 가짐 G-3.0501c
Election by each council above session 당회 이상의 각 공의회에 의한 선출..... D-5.0101
Filing of vacancy on 공석을 채움..... D-5.0104
General Assembly, membership of 총회의 위원..... D-5.0101
Ineligibility period 부적격한 기간..... D-5.0105
Lack of quorum 정족수 미달 D-5.0206
List of members of last six years to be kept 지난 6 년간의 위원 명단 보관 D-5.0206b
Meetings of 회의..... D-5.0203
Members, as counsel 위원, 변호인으로서 D-7.0301
Powers of 권한 D-5.0202
Presbytery, membership of 노회의 위원 D-5.0101
Principles of church government 교회 정치의 원리.....F-3.02
Quorum of 정족수 D-5.0204
When cannot be reached 미달일 때..... D-5.0206
When lack of exists 부족할 때..... D-5.0206
Expenses paid by council 공의회에 의한 경비 지불..... D-5.0206
Responsibilities of 책임 D-5.0202
Synod, membership of 대회의 위원 D-5.0101
Term of membership 위원의 임기:
In General Assembly 총회에서 D-5.0102
In presbyteries and synods 노회와 대회에서..... D-5.0103

Personal Worship, Daily Worship and 개인예배, 매일예배와.....W-1.0203
W-5.0101

Petition for Review 검토를 위한 청원:
Permanent Judicial Commission 상임사법전권위원회..... D-5.0204
Petition for review if charges not filed 고소가 접수되지 않았을 때 검토의 청원 D-10.0303
Scope of Review 검토의 범위 D-10.0204
D-10.0303c
Session may not conduct 당회가 시행하지 않을 수 있음..... D-10.0201

Place of Ordination 안수의 장소..... G-2.0702

Plea in disciplinary cases 징계사건에 있어서 탄원 D-11.0402d

Polity, Church (See “Presbyterian Polity”) 정치, 교회 (참조 “장로교 정치”)

Power (See “Church Power”) 권한 (참조 “교회 권한”)

Prayer 기도:
Adoration, prayers of 경배의 기도 W-2.0202
Baptism and 세례와 W-3.0406
Centrality of 중심성 W-2.0202
Confession, prayers of 고백의 기도 W-2.0202
W-3.0205
Content of 내용 W-2.0202
Councils’ meetings 공의회 회의와 G-3.0105
W-5.0205
Daily life, in 매일의 삶에서 W-5.0102
Daily Prayer, Serives of 매일 기도 W-5.0202
Daily worship and 매일 예배와 W-1.0202
W-1.0203
W-5.0102
W-5.0104
Enacted 행동으로 나타낸 W-2.0202
W-5.0204
Gatherings 모임 W-2.0202
Illumination 성령의 조명 W-3.0302
Intercession, prayers of 중보의 기도 W-2.0202
W-3.0308
Kinds of prayer 기도의 종류 W-2.0202
Lord’s Day and 주님의 날/주일과 W-1.0202
Lord’s Prayer, place in service 예배 중 주기도문의 위치 W-3.0412
W-3.0415
W-4.0704
W-5.0202
Meetings 회의 W-5.0205
Music and 음악과 W-2.0202
Ordination and 안수와 W-4.0401
W-4.0403
W-4.0503
Participation in 참여 W-2.0202
Pastor’s responsibility for 목사의 책임 W-2.0304
Preparation for 준비 W-2.0202
Response to God’s initiative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한 응답 W-1.0301
Service for the Lord’s Day and 주일예배와 W-3.0308
W-3.0409
W-3.0414
W-3.0415
W-4.0502
W-4.0503
Service of Daily Prayer 매일 기도회 W-1.0202
W-3.0102
W-3.0301
W-5.0102

W-5.0104
W-5.0201
W-5.0202
Services for evangelism and 전도예배와 W-5.0302
Services for wholeness and 치유예배와 W-3.0308
W-5.0204
Services of acceptance and reconciliation and 용납과 화해예배와 W-5.0204
Services of daily prayer 매일 기도 예배 W-5.0502
Services on the occasion of death and 장례 예식과 W-4.0704
Session's responsibility for 당회의 책임 W-2.0304
Sung, may be 노래로 부를 수 있음 W-2.0202
Supplication, prayers of 간구의 기도 W-2.0202
W-3.0308
Thanksgiving, prayers of 감사의 기도 W-2.0202
W-3.0204
Ways to pray 기도의 방법 W-2.0202

Preaching 설교:
Baptism and 세례와 W-3.0402
Centrality of 설교의 중심성 W-3.0103
Daily worship and 매일예배와 W-1.0202
W-3.0301
W-5.0102
W-5.0202
In ordination or installation of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안수와 위임식에서 W-4.0401
Lord's Day and 주일과 W-1.0202
Lord's Supper and 성만찬과 W-3.0409
W-3.0414
Pastor's responsibility and 목사의 책임 W-2.0304
W-3.0301
Prayer gatherings and 기도회와 W-2.0202
Presbytery authorization for 노회의 위임 W-2.0303
Service for the Lord's Day and 주일예배와 W-2.0303
W-3.0305
Service on the occasion of death and 장례 예식과 W-4.0704
Services for evangelism and 전도예배와 W-5.0302
Services for wholeness and 치유예배와 W-5.0204
Session's responsibility for 당회의 책임 W-2.0305
Space for worship and 예배 공간과 W-1.0203
Word of God and 하나님의 말씀과 W-3.0301

Prehearing Proceedings in Appeal of Disciplinary Case
징계사건의 상소에 있어 예심 진행 절차 D-13.0300

Prehearing Proceedings in Appeal of Remedial Case
교정사건의 상소에 있어 예심 진행 절차 D-8.0300

Preliminary Procedure, Initiation of 예심 절차의 개시 D-10.0101

Preliminary Questions 예비 질문:
Appeal in disciplinary case 징계사건의 상소 ..... D-13.0302 a

Appeal in remedial case 교정사건의 상소 ..... D-8.0302 a
Remedial case 교정사건 ..... D-6.0306 a

Preparation for Ministry as a Ruling Elder and Deacon
사역장로와 집사로서의 사역을 위한 준비 G-2.04
G-2.0402

Preparation for Ministry as a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말씀과 성례전 목사로서의 사역을 위한 준비: G-2.06
Call 청빙 G-2.0803
Readiness for 준비 G-2.0607
Candidacy 후보생 G-2.0604
Certified ready for a call 청빙에 응할 준비가 되었다고 인정함 G-3.0301
G-2.0607
Requirements 요구사항 G-2.0607
Covenant relationship with presbytery 노회와 계약관계 G-2.0601
Minimum period 최소한의 기간 G-2.0602
Transfer of 이명 G-2.0608
Withdrawal from 철회 G-2.0609
Examination requirements 고시 요구사항 G-2.0607
Exceptions from examination requirements 고시 요구사항의 면제 G-2.0610
Inquiry 지망생 G-2.0603
Ordination 안수:
Called to Ministry 사역으로의 부름 W-4.0401
Constitutional questions 헌법 질문들 W-4.0404
More inclusive of persons with disabling conditions
장애인 후보자의 포함에 특별한 배려 W-4.0403
Order of worship 예배 순서 W-4.0403
Oversight 감독 G-2.0605
Process 절차 G-2.06
Purpose of 목적 G-2.0601
W-4.0401
Questions to be answered for ordination 안수시에 대답해야 하는 질문 W-4.0404
Setting for service 예배의 환경 W-4.0403
Welcome by presbytery 노회의 환영 W-4.0403
Removal from 삭제 G-2.0609
Service in a Covenant Relationship 계약관계에서 교회 봉사 G-2.0606
Session responsibility 당회 책임 G-2.0605
Time requirements 시간 요구사항 G-2.0602
Transfer 이명 G-2.0608

Presbyterian Government, Principles of 장로교 정치의 원리 F-3.02
Decision by Majority Vote 과반수 투표로 결정 F-3.0205
Gathered in Councils 공의회로 모임 F-3.0203
General Authority of Council 공의회의 총체적 권위 F-3.0209
Goverened by Presbyters 장로들에 의한 치리 F-3.0202
One church 하나의 교회 F-3.0201
Ordination by Council 공의회에 의해 안수 F-3.0207
Review and Control 검토와 통제 F-3.0206
Shared Power 공유되는 권한 F-3.0208
Will of Christ 그리스도의 뜻 F-3.0204

Presbyterian Polity 장로교 정치:
Basic principles of 기본 원리 F-3.02
F-3.03
Christ's Authority 그리스도의 권위 F-1.0201
Foundation of 기초 F-1.01
What it consists of 구성요소 F-3.04

Presbyters, Government by 장로들에 의한 정치 F-3.0202

Presbytery 노회:
Annual audit required 연례감사는 필수적임 G-3.0113
As a body for inquirers and candidates 지망생과 후보생을 위한 조직체로서 G-2.06
As a body for ministers of the Word and Sacrament and congregations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교회들을 위한 조직체로서 G-3.0307
As a council 공의회로서 G-3.0101
Responsibilities 책임 G-3.0301
Authorize ruling elders to administer or preside at Lord's Supper
사역장로에게 성만찬을 집례하도록 위임함 G-3.0301b
Budget of 예산 G-3.0113
Committee on representation 대표위원회 G-3.0103
Composition 구성 G-3.0301
Council of original jurisdiction for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에 대한 원 관할권을 가진 공의회 D-3.0101b
Covenant relationship with candidate and inquirer 후보생과 지망생과의 계약관계 G-2.0601
Defined 정의 G-3.0301
Directssession to meet 당회에게 모이도록 지시 G-3.0203
Dissolves pastoral relation 목회관계 해소 G-3.0301a
Examines candidates for ordination 안수를 위해 후보생 시취 G-2.0701
Executives and administrative staff 행정 책임자와 직원 G-3.0110
General mission budget of 일반 선교 예산 G-3.0113
Has jurisdiction over transferred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or
candidate until received 이명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나 후보생에 대해 그들이
다른 공의회에서 받아들여질 때까지 관할권을 가짐 D-3.0104
Incorporated 법인체로 조직됨 G-4.01
Lord's Supper and 성만찬과 W-2.0303
W-3.0410
May assume original jurisdiction when session cannot exercise authority
당회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때 원 관할권을 가짐 G-3.0303e
May release from Ministry as a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직에서 해제 G-2.0507
Meetings 회의 G-3.0105
G-3.0304
Membership, categories of 회원의 종류 G-2.0503
Membership of presbytery 노회 회원권 G-3.0306
Minimumm Size of 최소 규모 G-3.0301
Minutes and records 회의록과 기록 G-3.0107
G-3.0305
Nominating Process 공천 절차 G-3.0111
Ordains ministers of the Word and Sacrament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를 안수 G-3.0301c
Original Jurisdiction of session 당회의 원 관할권 G-3.0303e

Pastor, Counselor, and Advisor to Ministers of the Word and Sacrament
and Congregations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교회에 대한 목회자, 상담자와 조언자 G-3.0307
Principle of participation adhered to 참여의 원칙 고수 G-3.0103
Quorum of 정족수 G-3.0304
Records of 기록 G-3.0305
Relations with sessions 당회와의 관계 G-3.0303
Relations with synod and General Assembly 대회와 총회와의 관계 G-3.0302
Representatives of churches 교회의 대표들 G-3.0301
Responsibilities of 책임 G-3.0301
W-3.0303
W-2.0305
W-3.0410
W-4.0402
W-4.0403
W-5.0205
with inquirers and candidates 지망생과 후보생 G-2.0605
Ruling elder commissioned to particular pastoral services 평신도 목회자 G-2.10
Ruling elder representatives 사역장로 대표 G-3.0301
Special meetings 임시회의 G-3.0304
Staff of 직원 G-3.0110
Ministers of the Word and Sacrament received from other denominations
타 교단에서에서 영입한 말씀과 성례전 목사 G-2.0505
Terms of call 청빙조건 G-2.0804
Trustees 재단이사 G-4.0101
Validated ministries 인정된 목회 G-2.0503

Pretrial Challenges 예심 이의신청 D-10.0204

Pretrial Conference, Purpose of 예심 회의의 목적 D-6.0310

Pretrial Procedures 예심 절차 ..... D-6.0301 부터
D-6.0310 까지

Principles of Administration 행정의 원칙:
Accountability to council 공의회에 대한 책임 G-3.0106
Definition of 정의 G-3.0106
Manual of operations 운영지침서 G-3.0106
Mission determines form 선교가 형태를 결정함 G-3.0106
Structure of 조직 G-3.0106

Principles of Church Order 교회 규례의 원리:
Church power 교회 권한 F-3.0107
Corporate judgment 집단적 판단 F-3.0102
Ecclesiastical discipline 교회적 권징 F-3.0108
Election by the people 사람들에 의한 선출 F-3.0106
May Differ 견해의 차이 인정 F-3.0105
Ordered Ministries 직제사역자 F-3.0103
Rights of private judgment 개인적 판단의 권리 F-3.0101
Truth and goodness 진리와 선 F-3.0104

Principles of Inclusiveness 포괄성의 원칙 F-1.0403
G-3.0103

Principles of Presbyterian Government 장로교 정치의 원리 F-3.02

Private Judgment Universal and Unalienable 보편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개인적 판단 F-3.0101b

Privilege 특권:
Ministers of the Word and Sacrament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G-4.0301
Ruling Elder Commissioned to Particular Pastoral Services 평신도 목회자 G-4.0301

Procedure in Trials 심리(재판) 절차 D-8.0000

Profession of Faith, to Membership in the Church 신앙고백, 교인이 되기 위한 G-1.0301
W-3.0307
W-3.0402
W-3.0403
W-3.0405

Property (See "Church Property") 재산 (참조 "교회재산")

Prosecuting Committee 기소위원회:
Designated by Investigating Committee 조사위원회에 의해 지명 D-10.0202j
Prosecutes case 사건을 기소함 D-10.0202j

Protest 항의:
Defined 정의 G-3.0105b
May be answered by council 공의회에 의한 답변 G-3.0105
When it may be filed 접수될 수 있는 때 G-3.0105
When it may be recorded 기록될 수 있는 때 G-3.0105

Psalms (See also "Music in Public Worship") 시편 (참조 "공중예배 음악") W-3.0203

Public Profession of Faith (See also "Profession of Faith to Membership in Church")
공적 신앙고백 (참조 "교인이 되기 위한 신앙고백") W-3.0307
W-3.0402
W-3.0403
W-3.0405

Questions, Constitutional 질문, 헌법적 W-4.0404

Quorum of 정족수:
Congregational meeting 공동의회 G-1.0501
General Assembly 총회 G-3.0503
Permanent judicial commissions 상임사법전권위원회 D-5.0204
Presbytery 노회 G-3.0304
Session 당회 G-3.0203
Synod 대회 G-3.0405

Racial Ethnic Congregations, Meeting Mission Needs of, and Non-geographic
Presbyteries 소수민종교회, 선교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비지역노회 조직 G-3.0403

Reaffirmation of Faith 신앙의 재확인:
Baptism and 세례와 W-3.0306
W-3.0307
W-4.02
Member received on 교인으로 받아들임 G-1.0303
W-3.0307
W-3.0403

W-4.0204
W-4.0203
Service for the Lord's Day and 주일예배와 W-3.0306
W-4.02
Services for evangelism and 전도예배와 W-5.0302
Special times of renewal and 갱신의 특별한 때와 W-4.0205

Rebuke 견책:
A church censure 교회 책벌 D-12.0102
Rebuke with supervised rehabilitation 감독하에 복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견책 D-12.0103

Receives Ecumenical Statements 에큐메니컬 선언문의 접수 G-5.0203

Reception of Members (See under "Members, Church, Received")
교인의 영접 (참조 "교인, 교회, 영접함")

Reception of New Members, Services of (See "New Members")
새 교인의 영접예배 (참조 "새 교인")

Recognition, Acts of 인정(치하)의 행위:
Service for the Lord's Day and 주일예배와 W-4.0502
W-4.0503
Service to the community and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W-4.0503
W-5.0104

Recognizing Civil Marriage 민사법 결혼의 인정 W-4.0604

Reconciliation, Ministry of 화해의 목회 W-5.0204

Record of Proceedings, Defined 회의 진행 기록, 정의 D-13.0303

Records of a Council (See also "Minutes"): 공의회의 기록 (참조 "회의록")
Of judicial proceedings 사법 진행 절차의 D-11.0601
D-14.0303
Ownership of 소유권 G-3.0107
Preservation of 보존 G-3.0107
Special Records kept by session 당회가 보관하는 특별 기록 G-3.0107

References 위탁/위임/조회:
Defined 정의 D-4.0101
Duty of higher council 상위 공의회의 의무 D-4.0201
Duty of lower council 하위 공의회의 의무 D-4.0103
Proper subject of 적절한 내용 D-4.0102

Reformed, Always Reforming 개혁했고 항상 개혁중에 있음 F-2.02

Reformed Church 개혁교회 F-1.0303

Registers to Be Kept by Session 당회가 보관할 기록부 G-3.0204b

Rehabilitation (Supervised) 복권/회복 (감독하에) D-12.0103

Reign of God, Worship and the 예배와 하나님의 나라 W-5.04

Relations with Other Denominations: 타 교단과의 관계
Churches in correspondence 교신하고 있는 교단들 G-2.0503
G-5.0201
Recognition of ordination 안수의 인정 G-2.0505

Release from Exercise of Ordered Ministry 직제사역에서 해제:
Deacon 집사 G-2.0406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G-2.0507
Ruling elder 사역장로 G-2.0406

Remedial Cases 교정사건:
Committee of counsel 변호인단 D-6.0302
Complaint defined 고소의 정의 D-6.0102
Counsel 변호인 D-7.0301
Decisions 결정(판결) D-7.0402c
Defined 정의 D-2.0202
Initiation, method of 주도 방법 (시작하는 방법) D-6.0101
Parties involved 관여된 당사자 D-6.0201
Procedure in trial 재판 절차 D-7.0000
Stay of enforcement 집행유예 D-6.0103

Removal from Relationship 관계에서 제명 G-2.0609

Removal from Ordered Ministry, as Censure 책벌로서 직제사역에서 제명 D-12.0101
D-12.0105

Removed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제명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Conditions necessary for restoration 회복 (복권)에 필요한 조건 D-12.0200
How restored (early restoration) 회복 방법 (조기 회복) D-12.0104i
Pulpit declared vacant 강단이 공석임을 선언 D-12.0104f
D-12.0105e
Removal from Ordered Ministry 직제사역에서 제적 D-12.0105

Renewal and Fresh Commitment 갱신과 새로운 헌신 W-4.0205

Renunciation of Jurisdiction (a Ruling Elder, Deacon) 관할권의 파기 (사역장로, 집사) G-2.0407

Renunciation of Jurisdiction (a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관할권의 파기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G-2.0509

Report Child Abuse to Authorities 어린이 학대를 당국에 신고 G-4.0302

Representation 대표 G-3.0103

Representative Government of Church 교회의 대의 정치 G-2.0102

Represented by Counsel 변호인이 대표함 D-7.0301
D-11.0301

Rescinding Action of Administrative Commission 행정전권위원회의 조치를 무효화 G-3.0109

Residence, Change of, by Member: 회원/교인의 거주지 변경
May subject minister of the Word & Sacrament to jurisdiction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를 관할권에 종속시킴 ..... D-3.0101b(2)
Member's responsibility 교인의 책임 G-3.0204
Session's responsibility 당회의 책임 G-3.0204

Resignation of Ruling Elder or Deacon 사역장로나 집사의 사임 G-2.0405

Responsibilities of Each Council 각 공의회의 책임:
General Assembly 총회 G-3.0501
Presbytery 노회 G-3.0301

Session 당회 G-3.0201
Synod 대회 G-3.0401

Restoration 복직(복권):
Application for restoration to be made 복직을 위한 청원 D-12.0201
Authority of council to restore 공의회의 복직 권한 D-12.0104i
Council may act when fully satisfied 충분히 만족할 때, 공의회가 결정할 수 있음 D-12.0104h
To membership after removal 제적(제명) 후, 회원권에 D-12.0105d
W-4.0504
To ordered ministry after removal 제적(제명) 후, 직제사역에 ..... D-12.0203 c
W-4.0504

Restoration of Ordained Persons Released from Exercise of Ordered Ministry
직제사역에서 해제된 안수직분자의 복권 G-2.0406
G-2.0507
W-4.0504

Retirement 은퇴 G-2.0503c

Retreats, Worship at 수련회에서의 예배 W-5.0203
W-5.0206

Retroactive Prosecution 소급하여 기소 D-10.0401a

Review (see Administrative Review) 검토 (참조 행정적 검토)

Right to Be Represented by Counsel 변호인이 대표할 권리 D-11.0301

Rights of Accuser in Disciplinary Process 징계사건에서 고소인의 권리 D-10.0202b
D-10.0203a

Robert's Rules of Order, Newly Revised 새로 개정된 로버트 회의 규칙 G-3.0105

Roll of Members 교인 명부:
Active 활동교인 G-3.0204
Affiliate 관련교인 G-3.0204
Baptized 세례교인 G-3.0204

Rolls and Registers to be Kept by Session 당회가 보관할 명부와 기록부 G-3.0204

Royal Priesthood 왕 같은 제사장 W-2.0201

Ruling Elder 사역장로 (장로):
Defined 정의 G-2.0301
Dissolution 해소 G-2.0405
Election 선출 G-2.0401
Instruction and examination 교육과 시취 G-2.0402
Limited term election 제한된 임기를 위한 선출 G-2.0404
Lord's Supper, authorization to administer 성만찬, 집례하도록 위임 W-2.0303
When inquirer or candidate 지망생 혹은 후보생일 때 G-2.0606
Mandatory Reporting 필수적으로 보고 G-4.0302
May resign with session's consent 당회의 동의로 사임 G-2.0405
Ordination and Installation 안수와 위임 G-2.0403
W-4.0404
Preparation for Ministry 사역을 위한 준비 G-2.0402
Questions in ordination 안수시 질문 W-4.0404

Register of, to be kept 보관되어야 할 기록부 G-3.0204b
Release from exercise of the ordered ministry 직제사역의 직분에서 해제 G-2.0406
Renunciation of Jurisdiction 관할권 파기 G-2.0407
D-12.0104
Resignation of 사임 G-2.0405
Responsibilities 책임 G-2.0301
W-2.0303
W-3.0308
Same authority as minister of the Word & Sacrament in councils
공의회에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동일한 권한 G-2.0301
Scriptural basis 성경적 근거 G-2.0301
Terms of Service 임직기간 G-2.0404

Sacraments (See also "Baptism" and "Lord's Supper") 성례전 (참조 "세례" 와 "성만찬"):
Acts of commitment and recognition and 헌신과 인정의 행위와 W-3.0501
W-4.0204
As signs and seals 상징과 징표로서 W-1.0204
W-3.0401
W-5.0204
Lord's Day and 주일과 W-3.0401
W-3.0402
W-3.0409
Matter and 물질과 W-1.0204
Service for the Lord's Day and 주일예배와 W-3.0402
Session's responsibility for 당회의 책임 W-3.0403
W-3.0409
W-3.0410
W-3.0414
Space for worship and 예배 공간과 W-1.0203
Theology of 신학의 W-3.0401
Word of God and 하나님의 말씀과 W-1.0203
W-3.0401

Scripture 성경:
Baptism and 세례와 W-3.0402
Basis of Presbyterian Government 장로교 정치의 기본 F-1.0401
Christ's Will 그리스도의 뜻 F-1.0203
Centrality of 중심성 W-3.0103
Congregational reading of 회중의 봉독 W-3.0303
Daily worship and 매일예배와 W-5.0202
Inclusive 포괄적인 W-1.0302
Lectionaries and 성구집과 W-1.0202
Lord's Supper and 성만찬과 W-3.0404
W-3.0412
W-3.0413
W-3.0414
Pastor's responsibility to select 목사가 선택할 책임 W-2.0304
W-3.0301
Personal worship and 개인예배와 W-5.0104
W-5.0206

Prayer gathering and 기도회와 W-2.0202
Preaching and 설교와 W-3.0301
W-3.0305
Public reading and hearing of 공중 봉독과 경청 W-3.0303
Range of readings 봉독의 범위 W-3.0301
Responsive readings of 교독 W-3.0303
Service for the Lord's Day and 주일예배와 W-3.0102
W-3.0301
W-3.0303
W-3.0305
W-3.0412
Service of Daily Prayer and 매일 기도회와 W-5.0102
Services for evangelism and 전도예배와 W-5.0302
Services for wholeness and 치유예배와 W-5.0204
Services on the occasion of death and 장례 예식과 W-4.0704
Study of 연구 W-5.0206
Versions of 번역본 W-3.0301

Seasons (See also "Church Year") 절기 (참조 "교회력") W-1.0202
W-3.0301
W-5.0103
W-5.0104

Self-Offering 헌신 W-1.0204
W-5.0103
W-5.0203

Sending 보냄 W-3.05

Sentence (Judicial): Forms of 선고 (사법적) 양식 D-12.0000

Sermon (See "Preaching") 설교 (참조 영문 "Preaching")

Service Books 예식서 W-2.0305
W-5.0102

Service in the World 세상에서의 봉사/예배 W-3.0503

Service for the Lord's Day 주님의 날/주일예배:
Baptism in 세례 W-3.0402
W-3.0404 부터
W-3.0408 까지
Commissioning in 위임/파송 W-3.0307
W-4.0301
W-4.04
Day of Resurrection 부활의 날 W-3.0101
Installation in 위임 W-3.0307
W-3.0402
W-4.04
Lord's Supper in 성만찬 ..... W-3.0409 부터
W-3.0415 까지
Marriage in 결혼 W-3.0307
W-3.0410
Mission concerns in 선교의 관심 W-3.0308

W-3.0501
W-3.0502
W-5.0302
Order of worship 예배 순서 W-3.0103
Ordination in 안수 W-3.0307
W-4.0301
W-4.04
Pastoral and Occasional Services 목회적 및 특별 예배 W-4.01
Pattern of Lord's Day Worship 주일예배 형식 W-3.0102
Services on the occasion of death and 장례 예식과 W-4.0703
Special occasions and recognition and 특별한 경우와 인정 W-4.0205
Suggested order for 순서의 제안 W-3.0103
Transitions in life and ministry and 삶과 목회에 있어서 전환기와 W-3.0307
W-4.05
What is included 포함된 것 ..... W-3.01 부터
W-3.05 까지

Service of Daily Prayer 매일 기도회:
Leadership and 리더쉽과 W-5.0202
Order of 순서 W-5.0202
Prayer and 기도와 W-5.0202
Scripture and 성경과 W-5.0202
Who may lead 인도할 자 W-5.0202

Service of Ordination 안수식 W-4.04

Services for Evangelism 전도예배 W-5.0302
W-5.0301

Services for Mission Emphasis 선교를 강조하기 위한 예배 W-5.0301

Services for Wholeness 치유예배 W-5.0204
Lord's Supper and 성만찬과 W-5.0204
Ordering of 순서 W-5.0204

Services of Acceptance and Reconciliation 용납과 화해 예배 W-5.0204

Services of Welcome and Reception 환영과 가입예배:
Baptism 세례 ..... W-3.0402 부터
W-3.0408 까지
Enacting welcome and recognition 환영과 인정 W-3.0408
W-4.0201
W-4.0202
W-4.0403
Of other members 타 교인들의 W-4.0204
Reaffirmation by all 모두에 의한 재확인 W-4.0201
Renewal and fresh commitment 갱신과 새 결단 W-4.0205
To the Lord's Table 주의 식탁(성찬상)에 ..... W-3.0409 부터
W-3.0415 까지

Services on the Occasion of Death 장례 예식:
Committal, service of 하관식 W-4.0703
W-4.0704
Former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officiating at 전임 목사의 집례 G-2.0905

General 총체적 W-4.07
Lord's Supper and 성만찬과 W-4.0704
Music and 음악과 W-4.0704
Ordering of 순서 W-4.0704
Planning for 계획과 W-4.0702
Prayer and 기도와 W-4.0704
Preaching and 설교와 W-4.0704
Rites by civic, fraternal, or military 시민적, 우정적, 혹은 군대의식 W-4.0704
Scripture and 성경과 W-4.0704
Minister of the Word an dSacrament and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W-4.0703
Where should a funeral be held? 장례 예식 거행 장소 W-4.0703

Session 당회:
Accountability to presbytery 노회에 대한 책임 W-2.0305
And the Directory for Worship 당회와 예배모범:
And extraordinary baptisms 특례적인 세례 W-3.0402a
Approving resources for nurture 양육 자료 승인 W-5.0203
Arranging for preaching 설교 준비 W-2.0303
Arranging for reading and preaching of the Word 말씀 봉독과 설교 준비 W-2.0303
Authorizing other Sunday services 기타 주일예배 결정 권한 W-5.0206
Authorizing service of Daily Prayer 매일 기도회 결정 권한 W-5.0202
Authorizing services for mission interpretation 선교보고 예배 결정 권한 W-5.0203
Authorizing the Lord's Supper 성만찬 결정 권한 W-3.0403
W-3.0410
W-3.0415
W-4.0704
W-5.0204
W-5.0205
W-5.0206
At retreats, etc 수련회 등에서 W-3.0403
W-3.0410
W-5.0206
On certain occasions 어떤 경우에 W-3.0403
W-3.0410
W-5.0206
Baptism 세례:
Requests from parents not members 교인이 아닌 부모의 요청 W-3.0403
Responsibilities for 책임 W-3.0403
Children and Worship 어린이와 예배 W-2.0201
W-3.0303
Counsel about manifestations of the Spirit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한 분별 W-1.0105
Encouraging disciplines of personal worship 개인예배의 훈련을 하도록 격려 W-5.1004
W-5.0202
Joint responsibility with pastor 목사와 공동 책임 W-2.0305
Lord's Supper 성만찬:
And funeral 장례와 W-3.0410
W-4.0704
Disposal of elements 성찬물 (떡과 잔)의 처분 W-3.0414
Manner of distribution 분배 방법 W-3.0414
Responsibility 책임 W-3.0410

Special Occasions 특별한 경우들 W-3.0410
Use of wine 포도주의 사용 W-3.0413
Marriage 결혼 W-4.06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 may counsel with session regarding marriage service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결혼식과 관련하여 당회와 협의할 수 있다 W-4.0602 W-4.0603 W-4.0605
Ordering worship on the Lord's Day 주일예배 순서 W-3.0103
Pastor's responsibility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목사의 책임 W-2.0304 W-2.0305
Prayer meetings 기도회 W-5.0202
Preaching and 설교와 W-2.0303
Reception of new members 새 교인 영접 W-4.0204
Responsibility for education in worship 예배에 있어서 교육의 책임 W-5.0203
Responsibility for program of nurture 양육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 W-5.0203
Responsibillity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책임 W-2.0304 W-2.0305
Services for evangelism 전도예배 W-5.0302
Services for wholeness 치유예배 W-5.0204
Services on the occasion of death 장례 예식 W-4.0702
Sharing people's sense of renewal 교인들의 신앙갱신의 의식을 나눔 W-4.0205
Sign of Peace 평화의 표징:
General 총체적 W-3.0412
Sacraments and 성례와 W-1.0204 W-3.0401 W-3.0402 W-3.0409 W-5.0204
Service for the Lord's Day and 주일예배와 W-5.0401
Sin and Forgiveness, Care in 죄와 용서, 돌봄 W-4.0704 W-5.0204
Space for Worship 예배 공간:
Arrangement of 배치 W-1.0203
Early Church and 초대교회와 W-1.0203
Jesus and 예수와 W-1.0203
Old Testament and 구약과 W-1.0203
Ruling Elders' responsibility for 사역장로의 책임 W-2.0303 W-5.0305
Welcomes new person in ordered ministry 새 직제사역자들의 환영 W-4.0403
Welcoming children to the Lord's Table 성찬단에 어린이들이 나오도록 환영 W-3.0403 W-4.0202
Worship in councils 공의회에서의 예배 W-5.0202 W-5.0205
Annual audit required 연례 감사는 필수적 G-3.0113
Clerk of 서기 G-1.0505
Composition of 구성 G-3.0201
Co-pastors moderator 동사목사의 경우 당회장 G-3.0104

Council of original jurisdiction for members
교인들에 대해 원 관할권을 가진 공의회 D-3.0101a
Finance 재정 G-3.0113
G-3.0205
Joint meeting with deacons 집사들과 연합회의 G-3.0204
Keeps records of 기록의 보관 G-3.0204
Lord's Supper, authority in observing 성만찬 거행에 있어서의 권위 G-3.0201b
May delete names from the church rolls 교인 명부에서 이름 삭제 G-3.0204
Meeting in absence of pastor 목사 부재시의 회의 G-3.0104
Meetings 회의:
General principles 일반 원칙 G-3.0105
Special and stated 임시회의와 정기회의 G-3.0203
Meets when called to do so by the moderator 당회장이 소집시 모임 G-3.0203
Meets when directed by presbytery 노회의 지시가 있을 때 모임 G-3.0203
Meets when requested by two ruling elders 사역장로 두 사람이 요청할 때 모임 G-3.0203
Membership roll 교인 명부 G-3.0204a
Minutes 회의록 G-3.0204
Moderator of 당회장 G-3.0104
When church is without an installed pastor 교회에 위임목사가 없을 때 G-3.0201
When the installed pastor is unable 위임목사가 할 수 없을 때 G-3.0201
Pastor and associate may vote 담임목사와 부목사가 투표할 수 있음 G-3.0201
Pastor is moderator of 담임목사가 당회장임 G-3.0201
Quorum of 정족수 G-3.0203
Reasonable notice of meetings 회의의 합리적인 통보 G-3.0203
Records 기록 G-3.0107
G-3.0204
Registers 기록부 G-3.0204b
Relations with other councils 다른 공의회와의 관계 G-3.0202
Responsibilities of 책임 G-3.0201
Regarding worship (See above, "Session, and the Directory for Worship")
예배에 관하여 (참조 위의 "당회와 예배모범")
To assist those preparing for ministry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도와줌 ... G-2.0605
Rolls and registers which must be kept 보관해야 할 명부와 기록부 G-3.0204
Stated meetings at least quarterly 정기당회는 적어도 분기별로 G-3.0203

Sexual Abuse 성적 비행:
Administrative leave when alleged 혐의가 있을 때 행정적 휴직 D-10.0106
Definition 정의 D-10.0401c
Pastoral inquiry 목회적 조사 G-3.0109
Time limit for charges 고소에 대한 시간 제한 D-10.0401b

Sexual Misconduct Policy 성적 비행 방지 정책 G-3.0106

Sign of Peace 평화의 표시:
General 총체적 W-3.0412
Sacraments and 성례와 W-1.0204
W-3.0401
W-3.0402
W-3.0409
W-5.0204
Service for the Lord's Day and 주일예배와 W-5.0401

Sin and Forgiveness, Care in 죄와 용서, 돌봄 W-3.0308
W-4.0704
W-5.0204

Space for Worship 예배 공간
Arrangements of 배치 W-1.0203
Early Church and 초대교회와 W-1.0203
Jesus and 예수와 W-1.0203
Old Testament and 구약과 W-1.0203
Ruling Elders' responsibility for 사역장로의 책임 W-2.0303

Special Groups, Worship of 특별한 구룹의 예배 W-5.0206

Special Meetings 임시회의
Congregation 개체교회 G-1.0501
General Assembly 총회 G-3.0503
Presbytery 노회 G-3.0304
Session 당회 G-3.0203
Synod 대회 G-3.0405

Special Occasions and Recognitions 특별한 경우와 인정 W-1.0202

Special Services of 특별 예배:
Acceptance and reconciliation 용인과 화해 W-5.0204
Censure and restoration 책벌과 복권 W-4.0504
Commissioning for specific acts of discipleship
제자직의 특별 수행을 위한 위임/파송 W-4.03
Death, on the occasion of 장례 예식 W-4.07
Evangelism 전도 W-5.0302
Marriage 결혼 W-4.06
Mission interpretation 선교 해설 W-5.0203
Ordination and installation 안수와 위임 W-4.04
Program interpretation 프로그램 해설 W-5.0203
Recognition of service to the community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의 치하 W-4.0503
Transitions in ministry 사역의 전환 W-4.05
Welcome and reception 환영과 영접 W-3.0408
W-4.0202
W-4.0204
Wholeness 치유 W-5.0204

Spirit (See "Holy Spirit") 영 (참조 "성령")

Sponsors, Baptismal 세례 후원자 W-3.0403

Spouse Not Compelled to Testify 배우자가 증언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음 D-14.0202

Staff 직원:
Fair employment practice 평등 고용의 실천 G-3.0106
G-3.0110
Termination of 종결 G-3.0110

Stated Clerk (See also "Clerk") 정서기 (참조 "서기") G-3.0305

Stated Meetings 정기회의:
Of General Assembly 총회의 G-3.0503

Of presbytery 노회의 G-3.0304
Of session 당회의 G-3.0203
Of synod 대회의 G-3.0405

Statute of Limitations (See "Time Limit for") 효력기한 한정 법령 (참조 "시간 제한")

Stay of Enforcement 집행유예: D-6.0103
Filed within forty-five days after decision or action
판결이나 조치후 45 일 이내에 접수 ..... D-6.0103a, d
How obtained 달성 방법 D-6.1300a
D-11.0801
Temporary 일시적 D-6.0103c

Stewardship 청지기직 W-1.0204
W-3.0411
W-5.0103
W-5.0305

Stewardship of Resources 자원의 청지기직 G-3.0106
Session to challenge people regarding 당회가 청지기직에 대해 교인들에게 도전 G-3.0201

Supervised Rehabilitation 감독하에 복직(복권) D-12.0103

Symbol 상징:
Baptism as 세례 W-3.0402
New Testament and 신약과 W-1.0303
Old Testament and 구약과 W-1.0303
Use in worship 예배에서 사용 W-1.0303

Symbolic language in worship 예배에서 상징적 언어 W-1.0303

Synod 대회:
Annual audit required 연례 감사는 필수적 G-3.0113
Committee on representation 대표위원회 G-3.0103
Composition 구성 G-3.0401
Creating non-geographic presbyteries 비지역노회의 조직 G-3.0403
Equitable compensation 공정한 보수 G-3.0106
Executives and administrative staff 행정책임자와 직원 G-3.0110
Fair employment practices 평등 고용 실행 G-3.0106
General mission budget of 일반 선교비 예산 G-3.0113
Incorporated 법인체 조직 G-4.0101
Meetings 회의 G-3.0405
Meets when directed by General Assembly 총회가 지시할 때 모임 G-3.0405
Membership of 회원권 G-3.0401
Minutes and records 회의록과 기록 G-3.0107
G-3.0406
No fewer than three presbyteries 적어도 세 개 이상의 노회 G-3.0401
Nominating process 공천 절차 G-3.0111
Presbytery participation 노회 참여 G-3.0401
Quorum of 정족수 G-3.0405
Relationship with General Assembly 총회와의 관계 G-3.0402
Relationship with presbyteries 노회와의 관계 G-3.0403
Reduced Function 축소된 기능 G-3.0404
Responsibilities 책임 G-3.0401

Special meetings 임시회의 G-3.0405
Trustees 재단이사 G-4.0101

Teachers to Be Sound in the Faith 신앙이 건실한 교사 F-3.0105

Teaching Elders(See Ministers of the Word and Sacrament) 교역장로(참조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Temperature of Records 기록의 보존 온도 G-3.0107

Temporary Exclusion 임시 정직:
A Church censure 교회 책벌 D-12.0104
Cannot vote or hold ordered ministry 투표권이나 직제사역의 직분을 갖지 못함 D-12.0104e
Refrain from exercise of ordered ministry 직제사역의 사역 금지 D-12.0104d

Temporary Membership in Presbytery 노회의 임시 회원권 G-2.0506

Temporary Pastoral Relationships 임시적인 목회관계 G-2.0504b
Ordinarily not eligible to serve as the next installed positions 통상적으로 차기 위임목사로 청빙될 수 없음 G-2.0504b

Temporary Stay of Enforcement 일시적 집행유예 D-6.0103
How obtained 달성 방법 D-6.0103a

Term of Ordered Ministry 직제사역의 임기:
Advisiory Committee on the Constituion 헌법자문위원회 G-6.02
Clerks 서기 G-3.0104
General Assembly Permanent Judicial Commission 총회 상임사법전권위원회 D-5.0102
Moderators 의장 G-3.0104
Ruling elders and deacons 사역장로와 집사 G-2.0404

Termination of 종결:
Executive and staff 행정책임자와 직원 G-3.0110
Stated Clerk 정서기 G-3.0104

Termination of Censure and Restoration 책벌과 복권의 종결:
Application for restoration to be made 복권 신청 D-12.0201
Authority of council to restore 공의회의 복권 권한 D-12.0104i
Council may act when fully satisfied 충분히 만족시, 공의회가 결정함 D-12.0201
When censure is rebuke 책벌이 견책일 때 D-12.0102
When censure is temporary exclusion 책벌이 임시 정직일 때 D-12.0104b

Terms of Call 청빙 조건:
Annually Reviewed 매년 검토함 G-2.0804
Minimum requirements 노회가 정하는 최저기준 G-2.0804

Testimony in Remedial or Disciplinary Cases (See also "Evidence in Remedial or Disciplinary Cases"): 교정 혹은 징계사건 에서의 증언 (참조 "교정 혹은 징계사건에서의 증거")
By deposition 증언 조서에 의해 D-14.0304
Defined 정의 D-14.0101
Husband not compelled to testify
남편이 아내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음 D-14.0202
Kinds of 종류 ..... D-14.0101 부터 D-14.0402 까지
New, accused may ask for new trial 새 증거, 피소인이 새 재판을 요구할 수 있음 D-14.0501
Newly discovered 새로이 발견된 D-14.0501

One council may take testimony for another
한 공의회가 다른 공의회를 위해 증언 청취 D-14.0304a
Record of 기록 D-14.0303
Records of, admissibility of, of a council or judicial commission
공의회나 사법전권위원회의 기록의 허용 D-14.0401
Refusal to give may bring censure 증언 거부는 책벌을 받을 수 있음 D-11.0203
Taken by one council valid in every other council
한 공의회가 받은 증언은 다른 공의회에서 유효함 D-14.0402
Wife not compelled to testify 아내가 남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음. D-14.0202

Theology of Christian Worship 기독교 예배의 신학 W-1.01

Three-Fourths Vote Required ¾의 투표가 요구됨:
Associate Pastor to be eligible to serve as the next installed pastor
부목사를 차기 담임목사로 청빙하고자 할 때 G-2.0504
In presbytery for exceptions for extraordinary candidate
노회에서 특례적 후보생에게 예외를 허락하고자 할 때 G-2.0610

Time Limit for 시간 제한:
Amendments to *Book of Order* received prior to meeting of General Assembly
(120 days) *규례서*의 개정안은 총회 전 (120 일)에 접수되어야 함 G-6.04a
Challenge to findings of PJC moderator and clerk
상임사법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의 조사 결과에 대한 항의:
Appeal in disciplinary case 징계사건의 상소 D-13.0302a
Appeal in remedial case 교정사건의 상소 D-8.0302a
Remedial case 교정사건 D-6.0306a
Filing of allegations in disciplinary case 징계사건에서 혐의의 접수 D-10.0401
Inquirer's membership in particular church (six months)
지망생의 지교회에서의 회원권 (6 개월) G-2.0602
Notice of appeal (30 days) 상소의 통보 (30 일) D-13.0201
Notice of complain (30 days) 고소의 통보 (30 일) D-6.0202a
Special meeting of General Assembly (60 days) 총회의 임시회의 (60 일) G-3.0503
Special meeting of session (reasonable) 당회의 임시회의 (합리적으로) G-3.0203
Stay of enforcement 집행유예 ..... D-6.0103a, d
Where civil proceedings have commenced 민사 소송이 이미 시작된 경우 D-10.0401a

Time of Worship 예배 시간:
Daily Worship 매일 예배 W-1.0202
W-1.0203
General 총체적 W-1.0202
Lord's Day 주일 W-1.0202
W-2.0303
W-2.0304
Session's responsibility for 당회의 책임 W-1.0202
W-2.0303

Time Requirement for Inquiries and Candidates
지망생과 후보생에게 요구되는 노회의 양육기간 G-2.0602

Tithes (See also "Offering") 십일조 (참조 "헌금") W-3.0309
W-3.0411

Transcript (See also "Verbatim Transcript") 등본 (참조 "축어적 구두 등본") D-7.0601

D-11.0601a, f

Transfer of Covenant Relationships 계약관계의 이전 G-2.0608

Transitions in Life and Ministry 삶과 목회의 전환기:
Care in 전환기 중의 돌봄 W-4.05
General 총체적 W-4.05
Service for the Lord's Day and 주일예배와 W-4.0501

Treasurer 회계 G-3.0205

Trials 심리 (재판):
Announcement of decision in disciplinary case
징계사건에 있어 결정 (판결)의 공고 D-11.0403d
Citation of parties and witnesses 당사자와 증인의 소환 D-11.0201
D-11.0202
Conduct of 시행 D-7.0303
Conducted by whom when remedial or disciplinary cases
교정 혹은 징계사건에 있어 심리를 시행할 사람 D-7.0101
D-11.0101
Counsel 변호인 D-11.0301
Decision in remedial case 교정사건에 있어서의 결정 (판결) D-7.0402
Disqualification and challenges 실격과 이의 제기 ..... D-7.0401(b)(1)
Enforcement 집행 D-11.0801
Materials, circulation of, ordinarily not permitted 회람이 보통 허락되지 않는 자료 D-11.0303
Questions of procedure decided by moderator 절차의 질문은 위원장이 결정함 D-7.0303a
Record of proceedings 진행절차의 기록 D-11.0601
Stated clerk, duty of 서기의 의무 D-11.0701
Voting 투표 ..... D-11.0403a, b
When decision becomes final judgment 결정이 최종 판결이 될 때 D-11.0403a
Witnesses, citation of 증인의 소환 D-11.0201
D-11.0202a, b
Witnesses, refusal of to testify 증인, 증언의 거부 D-11.0203

Trust and Love 신뢰와 사랑 G-1.0102

Trustees 재단이사:
Of General Assembly 총회의 G-4.0101
Of incorporated church 법인체 교회의 G-4.0101
Of local congregation 지교회의 G-1.0503
G-4.0101
Supervised by session 당회의 감독 G-3.0201
Of presbytery 노회의 G-4.0101
Of synod 대회의 G-4.0101
Of unincorporated church 법인체 조직이 안된 교회의 G-4.0101

Truth 진리:
And duty 의무와 F-3.0104
And goodness 선과 F-3.0104

Two-Thirds Vote Required 2/3 의 투표가 요구됨:
Exemption of the examinations required of candidates
후보생에게 요구되는 고시의 면제 G-2.0505
Of presbyteries on amending confessional documents 신앙고백서의 개정시 노회의 G-6.03d

Union presbytery 연합 노회 G-5.0402

Types of Cases (See also "Cases") 사건의 유형 (참조 "사건") D-2.0200

Union Churches (See "Joint Congregational Witness") 연합 교회 (참조 "선교를 위한 교회 연합")

Union, Full Organic 완전한 조직적 연합 G-5.03

Union Presbyteries 연합노회 G-5.04
Constitutional Authority 헌법적 권위 G-5.0401
Plan of union 연합계획 G-5.0402

Unity in Diversity 다양성 속의 일치 F-1.0403

Unity of Church 교회의 일치:
Defined 정의 F-1.0302
Ecumenical statements 에큐메니컬 선언문 G-5.0101

Validated Ministries 인정된 목회 G-2.0503a
G-3.0306
Of Ruling Elder Commissioned to Particular Pastoral Service 특정한 목회적 섬김을 위해 파송받는 사역장로 G-2.1001

Verbatim Recording 축어적 기록 D-11.0601a
Required in trial unless waived by parties
당사자들이 보류하지 않는 한 재판에서 요구됨 D-14.0303

Verbatim Transcript 축어적 기록 등본 D-11.0601a
At expense of requesting party 요청하는 당사자가 비용 부담 D-11.0601f

Victim Impact Statement 피해자 영향 진술서 D-11.0403e

Vindication, Request for 결백입증 요청 D-9.0101
And preliminary procedure 예비 절차에서 D-9.0101

Visitation of the Sick 환자 심방:
General 총체적 W-5.0204
Lord's Supper and 성만찬과 W-3.0401

Vocation, Christian 크리스챤의 소명 W-5.0105

Voluntary Acts of Repentance 자발적 회개의 행위 D-12.0103d
D-12.0104c

Voters, Qualifications in Judicial cases 투표자, 사법사건에 있어 서의 자격 D-7.0402
D-11.0403

Voting, Special Provision (See "One-Third Vote," "Two-Thirds Vote," "Three-Fourths Vote") 투표, 특별 규정 (참조 "1/3 투표," "2/3 투표," "3/4 투표")

Waivers 포기, 보류 G-2.0610

Weddings (See also "Marriage") 결혼식 (참조 "결혼") W-4.06

Welcoming (See also "Services of Welcome and Reception")
환영 (참조 "환영과 가입예배") W-3.0408
W-4.0202

Wholeness, Services (See also "Services for Wholeness")
치유예배 (참조 "치유를 위한 예배") W-5.0204

Wife Not Compelled to Testify Against Husband
아내가 남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음 D-14.0202

Witness to the Resurrection, Service of (See also "Services on the Occasion of Death")
부활을 증거하는 예배 (참조 "장례 예식") W-4.0701

Witnesses 증인:
Citation of 소환 D-11.0202
Credibility of 신빙성 D-14.0205
Disclosed 공개된 D-10.0406
Examination of 심문 D-14.0301
Member of session or permanent judicial commission as
당회원이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 D-14.0305
Oath or affirmation to be administered 선서나 확약 실시 D-14.0302
Refusal to testify 증언 거부 D-7.0204
D-11.0203

Women, Eligible to Hold Ordered Ministry 여성, 직제사역의 직분을 맡은 자격 있음 G-2.0101

Word and Sacrament 말씀과 성례전 W-1.0106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Forms of proclamation of 선포의 형식 W-3.0305
Jesus Christ as 말씀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W-1.0301
W-1.0303
W-3.0301
Lord's Day and 주일과 W-1.0202
People's responsibility to hear 경청할 교인의 책임 W-3.0301
Preaching as 설교 W-3.0301
Sacrament as 성례전 W-1.0106
Scripture as 성경 W-3.0301
Theology of proclamation 선포로서의 신학 W-3.0301

Work, Worship and 일과 예배 W-5.0105

Worship 예배:
And Christian life 기독교인의 삶 W-5.01
And ministry of the Church in the world 세상에서의 교회의 사역 W-5.03
And ministry within the community of faith 신앙공동체 안에서의 사역 W-5.03
And personal discipleship 개인적 제자직 W-5.0302
And the reign of God 하나님의 통치 W-5.04
And work 일 W-5.0105
Artistic expressions in 예술적 표현 W-1.0204
W-2.0303
W-2.0304
W-3.0301
W-3.0305
As praise 찬양으로서 W-5.04
Blessing and Charge 축복과 권고 W-3.0502
Christian Worship, introduction to 기독교 예배 개론 W-1.01
Commitment, Acts of 헌신된 행위 W-3.0501
Confession and forgiveness 고백과 용서 W-3.0205
Description 설명 W-1.0101

Ecumenical groups, worship with 에큐메니컬 그룹과의 예배 W-5.0206
Elements of 요소 ..... W-3.01 부터 W-3.05 까지
God's initiative 하나님의 주도권 W-1.0105, W-3.0205
Holy Spirit and 성령과 W-1.0105, W-1.0106
Household 가정 W-5.0104
Jesus Christ and 예수 그리스도와 W-1.0104, W-3.03
Language of 언어 W-1.0302
Material gifts in 물질적 예물 W-1.0204
Mission in the world 세상에서의 사명 W-5.03
Opening sentences 여는 문장 W-3.0202
Ordering of 순서 W-2.03, W-2.0304, W-2.0305, W-3.0103, W-4.0403
Pastor's responsibilities 목사의 책임 W-2.0305
Prayer 기도 W-3.0204
Preparation for 준비 W-3.0201
Psalms, hymns, and spiritual songs 시편, 찬송, 및 영적 노래 W-3.0203
Responsibility for, in session 당회의 예배에 대한 책임 W-2.0305
Selection of hymns 찬송가의 선택 W-2.0304, W-2.0305
Session's responsibilities 당회의 책임 W-2.0305
Space 공간 W-1.0203

Written Decision of Permanent Judicial Commission 상임사법전권위원회의 서면 결정:
Disciplinary 징계의 D-11.0403c, D-13.0405c
Remedial 교정의 D-7.0402c, D-8.0404c